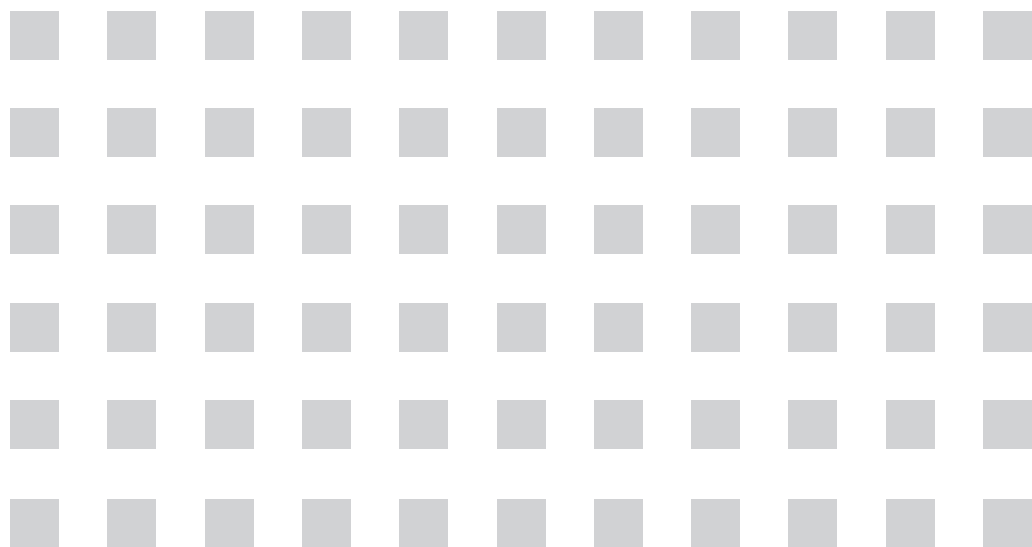


JRI

정조(正祖)의 제주통치론

—

김 호



발 간 사

제주는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지부의 중앙국가적 통치를 받으며 내륙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제주통치론>은 조선시대 정조의 제주 통치 철학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주 고유의 문화에 중앙의 통치문화가 어떻게 습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합니다. 성리학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무위이치(無爲而治)’를 구현하는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해 조선왕조의 성리학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리학이 제주의 문화적 환경과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살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조가 남긴 《홍재전서(弘齋全書)》와 정조의 통치 기록이 담겨있는 《일성록(日省錄)》을 중심으로, 정조 즉위 후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꼽았던 민산(民産), 인재(人才), 용정(戎政), 재용(財用)의 4원칙이 제주통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를 계기로 조선시대 중앙의 제주 통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전되길 기원합니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를 맡아 애쓰신 경인교육대학교 김호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업 수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임승희·고은솔 선생님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목 차 CONTENTS

I. 머리말	1
II. 영토(領土): 변경으로서의 제주[탐라]	5
1. 지리책	5
2. 제주에 대한 정보 수집	10
3. 명의(明義), 충성의 섬	14
III. 향산, 소생(所生)의 토대	21
1. 공물 경감 조치.....	21
2. 계갑대흥년(癸甲: 1793~1794).....	29
3. 어사 심낙수의 파견	33
4. 1794년 제주목사 이우현의 노력	39
5. 정리곡 1만 냥	47
6. 변경우의 사창론	56
IV. 항심(恒心), 교화와 소민(小民) 자발주의	65
1. 제주의 축첩(畜妾) 풍속	67
2. 제주민의 상언(上言)과 소통	70
3. 탐라의 빈흥(賓興)과 인재 선발	74
4. 교화의 증거, 소민들의 의행(義行)	88
4-1. 인륜의 구현자	88
4-2. 만덕의 의행	91
4-3. 이어지는 의협, 양제해	95

V. 선린(善隣), 표류객의 환대	101
1. 중국	102
1-1. 중국에 표류한 조선인	102
1-2. 이방익 표류기	106
1-3.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들	111
2. 일본	124
2-1. 일본에 표류한 제주인	124
2-2. 제주에 표류한 일본인	134
3. 유구	139
3-1. 제주에 표류한 유구인들	139
3-2. 유구에 표류한 제주인들	156
4. 아란타인의 표류	159
5. 표류민의 출전 지금	162
VI. 맺음말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72

표 목차

〈표 1〉 탐라 빈흥시 합격자 명단	82
〈표 2〉 이방익 일행의 귀국 소지품	110
〈표 3〉 1797년 11월 청인 고봉창 표류 문목	117
〈표 4〉 1797년 11월 청인 진가서 표류 문목	122
〈표 5〉 1799년 7월 왜인 언우위문(彦右衛門) 표류 문목	137
〈표 6〉 1790년 6월 유구 맹국길(孟國吉) 표류 문목	142
〈표 7〉 1794년 10월 유구인 미정겸개단인야(米精兼个段仁也) 표류 문목	148
〈표 8〉 1797년 윤6월 유구인 축등지친운상(筑登之親雲上) 표류 문목	153
〈표 9〉 유구에서 돌아온 제주인들의 소지품 내역	159

I. 머리말

본 원고는 제주에 대한 정조의 통치론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정조는 즉위 후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민산(民産), 인재(人才), 용정(戎政), 재용(財用)의 네 가지를 꼽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제주통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첫째, <영토>는 제주를 적극적인 통치의 영역으로 인식했던 정조의 역사 인식을 다루고자 했다. 둘째, <항산>은 민생의 근본인 ‘먹을 것의 자립’에 관한 정책이다. 제주의 진정한 자치(自治)는 먹을 것의 육지로부터의 독립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정조는 기근이 들자 적극적으로 진휼했을 뿐 아니라 진상 공물을 감면하는 등 제주의 근본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셋째, <항심>은 교화 정책이다. 정조는 제주의 풍속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조했고, 그에 따른 소민들의 의행을 기대했다. 아울러 제주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선린>은 해외에 표류한 제주인과 제주에 표류한 외국인들의 상호 환대에 관해 서술하고자 했다.

II. 영토(領土): 변경으로서의 제주[탐라]

정조는 조선을 ‘대동(大東)’으로 정의하고 제주야말로 대동의 중요한 영역임을 천명했다. 적극적으로 제주를 자신의 통치 구역으로 확정한 후 정조는 제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들 제주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물론 관료를 파견하여 제주의 지리와 물산 그리고 인재들을 선발하는 일보다 근본적인 것은 소생(所生)의 바탕, 즉 제주가 자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른바 ‘항산’의 정치가 중요했다. 정조는 항산의 기초를 위해 공물의 수효를 줄이고 진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

력했다. 사실 향산이 충족되어야 반역을 피하거나 이반할 가능성이 줄었을 뿐 아니라 교화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Ⅲ. 향산(恒産), 소생(所生)의 토대

진휼은 정조 통치의 핵심이었다. 제주를 위해 나리창을 설치하거나 제주의 연속된 흉년과 진휼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재삼 확인했을 뿐 아니라, 특히 책문으로 제주 진휼의 실질을 파악하기도 했다. 나아가 제주민을 구휼하기 위해 전라도의 민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탕금을 내려 주었다. 1794년 제주가 흉년으로 고통받자 정조는 단지 호남 연읍의 쌀을 제주에 옮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정리소의 돈 1만 냥을 전라감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형편에 따라 곡물로 바꾸어 제주의 진휼곡으로 삼도록 명령한 것이다. 정리곡(整理穀)의 일부를 제주에 내려준 것은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컸다. 당시 제주 사인 변경우는 사창법을 제안하여 진휼에 대비하는 방도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제주를 공납의 식민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조의 인식은 공물을 경감하는 조치로 나타났다. 특히 감귤과 흑우, 그리고 군정에 관계되는 말의 공납 등이 중요하지만 이를 감하여 진휼에 보태도록 했다. 동시에 제주에 대해 서북(西北) 지방과 마찬가지로 사로(仕路)를 허통(許通)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Ⅳ. 향심(恒心), 교화와 소민(小民) 자발주의

정조는 ‘조선후기’를 말세의 풍속으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최고의 문화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특히 변방 제주에까지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정조는 제주의 민인들이 인륜을 밝히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랐다. 노비 고취선이나 만덕, 그리고 의협 양제해처럼 제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인물들을 바랐다. 이들은 지역공동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인물들이었다. 정조는 이러한 소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말로 문명국가 조선의 도달처라고 생각했다. 특히 정조는 용기있는 재[광 재]들의 활약을 희망했다. 정조 치세에 먼 해외로 표류하여 조선이 의로운 나라임을 천명했던 이방익의 용기에 감동한 정조는 특별히 그의 표류기와 의행을 역사로 남기기도 했다. 물론 명예욕을 추구하는 이들 때문에 진흙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조는 약간의 위선을 감내하고라도 공익에 앞장서는 이들을 칭송하고 이를 교화의 방도로 삼고자 했다.

V. 선린(善隣), 표류객의 환대

제주를 둘러싼 바닷길에는 다양한 공물을 육지로 실어 나르고 반대로 곡물을 섬으로 운반하는 배들로 분주했다. 동시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유구로 향하는 배들 또한 무역의 향로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종종 표류민이 발생했다. 일본과 유구 그리고 중국으로 흘러가는 제주인들은 물론 일본과 중국 및 유구 사람들이 제주에 표류했다. 《일성록》에는 제주도에 표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문정기는 물론 해외에 표류한 제주인들의 송환 과정이 자세하다. 기본적으로 정조는 '대의(大義)'에 기초하여 외국의 표류객들을 대접했다. 제주를 포함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외국으로 표류하여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귀국할 수 있으려면 조선 역시 외국의 표류객들을 대의의 관점에서 대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영의정 이병모의 언급처럼 정조의 제주 사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간절했다. 제주의 백성을 진념하는 정조의 사랑이 육지 백성을 진념하는 것보다 곱절로 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조는 민본으로부터 민주로, 왕정에서 공화의 이상으로 나아 가고자 했는데, 제주 역시 그런 정조의 정치 실험지였다. 제주의 향산이 굳건해지면 제주의 교화가 지속될 것이요, 그 결과 제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시민성[명덕]을 회복하면 비로소 민본이 아닌 민주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정조의 제주 통치론은 이를 목표로 구상되었다.

1.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정조의 제주 인식과 제주 통치의 철학과 방법을 탐구하려는 기획이다. 필자는 정조가 남긴 《홍재전서》와 그의 통치기록의 핵심 자료인 《일성록》을 중심으로, 정조의 제주통치론을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성리학 통치의 궁극적 목표인 ‘무위이치(無爲而治, 필자주: 강제없는 자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조의 의지가 제주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했다.

조선 정부는 일찍부터 변방 제주를 말과 소의 공급처 그리고 다양한 약재와 남국의 물산(전복과 玳瑁 등을 포함한)을 바치는 장소로 활용했다. 그러나 정조는 제주를 단지 공물을 수취하기 위한 변방이 아니라 내지와 다름없는 적극적인 ‘통치의 장’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선왕 영조의 유훈이기도 했다. 이에 정조는 조선의 영토를 북으로는 발해의 고토, 동으로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남으로는 제주까지로 파악했다. 이를 아우르는 명칭은 ‘대동(大東)’이었다. ‘대동’의 지리적 상상력은 19세기 김정호 이전에 이미 정조의 머릿속에 중요한 ‘통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정조의 핵심 통치론은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포한 네 가지 대고(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¹⁾ 정조는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민산(民産), 인재(人才), 율정(戒政), 재용(財用)의 네 가지를 꼽았다. 1778년(정조 2), 6월 4일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은 후 정조는 조정 신하들에게 자신의 국가 대계를 발표했다. “과인(寡人)이 열조(列祖)의 큰 서업(緒業)을 이어받았기에 낮이나 밤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의 얼음을 밟듯이 해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다.”로 시작한 선언은 선왕의 유업을 이어받은 정조의 통치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정조가 생각한 국가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항산(恒産)의 제공’이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고 있었다. 《서경(書經)》의 ‘부유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선해진다[凡厥正

1) 이하 대고의 내용은 《일성록》 정조 2년 무술(1778) 6월 4일(임진) 참조.

人 既富方穀’는 구절을 인용한 정조는 백성들의 교화에 앞서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자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난 후 가르치라[富而之]’했고 맹자 역시 ‘배 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편안하게 하되,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와 가까워진다. 성인이 이를 근심하여 인륜을 가르쳤대[飽食煖衣 逸居而無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以人倫]’는 말로 향심에 앞서 향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위로 부모를 섬길 수가 없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할 수가 없어 악행에 빠지기 쉽고 선을 행하기 어려웠다. 반드시 먹을거리를 충분히 제공한 후라야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

정조는 백성의 먹을거리는 토지에서 나오는 바인데, 조선은 땅이 협소한데다 이미 강대한 토호들이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균전이나 정전의 논의를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결국 백성들이 먹고 살기위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역시 각자의 전토(田土)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야기였다.

과연 조선의 백성들은 어찌 살 것인가? 결국 민초들이 살아갈 바가 토지에서 나오지 않기에 이들은 말업인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여 이용후생의 방도로 삼았다. 그런데 도리어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부세가 지나치게 무거워 무언가를 제조하고 천택(川澤)의 생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동남쪽 바다의 해산물도 모두 다른 나라의 차지로 돌아가 버리니 삼면이 바다인데도 지리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각 지역을 위무해야 할 지방관들은 직임을 버려두고 아전들의 폐단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이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고을 전체가 살 수 없었다. 무언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정조 통치의 핵심과제였다.

둘째, 정조는 ‘왕께서 좋은 선비[吉士]가 많다.’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좋은 인재의 육성이야말로 국가사업의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했다. 고대에는 빈흥(賓興)을 중시했으며 향거(鄉擧)를 시행했는데 수·당 이후에는 오직 과거 시험에만 의존했다. 조선은 대대로 유현들이 배출되었으며 곳곳에 책임자들이 활약한 바, 조정에는 현능(賢能)한 사람이 무리지어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고 초야에는 어진 이가 버려졌다는 탄식이 없었다. 조선후기는 그렇지 못했다. 권세가의 후손이 아니면 혹은 지방의 한미한 사람이면 조정에 설 기회조차 없었다. 정조 스스로 ‘문왕이 장수하시니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않으시겠느냐’는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전국의 후미진 곳에서도 인재를 선발하고자 했다.

셋째, 조선은 문치(文治)로 나라를 세우고 무략(武略)도 또한 갖추었다. 군사 제도를 갖추어 외부의 적을 방어했다. 정조는 조선후기의 무비(武備)를 다시 정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른바 ‘군자는 싸움을 하지 않을지언정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으로 당대의 용정(戎政)을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수입을 헤아려 지출해야만 했다'. 재용(財用)의 시작은 저축이고 또 절약이었다. 이에 정조는 회계장부를 잘 살펴 국고가 세지 않도록 하고, 각종 관세(官稅)를 혁파하고 지방의 진상품을 감하여 절약의 정신을 새겼다. 이것이 바로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소비하는 사람은 적어 재물이 항상 풍족하게 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요컨대, 정조의 율음은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려면 민생이 안정되어야 하고, 민생을 배양(培養)하려면 먹을 것에 달렸는데, 먹을 것이 족해지고 마녀 교육하고 이미 교육하면 반드시 경계하여 보호해 주고 공물을 감하는 등 백성의 이익들 도와주어야 하니, 이것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보존하는大本(大本)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정조의 국가통치론은 제주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조는 재위 기간 내내 제주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항산(恒産)'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애를 썼다. 기근이 들면 육지의 곡식을 운반하여 제주에 공급하고 자신의 내탕금을 내주거나 정리곡을 각출하여 제주를 도왔다.

동시에 정조는 제주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탐라빈흥과를 실시하는 등 상당히 많은 특혜를 베풀었다. 서울에 올라와 과거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제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러 번 시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제주에 어사를 파견하여 치러진 빈흥시에서는 제주의 문사 여럿을 선발했다. 이뿐 아니라, 제주의 소민들 가운데 충효와 의열을 사례를 뽑아 포장(褒獎)했다.

정조는 제주의 재난 상황에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했던 만호 고한록을 비롯하여, 노비 고취선이나 기녀 만덕의 의행에 주목했다. 고한록은 부자가 대를 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집안이었기에 표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취선이나 만덕은 바라는 바 없이 '인간다움'을 실천했기에 그 뜻이 더욱 가상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움의 근거(명덕)를 품부 받지만 아무나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리학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의 인간다움(性善)을 계발하여, '무위이치'의 자율적 통치를 구현하는 일이었다.

이른바 '무위'는 요순의 정치를 의미했다. 작위(作爲, 강제)하지 않지만,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사람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교화' 중심의 통치론은 소민들의 자발주의를 격려하고 이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융정의 근본은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것이었다. 이웃 국가와의 선린은 표류민에 대한 정조의 확대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조 치세에는 외국과의 침략이나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제주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구의 상선들이 늘 오가는 해양의 길목이었다. 변경의 최전선으로 이들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었다. 동시에 제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표류했다. 제주인들 역시 이들 나라에 표착했다. 조선 백성의 목숨이 귀한 것처럼 이들 외국인들의 목숨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했다. 유구 사람을 배에 태워 쫓아내자는 심낙수의 주장을 비판한, 정조는 표류민들을 확대함으로써 조선이 문명국임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본론에서 필자는 정조의 제주통치론은 모두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먼저 1. 〈영토〉는 제주를 적극적인 통치의 영역으로 인식했던 정조의 역사 인식을 다루었다. 2. 〈향산〉은 민생의 근본인 ‘먹을 것의 자립’에 관한 서술이다. 제주의 진정한 자치(自治)는 먹을 것의 육지로부터의 독립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정조는 기근이 들자 적극적으로 진휼했을 뿐 아니라 진상 공물을 감면하는 등 제주의 근본적인 자립을 도모했다. 3. 〈향심〉은 교화 정책이다. 정조는 제주의 풍속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조했고, 그에 따른 소민들의 의행을 기대했다. 아울러 제주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마지막으로 4. 〈선린〉은 해외에 표류한 제주인과 제주에 표류한 외국인들의 상호 환대에 관해 서술했다.

II. 영토(領土): 변경으로서의 제주[탐라]

1. 지리책

정조는 조선을 중국 다음의 동아시아 최고의 문명국으로 인식했다. 그가 규장각 각신들에게 내린 시험문제에는 이와 같은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가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받아 ‘대동(大東)을 전부 차지’한 이후 8도(道)로 구분하여 주(州)와 군(郡)이 별처럼 벌여 있고, 사방으로 방어하는 진(鎭)과 보(堡)가 바둑알처럼 널려 있어, 소유한 국토는 수천 리가 더 되고 양성한 민력(民力)은 수백 년이 넘었다. 기름진 들과 땅에는 상마(桑麻)가 자급자족되고, 깊은 산림(山林)과 큰 못에는 재화(財貨)가 날로 흥성하여, 남쪽 지방에는 균로(筠籊 대나무)와 칠사(漆絲) 등의 풍요함이 있고, 북쪽 지방에는 인삼(人蔘)과 녹용(鹿茸)·피혁(皮革) 등의 생산이 있으며, 산에는 크나큰 재목들이 있고 물에서는 수많은 어류(魚類)들이 살아, 풍족한 재물과 문명(文明)한 풍속이 아마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제일일 것이다.²⁾

정조는 조선을 대동으로 규정하고 팔도의 경계를 수천 리로 파악했다. 특히 기름진 들에서 나오는 곡식과 옷감을 만들 수 있는 뽕나무와 마의 생산은 자급자족할 정도로 충분했다. 남쪽 지방에서는 화살을 제조할 대나무가 풍부할 뿐더러 옷칠이 생산되고, 북으로는 인삼과 녹용 그리고 가죽 등이 넘쳐 났다. 목재와 어류들이 풍성하여 중국을 제외한다면 제일의 나라였다.

2) 《홍재전서》 권50 책문3 〈지세(墜勢)〉.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약용이 지은 글이 《여유당전서》의 〈지리책(地理策)〉이다.

특히 정조는 <변방의 활용>을 무척 중시했다. 그의 책문은 왜 오늘날 동쪽의 국경에 속하는 울릉도와 손죽도(損竹島)는 오래도록 무인도로 버려졌고, 북방을 개척하여 설치했던 4군 6진[여연(閔延)과 무창(茂昌)]은 아득히 옛 군현을 회복하지 못하는지 물었다. 중국 다음의 최고의 나라가 되려면, 명실상부하게 변방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정조는 책문에서 “발해(渤海)의 옛 강토가 절반이나 거란(契丹)으로 들어갔는데 고려 태조의 통일은 왜 여한이 없겠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신하들은 무언가 연유를 살펴야 했고 변방의 통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1등에 오른 다산의 답은 정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발해(渤海)가 절반가량은 거란에게 흡수되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정약용]이 살펴보건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발해가 뒤를 이어 일어났는데, 당 현종(唐玄宗) 시대에 이르러서는 발해왕 대조영(大祚榮)이 부여(夫餘)·옥저(沃沮)·조선 땅들을 모조리 차지하여 국토가 사방으로 수천 리나 되었습니다. 가탐(賈耽)의 《군국지(郡國志)》에 ‘발해의 땅이 동쪽 천정(泉井 덕원(德原)의 옛 이름)에서 서쪽 책성(柵城)까지 통틀어 39역(驛)으로서, 압록강(鴨綠江) 이북까지 강토를 멀리 개척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遼) 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로는 압록강 이북 지방은 모조리 요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직 압록강 이남에 있는 보주(保州)와 정주(定州)만이 그런대로 신라에 예속되었으며, 그 뒤에 고려 태조도 발해의 옛 강토를 수복 개척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³⁾

정약용은 요나라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후에 이를 모조리 잃어버리고, 결국 고려 태조에 의해서도 발해의 영토를 회복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다산의 글은 사실 온전히 정약용의 구상이 아니었다. 정조는 책문의 말미에서 “자대부는 나를 위하여 지리의 중요성을 들추어내어 모두 대책편에 저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고 강조했다.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그리고 《흙흙신서》와 《목민심서》 등은 대부분 정조가 구상했던 국가 개혁론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정조의 취지와 구상>을 고려하여 내놓은 답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변방에 대한 정조의 통치 의지는 다음의 글에서도 여실히 드러 난다. 다산이 정조 사후 완성한 조선의 일신(一新)을 위한 표문, 즉 《경세유표》의 한 구절이다.

3) 《여유당전서》文集 권8 지리책(地理策).

4) 《흙재전서》군50 책문(策問)3 <지세(墜勢)>

다산은 왕의 정치가 ‘수원(綏遠)’의 표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은 제도적으로 변방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마땅했다. 기왕에 없던 수원사(綏遠司)의 설치가 시급했다.

생각건대, 먼 지역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왕자의 큰 정사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편소하여 북쪽은 2천여 리에 불과하고 남쪽은 1천 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북쪽은 모두 대륙과 연속된 지역이어서, 폐사군(廢四郡) 너머에는 왕의 덕화(德化)가 일찍이 이르지 못했다. 오직 서남쪽 바다 여러 섬이, 그 중 큰 것은 돌레가 100리나 되고 작은 것도 40~50리가 된다. 별이나 바둑알처럼 많은 데다 작고 큰 것이 서로 끼여 있어 수효가 대략 1천여 개인데 이것이 나라의 바깥 울타리이다. 그런데 개벽 이래로 조정에서 일찍이 사신을 보내 이 강토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해 고을끼리 각자 자력으로 서로 부리고 붙여서 강한 자는 많이 차지하고 약한 자는 적게 얻었다.⁵⁾

다산은 북쪽의 땅을 잃어버린 후 폐사군 이북의 지역에 ‘정조의 통치[德化]’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는 동시에 기왕의 영토이지만 거의 관리되지 못했던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서남해의 제주를 비롯한 수많은 섬들에 대해 왕의 적극적인 통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책문에서 정조가 말했던 의도를 그대로 제도화한데 불과했다.

내 생각에는 별도로 한 관청을 세워서 온 나라 섬을 관장하고 그 명칭을 수원사(綏遠司)라 하여 그 판적(版籍)을 맡고 부세를 고르게 하며, 침어(侵漁)를 금단하고 질고(疾苦)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법을 세우는 초기에는 감찰어사를 분견(分遣)하되 규정을 만들어주고 여러 섬을 순행하면서 강계(疆界)를 바루고 호구를 기록하며 폐막(弊瘼)을 물은 다음, 돌아와 모여서 법제를 편저(編著)하여 여러 섬에 반포하고 그 법에 따르도록 한다. 또 3~4년 마다 본사 낭관(本司郎官)을 보내 여러 섬을 암행하면서 간활한 짓을 살피며, 또 섬 백성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바로 본사에 호소하도록 하여, 여러 섬 백성에게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함은 참으로 먼 곳 백성을 편하게 하는 큰 정사이다.⁶⁾

5) 《경세유표》 권2 추관 형조(秋官刑曹) 제5 〈형관지속(刑官之屬)〉

6) 《경세유표》 권2 추관 형조(秋官刑曹) 제5 〈형관지속(刑官之屬)〉

만일 수원사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변방, 특히 제주를 포함한 서남해의 섬들을 통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관에 의지하지 않으며, 살인사건이 벌어져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제주에 기근이 들라치면 처자를 이끌고 해외를 표류하거나 반역의 가능성마저 적지 않았다.

모든 해도(海島) 백성들은 비록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부굴(負屈)을 달게 여기며 관청 출입은 맹세코 하지 않는다. 모든 어장이나 염전이 한 번 세안(稅案)에 들었으면 비록 창상(滄桑)이 여러 차례 변하여도 면할 수 없고, 책맹(舩盲 : 작은 배)의 배라도 한 번 세안에 들었다 하면, 비록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빠지지 못한다. 무릇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더라도 예사로 사화(私和) 하며, 타국의 배도 태반이나 숨기고 있다가 흉년이 들면 처자를 이끌고 일본에 들어가, 거짓 표류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둑이 이르면 병기와 양식을 가지고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해서 제멋대로 병진(兵陳)을 만들어 조정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다.⁷⁾

다산은 자신이 제주의 도회관이었던 강진에 유배되어 있었기에 제주 등 해안 섬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정조는 변방에 대한 대책 가운데 '제주의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는 선왕 영조의 유훈이기도 했다.

정조는 제주의 과거를 조선의 역사로 적극적으로 편입시켰다. <탐라빈흥록>의 책문은 정조가 제주민인들의 역사의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주를 적극적으로 통치의 장소로 삼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오직 잘못된 정치는 무엇을 고쳐야 하며, 이로운 일은 어느 것을 일으켜야 하고, 백성들의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할 것과 백성들의 곤경 가운데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책문을 내어 자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 리의 먼 바다 속 어란(魚欄), 해사(蟹舍)의 실정을 뜰에도 나가 지 않고 손바닥을 가리키듯 알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나의 책문에 대해 대책을 내는 이는 모두가 한 지방의 준재이며 마을의 착실한 사람이 아닌 이가 없다. 토박이이니 경험은 익숙할 것이며 공부는 책 속에서 만족하게 하였을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조그마한 섬에 산물은 풍성하고 백성은 편안하여 천지의 보

7) 《경세유표》 권2 추관 형조(秋官刑曹) 제5 <형관지속(刑官之屬)>

물이 모두 모이고 아래로 새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바다의 물결도 조용하여 아름다운 교화가 만족하게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제주는 고대에는 구한(九韓) 중의 하나였다. 구한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온다. 안홍(安弘)의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에는 신라를 중심으로 주변의 9개의 나라가 나열되어 있는데, 첫째가 일본(日本), 셋째가 오월(吳越), 다섯째가 응유(鷹游), 일곱째가 단국(丹國), 아홉째가 예맥(濊貊)이고, 중화(中華)가 둘째 번, 탐라가 넷째로 기록되어 있다.⁸⁾

이처럼 삼국시대에 탐라는 독립국으로 신라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점차 내지와 연결되었다. 그리고 조선에 이르러, 제주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한 지방이 되었다. 제주의 성주들이 지방관을 자처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는 이들을 지방행정 체제로 흡수했다.

“옛날 우리 태종 초년에 탐라국에서 국빈으로 방문하여 관작의 호칭을 고쳐 주기를 청하여 성주(城主)와 왕자를 좌우 도지관(左右都知管)으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제도가 차츰 갖추어지게 되었다. 동도와 서도에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을 두어 목사(牧使)는 절제사를 겸하게 하고 판관(判官)은 감목도위(監牧都尉)를 겸하게 하였으며, 심약(審藥)과 왜학(倭學)과 역학(譯學)을 각각 갖추어 직책을 분장한 것은 모두 국내와 같이 관리하게 하였다. 흉년이 들면 바람과 파도를 무릅쓰고 곡식을 싣고 가 먹이고 공물이 도착하면 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따스한 은혜를 한층 더해 주니, 열성조의 먼 곳을 회유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진 혜택을 온 섬 안에서 잊지 않고 입에 담아 노래하고 칭송한 지 몇 백 년이 되었다.”⁹⁾

8) 《여유당전서》文集 권8 지리책(地理策). 건륭(乾隆) 기유년(1789) 윤(閏) 5월에 임금이 내각(內閣)에서 직접 시험을 보인 바, 어비(御批)에 수위를 차지하였다.

9) 《홍재전서》 권51 책문(策問) 4 〈탐라 제주 세 고을 유생들의 시취(試取)〉 ○ 갑인년(1794)

2. 제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선정부, 특히 정조는 제주를 내지와 다름없이 취급하려는 의지가 강렬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정조의 선왕이었던 영조의 통치론은 매우 중요했다. 정조는 계지술사(繼志述事)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영조의 뇌문(誄文)에 실린 제주에 대한 강조를 보라. 영조는 전국에 어사를 내려 보내 자신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한 영조의 애정은 남달랐다. 탐라의 기근 소식을 들으면 잠자리에 들지 못했던 선왕의 유훈은 정조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팔도에 어사를 나누어 보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하유하기를, ‘나라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요 백성이 의지하는 것은 먹는 것인데, 근년 이래로 각도에 거듭 흉년이 드니 나의 마음이 몹시 안타깝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자리에 들어도 편치가 않으며, 언제나 그대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프고 쓰리다. 지금의 이 백성들은 곧 성고(聖考: 영조)께서 자식처럼 사랑하시던 바로 그 백성들이다. 그런데도 만일 과인이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아 능히 백성들을 불길에서 구해 내지 못하고 물속에서 건져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과인이 백성들을 떠밀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에 어사에게 명하여 나의 뜻을 특별히 하유하고, 이어서 황정(荒政)을 살피게 한 것이니, 아, 그대 굶주리는 백성들은 나의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체인(體認)하고 이제껏 살아온 고향 마을을 떠나는 일이 없이 각자 모두 그곳에서 편안히 살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말씀이 간곡하고 측은해서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여 울었다. 탐라(耽羅)에는 더욱 힘을 쏟아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이들을 먹였으며 한 도의 물력을 모두 기울이기까지 하였으므로, 백성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송축하는 환호의 노래가 온 섬에 흘러 넘쳤다.¹⁰⁾

제주에 대한 정조의 적극적인 통치 의지는 확실히 영조 50년의 치세를 이어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조 초반에 제주에 내린 윤음에서 정조는 제주야말로 천리 밖에 위치했지만 굴과 유자, 검은 소와 각종 약재를 공물로 바치는 중요한 곳이었다. 제주의 풍속은 순박하고 검소하면서도 예양(禮讓)을 갖춘 이들이 많았다. 질병이 적어 장수하는 곳으로 남해의 섬 가운

10) 《일성록》 정조 즉위년 병신(1776) 7월 27일(병신)

데는 도회지라 할만 했다. 다만 토질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 보리, 밀, 콩, 조만을 생산할 뿐이었다. 미곡을 육지에 의존하고 있기에 부족한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선대왕 영조는 인정(仁政)을 베풀어 기근(饑饉)을 고하면 배에 곡식을 실어 가서 구휼하였고, 방물(方物)을 바치러 오면 돌아갈 때 반드시 양식을 싸서 보냈으며, 제주의 지역 인재를 찾아 등용했으며, 제주의 여러 가지 민폐와 폐막(弊瘼)을 살피기 위해서 자주 어사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에 제주의 수만 생명(生靈)들이 먼 지방을 회유하는 교화에 흠뻑 젖어 온 지가 50여 년이 넘었던 것이다. 이를 뒤이어 정조가 다스리게 되었다.¹¹⁾

정조가 즉위한 후 다행히도 특별한 재난 사태가 제주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떠올리고 남쪽을 돌아볼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입에 달지 않은 것이 정조의 심정이었다.

아, 멀고 가까운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나의 적자(赤子)인데 지금 나는 너희들의 부모가 되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밤중에 일어나 생각하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정조는 즉위 초부터 제주에 좋은 관리들을 파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전(前)홍문관 응교 박천형(朴天衡)을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제주의 민폐를 조사하도록 했다. 재주가 있는 자라면 제주의 먼 섬에 있다 해도 반드시 등용하리라는 것이 정조의 뜻이었다.

1781년(정조 5) 6월 정조는 함인정에서 제주에 내려갈 암행어사 박천형(朴天衡)을 소견했다. 1780년 호남 지역을 암행하고 올린 그의 장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의 꼼꼼한 일처리에 감탄했던 정조는 제주에 다시 그를 보내고자 했다.

“이번 어사의 책임은 지극히 중하다. 작년에 호서(湖西)를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선발하였으니 의도가 있는 것이다. 모쪼록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라. 본주(本州)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였고 그동안의 수재(守宰)들도 조정의 덕의(德意)를 선양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섬의 풍속이 어리석고 미욱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사는 이번 행차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상달(上達)할 수 없는 백성의 고통과 결단할 수 없는 옥송(獄訟) 또한 일일이 찾아 묻고 살살이 조사하여 먼 지방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의 덕의를 알게 하라. 순무(巡撫)한 뒤에는 본주

11)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26일(정유)

의 물정(物情)과 풍속을 상세히 기록하여 별단(別單)으로 아뢰도록 하라.”¹²⁾

몇 달 후 박천형의 별단이 보고되었다. 거기에는 제주의 폐막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정조는 제주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¹³⁾ 박천형은 제주의 문제점을 십수 가지 나열했다.

첫째, 여러 진(鎭)을 혁파하고 연대(煙臺)를 줄이는 문제였다. 제주도 안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진보(鎭堡)라 하더라도 이미 설치했다면 다시 없앨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둘째, 아병(牙兵)에게 쌀을 거두는 폐단이었다. 셋째, 제주 민인의 신역으로 특별히 여섯 가지 고역(苦役)이 편중되는 문제였다. 넷째, 포구(浦口)의 민호(民戶)가 진배(進排)하느라 지탱하기 어렵고 어물(魚物)을 별무(別貿)하는 데 절도가 없는 문제였다. 값을 내줄 때에 모두 중간에서 새나가기에 관가의 무역이 점점 많아지고 어촌(漁村)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개인 과수원에 있는 굴과 유자를 침범하지 말고, 심은 나무를 낱날이 경사(京司)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맺은 열매의 숫자를 세어 나중에는 저절로 떨어진 열매의 값까지 징수하므로 뇌물 요구를 걱정하다가 곁가지를 잘라버리기까지 하니, 얼마 못 가서 굴이 없다는 논의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다. 오직 40개 과수원에서 맺은 열매로써 20운(運)의 공헌(貢獻)하는 과일에 봉진(封進)하고, 제멋대로 거두는 버릇은 일체 엄히 금하며, 혹 작황이 나쁜 해라도 후한 값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매해 연말 세 읍이 굴나무의 숫자를 모두 계산하여 비국에 보고하기를 강도(江都)에서 탕자나무를 심는 예와 같이 한다면, 민폐를 없애고 굴나무와 유자나무를 기르는 방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양현(兩縣)의 지공(支供)하는 물품을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본목(本牧)의 장료(匠料)를 해음에 도로 넘기되, 한결같이 신유년(1741, 영조 17)에 상정(詳定)한 대로 주창(州倉)의 모곡(耗穀)을 획급(劃給)해서 내리자는 요청이었다. 일곱째는, 세 읍의 적법(糶法)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대정(大靜)의 백성들이 민역(民役)으로 지나치게 고생하는 문제였다. 여덟째, 공작미(貢作米)가 매년 끊어지는 문제였다. 아홉째, 쇠가목(刷價木)을 요리(料理)하는 폐단과 고마고(雇馬庫)를 혁파하는 문제였다. 열째, 장계를 배지(陪持)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낭비되니, 도회(都會)에 내보내 역편(驛便)에 옮겨 부치도록 바꾸자고 건의했다. 열한째, 나리포의 미곡을 운반하는 창리(倉吏)의 농간이 문제였다. 열두 번째, 산둔(山屯)에 쌓아 놓은 담이 해만 있고 이익은 없어서 헐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열세 번째는, 산마(山馬)를 해마다 구점(驅驛點)하는 것이 크게 민폐(民弊)가 되니, 옛 규례대로 식년(式年)마다 봉진(封進)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였다. 열넷째는, 공마(貢

12)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20일(신묘)

13) 《일성록》 정조 6년 임인(1782) 1월 14일(신해)

馬)를 실어 나르는 배를 옛 규례를 회복하여 육지(陸地)의 배로 운반해 와 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열다섯째는, 우마감(牛馬監)의 권징(勸懲) 문제였다. 열여섯째, 김만일(金萬鎰) 가문의 목관(牧官) 활용 여부였다. 열일곱째, 목장(牧場) 내의 기경(起耕)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마지막으로 열여덟째, 거간꾼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좋은 망아지들이 육지로 나가는 통에 섬에는 좋은 수말이 없어서 종자(種子)가 옛날만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사실 제주의 거의 모든 문제는 공물에 관련한 것이었다고 할 만큼 제주는 각종 공물과 세금 문제 등으로 피폐해지고 있었다. 정조는 제주의 백성들이 일종의 국가에 의한 ‘수탈’로 민력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직감했다. 정조가 제주민에 대한 공물을 감쇄하고, 각종 혜택을 주려는 생각은 그동안 제주가 주로 각종 공물의 수납지로만 인식되어 보호는커녕 전연 민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유래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제주는 각종 공물의 수취처인 동시에 중범 죄인을 격리시키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제주에 유배된 정치범을 비롯하여 중죄인들은 중앙에서 ‘먼 지역’이라는 이점을 노리고 반역을 도모하곤 했다. 제주는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다. 제주에 유배되었던 홍대섭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려던 사건이 밝혀졌을 때 정언 정재신(鄭在信)의 징토 상소에서도 제주도가 항상 유배객들이 무언가를 꾀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¹⁴⁾

탐라(耽羅) 이 한 섬은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인데 연래에 흉역의 여열(餘孽)들이 모두 이 섬에 모여 바로 도망한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원망하고 선동함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지난번의 일(홍대섭)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조 초반의 제주에서 일어난 역모 준비 또한 그러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정조는 항상 반역의 기미를 미리 발견하고 제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10월 23일(임진)

3. 명의(明義), 충성의 섬

잘 알려진 대로 1777년(정조 1)에 은전군(恩全君) 이찬(李贊)을 추대하려는 역모 사건이 발생했다. 전흥문(田興文)이 강용휘(姜龍輝) 등과 결탁하여, 존현각(尊賢閣)으로 잠입하여 정조를 암살하려던 것이다. 당시 전흥문의 공초를 보면 홍상범(洪相範)이 역모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진술되었고, 또한 홍대섭 역시 홍상범과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후에 사형은 감면되어 제주(濟州)로 유배되었는데 이후 제주에서 마음대로 역모를 꾀한 사실이 밝혀졌다.

1780년(정조 4)에 유배지인 제주에서 도망을 쳤다가 1781년(정조 5)에 체포되었다. 당시 제주목사의 장문을 보면, 홍대섭은 행상 차림으로 제주 안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상인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다.¹⁵⁾ 이에 정조는 제주목사에게 명하여 홍대섭을 체포하여 단단히 가두어 두도록 했다.

“제주 목사의 장문(狀聞)을 보니, 죄인 홍대섭이 행상(行商)을 가칭하고 섬 안을 두루 다니면서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종적이 변화무쌍하다고 하였다. 아,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명의록(明義錄)》은 충역(忠逆)의 의리에 힘입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흉악한 홍대섭 같은 자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형률이 크게 잘못 적용된 것인데, 지금 도리어 날뛰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홍대섭의 집에 거처했던 자는 홍상범(洪相範)과 전흥문(田興文), 강용휘(姜龍輝)였다. 당시 죽여야 할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이 지금까지 범망에서 빠지게 되었다 해도 오늘날 나라에 대의(大義)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종종 점호에 빠지고 출입(出入)이 무상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장차 무리를 모아 바다를 건너오더라도 막지 못한단 말인가. 홍대섭에 대해서는 뒤에 하교할 것이니 우선 목사로 하여금 형구를 채워 단단히 가두어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해당 현감은 고의로 잘못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안치(安置)한 죄인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놔둔다는 것은 옛날에도 듣지 못한 일이다. 이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찌 파출(罷黜)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시 해부로 하여금 기간 내에 잡아 와서 동간에 엄히 가둔 뒤에 초기하게 하라.”

15)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15일(병술)

정조는 제주에 어사를 보내어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앞서 언급했던 제주 어사(濟州御史)에 박천형(朴天衡)이 그 책임자로 선발되었다.¹⁶⁾ 특히 정조는 1777년(정조 1)에 정조를 죽이고 은전군(恩全君) 이찬(李攢)을 추대하려던 역모의 전말을 자세하게 기록한 《속명익록》을 제주의 인민들에게 반포하도록 했다. 《속명익록》의 홍삼범, 홍술해 그리고 홍대섭의 악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성공(聖躬)을 꺾고 대리청정을 저지하려 한 것은 원악(元惡)인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의 소행이고, 공료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극역(劇逆)인 민항렬(閔恒烈)과 홍상간(洪相簡)의 짓이었습니다. 안팎으로 선동하고 앞뒤에서 선창하고 호응할 적에 종자를 심어 놓아 실로 그 무리가 많아졌으니, 그 흥계를 당일에 부리지는 못하였으나 그 여독은 그들이 죽은 뒤에 더욱 치성해졌습니다. 흉악한 홍상범(洪相範)이 반역의 도모를 시작하고 간특한 홍술해(洪述海)가 멀리서 호응하여 전흥문(田興文)은 비수를 끼고 강용휘(姜龍輝)는 철편(鐵鞭)을 지녔으며 효임(孝任)은 저주하고 홍계능(洪啓能)은 추대하는 짓을 하였으니, 이는 기틀이 관통한 것이고 의견이 서로 전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부(君父)와 맞서는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천일(天日)을 감히 쏘려하는 짓을 하여 한밤중에 생긴 위기로 종사(宗社)가 한 가닥의 울처럼 위태하였으니,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말하면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홍상범의 이 소행은 조태구(趙泰喬)와 유봉휘(柳鳳輝)보다도 더한 짓이었고 홍술해의 소행은 이인좌(李麟佐)와 정희량(鄭希亮)보다도 몇 배나 더한 짓이었으니, 천 년 뒤에 오늘날의 세태를 두루 살펴본다면 국가에 역란이 많아서 변괴가 연이어 생겨난 것에 대하여 흐느끼며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¹⁷⁾

《속명익록》에는 특히 제주에 유배되었던 홍대섭이 본 사건에 어떻게 간여되었는지 적고 있었다. 가령 “홍술해(洪述海)의 아들 홍상범(洪相範)이 남몰래 사사(死士)를 길러서 역변(逆變)을 일으키려고 꾀할 적에 호위 군관(扈衛軍官) 강용휘가 매우 용맹하고 날새기에 홍상범이 그를 사귀어 끌어들였고, 아울러 이들의 역모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는 홍상범이 거처하는 홍대섭(洪大燮)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둔 것이다.¹⁸⁾ 그런데 바로 역모 죄로 제주에 유배되었던 죄인 홍대섭(洪大燮)은 섬에 출몰하면서 상고(商賈)와 결탁하였는데, 이를 제주

16)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17일(무자)

17) 《속명익록》〈속명익록(續明義錄)을 올리며 바친 차자(劄子)〉

18) 《속명익록》〈정유년(1777) 7월 28일부터 무술년 2월 21일까지〉

목사 김영수가 비호한 것이 더욱 문제였다.¹⁹⁾

제주민들에게 흉대섭의 악행을 알리기 위해서 정조는 《속명의록(續明義錄)》 수십 건(件)을 전주에 내려보냈다. 전라감영에서 우선 이를 한문본 및 한글본으로 간행하여 제주의 암행어사 박천형에 가지고 가도록 조치한 것이다.²⁰⁾ 정조는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에게 다음과 같이 하유(下諭)했다.²¹⁾

“이 보내는 유서(諭書)의 등본 책자(謄本冊子)를 속히 많이 번각(飜刻)하여 어사의 행차에 인출하여 보내고 판본(板本)을 상자에 담아 일체 수송하여 목(牧)에 도착한 뒤에 또 어사로 하여금 수백 건을 더 인출하여 《속명의록(續明義錄)》과 함께 방곡(坊曲)에 두루 반포함으로써 한 사람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라. 경은 이 유지(有旨) 안의 내용대로 어사에게 면유(面諭)하라. 어사가 여러 날 동안 영(營)에 지체하면 반드시 폐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유지를 수령(受領)하는 날에 즉시 길을 떠나게 하라. 연로(沿路)의 주전(廚傳)하는 폐단을 이런 농사철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본도(本道)는 가뭄이 매우 심하여 민정(民情)이 몹시 애가 탈 것이다. 이런 때에 민막(民瘼)을 더욱 진념하고 걱정해야 하니, 또한 이런 뜻으로 어사에게 말하라. 모든 공역(供億)을 십분 준절(摶節)하여 조금이라도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어제(御製)를 인출한 것 중에 10건(件)은 본각(本閣)에 올려 보내고, 그 나머지 인본(印本)은 판본(板本)과 합쳐서 서둘러 어사가 아직 바다를 건너기 전에 보내도록 도백(道伯)에게 하유하라.”

전라감사는 《속명의록》을 간행한 책자와 목판을 제주어사 박천형에게 주어 다시 제주목에 도착하면 수백 건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감영에서 인쇄한 《속명의록》 10부는 서울에 보고하도록 하여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주어사 박천형에게는 제주목에 도착한 즉시 《속명의록》을 인쇄하여 제주목사와 대정 및 정의현감 등에게 직접 반포하고, 즉시 부로(父老)와 민인(民人)을 모아 놓고서 읽고 이어서 해석하여 ‘명의’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19)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21일(임진)

20)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20일(신묘)

21)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6월 29일(경자)

반역을 도모한 무리들은 모두 여러 대를 벼슬하여 나라와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이었고 이른바 척신(戚臣)이 그 와주(窩主)가 되었다. 화가 심복에게서 일어나 위협이 눈앞에 닥쳐 있었으니, 내 한 몸뿐만 아니라 400년을 이어 온 종사마저 성(姓)이 바뀌는 지경이 될 판이었다. (중략) 제주에는 《명의록》이 없다고 하니, 인출(印出)하여 들여보내서 섬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고자 한다.²²⁾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에는 또 한 명의 유배인이 바다를 건넜다. 조정철이 그 주인공이다. 조정철은 역모죄인 홍술해, 홍지해 등과 인척으로 엮이어 연좌되었다. 그가 제주에서 겪은 유배의 경험은 후일 한 권의 저술로 남아 오늘에 전한다.²³⁾

정조가 제주를 적극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기획은 단순히 제주를 공납의 식민지로 취급하거나 역모의 가능성이 높은 유배지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정조는 제주를 내지와 동일한 민본의 대상처로 여기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의 자율과 자치’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제주에 특별히 과거시험(탐라빈흥록 참조)을 실시하고 많은 제주인들을 중앙의 관료로 등용한 것 역시 이러한 위무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발탁되었던 변경봉을 정조는 매우 뛰어난 인재라며 칭찬했었다.²⁴⁾ 그런 그가 유배객과 연결되어 역모죄를 꾸민 것이 밝혀지자 정조는 매우 안타까워했다.²⁵⁾

변경봉은 과거에 합격한 후 봉상시 부봉사를 거쳐 1796년 효릉별검에 제수되었다가, 이해 11월 경북 창락의 찰방으로 부임했다. 그런데 1798년 3월 전라 감사 이득신(李得臣)은 장계를 올려 창락찰방(昌樂察訪) 변경봉을 파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내옹인 즉 그가 제주의 대정현에 유배되어 있던 죄인 윤범중의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물건을 제공하는 등 무언가 사건을 도모했다는 죄로 의금부에 체포되었다는 것이다.²⁶⁾ 주지하는 대로 윤범중은 화완옹주(和緩翁主)와 정후겸(鄭厚謙)의 심복이었던 윤태연(尹泰淵)의 아들이었다. 윤태연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역모를 꾀한 죄로 위도(蝟島)로 유배되었다가 1777년 서울로 압송되어 장형에 사망한 바 있다.²⁷⁾

22)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11월 20일(무오)

23) 조정철, 김익수 역, 2006 《靜軒瀛海處坎錄》(濟州文化院)

24) 정조 22년 무오(1798) 3월 28일(임진)

25) 변경봉의 일생과 학문에 대해서는 변경봉 저, 탐라문화연구원 역, 2010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김새미오, 2010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20 참조

26)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3월 15일(기묘)

27) 《正祖實錄》 정조 즉위년(1776) 3월 25일.

당시 변경봉은 경북의 창락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제가 병오년(1786, 정조 10)부터 윤범중(尹範中)과 안면이 있었고 이어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갑인년(1794)에 상경하였을 때 윤범중의 보수 주인(保授主人)인 강차종(姜次宗)의 아들 강효검(姜孝儉)이 돈 20냥을 바꾸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간 뒤에 이 진사(李進士)의 종인 양이재(梁二才)에게 가서 돈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주인(京主人)의 집에 머무르기 어려우면 계속 양이재의 집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서울에 들어간 뒤에 돈을 구하는 일로 여러 차례 왕래하다가 서울에 갈 때마다 양이재의 집에 유숙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이재는 곧 윤범중 생가(生家)의 계집종의 남편입니다. 서찰을 주고받은 것은 을묘년(1795) 3월 이후부터 종종 있었는데 병진년(1796) 5월에 본읍의 아전인 김태겸(金泰謙)이 내려갔을 때 돈 40냥을 부쳤는데 20냥은 저의 집에 보내고 20냥은 윤범중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집으로 보내는 서찰 속에 또 윤범중에게 쓴 서찰을 봉하여 넣어 두었습니다. 시일이 오래되어 서찰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돈 20냥을 찾아가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서찰을 읽자마자 답답한 마음이 일었다.」라고 한 것과 「기미(機微)에 대해 말한 것이 누설되었다.」라고 한 것은 물종과 서찰을 몰래 주고받은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외에 침봉(針封)과 부채, 붓, 먹, 휘항(揮項) 등의 물품을 부친 일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본읍에는 강효검이 있고 서울에는 양이재가 있을 뿐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아들 변식(邊軾)은 외촌(外村)에 살고 있고 윤범중은 읍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인편이 있으면 윤범중이 먼저 알고 저의 아들 변식을 불러서 편지를 써서 동봉하게 하였는데 곁봉에는 저의 집에서 보내오는 것처럼 썼습니다. 이번에 서찰과 복물(卜物)이 적발되었는데 저는 창락의 임소에 있어서 과연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²⁸⁾

어쨌든 변경봉은 이 사건으로 의금부에 갇혀 있다가, 1798년 4월 제주의 대정현에 방축되었다. 당시 의금부는 “죄인 변경봉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으로 방축하였는데, 이 죄수가 저지른 범법 행위는 심상한 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행동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전혀 단속하지 않는다면 징계하는 도리가 매우 허술한 것입니다. 장계와 본부에서 발어

28)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3월 23일(정해)

(跋語)한 내용을 가지고 죄목을 갖추어 나장(羅將)을 보내 본현(本縣)으로 압송하여 넘겨준 뒤에 엄히 방수(防守)하도록 전라도 도신 및 제주 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엄하게 단속할 필요를 강조했다.²⁹⁾ 이후 제주의 대정현에 방축향리 되었던 변경봉은 1800년 2월에 비로소 죄가 탕척되었다.³⁰⁾

윤범중의 역모와 연루되어 1798년 4월 대정현에 방축되었다가 1800년 2월 죄를 탕척 받았던 변경봉은 자신의 문집에서 이전의 공초를 정조가 받아들여, 이미 4월에 자신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기록했다.

1798년 4월 8일 엄교(嚴敎)를 내리시어 ‘변경봉은 단 하나의 시뻘거리나 단 서도 없이 의금부에 체수(滯囚)되어 있으니 나쁜 것을 본받는 습속이 마음 아프다. 오늘 내로 교자상을 차려 술을 차려주고는 의금부를 나가도록 하라’고 했다. 9월 과천에 머물렀다. 4월 19일 배를 탔고 5월 1일 화북포에 정박했고 2일 집에 도착했다. 제주목사가 명령을 내려 교졸을 정하고 외당에서 지켰고 기찰이 포졸을 이끌고 외문을 지켜 움직이는 데 자유가 없었다. 그 사이 모양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참고 인내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1800년 봄에 죄가 탕척되었다.³¹⁾

1800년 6월 초 정조는 변경봉을 다시 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³²⁾ 그러나 그 사이 정조는 서거했고, 변경봉은 자신을 발탁했던 정조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

이때 정종대왕이 돌아가시는 슬픔을 만났다. 무릇 우리 동방에서 먹고 사는 무리 중 누구인들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하지 않았겠는가? 나 같은 경우 앞뒤로 특별한 대접을 받아 끝없이 감읍할 따름이었다. 특별히 미천한 와중에서 뽑아주시어 관리로 임명해 주셨다. 이는 처음 낳은 사람은 부모이고 다시 낳은 사람은 우리 임금이다. 절망 뜻밖에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그 애통하고 지극한 마음이 끝이 없어 밤낮으로 울었다. 처자식처럼 친한 것은 아니지만 답답함에 가슴을 누르고 발을 굴렀으니 문과 뜰에 태양이 구름에 가린 것으로

29)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4월 8일(임인)

30) 《일성록》 정조 24년 경신(1800) 2월 2일(을유)

31) 《변경봉문집》 pp.201-202

32) 《일성록》 정조 24년 경신(1800) 6월 1일(임자)

도 참담한 마음을 비유할 수 없다. 애통하고 애통하다.³³⁾

정조는 탐라의 과거시험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던 변경봉을 애써 합격시켜 서울로 불러들였던 장본인이었다. 이에 그가 역모 죄에 연루되자, “과연 난처한 문제이다. 변경봉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고 용모도 좋으며 또 문필에 능하여 탐라 사람 가운데 가장 변변하다. 이 일(필자주: 역모사건에 연루된 죄) 때문에 영구히 버린다면 또한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라고 크게 안타까워했었다. 그리고 1800년 6월 변경봉을 다시 관리에 임용하고자 했던 것이다.³⁴⁾

정조는 제주를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확정하고, 제주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을 중앙의 관료로 임명하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소생(所生)의 바탕, 즉 자활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항산’이 가장 중요했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았다. 항산이 충족되어야 반역을 꾀하거나 이반할 가능성이 줄었을 뿐 아니라 교화 또한 가능했다. 가르치기 전에 처벌할 수는 없었다.

33) 《변경봉문집》 p.202

34) 《일성록》 정조 24년 경신(1800) 2월 3일(병술)

Ⅲ. 향산, 소생(所生)의 토대

앞서 인용한 대로 조선은 “흉년이 들면 바람과 파도를 무릅쓰고 곡식을 싣고 가 먹이고 공물이 도착하면 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따스한 은혜를 한층 더해 주니, 열성조의 먼 곳을 회유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진 혜택을 온 섬 안에서 잊지 않고 입에 담아 노래하고 칭송한 지 몇 백 년”이 되었다.³⁵⁾ 정조는 선왕들의 유훈을 잊지 않고 있었다.

정조는 특히 “백성의 부모 된 자”를 강조했다. 그의 율음에는 “구중(九重) 궁궐이 비록 아득히 멀기는 하나 나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임해 있으니 너희들은 모쪼록 각기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통치 의지를 반복해서 드러냈다.

각 지방에 대한 진휼은 정조 통치의 핵심이었다. 제주를 위해 나리창을 설치하거나 제주의 연속된 흉년과 진휼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재삼 확인했을 뿐 아니라, 특히 책문으로 제주 진휼의 실질을 파악하기도 했다. 나아가 제주민을 구휼하기 위해 전라도의 민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탕금을 내려주는가 하면, 정리곡 1만석의 특별하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조가 정리곡(整理穀)의 일부를 제주에 내려준 것은 매우 큰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1. 공물 경감 조치

가장 먼저 제주를 공납의 식민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조의 인식은 공물을 경감하는 조치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숙복(熟餼)의 경우에는 바다를 건너는 세공(歲貢)이 실로 큰 폐단이 되기 때문에 정조는 즉위 후 바로 그만두도록 했다. 정조는 자신의 구복(口腹)을 채우려고 생민(生民)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

35) 《홍재전서》 권51 책문(策問) 4 <탐라(耽羅) 제주(濟州) 세 고을 유생들의 시취(試取)> ○ 갑인년(1794)

는지 물었다. 당연히 “백성에게 혜택이 작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³⁶⁾

정조는 연이어 제주의 말총과 내의원에 공급하는 제주의 대나무를 모두 정퇴하기로 했다. 서유린은 임금의 은혜가 백성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주달했다.

“근년 이래로 물종(物種)을 견감한 것이 한두 번일 뿐만이 아닌데 이번에는 탐라(耽羅)에서 생산되는 말갈기와 약원의 공죽(貢竹)도 모두 정퇴하여 사람들의 피부와 뼈에 스며든 혜택이 이에 지극하니 실로 은혜를 더해 줄 방도가 없습니다.”³⁷⁾

대나무는 그 쓰임새가 아주 많아서 화살대를 만들거나 그릇을 제작하고, 또 내의원 등의 약가(醫藥家)는 어린 대나무에서 죽여(竹茹)를 만들었다.³⁸⁾ 죽력이나 죽여 모두 해열의 효과가 커서 청열제(淸熱劑)를 만들어 응용하였다.³⁹⁾ 홍역 등의 치료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죽여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정조는 왕위에 오른 초기부터 제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제주목(濟州牧)의 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자, 정조는 노비들의 신공이나 공마 등의 점검을 연기하기도 했다.⁴⁰⁾

“제주 목사 황최언(黃最彦)의 재실 분등 장계에, ‘본도(本島)의 농사는 모두 풍우(風雨)의 재난을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메밀[木麥]과 대두(大豆), 소두(小豆)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심한 고을은 어떤 조목으로 받아들일 것 가운데 참작해서 줄여 주고, 구환(舊還)은 이제 우선 연기하여, 각시(各寺) 노비들의 신공미(身貢米)는 한 사람당 두 말에서 한 말을 감해 주고, 남정(男丁)에 징수하는 대동미(大同米)는 닷 되에서 한 되를 줄여 받아들이겠습니다. 산둔마(山屯馬)를 점검하는 것은 올해가 그 해당되는 해이니 예에 따라서 거행 하되, 군병을 조련하는 것은 말을 점검하는 해에는 조련을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정지하도록 하고, 도망치거나 늙었거나 죽는 등 여러 가지 탈이 난 경우에는 빠진 대로 보충하도록 해서 내년 봄 초사(哨司)의 훈련을 기다려 거행하겠

36)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0월 5일(계해)

37)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0월 8일(병인)

38) 《다산시문집》 권9 책문(策問) 〈대[竹]에 대하여 물음〉

39) 《일성록》 정조 13년 기유(1789, 건륭) 11월 25일(정미)

40) 《일성록》 정조 원년 정유(1777) 11월 29일(신묘)

거니와, 이러한 일은 진실로 마땅히 품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후기에 환곡은 민폐를 일으키면서도 민들의 삶에 결정적이었다. 봄에 환곡을 받지 못하면 굶어죽는 일이 예견되었다. 1795년 제주를 포함한 삼남의 기근으로 많은 이들이 죽지 않행어사가 파견되어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진도에 유독 많은 사망자가 보고되자 정조는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은 “작년에 환곡을 전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년 봄에 실로 구제하여 살릴 길이 없어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만석은 환곡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아전과 이들을 관리 감독할 지방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당시 강진 현감(康津縣監) 이면휘(李勉輝)는 겉으로는 빈틈없고 분명한 듯하지만 내실은 유약했다. 아전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결과를 빚는 일이 많으니, 비록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결국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는 결과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⁴¹⁾ 미리 기근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이를 제주에 이송하는 문제도 문제려니와 실제 쌀이 백성들에게 지급되어 진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정조 초반에는 제주에 큰 흉년이나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784년 제주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정조는 곧바로 윤음을 내려 위로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제주목사 엄사만은 전에 없던 기근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을 요구했다. 정조는 우선 기왕의 사례를 알고자 했다. 심이지의 보고에 따르면, 무자년(1768, 영조 44)에는 1만 석을 들여보냈고, 기축년(1769, 영조 45)에는 1천 석을 들여보냈다. 전라감사를 역임했던 서유린은 자신의 경험담이라면서, 호남백(湖南伯) 시절 제주에 보낸 곡물이 1만 7,000여 이라고 답했다.⁴²⁾

정조는 제주를 구휼하기 위한 곡물의 양을 확정하려고 수년간의 등록을 조사했다.⁴³⁾ 무자년(1768, 영조 44), 기축년(1769, 영조 45), 경인년(1770, 영조 46), 을미년(1775, 영조 51) 4년의 등록(謄錄)을 살펴본 후 정조는 제주에 윤음과 함께 지원책을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서 도(道)는 여덟 개가 있고, 주(州)·부(府)·군(郡)·현(縣)은 겨우 360개 남짓으로 별처럼 벌여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서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수재나 한재로 인한 기근이 있더라도 관할

41)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5월 22일(임신)

42) 《일성록》 정조 8년 갑진(1784) 11월 27일(무인)

43) 《일성록》 정조 8년 갑진(1784) 11월 27일(무인)

하기가 매우 편리한데, 유독 탐라 한 지역은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육로(陸路)가 거의 1,000여 리나 되고 또 해로(海路)가 그보다 배나 되므로 소식이 경사(京師)에 들리기 어렵고 위무(慰撫)하는 것은 단지 관장(官長)에게 맡기고 있다. 예사로운 계독(啓牘)이 올라오는 데에도 걸핏하면 반년이나 걸리므로 섬 백성들의 질고(疾苦)와 우락(憂樂)을 모두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백성을 회유(懷柔)하는 은택이 섬과 육지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올가을에 팔도에 큰 풍년이 들어 묘당(廟堂)에서 황정(荒政)을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도 조금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지난번에 동지 이후에야 수신(守臣)이 비로소 고을에 기근이 들었다고 보고해 왔으니, 이에 한밤중에도 잠 못 들고 일어나 앉아서 거리가 먼 것을 더욱 탄식하였다. 만약 탐라가 바다가 아니고 육지이고 멀다고 하여도 북쪽의 6진(鎭)과 서쪽의 7읍(邑) 정도만 되더라도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에 대해 어찌 이렇게 소식이 늦을 수 있겠는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고, 백성이 곤궁한데도 구제하지 못하였다. 섬의 백성들도 나의 자식인데 그대들의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책임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 우리 열성조(列聖朝) 때부터 이 땅을 진념(軫念)하여 내지(內地)와 차이를 두지 않아서 위무하고 구휼하며 정성을 다 쏟았으니,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이 그대들의 골수에 스미고 그대들의 살을 적시었다. 1) 내가 등극한 초기에 맨 먼저 어사(御史)를 보내 문무(文武)에 대해서는 과시(科試)를 설행하여 그 인재를 뽑고, 2) 부모(父老)에 대해서는 폐막(弊瘼)을 물어서 그 고충을 채집하였으며, 효자를 숭장(崇獎)하고, 열녀를 표창하며,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하는 등 그대들의 몸을 편하게 하는 것과 그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또한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먼 지방의 백성을 회유한 은택을 본 받은 것이다.⁴⁴⁾

정조는 제주에 대한 자신의 통치가 제주인들의 고통을 파악하여 위로하고, 제주의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제주의 효자 효녀 그리고 열녀 등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풍속을 가르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조는 윤음을 반포하는 동시에 나리포의 곡식을 제주로 옮기고, 이어 각종 제주의 공물을 견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별히 감귤과 흑우, 그리고 군정에 관계되는 말의 공납 등이 중요하지만 이를 감하여 진휼에 보태도록 했다.

44) 《일성록》 정조 8년 갑진(1784) 11월 30일(신사)

물론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로는 제주의 향산을 유지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정조는 제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윤음을 전라감영에서 목판에 인쇄하여 제주목사에게 전하고, 이를 제주민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신의 뜻을 알리도록 했다.

지난해에 전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공헌(貢獻)하는 물종(物種) 및 백성에게서 나와 관에 납부하는 것들과 어공(御供)과 어약(御藥)까지도 각별히 면제하게 하였으니, 육지의 백성에게 시행한 것을 섬의 백성에게만 시행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중략) 각전(各殿)의 삭선(朔膳)에 들어가는 물선(物膳),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 내국(內局)에 진상하는 약재(藥材),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衙門)과 각 영문(營門)에 진배(進排)하는 물종, 내사(內司) 및 각사(各司)와 각 궁방(宮房)이 소관하는 노비의 신공(身貢)을 특별히 탕감(蕩減)하여 진자(賑資)에 보태도록 하겠다.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자전궁(慈殿宮)에 올리는 방물 물선과 삭선 또한 아울러 탕감하겠다. 금년의 정퇴조(停退條)를 내년분과 아울러서 내년 가을에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것 또한 염려해 주어야 하니, 내년 분은 그 대로 정퇴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한마디로, 정조가 대고에서 언급한 국가의 씬씀이를 아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었다.

아, 이번에 견감(蠲減)한 것을 가지고 어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백성의 힘을 덜어 주고 백성의 먹을거리를 넉넉히 하는 방도에는 혹시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수신의 장계를 본 뒤로 그대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내 눈에 선하였다. 교통이 막혀서 이무(移貿)할 길이 없고, 뒤주는 텅 비어 살아갈 가망이 막막하며, 남루한 옷을 입고 포구와 해안에서 부르짖으며 날마다 곡식 실은 배가 와서 먹여 주기를 바랄 것이니, 이것이 내가 그대들의 기한(飢寒)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팔도에 흉년이 든 것보다 배나 심한 이유이다. 다만 의지하여 근심을 잊는 점이 있으니, 고을의 구역이 큰 바다로 막혀 있어 세 고을의 경내가 아니면 왕래하기 어려우므로 조정에서 위로하고 불러서 다시 모이게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지역에 안주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자연히 빨빨이 흩어져 떠도는 데에 이르지 않는 것이

다. 궁궐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매우 가까이 있으니, 그대들은 각각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서 길이 나의 교화 가운데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유하는 것이다.”⁴⁵⁾

정조는 이듬해인 1785년 6월 제주목사였던 엄사만을 성정각에서 만나, 제주의 진흙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엄사만이 구휼을 잘하여 제주의 백성들이 굶어죽지 않는데 대해 칭찬하고, 진정(賑政)의 실상을 파악했던 것이다. 또한 제주의 농사 현황과 더불어, 제주의 공물을 혁파한 명령이 잘 집행되는지 확인했다. 엄사만은 “회복(灰鰯)의 진상을 혁파했는가?”라는 정조의 질문에 이미 혁파했다고 답하고, 다만 포작(鮑作)의 부역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포작인(鮑作人)들은 2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추복(槌鰯)을 진상하는 데, 전복 1개로 추복 3엽(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엄사만은 육지의 진흙 곡물을 제주에 운송하는데 한 척의 선박도 아무 탈 없이 제주에 곡식을 나를 수 있게 된 사실을 강조했다. 바로 정조의 진실한 마음[軫念]이 바람을 잠재웠다는 것이다.

한편, 정조는 제주의 풍속을 물었다. 이에 엄사만은,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을 뒤로 할 줄을 아니, 백성의 습속을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고 답했다. 기근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한 제주의 민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뒤로하고 공적인 진흙에 앞장섰던 것이다. 뒤에서 살펴볼 <노비 고취선의 선행>은 제주의 풍속 변화를 보여주는 귀감이었다.⁴⁶⁾

정조는 진흙 상황은 물론 제주의 민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어사 파견을 통한 사정 파악은 물론 제주 출신의 문관 혹은 무관들을 불러 제주의 민막(民瘼)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 1786년 1월 정조는 인정문에서 조참(朝參)을 행한 후, 제주 출신 무관들과 내섬시 관료의 소회를 진달하도록 했다.⁴⁷⁾

당시 무겸(武兼) 김귀택(金貴澤)은 모두 3가지 제주의 문제점을 개진했다. 첫째, 제주에 진흙곡을 운반하는 문제였다. 군산의 나리포 대신에 나주의 제민창을 활용한다면, 곡식의 운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탐라는 큰 산의 비탈로 이루어진 땅이고 대해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풍수의 재해가 많아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든 적이 없고, 흑여 흉년을 만나면 번번이 이속하게 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각종의 토산물을 나리포(羅里舖)에 수납(輸納)할 때 영해(瀛海)를 건넌 뒤에 또 칠산(七山) 바다를 건넵니다.

45) 《일성록》 정조 8년 갑진(1784) 11월 30일(신사)

46)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6월 17일(갑오)

47)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1월 22일(정묘)

이 두 바다는 모두 매우 험난해서 비록 영해를 순조롭게 건넜다 하더라도 칠산에서 치패(致敗)되기도 하므로 선척이 취재(臭載)되는 우환과 사람과 물건이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으니, 실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우려되는 일입니다. 만약 영산강(榮山江)을 통하여 나주(羅州)의 제민창(濟民倉)에 수납하도록 한다면 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한편, 제주 출신이 관직에 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정조는 서북 지역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제주에 대해서도 서북(西北) 지방과 마찬가지로 사로(仕路)를 허통(許通)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과거의 고득종(高得宗)과 오섬(吳暹) 등이 모두 제주 출신으로 정언, 장령, 한성부 판윤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조 당시에 제주 출신 가운데 관직에 나아간 이들이 적어 제주도만 소외되었다는 불만이 있다는 진언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정조는 후일 제주에서 빈휙과를 실시하는 등 제주 민인들을 더욱 특별하게 한 대우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김귀택은 자신이 무과 출신이었던 만큼, 제주도에는 무과로 벼슬을 구하는 부류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들이 바다를 건너 여러 해 동안 서울에 머무르지만 끝내 실직을 받는 자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귀택은 서북지역보다 험한 바다를 건너 온 제주의 무인들을 대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북 지방의 경우에는 매번 도목정사 때마다 한 자리에 붙이도록 허락하는데 유독 본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먼 지방이라는 측면으로 논하면 바다를 건너오는 험난함이 오히려 재를 넘어오는 어려움보다 갑절이 되는데, 사로에 이르러서는 피차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모든 백성을 똑같이 대해 주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이처럼 정조는 제주 출신의 다양한 무관 혹은 관료들을 만나 실제 제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었고 해결책을 찾았다.

당시 부장(部將) 김익철(金益喆)도 정조에게 자신의 소회를 올렸다. 그는 특히 제주의 가장 심각한 요역 4가지를 진달했다. 말을 관리하는 목자, 선박의 노를 젓는 역군들, 종이를 만드는 지장, 그리고 포작(鮑作) 즉 전복이나 미역 등을 채취하여 말리는 작업이었다.

“제주도에 가장 심한 민폐가 있으니 이른바 4가지 고된 요역(徭役)으로서, 바로 목자(牧子), 포한(浦漢), 선격(船格), 지장(紙匠)이 하는 요역입니다. 목자

는 각 목장의 국마(國馬)를 몰아 기르며, 포한은 진상하는 미역과 전복을 따고 캐며, 선격은 진상하는 물종을 수납(輸納)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으며, 지장은 계문(啓聞)에 쓰이는 지물(紙物)을 책응(責應)합니다.

대체로 이 4가지 요역은 관계된 바로 말하면 매우 중요하고 요역으로 말하면 매우 고달파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역청(平役廳)을 설치하고서 백성을 모집하여 수미(收米)함으로써 4가지 요역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있고 조금 부유한 자는 모두 평역청에 들어가고 빈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는 모두 4가지 고된 요역을 직접하는 대상에 들어가 요역이 편중되는 우환이 있게 되었으니, 명색은 비록 요역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오년(1774, 영조 50)에 어사가 변통하고자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이 폐단을 바로잡아 편중되게 고생한다는 억울함이 없게 해 주소서.”

제주민들의 불평등한 요역은 심각한 문제였다. 비변사에서조차 “변통하기보다 끝내 그대로 놔둔 것은 아마도 바로잡을 좋은 방책이 없어서 그런 듯합니다.”라고 답할 정도였다. 정조는 자신이 연초에 내린 공물 견감의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제주목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다그쳤다.

김귀택의 소회는 단순히 소회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1786년 10월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했다. “일전에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김귀택(金貴澤)의 소회(所懷)로 인해, 탐라(耽羅)의 곡물을 옮길 때에 토산품(土產品)과 잡물(雜物)을 나주(羅州)의 제민창(濟民倉)으로 옮겨 납부하는 것에 대한 편리 여부를 도신으로 하여금 해당 목사와 의논하여 이치를 따져 장문하라고 행회(行會)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를 보니, 세 고을의 첩보(牒報)를 날날이 들어 말하기를, ‘뱃길이 칠산(七山)의 험한 바다를 지나므로 침몰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온 섬의 백성들이 모두 나주에 옮겨 납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민창이 근자에 각 고을에 환곡을 꾸어 줌으로 인하여, 100여 칸의 창고가 모두 텅 비어 있으니, 각 고을에 산재한 나리포(羅里舖)의 원곡(元穀)을 모두 옮겨 저장하더라도 비좁을 염려가 없고, 관가에서는 새로 건축하는 어려움이 없으며, 섬 백성들은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위태로움이 없습니다. 제주목사가 원하는 대로 갯양태와 미역을 배분할 때 호서(湖西) 9개 고을은 제외하고 나주 부근으로 바꾸어 정해서 수량을 나누어 내다 팔 수 있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⁴⁸⁾

48)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10월 5일(을사)

제주 출신 무관 김귀택의 상언은 조정의 신료들에게 전달되었고 수 개월간 논의 끝에 제주의 곡물 혹은 곡식을 나리포에서 나주의 제민창으로 옮기는 문제가 적극 논의되었다. 정조는 일개 낮은 무관의 상언이라도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다. 이는 왕 스스로 제주와 같은 변방 지역의 현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귀를 기울이는 대상도 고관대작은 물론 낮은 지위의 문무관이나 소민들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주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정조의 노력은 제주민들의 상언과 제주 출신 관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로 진화했는데, 이에 대해 뒤에서 조금 더 논하고자 한다.

2. 계갑대흉년(癸甲: 1793~1794)

제주의 기근은 거의 상시적이었고, 제주목사의 주요 임무는 육지에서 보내온 곡식을 제주 도민에게 분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정도였다. 1793년 전후의 기근은 매우 심각했다. 1793년(정조 17) 5월 제주목사 이철운(李喆運)은 제주 세 고을의 진휼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장계에는 1792년 겨울 12월 3일 부터 진휼을 선행하기 시작하여 1793년 4월 25일까지 지급된 진휼곡의 분급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정조의 명에 따라 육지에서 이송된 피모(皮麩)는 1만 섬에 달했다. 여기에 세 고을 사창(司倉) 곡물을 절미(折米)한 4,238섬, 그리고 본영과 진휼청의 곡물 1만 2,347섬을 합하여, 대략 진휼곡 2만 1,585섬 정도가 준비되었다. 이를 가지고 제주의 기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셈이다.

먼저 제주목의 기민을 보면 어른과 아이가 모두 3만 5,910구, 대정현(大靜縣)의 기민 중에 어른과 아이가 모두 8,904구, 정의현(旌義縣)의 기민 가운데 어른과 아이가 모두 1만 3,999구입니다. 세 고을을 합하면 기민이 모두 5만 8,813구였다. 당시 제주의 전체 인구가 6만 1천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제주민인들이 기민 대상이었다. 어른 1구마다 매일 미 5홉, 아이 1구마다 매일 미 3홉을 10일 간격으로 곡식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제주의 관료들이 곡식을 마련한 것도 보고되었다. 가령, 제주 판관 이휘조(李徽祚)는 모미(麩米) 80섬, 진맥(眞麥 참밀) 64섬, 적두 5말 등을 마련했고, 대정 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가 마련한 것은 백미 3말, 전미 12섬 10말, 속 21섬 8말, 옴 9섬 3말이었다. 정의 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은 백미 1섬 10말, 전미 113섬 1말, 모미 6섬 1말, 태 5섬 10말, 장 11섬 10말, 옴 4섬 7말을 준비했다.

이외 원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명월 만호(明月萬戶) 고한록(高漢祿)은 정조(正祖) 329섬,

피모 104섬 5말, 속 66섬 10말을 진흙곡에 보태었다. 특히 명월 만호 고한록의 원납 곡물은 500섬에 이르렀는데, 제주목사 이철운은 가산을 기울여 진흙에 보탬이니 특별히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사재를 털어 재난을 돕는 이에 대한 정조의 보상과 표창은 ‘환난상휼’할 줄 아는 인간다움을 복돋으려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었다. 뒤에서 살펴볼 제주 기녀 만덕의 마음은 그래서 중요했다.

이하 제주목사 이철운의 장계에는 1793년의 자세한 구휼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토지가 있는 기민들에게는 후일 값도록 곡식을 나누어주는 반면에, 토지가 없는 기민들에게는 백급[무상 지급]하도록 했다. 흥미롭게도 백급으로 지급된 곡식은 대부분 제주판관이 나 현감 등이 자비한 곡물이었다. 다음은 당시 토지가 없는 기민에게 백급(白給)한 상황이다.

*제주목 -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급을 15차례 시행하였는데, 기민이 2,011구이다. 진흙곡을 분급한 각종 곡물과 엮, 장이 모두 1,387섬 11말 남짓인데, 그중 전미가 207섬 6말 남짓으로 공헌(貢獻)을 견감한 몫이다. 백미가 21섬 5말 남짓이고, 전미가 75섬 4말 남짓이고, 적두가 15섬 7말 남짓이고, 속이 129섬 9말이고, 피모가 214섬이고, 장이 41섬 5말 남짓이고, 엮이 33섬 2말 남짓인데, 모두 목사 이철운이 별비한 것이다. 모미가 80섬이고, 진맥이 64섬 10말 남짓이고, 적두가 5말 남짓이고, 장이 4섬 14말 남짓인데, 모두 판관 이휘조(李徽祚)가 자비한 것이다. 정조(正租)가 329섬이고, 피모가 104섬 5말이고, 속이 66섬 10말인데, 모두 명월 만호 고한록이 원납한 것이다.

*대정현(大靜縣) -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급을 15차례 시행하였는데, 기민이 221구이다. 진흙곡을 분급한 각종 곡물과 엮, 장이 모두 144섬 12말 남짓인데, 그중 전미가 7섬 5말 남짓으로 공헌을 견감한 몫이다. 백미가 7섬 12말 남짓이고, 전미가 13섬 10말 남짓이고, 속이 70섬 6말이고, 적두가 1섬 4말 남짓인데, 모두 목사 이철운이 별비한 것이다. 백미가 3말 남짓이고, 전미가 12섬 10말 남짓이고, 속이 21섬 8말 남짓이고, 적두가 8말 남짓이고, 엮이 9섬 3말 남짓인데, 모두 현감 정운제가 자비한 것이다.

*정의현(旌義縣) -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급을 15차례 시행하였는데, 기민이 408구이다. 진흙곡을 분급한 각종 곡물과 엮, 장이 모두 175섬 11말 남짓인데, 그중 전미가 8섬 8말 남짓으로 공헌을 견감한 몫이다. 백미가 13섬 남짓이고, 전미가 10섬 14말 남짓이고, 적두가 5말 남짓인데, 모두

목사 이철운이 별비한 것이다. 백미가 1섬 10말 남짓이고 전미가 113섬 1말 남짓이고, 모미가 6섬 1말 남짓이고, 태가 5섬 10말 남짓이고, 염이 4섬 7말 남짓이고, 장이 11섬 10말 남짓인데, 모두 현감 허식이 자비한 것이다.⁴⁹⁾

진휼청에서는 제주목사 이철운의 조치가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특히 명월 만호 고한록은 각종 곡물 500섬을 원납하여 가산을 아끼지 않고 공진에 보냈으니, 여러 도에서 원납한 자들에 비하면 매우 가상하다고 보아, 특교로 수령에 단부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바로 당일, 정조는 고한록(高漢祿)을 정의현감으로 삼았다. 구전정사로 단부한 것이었다.⁵⁰⁾

일종의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정조는 도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곡식을 기부한 만호 고한록을 정의현감에 특채했다. 정조는 공익에 앞장선 이들의 마음을 높이 사는 조치를 취했다. 후일 제주의 재난 상황에 원납곡을 낸 이들이 〈겉맞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진휼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조는 약간의 위선을 감내하고라도 공익에 앞장서는 이들을 칭송하고 이를 교화의 방도로 삼는 명예욕의 정치[好名之士]를 추구하고자 했다.⁵¹⁾ 정조는 약간의 위선이라도 〈도우려는 마음〉이 기본이기에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조의 이러한 입장이 불러일으킨 폐단과 이를 비판하는 논의가 곧 발생했다. 1793년(정조 17) 11월 장령 강봉서는 제주의 기민 구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 제주목사 이철운은 환곡의 양이나 기민의 수를 부풀리는 수로 부정을 저질렀으며, 명월만호 고한록의 5백석 기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제주도는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지만 지난해처럼 추수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올해 8월에 또 큰 바람이 연일 불어서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은 적지(赤地)나 다름없고 제주 좌면(左面)과 우면(右面)도 혹심한 재해를 입어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이철운(李喆運)은 밤낮없이 술에 취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환곡을 마구 받아들이면서 매 섬[解]마다 반드시 두서너 말의 여유 곡식을 더 받고 나누어줄 때는 곡식 1말과 7, 8되[升]에 불과한데

49) 이상의 내용은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5월 22일(계축)

50)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5월 22일(계축)

51) 김호, 2016 〈연암 박지원의 刑政論〉 《法史學研究》54; 김호, 2019 〈위선(僞善)의 한계는 어디인가? -다산 정약용의 '광자(狂者)' 유감〉 《다산과현대》12 참조.

도 그 남은 곡식은 끝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송한 곡식 1만 포는 전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큰 말로 받아들이고 끝에 가서는 작은 말로 나누어주어 매섬에서 2말씩 남은 것이 합하여 1천여 섬이나 됩니다. 그리고 해남(海南)에서 옮겨 올 곡식의 남은 숫자인 11섬은 애당초 실어 오지도 않고 군교를 보내어 돈으로 환산해서 배와 명주를 샀습니다. 애당초 곡식을 요청할 때도 진창(賑倉)에 보관된 쌀 1천 3백여 섬은 재해에 따라 탕감해주는 백성들 환곡 속에다 뒤섞어놓아 아예 장계도 올리지 않았고 세 고을의 기민(飢民)을 뽑아 조건 없이 곡식을 준[백급] 기민의 수 역시 2천여 명에 불과한데 4천 명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리저리 주선하여 마련한 곡식이 3백 섬에 지나지 않으면서 6백 섬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명월 만호(明月萬戶) 고한록(高漢祿)이 자진하여 바친 곡식은 쌀 60섬과 벼 60섬에 지나지 않는데도 5백 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목사 이철운은 진휼이 끝나고 자신의 공로에 대한 큰 보답을 바라고 있었는데 오직 표리(表裏)를 상으로 받는데 그치고 고한록은 정의 현감에 임명되자, 정조의 처분이 매우 한심하다는 투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봉서는 고한록의 정의현감 직을 취소하고 이철운 역시 삭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⁵²⁾

당시 강봉서가 거론한 이철운의 죄상은 모두 6가지였다. 첫째, 환곡을 나누어 주면서 정량(定量)에 미치지 못하게 준 후에 상환할 때에는 정량보다 많이 징수한 일, 둘째, 제주의 기민(饑民)을 구휼하려고 육지에서 옮겨 온 곡물로 농간을 부려 전복을 사거나, 혹은 육지에서 곡물을 운반하기 전에 정교 등과 농간하여 목면이나 비단을 사오도록 한 사실, 셋째, 곡물을 요청할 때 진창(賑倉)에 있던 미 1,300여 섬을 재해로 감해 준 백성의 환곡으로 처리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 넷째, 제주의 세 읍에서 백급한 기민은 2천여 명인데 4천명으로 부풀려 보고한 사실, 다섯째, 전 명월 만호(明月萬戶) 고한록의 원납미가 120석인데 500석이라고 거짓 보고한 일, 여섯째, 진휼의 공을 인정받은 고한록이 정의 현감에 제수된 반면 이철운은 표리(表裏)를 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랏일이 가소롭다[國事可笑]”라는 네 글자를 말했다는 것이다.⁵³⁾ 정조는 사실을 정확하게 핵심할 암행어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국사가소’라는 말은 과장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진휼의 공을 둘러싸고 벌어진 제주의 문제는 진행형이었다.

52)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건륭) 11월 11일(경자)

53) 《일성록》 정조 17년 11월 11일~13일, 23일 참조

3. 어사 심낙수의 파견

정조는 대신들의 의견을 수합한 뒤 심낙수(沈樂洙)를 제주 등 3개 읍의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차하(差下)하였다가 다시 제주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로 파견했다.⁵⁴⁾

우선 심낙수는 제주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정조의 율음을 반포했다.⁵⁵⁾

왕은 이르노라. 아, 너희 탐라의 대소 백성들아, 바다와 육지로 수천여 리나 되는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왕래하는 데에 걸핏하면 몇 달이 걸리곤 하니, 참으로 먼 거리이다. 너희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소홀히 대한다고 여기지나 않는가. 먼 곳에 있어도 내 백성이고 가까운 곳에 있어도 내 백성이다. 모두가 내 백성인데 어찌 멀고 가까움이 있겠는가마는, 잊지 못하는 마음은 때로 가까운 곳의 백성보다 먼 곳의 백성에게 더 쏠리기도 하니, 대개 어렵고 괴로운 실상을 자주 들을 길이 없으나 들으면 문득 생각이 그리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굴이 초반에 올라오면 너희들이 고생하며 재배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들이 대궐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분주히 오가며 길렀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매번 북풍(北風)이 몰아치고 눈발이 휘날릴 때면 공물선(貢物船)이 염려되어 뜬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조는 먼 거리에서 올라온 제주의 공물을 보면, 힘들게 바다를 건너 이 물건들을 진상한 제주의 백성들이 떠올라 마음 졸이게 된다고 고백했다. ‘그대들이 나의 마음을 아는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내 듣건대, 섬의 백성들이 근검하고 순박하여, 절제를 알았던 당속(唐俗)의 유풍(遺風)이 있어서 다른 고을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 노인성(老人星)이 땅에서 나와 하늘을 비추자 고을마다 검버섯 핀 노인들이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은 채로 서울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앞 다투어 축수(祝壽)하고, 자제들에게는 관장(官長)을 잘 섬기며 수고스러운 일에 종사하고 명령에 달려 나가 머리

54)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11월 16일(을사)

55) 《弘齋全書》 권28 윤음3 〈諭濟州大靜旌義民人繪音〉

와 눈을 감싸듯이 할 것을 타이른다 한다. 또 유생과 무사, 아전들이 제각기 자신의 일에 힘쓰고, 농부·어부·장인·상인도 각기 자신의 직업을 편안히 여긴다고 한다. 그러니 풍속이 참으로 좋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풍속은 검약함을 알고 순박한 데다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임무에 충실한 곳이었다. 정조는 그러한 제주의 충성에 감사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먹을 것의 독립이 어려워 늘 육지(호남)의 곡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그 토질이 메마르고 척박하여 종횡으로 난 밭이랑에는 돌이 흙을 덮고, 높은 지대나 낮은 지대 할 것 없이 비가 많이 오는 해건 가문 해건 모두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세 고을을 통틀어 보면 흉년이 많고 풍년은 드물어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사다가 쓰고 있다 하니, 너희들을 보는 나의 마음은 육지 백성들에게 견줄 바가 아니다.

지난해 1만 곡(斛)의 곡식을 보내 준 것은 부황이 든 너희들의 급한 사정을 구제한 것일 뿐이었는데, 배를 띄우는 때에 도신에게 거듭 하유하여 해신(海神)에게 복을 빌게 했더니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잠잠하였으며, 돌아올 때도 그와 같았다. 봄별이 따뜻해져서 진흙을 시작하고부터는 어느 하루도 너희들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다가 5월에 되어 진흙이 끝났다는 보고를 접하고서야 남쪽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진흙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제주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것이 정조 윤음의 진의였다.

그런데 이번에 대간의 말이 나오게 되면서는 의심스러운 단서가 많이 있었다. 백성들이 고통스럽다면 내가 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홍문관 교리 심낙수(沈樂洙)를 어사로 명하여, 가서 너희들을 조사하여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빠뜨리지도 말고 과장되지도 않게 조사하여 일을 마치도록 하였다.

또 생각건대, 탐라에 어사를 파견하는 것이 12년 만이니 너무도 오랜만이라고 하겠다. 그가 가는 때에 못 폐단을 묻고, 고통스러운 역(役)을 개혁하고, 많

은 옥사를 심리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노인들에게 잔치를 열어 주고, 권선징악하고, 문무과(文武科)를 설행하여 시취하고, 전정(田政)·포정(浦政)·용정(戎政)·마정(馬政)을 신치하고, 고을 수령과 진영 장수들을 능력에 따라 출척(黜陟)하게 하고, 비변사의 신하에게 명하여 조목조목 열거해 적어서 그가 갈 때에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 하나의 양(陽)이 비로소 생겨나니 만물이 장차 소생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환자곡을 다 상환하고 어깨를 편 채 집에서 쉬면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옷을 마련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입히고 있는가? 곳곳에서 보리농사가 잘되고 배 타는 사람 모두 순조롭게 항해하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깊이 축원하는 바이다. 아, 너희 탐라의 대소 백성들아.

윤음에서 정조는 소반에 오르는 굴 하나를 보면서도 제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직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1만석의 곡식을 제주에 보내준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아울러 십여 년 만에 제주에 어사를 보내 여러 가지 민폐와 제주의 사정을 파악하려고 하니 좋은 기회를 살려 제주의 민폐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어사로 파견되는 심낙수에게는 제주의 기민을 구휼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명하는 동시에 널리 문과와 무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구하도록 했다. 직접 병조에 명하여 제주의 무과 시취를 위한 사목을 준비하기도 했다.

제주에 파견된 어사 심낙수는 제주의 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제주의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그가 올린 장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⁵⁶⁾ 1794년(정조 18) 3월 제주 어사 심낙수(沈樂洙)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794년 1월 6일 제주에서 노인연을 행하였고, 9일에는 정의현(旌義縣)에 도착하고 11일에는 대정현(大靜縣)에 도착하여 차례대로 연이어 노인연을 설행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90세 이상 노인은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이외에 양반과 상민을 막론하고 모두 대청으로 올라오도록 하여 음식을 베풀고 음악을 연주했다. 80세 이상 노인은 남녀로 나누어 뜰에 자리를 마련한 뒤에 차등을 두어 음식을 대접하고, 쌀과 고기, 무명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병들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노인잔치가 끝나자 머리가 희고 얼굴에 검버섯이 핀 노인들이 뜰 안에 서서 북을 향해 절을 하고 일어나서 한목소리로 축원(祝願)하고 앞 다투어 국가를 위해 헌수(獻壽)하였으며, 만세를 부르며 영원무궁을 빌었다고 보고했다.

56)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3월 1일(무자)

제주어사 심낙수는 3개 읍을 일주일간 순무하면서 가는 곳 마다 정조의 윤음을 읽어주었다. 제주에 대한 정조의 마음을 보고 모두 감축하였다고 부언했다. 심지어 목이 메어 흐느끼는 자들도 있었다며, 그들의 말을 인용해 놓았다.

흉년을 당한 쇠잔한 목숨이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은 모두 작년에 곡물을 옮겨 주신 성상의 은덕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병이 들어 사망한 사람이 마을마다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들도 죽기 전에 하루 이틀이나마 먹여 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은덕을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⁵⁷⁾

이어진 제주어사 심낙수의 보고에는 제주의 민폐가 날날이 적혀 있었다.⁵⁸⁾

가장 시급한 것은 기민들에게 제공하는 환곡의 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육지의 곡식을 한없이 제주에 제공할 수는 없었다. 강진과 제주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육지의 곡식을 제주에 이송하고 제주의 미역을 육지로 옮기는 일이야말로 제주를 살리는 첩경이었다. 특히 심낙수가 순무 하는 동안 제주 백성들이 알려진 폐막은 100여건이 넘었다. 주로 신역이나 환곡 등 오래된 폐단들이었다.

정조는 심낙수의 장계에 전교를 내려, 기민의 수를 허위로 보고한 전 제주목사 이철운의 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했다. 특히 정조 즉위 초에 제주의 절대전복을 영구히 감면한 사실에 반하여, 서울에서 요청한 물품이라면서 제주백성들을 속이고 전복을 억지로 징수한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목사 이철운을 의금부로 체포하여 형추하도록 명했다. 이뿐 아니라 이철운을 도와 백성들을 침학한 장교와 아전들에 대해서도 제주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엄벌하도록 했다.

수령의 학대를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 섬의 장교와 아전들에 대해서는 그대가 위의(威儀)를 대대적으로 베풀고 모든 백성을 모아 놓고서, 사안이 군정(軍政)과 관계된 자는 조리를 돌리고 엄히 곤장을 치고, 사안이 민정(民情)과 관계된 자는 별도로 엄히 형추한 뒤에 모두 즉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라.

한편, 장령 강봉서가 제주 목사 이철운의 언급이라고 주장했던, “나랏일이 우습대[國事可笑]”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강봉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사

57)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3월 2일(기축)

58)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3월 2일(기축)

인 양지온이 강봉서에게 전해 준 말이었는데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조는 목사 이철운을 음해하려던 양지온이야말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가(梁哥)라는 사인(士人)-양지온-의 일에 대해서는 ‘그가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수령을 모함했다는 것도 증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의 말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고 해서 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대가 더욱더 엄히 처리하라.

마지막으로 정조는 흉년으로 굶어죽은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구령을 전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모아 놓고 제단을 설치하고 제문을 읽어 제사하도록 하라. 아울러 거행한 뒤에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했다.

심낙수의 조사는 나름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가령, 고한록의 원납곡은 숫자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고한록의 집안은 부자가 대를 이어 재난에 사재를 털어 기부했던 미담의 주인공들이었다.

갑진년(1784, 정조 8)에 진휼을 설행할 때 고한록의 아버지가 300섬을 원납(願納)하였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또 원납한 것은 참으로 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친 곡물 중 백미(白米) 60섬을 그가 원하는 대로 정조(正租) 150섬으로 현록하여 섬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새로 부임했을 때 고한록에게 전 200냥을 빌렸기 때문에 고을에서 사용하는 비용인 속(粟) 66섬 10말을 내주어 500섬의 수량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환작한 것이지 실로 더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백미 60석을 조 150석으로 준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개 만호였던 고한록은 천한 신분에서 갑자기 분에 넘치는 현감 자리를 상전(賞典)으로 받게 되자, 그 이면에 제주목사 이철운이 그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의심의 일었기 때문이다. 기민(飢民)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자, 정조는 심낙수로 하여금 이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지온을 여러 차례 문초한 결과 역시 소문과는 조금 달랐다. 대간 강봉서의 주장이 도리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유학(幼學) 양지온은 한 차례 형문하고 30도의 신장을 친 뒤에 추문하니, 공초에 '제가 대간(강봉서)과는 본래 친숙한 사이인데, 올가을에 대간이 제주에 왔을 때에는 병 때문에 미처 방문하지 못하였다가 돌아갈 때 대간이 머무르던 곳을 방문하니, 술잔을 주면서 말하기를,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에 섬의 일을 상계서 하문(下問)하시면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섬으로 들어온 뒤에 들어서 아는 것이 많으니, 나를 위해 써 달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 강요하였으므로 그가 입으로 불러 준 대로 써서 주었습니다. 패악한 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들은 것인지를 물어보니, 대간이 「알아서 무엇하겠는가마는, 면임[필자주: 당시 강봉서의 형]에게서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대간의 숙부와 형이 좌수로 있거나 풍현으로 있었으니, 어찌 제가 말을 해야만 패악한 말에 대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에게 들었다고 말한 것은 그의 숙부와 형으로는 감히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간이 들은 내용을 기어이 저에게 쓰게 했던 일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실로 분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간은 목사와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노를 품고 돌아갈 때 저와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강요에 의해서 초본(草本)을 써 주었으니 실로 저의 불행입니다.

양지온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목사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강봉서가 마치 제주의 사족(양지온)에게서 들은 첩보라는 식으로 제주목사 이철운을 무함한 듯 보였다. 이처럼 제주 내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심낙수는 양지온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간 강봉서와 목사 이철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갈등을 이용하여 대간의 상소에 간여했던 것이다. 강봉서의 상소 가운데, 이철운이 진흥곡에서 잉여를 취한 일, 기민 수효와 곡물 수량을 조작한 것 등은 사실이지만, 덧붙여 <국사가소>의 패악한 말을 억지로 증명하여 기어이 성주[제주목사]에게 독기를 뿜고 양값음하려고 한 것을 보면 그 마음가짐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지온을 제주목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이후의 처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4. 1794년 제주목사 이우현의 노력

1794년은 1793년에 이어 정조 치세 동안 제주에 가장 흑심한 흉년이 이어졌다. 이 해 가을 제주목사 심낙수는 제주도의 세 고을이 풍재(風災)를 당한 상황을 진달하고, 이어서 절미(折米) 2만여 섬을 배로 수송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정조는 전라 감사에게 해안가의 곡식 1만 섬을 준비하도록 했고, 심낙수를 대신하여 차임된 신임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5,000 섬을 이해 10월까지 운반하여 나누어 주도록 명했다.

심낙수의 장계는 자신의 병세를 들어 제대로 제주의 흉년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내용이였다. 사실 심낙수는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이해 가을 제주의 재난 상황을 구제하기에는 스스로 역부족이었음을 깨닫고 임무를 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고을에 대한 가을 순행을 으레 이달 10일 전후에 출발하는데 신의 병세가 위독하여 스스로 전토(田土)를 점검하고 말을 점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대정(大政)에 관계된 것인데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작황은, 비록 6, 7월에 가뭄이 들었지만 중간에 소나기가 많이 내렸고 이어서 단비가 내렸으므로 각종 곡물이 무성하여 풍년에 대한 바람이 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8월 27일과 28일에 동풍(東風)이 크게 불어 폭풍에 나뭇잎이 날리듯이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다녀서 벼가 바람에 쓸려 짓밟히고 손상된 것 말고도 마치 소금에 절인 김치처럼 짜디짠 바닷물에 절여졌습니다. 8, 9십 세의 노인들이 모두 지지난 계사년(1713, 숙종 39)에도 이러한 재이가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런 재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두 고을은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극심하여 벼가 말라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목도 모두 누렇게 시들었으며 가끔 나뭇잎이 겨울처럼 떨어졌습니다.(중략) 이처럼 큰 흉년은 고금에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여름철에 모맥(麩麥 보리)이 조금 풍년이 들어 우선 굶주리지 않지만, 10월 이후에는 조정에서 먹여 주기를 바라게 될 형편입니다. 만약 절미 2만여 섬을 배로 실어 오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장차 모두 죽게 될 것이니,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때맞춰 조처하게 하여 10월 안에 6, 7천 섬을 우선 들여보내고 나머지 1만여 섬은 1월부터 연속해서 절미를 실은 배가 섬에 도착한 뒤에야 당장에

죽는 꼴을 보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병들어 일을 보지 못하여 흉년 든 해의 민사를 주관하는 이가 없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즉시 변통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⁵⁹⁾

당시 조정의 논의는 부정적이었다. 우의정 이병모는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 호남의 연읍에서 곡식을 마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2만석을 요청한 전례가 없다면서 심낙수의 장계를 비판했다.

본도의 민사는 참으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올해 호남의 작황도 도처에서 흉년이 들었고 연읍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곡물을 운반하는 일은 실로 연읍의 백성과 해부(海夫)에게 차마 하기 어려운 정사입니다. (중략) 전후의 등록(騰錄)을 두루 살펴보건대, 곡식 2만 섬을 청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지난 계사년(1713, 숙종 39)에 특별히 넉넉히 돌봐 주신 덕의(德意)로도 그때 구획한 양이 1만 섬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엔 장계를 올려 청한 것은 병 때문에 들판을 순행하지 못하여 자세히 살피지 못한 탓에서 연유한 듯 하니, 해당 목사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모는 이번 경우에도 1만석을 기준으로 호남의 연읍에서 준비하여 5천석을 10월 중으로 제주에 보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봄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운반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했다.

지난 계사년(1713년)에 떼어 준 수량에 따라 미(米), 모(牟), 조(租) 도합 1만 섬을 특별히 구획하여 도신에게 분부해서 넉넉한 연읍의 유고(留庫)에서 편리한 대로 신되 5,000섬은 10월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초봄까지 계속해서 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000섬을 먼저 운반할 때는 굳이 따로 차원을 정하지 말고 신임 목사가 지금 막 내려갈 것이니 그로 하여금 영운하여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를 배로 운반할 때는 차원을 정하는 것을 근래의 규례에 따라 거행하여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신중히 건너는 등의 일을 각별히 엄히 신칙하며, 출발하고 돌아와 정박한 상황을 그로 하여금 즉시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9)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9월 17일(신축)

영중추부사 채제공 역시 이병모와 같은 의견이었다. 아무리 제주의 기근이 급하다해도 호남의 연음 역시 작황이 좋지 못한데다 2만석은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고 비판했다.

“본도 연음이 재해를 입은 것은 탐라(耽羅)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설령 유고의 곡물이 있더라도 바로 기민을 먹일 양식이니, 이쪽의 것을 빼앗아 저쪽에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더구나 곡물은 발 없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많은 백성들이 등에 지고 실어 나르게 한 뒤에야 배에 싣고 운송할 수 있으니, 그러는 사이 백성들도 수고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백성들이 양식을 기다리는 형편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육지의 백성들이 곤궁하고 고달픈 점을 생각하면 그 또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등록을 살펴보건대, 곡식 2만 섬을 청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우의정이 목사를 꾸짖었는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장계를 가지고 보면, 제주도의 백성들이 곡식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 것은 멀리서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지난 계사년(1713, 숙종 39)에 떼어 준 수량에 따라 겨울과 봄으로 나누어 잘 헤아려 배로 운반하고 신임 목사로 하여금 환곡을 거두어들이고 진휼을 시행할 때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을 안쓰럽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백성을 보호하는 성상의 마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정조는 제주의 구휼이 더욱 급하다고 보고, 일단 신임 제주목사 이우현에게 5천석의 곡식을 제주로 실어 나르도록 명했다.

어젯밤에 제주에서 곡물을 청한 장계를 보았으니, 제주도가 재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어찌 불쌍한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수만 명의 백성을 구해 내 살리는 것이 이 배로 곡식을 실어다 주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으니, 영부사가 아뢴 말 중에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게 된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적절하여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육지의 백성은 그래도 다른 곳으로 옮길 방도가 있지만, 섬의 백성들은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섬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더욱 급하니, 우상이 아뢴 대로 즉시 도신에게 분부하여 먼저 곡물을 떼어 주어 신임 목사에게 맡겨 영운하여 들어가게 하라.

정조는 “전례에 비록 2만 섬을 떼어 준 적이 없더라도 장계의 내용을 보면 지나친 요청이 아닌 듯하다. 절반으로 깎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은 어떤 해인가. 구제하여 살려 주는 정치는 경사를 빛내는 도리에 더더욱 부합한다.”고 강조하면서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맞이하여 제주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 “조정의 본뜻을 유지하여 굶주려 얼굴이 누렇게 뜬 힘없는 제주의 백성들이 북쪽을 바라보며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의 은택임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 정조의 본의였다.

정조의 언급은 정확했다. 당시 제주의 기근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고 조금이라도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곡식이 하루라도 늦춰지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조는 “제주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가서 먹여 주지 않는다면 넓은 바다 한 가운데로 그들을 밀어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⁶⁰⁾라며 2만석을 어떻게든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신임 제주목사 이우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정조는 “새 목사가 임무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만약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 감히 바다를 건너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채제공은 “조금 전에 호조 판서의 말을 들으니, 새 목사가 적임자라고 합니다.”라면서 정조의 걱정과 기대에 호응했다. 정조는 이우현이 김해(金海)의 수령과 울산(蔚山)의 병사(兵使)를 맡았을 때 잘 다스렸다면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 이에 신임 제주목사 이우현에게 당부했다. “반드시 내일 길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진휼을 잘 시행하여 돌아와 나를 볼 면목이 있게 하라.” 정조의 진심어린 부탁이었다.

1794년 10월 2일 전라감사 이서구는 장계를 올려 제주에 급히 보낼 5천석의 곡식 준비상황과 해신제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⁶¹⁾ 곡식을 실어 나를 책임은 능주목사 조익현이 담당했다.

“이번에 탐라로 곡식을 옮기는 일은 우리 성상께서 섬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지극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게다가 연해의 백성과 뱃사람이 곡식을 실어 나르는 절차까지 아울러 편의대로 거행하게 해서 덕의(德義)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 그 명을 받들어 행함에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관문의 내용대로 각 곡물을 이전하되,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장흥에 미 150섬, 조 300섬, 피모 1,000섬, 해남에 미 40섬, 피모 1,000섬을, 강진에 미 70섬, 조 200섬, 피모 700섬, 영암에 미 40섬, 조 500섬, 피모 1,000섬, 합계 미 300섬, 조 1,000섬, 피모 3,700섬 등 도합 곡물 5,000섬을 구획하여 관문을 보냈는데,

60)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9월 17일(신축)

61)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10월 2일(병진)

모두 적당한 명목의 유고곡(留庫穀)을 키로 까불러 수량을 맞추고 튼튼한 선박을 가려 정해서 밤낮없이 꾸려 신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능주목사 조익현을 별도로 독운 차사원으로 정하고 본영에서도 막속을 보내어 속히 감동하고 신칙하게 함으로써 시일을 끌지 말고 실어 보내어 지체 없이 신임 목사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넘겨주도록 하였습니다.”

정조는 이서구에게 해신제의 헌관이 되어 바닷길이 편안하도록 빌고 조정으로 돌아와 복명하되, 지나오는 길의 백성들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명했다. 정조의 《홍재전서》에는 두 편의 해신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에는 운곡선이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바다를 건너 곡식이 제주에 도착하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백성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라는 간곡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한 점의 작은 섬을 / 一點小島
 이름하여 영주라고 부르니 / 號曰瀛洲
 그곳에선 굴과 유자가 우거지고 / 厥包橘柚
 공물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준마일세 / 厥貢驪騮
 제주목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 守臣稽首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고생함을 아뢰자 / 奏庶艱食
 내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 予不遑息
 그 자리에서 곡식을 배에 싣도록 명했네 / 立命船粟
 절미에 허리를 길게 펴졌고 / 長腰浙米
 연맥에 기름이 흐르듯 하네. / 流脂燕麥
 중류에서 배의 봉창을 들어 보니 / 中流舉篷
 한라산이 지척에 보이네. / 挈岑咫尺
 가벼운 기러기 털이 순풍을 타고 달리듯 하니 / 鴻毛助順
 백성들이 신의 힘을 기다려 소생하네. / 俟神而蘇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 家家炊煙
 검게 탔던 얼굴에 화색이 만연하네. / 黧面春敷
 곡식 가마를 풀고 돌아오는 길에 / 解包言旋
 바람이 돛에 불어 보내기를 / 有風送颿
 올 때도 갈 때와 같도록 / 來如去時
 하늘은 맑고 물결은 고요하길 바라네. / 天晴浪恬

뱃노래가 사방에서 일어나 / 權歌四起
 생선을 잡고 술을 빚기에 / 擊鮮釀酒
 수부에서 은혜를 내리기를 / 水府之賜
 감히 전후로 바라나이다. / 敢冀前後⁶²⁾

다행스럽게 진흙 곡식은 제주에 순조롭게 도착했다.⁶³⁾ 이해 11월 15일 제주목사 이우현이 올린 장계는 제주 백성들의 기쁨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제주도의 사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주목이 해마다 연이은 기근을 겪은 터에 또 8월에는 전에 없던 태풍의 재해를 당하여 각종 곡물이 전부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는 모두 종자로 쓰려 한 모맥(牟麥 보리)을 먹었고 10월 이후로는 종자조차 다 떨어져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성상의 하늘과도 같은 덕택에 힘입어 12척에 실린 곡물이 일시에 화북포(禾福浦)에 정박하자, 먹여 살려 주기만을 기다리던 많은 백성들이 배에 곡식을 싣고 오는 것을 보고는 아직 입에 밥을 떠 넣기도 전에 잔뜩 먹은 듯 배부르게 여기고는 기뻐하며 감축(感祝)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1만 5,000섬을 얻어 실어 오게 된 것은 전에 들어 본 적이 없는 큰 은혜입니다.’⁶⁴⁾

정조는 “5,000포의 곡식을 실은 12척의 배가 첫닭이 울 때 출발하여 오시(午時)쯤에 일제히 정박하였다고 하니, 깊은 바다를 이처럼 쉽게 건널 줄을 처음에는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바람이 이처럼 순조롭게 도왔더니 실로 신령이 돌보신 것이다. 이제 밤낮 애태우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겠다. 배로 곡식을 실어다 준 이후의 일은 오직 지방관이 정성을 다해 구제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서울의 대궐이 아득히 멀다고 하지 말고 더욱 착실히 하여 한 사람도 굶주려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 전교를 내리고 기뻐했다.

그러나 당시 제주의 기근은 진흙곡 5천석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12월에 이르지 전라감사 이서구는 제주목사 이우현의 첩정을 들어 진흙곡 1만 2천석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의 첩정(牒呈)에, ‘본섬의 구걸하는 부류와 우심(尤甚)한 부류, 지차(之次)인 부류에 해당하는 장정과 노약자 6만 90구에 대해 곡

62) 《弘齋全書》卷22 祭文4 〈運穀到泊日 祭濟州海神文〉

63) 이에 대해 변경봉은 조금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뒤에서 살펴본다.

64)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11월 15일(기해)

물을 마련해 환곡을 분급하는 대상에 붙여야 하는데, 설을 쇠고 나면 분급하는 순서가 끊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미(米)·모(牟)·태(太)를 1만 2,000섬에 한하여 떼어 달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청합니다.’라고 했습니다.⁶⁵⁾

정조는 이를 윤택하면서, “위에서 먹여 주기를 바라는 백성의 심정을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도백으로 하여금 수령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더 떼어 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이를 잘 마무리 지은 다음 그간의 연유를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고 전교했다. 정조는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곡식은 이듬해인 1795년 2월 준비가 완료되어 해신제와 함께 제주로 이송되었다. 당시 제문은 ‘호남(湖南)의 곡식을 제주로 운반하기 위해 제사지낸 글’이었다. 제목대로 남해의 신에게 곡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천하에서 크기로는 / 天下之大
 오직 바다뿐이니 / 惟海而已
 赫赫한 바다의 신령이 / 赫赫者靈
 우리나라의 남쪽에 은택을 끼치네. / 澤我南紀
 봉새가 날아오고 고래가 옮겨 와 / 鵬飛鯨徙
 백성이 큰 복을 받았으니 / 民蒙龐禱
 거센 파도가 일지도 태풍이 불지도 않아 / 不揚不颶
 맑고도 잔잔하네. / 淸且漣漪
 섬에 사는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서 / 島民阻飢
 먹을 것을 바라고 목구멍을 벌리고 있으니 / 望哺張喉
 노 나라 당읍(棠邑)의 곡식 창고를 열어 / 發魯之棠
 진 나라 배에 싣고 운반하네. / 泛秦之舟
 보리는 황색이고 쌀은 백색인데 / 粃黃粳白
 그 수는 만 섬이니 / 厥數萬斛
 북을 울리고 돛을 펼쳐서 걸자 / 打鼓掛帆
 노를 짓는 사람이 용약하네. / 棹夫踴躍
 복서(卜筮)의 점이 순하여 / 龜從筮從
 모두 건너지가 이롭다고 하니 / 咸曰利涉

65)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12월 9일(임술)

신에게 은혜를 바람이 / 徼惠于神
부고(桴鼓)처럼 응당 빠르리라 / 桴應斯捷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도록 / 朝去暮還
그 바람을 남북으로 불게 하소서 / 北南其風
청결한 술과 밥으로 / 吉釔之糒
남해의 신 축융에게 고하나이다. / 以告祝融⁶⁶⁾

육지의 곡물을 제주로 이송하는 총책임자 전라감사 이서구의 장계를 보면, 당시 제주에 지원된 곡식의 전체 규모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제주로 이전할 곡물을 영운(領運)할 차사원(差使員)인 용담 현령(龍潭縣令) 원회진(元晦鎭)의 첩정(牒呈)에 ‘부안(扶安)의 미(米) 150섬, 조(租 벼) 200섬, 피모(皮牟) 300섬을 실은 배 2척(隻), 고부(古阜)의 미 200섬, 피모 300섬을 실은 배 1척, 무장(茂長)의 미 350섬, 조 500섬, 피모 1,000섬을 실은 배 3척, 영광(靈光)의 미 300섬, 조 400섬, 피모 2,000섬을 실은 배 4척, 나주(羅州)의 미 500섬, 조 600섬, 피모 1,800섬을 실은 배 7척, 함평(咸平)의 미 200섬, 조 300섬, 피모 1,000섬을 실은 배 3척, 순천(順天)의 조 700섬, 피모 600섬을 실은 배 3척, 보성(寶城)의 조 300섬과 피모 400섬을 실은 배 2척, 합계 미 1,700섬, 조 3,300섬, 피모 7,000섬이고, 이상 도합 각 곡물 1만 2,000섬과 이를 실은 배 25척을 우도(右道)의 독운 차사원(督運差使員)인 무주 부사(茂朱府使)와 좌도(左道)의 독운 차사원인 낙안 군수(樂安郡守)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달도(古達島)의 도회소(都會所)에다 차례로 영솔해 와서 넘겨주었습니다.

대축(大祝)인 남평 현감(南平縣監)이 향축(香祝)을 받들어 모시고 여러 향관(享官)과 함께 들어와서 고달도에 단유(壇壝)를 정갈하게 쌓고 해신제를 금년 1월 24일에 정성을 다해 설행하였습니다. 각 배의 곡물을 일일이 점검한 뒤에 순풍(順風)을 기다려 배를 출발시킬 계획입니다.’ 하였습니다. 각 읍(邑)에서 배에 실어 보낸 이후로 연이어 풍설(風雪)을 만나 비록 한꺼번에 일제히 도착하지는 못하였지만, 거의 다 기일에 맞춰 도착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순풍을 기다려 배를 출발시킨 날짜와 도착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⁶⁷⁾

66) 《弘齋全書》 권22 祭文4 〈湖南穀裝運濟州。發船日祭海神文〉

67)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2월 6일(무오)

5. 정리곡 1만 냥

정조는 1794년 제주의 재난을 구제하는 곡식을 지원하는데, 단지 호남 연읍의 쌀을 제주에 옮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이에 정리소의 돈 1만 냥을 전라감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형편에 따라 곡물로 바꾸어 제주의 진휼곡으로 삼도록 명령했다. 정조는 혜경궁 환갑을 맞이하여 화성으로의 행차를 준비하고 성대한 잔치를 계획 중이었다. 그런데 원행 관련 비용을 돌려 제주의 진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궁(혜경궁)의 은택을 널리 퍼는 방도로 삼은 것이다.

이해가 어떤 해인가. 자궁을 모시고 원침(園寢)에 나아가려 하니, 이때의 내 마음은 지난겨울보다 갑절이나 더 간절하다. 그런데 고을 수령의 상소가 이러한 때에 올라와 섬 백성들의 형세가 매우 황급함을 알 수 있었으니, 어찌 상소가 나온 것이 지난 설달이었다는 것과 도신이 2,000포를 더 보내 주었다는 것으로 해서 내가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겠는가. 이번 원행 때의 경비는 호조의 경비를 쓰지 않고 별도로 조처하여 정리소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그중 1만 냥을 특별히 전라감사에게 떼어 주어 형편에 따라 작곡하게 한다면 1만 포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꼭 5,000포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 정리소에서 쓰려던 경비를 제주도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데로 옮겨서 평범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자궁의 은택을 입게 한다면, 섬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자궁의 덕을 선양(宣揚)하고 은혜를 미루어 경사를 빛내는 데에도 이보다 더 큰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⁶⁸⁾

신하들은 일제히 혜경궁의 은택과 정조의 효심을 칭송했다. 영의정 홍낙성은, “섬 백성들이 이 전교를 듣게 되면 반드시 먹지 않아도 배가 절로 부를 것이고, 신들도 우러러 공경하고 찬탄하는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따름이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곡물을 제주도에 들여보낼 때 다시 차원(差員)을 정할 필요 없이 도신에게 분부하여 본주의 목사와 더불어 충분히 상의해서 다른 일로 왕래하는 어떤 선척(船隻)이라도 다소(多少)에 따라 알맞게 헤아려 실어 보내어 보리가 익을 때까지 분급하는 순차(巡次)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진언했다.

68) 이상의 내용은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2월 14일(병인)

좌의정 유언호는 “이번에 떼어 주는 돈은 정리소에서 필요한 비용을 내주는 것인 만큼 인자함으로 돌보아 주는 은택을 본받는 것으로 보면 실로 이보다 더 성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흠양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라고 했으며, 우의정 채제공은 “원행할 때 정리소에서 필요한 돈을 도신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곡물을 마련하여 섬 백성들을 구제하게 한다면, 이는 모두 자궁의 은택이 미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섬 백성들 역시 반드시 감격하여 춤을 출 뿐만이 아니라, 신들의 마음도 찬송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정조의 의견에 동조했다.⁶⁹⁾

어머니의 환갑잔치에 사용할 돈으로 제주의 기민을 구휼하는 것이야말로 제주에 대한 정조의 통치와 애민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조처였다. 1만 냥의 돈은 전라감사 이서구에게 전달되었고, 이서구는 이 돈으로 곡식을 구매하여 제주에 실어 날라야 했다. 정조는 “1만 전을 1만 포로 바꾸어 1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밥상을 대하매 절로 배부를 것이고 잠도 비로소 편안히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서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이서구 역시 장계를 올려 “본도(本島)에 떼어 준 전(錢) 1만 냥을 바꾸어 1만 포(包)의 곡물을 마련하는 일을 비변사의 관문 내용에 따라 현재 밤낮없이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제주목과 상의하여 기필코 윤2월 안에 들여보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조는 어머니 환갑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정리곡 가운데 1만 냥의 돈을 제주의 진휼을 위해 지급했다. 이는 정리곡 전체의 10만 냥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

을묘년의 원행을 위해 정리의궐청(整理儀軌廳)이 만들어졌고 총 10만 냥의 기금으로 환갑잔치 및 화성 행차의 비용을 마련했다. 그런데 의궐청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전국에 나누어 주어 지역 기금으로 삼자는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 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리곡은 그 취지를 일별하면 알 수 있듯이 정조의 통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을묘정리곡을 설치하여 300개의 주현에 나누어 두는 일은, 자애와 은혜를 널리 퍼서 백성들이 모두 혜택을 입어 억만년까지 이어지도록 하며 바닥나지 않게 쌓아 두고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 중요한 바가 비축해 두는 군량미나 환곡 등과는 견주어 논할 수 없다.

이에 남은 돈 4만 냥 가운데 1만 냥은 화성(華城)에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삼고, 1만 냥은 탐라(耽羅)의 진휼 재원으로 삼고, 2만 냥은 삼도와 팔도에 나누어 보내 을묘정리

69)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2월 14일(병인)

곡으로 삼도록 했던 것이다. 1794년 제주의 기근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이처럼 매우 지대했다. 사실 3백여 개에 달하는 군현에 지급된 정리곡의 액수를 보면 제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들 정리곡은 일종의 환곡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대어했다가 약간의 이자를 받아 원금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혜경궁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한 <기금>이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정조의 정리곡 기획은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다.

당시 마련된 절목 몇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⁰⁾

1. 정리소(整理所)에 구획해 놓은 돈이 10만 3,061냥인데, 그중에 행행 때에 갖가지 항목으로 용하(用下)한 것이 6만 3,061냥, 화성에 둔전을 설치하는 일에 들어간 물력이 1만 냥, 탐라의 진휼 재원으로 용하한 돈이 1만 냥, 현재 남아 있는 돈이 2만 냥이다.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그 수량으로 팔도와 삼도에 분배하여 열읍(列邑)에 나누어 보내고 곡물로 바꾸게 하여 <을묘정리곡>이라고 명칭한다. 경기도에 2,000냥을, 호서·호남·관서에 각각 3,200냥을, 영남에 4,000냥을, 화성·관동·해서·관북에 각각 1,000냥을, 개성과 강화도에 각각 200냥을 배정하고, 본소에서 교리(校吏)를 정하여 차례차례 역마(驛馬)를 태워 내려 보낸다.

당시 경기도에 2,000냥, 호서·호남·관서에 각 3,200냥, 영남에 4,000냥, 화성·관동·해서·관북에 각 1,000냥, 개성과 강화도에 각각 200냥이 배정되었는데, 제주에 1만 냥을 배정하여 곡식을 무역하여 진휼곡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하 각 도에 지급된 액수를 다시 군현으로 나누면 대개 100석 이하의 기금(곡식)이 지급된 데 불과했다.

1. 각기 해당 도신(道臣)들이 읍치(邑治)의 크기를 비교하여 균등하게 분배해서 곡식으로 바꾸도록 한 뒤에 읍명(邑名)과 석수(石數)를 기록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한다. 구관(句管)하는 일은 비국의 유사당상(有司堂上)이 하되, 해마다 환곡(還穀)으로 운용하여 모조(耗條)까지 아울러 회록(會錄)하고 매년 연말에 실제 수효를 장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삼도에서도 이에 따라 거행하도록 한다.

70)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윤2월 28일(경술)

1. 정리곡은 각 아문의 곡물과 한 창고 안에 섞어 두어서는 안 되니 따로 창고 하나를 두고 표(標)를 내걸어 알아볼 수 있게 한다. 환곡으로 나누어 줄 때에는 효유(曉諭)하고 따로 분급하여 미천한 사람들까지 모두 얼마 안 되는 뒷박 쌀이어도 전부 성상의 자애와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고, 이를 심어 농사짓고 수확할 때에도 이 곡물이 여느 곡물과는 다른 것을 알도록 한다.

제주에 보낸 1만 냥은 곧 1만석의 곡식으로 준비되었다.⁷¹⁾ 전라감사 이서구의 장계에는 제주목(濟州牧)에 특별히 내려 준 곡식 1만 섬을 배로 운반하여 무사히 도착한 상황이 자세하다. 이서구는 영광의 곡식 천 섬을 운반한 가리포 첨사 진덕리의 보고서와, 나주 등에서 6,700여 석이 도착했다는 제주목사 이우현의 첩정을 함께 수록했다.

먼저 점검 차사원(點檢差使員)인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진덕리가 보고한 첩정(牒呈)을 보면, “제주에 들여보낼 영광(靈光)의 피모(皮牟) 1,000섬 중에서 499섬 9말을 실은 배 1척은 전에 이미 들여보냈고, 선가(船價)까지 합친 500섬 6말을 실은 배 1척과 남평(南平)의 이전(移轉)한 피모 1,000섬 중에서 원래 납부한 200섬을 실은 배 1척이 소안도(所安島)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곡물도 정실(精實)하고 배도 튼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2월 24일에 제주로 들여보냈습니다.”라고 했으며, 제주목사 이우현의 첩정에는 “나주(羅州)의 피모 2,000섬을 실은 배 3척과 보성군(寶城郡)의 조(租 벼) 800섬을 실은 배 2척과 무안현(務安縣)의 조 300섬을 실은 배 1척과 흥덕현(興德縣)의 조 250섬을 실은 배 1척과 광양현(光陽縣)의 조 500섬을 실은 배 1척과 낙안군(樂安郡)의 조 1,200섬을 실은 배 2척과 좌수영(左水營)의 조 300섬, 피모 200섬을 실은 배 1척과 남평현(南平縣)의 피모 200섬을 실은 배 1척과 영광군의 피모 1,000섬을 실은 배 2척을 모두 합하여 각 곡물 6,750섬을 실은 배 14척이 윤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차례로 화북포(禾北浦)와 조천포(朝天浦)에 당도하여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정조의 1만전으로 바꾼 곡식 1만석이 차례로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의 기민들에게 보급될 것임을 알려왔다.

특히 제주목사 이우현은 당시 정조가 특별히 내려 준 1만 섬을 제주의 인구 수와 비교해보면 충분하여 규정보다 더 넉넉하게 먹여 주어 거의 전부 살아날 가망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조는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제주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다행스럽다고 답하고, 영운 차사원 진덕리에게 가자의 상전을 시행했다.

나머지 곡식들도 차례로 제주의 화북포에 도착했다. 그 내용은 구례현(求禮縣)의 조(租)

71)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8일(기미)

500섬, 나주목(羅州牧)의 피모(皮麩 겉보리) 2,000섬, 보성군(寶城郡)의 조 800섬, 무안현(務安縣)의 조 300섬, 광양현(光陽縣)의 조 500섬, 흥덕현(興德縣)의 조 300섬, 낙안군(樂安郡)의 조 1,200섬, 영광군(靈光郡)의 피모 1,000섬, 김제군(金堤郡)의 조 800섬, 임피현(臨陂縣)의 조 800섬, 만경현(萬頃縣)의 조 800섬, 좌수영(左水營)의 조 300섬, 남평현(南平縣)의 피모 1,000섬 등 총 피모는 4,200섬과 조 5,800섬이었다. 피모(麩)와 조를 합한 1만 섬 중에서 선가 1,666섬을 제외한 8,500석 정도의 곡식이 제주로 이송된 것이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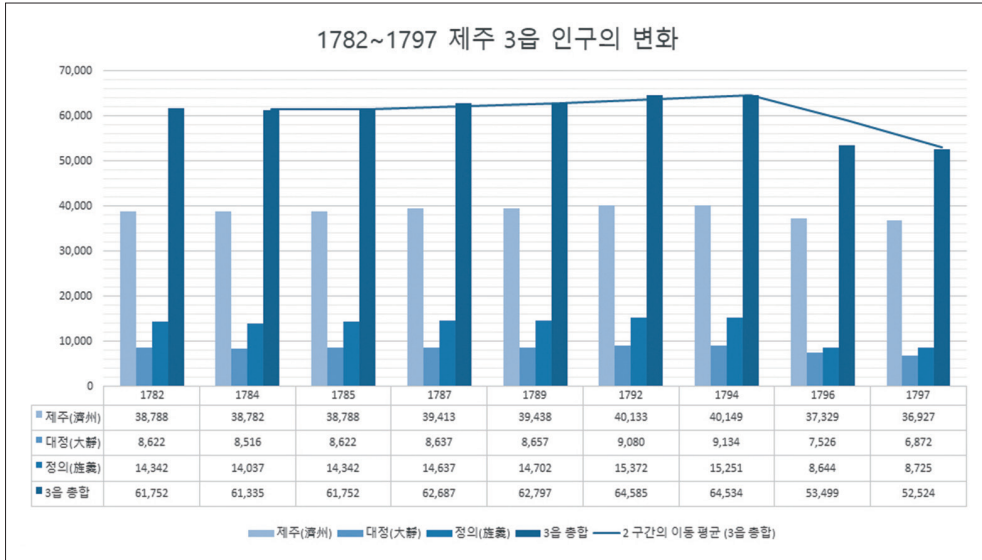
이해 5월 제주의 3개 읍에 대한 진휼을 마친 제주목사 이우현이 보고한 장계에 의하면, 제주의 기민은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3만 5,056구이고, 대정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8,636구이고, 정의현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모두 1만 1,920구로, 세 고을을 합쳐서 모두 5만 5,612구에 달했다. 당시 제주의 인구가 6만여 명 정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제주 백성들이 진휼곡에 의해 살아갔다고 할 정도였다.

이우현은 제주의 백성들이 우매한 자들이지만 자궁(慈宮)의 은택이 고루 미친 것을 알고는 모두가 북쪽을 향해 배를 두드리고 손 모아 축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했다

“제주의 사정은 오로지 이전해 오는 곡물에 기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똑같이 흉년이 들어 연해의 곡식도 바닥이 난 시기였으니 비록 그들에게 직접 도모하게 했더라도 바라는 대로 곡식을 옮겨 줄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하기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은혜가 하늘같이 커서, 원래 떼어준 1만 섬도 이미 넉넉하게 하는 예를 따른 것이었는데 5,000포(包)를 별도로 내려 주신 것은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으니, 섬의 백성들까지 고루 보살피시는 성대한 덕이 여기에서 지극하였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터에 정리청의 전(錢)으로 바꾼 곡물 1만 섬을 특별히 내려 주시어 성대한 은택을 끼쳐 주셨고, 하늘이 돕고 사람이 순응하여 많은 선척이 차례차례 무사히 정박하여 저 구렁텅이에 빠진 백성들을 편안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 왕의 돌보심에 힘입어 대대적인 진휼을 마쳤습니다.”

실로 1795년 제주의 기근은 매우 심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일성록》에 근거하여 제주의 인구를 정리해보면, 1795년 이후 제주의 인구가 1만 여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기민한 구휼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망했으며 이후 제주의 인구는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72)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1일(신사)



당시의 충격을 제주 출신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변경봉은 자신의 문집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⁷³⁾

무릇 이치의 비태와 만물의 성쇠는 성인도 면할 수 없고 미물도 피할 수 없으니 9년 홍수나 7년 가뭄이 이것이다. 일찍이 건륭 임자, 계축(1792,1793)년에 탐라에 두루 재해를 입어 저축한 것이 이미 다하였는데도 쌀을 실은 배가 이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다행히 언덕과 구덩이에 묻히는 것만은 면했다. 갑인(1794)년 7~8월에 모든 곡식이 바야흐로 익었고 백물이 풍요로웠으며 때와 기운이 조화로웠다.

변경봉은 1792~1793년의 재해를 이겨낸 제주사람들은 1794년 여름 풍년을 기약하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과연 8월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벌거숭이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8월 27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파도가 거세졌다. 저녁이 될 때 모진 바람과 괴기한 비가 동남에서 일어나더니 왼쪽으로 돌다가 다시 에워싸면서 새집

73) 이하 내용은 《변경봉문집》〈갑인년과 을묘년의 참혹했던 이야기〉 pp.197~199

을 허물고 큰 나무를 넘어뜨렸다. 천지가 요동치고 일월이 컴컴해져 사람들은 겁을 먹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다. 아침이 되었으나 소금비가 계속 내렸고 이어 태양이 내려 쬐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푸른색은 검은 색으로 황색은 적색으로 바뀌었고 눈에 닿는 곳은 스산하여 갑자기 잿빛이 되었다. 벼는 이삭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혔다. 담벼락이 무너져 남녀가 머물 곳을 잃었고 나무와 돌이 뒤집혀 길이 끊어졌고 까마귀와 참새는 죽은 사슴을 쪼아 먹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며 사물들은 사람에 앞서 그 성품을 잃은 것이었다.

1794년 8월 태풍과 함께 해일이 몰아닥쳐 바닷물에 농사는 망쳤고 사람들은 거처할 곳과 먹을 것이 없었다. 이미 까마귀는 죽은 짐승들을 쪼아 먹고 있었다. 참혹한 풍경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었다.

사람들은 넋이 나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반드시 죽어가는 얼굴로 서로 바라보니 생기라고는 없었다. 집에 저축한 곡식을 계산하니 삼읍에 몇 집안만 있었고 관아의 창고를 살펴보니 구걸하는 집들을 한 달도 구제하기 어려웠다. 고을 수령과 제주목사는 세금을 면제하고 쌀을 요청하는 논의를 조정에 장계로 올려 2만포를 요구했다. 정조 임금께서 놀라시며 먼저 15,000포를 운허하셨고 마침 전라감사가 부임할 때에 맞춰 운송하게 했지만 그 때 차사원들은 백성들이 숨 쉬는 것만큼 긴박한 줄 몰랐다.

변경봉은 정조가 1만 5천의 곡식을 제주에 운반토록 했지만, 곡식이 그해 연말까지 제대로 제주에 보급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10월부터는 제주의 굶어죽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다고 기록했다. 이해 겨울은 항상 추웠고 바람도 다른 해보다 거셌다. 1784년 겨울 제주는 극심한 재난의 한 복판에 던져졌다. 어떤 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들이 차례로 방 안에서 죽어갔고, 어떤 이는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방을 구걸하다가 죽어갔다. 심지어 부부끼리 다투어 먹을 것을 두고 싸우고, 부자간에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살기만을 도모했다. 길가나 계곡 근처에 죽은 듯 누워있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하루 길을 가다 마주하는 시체가 20~30구에 가까워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변경봉은 제주인들이 굶주림으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실에 크게 상심했다.

겨우 1795년(을묘) 정월 그믐이 되어 곡식을 실은 30척의 배가 화북, 조천포에 도착했다.

하지만 포구가 좁고 썰물인데다 여울이 험하고 바람이 일자 배가 부서져버렸다. 5척의 배가 실은 수천포의 곡식이 모두 바다에 빠져 버린 것이다. 그나마 1795년 곡식이 공급되면서 어느 정도 굶주리는 이들도 줄었다. 그리고 이해 보리가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 살 수 있었다. 변경봉은 을묘(1795년) 이전에 제주의 총 인구가 10여만 명이었지만, 을묘 이후에 3만 명으로 줄었다고 기록했다. 앞에 제시한 일성록에 근거한 인구 기록에 의하면 을묘년(1795)을 기준으로 6만 4천의 인구가 5만 3천으로 줄어 약 1만 여명의 제주인이 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봉은 이를 10만에서 무려 7만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변경봉은 참혹했던 기근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나는 당시 많은 이들이 굶주림을 이기려는 것을 보았다. 쇠고기를 먹은 자는 배고픔을 이겼지만 말고기를 먹은 자는 더욱 배고파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은 자는 배를 채웠지만 해산물을 먹은 자는 더 배고파했다. 곡식을 적게 먹고 배고픔을 참은 자는 살았지만 채소를 많이 먹으며 배를 채운 이들은 죽었다. 1794년 9월 이전에는 명주 한필에 쌀값이 30두였지만, 이후 10두로 급등했다. 11월에는 4두였고 1795년 정월에는 2두였다. 그나마 1795년 3,4월에 이르러 8,9두가 되었다.

변경봉은 1794년 9월부터 1795년 1월 사이 6~7만 명의 제주인이 사망했다고 적었다. 그 사이 미가는 명주 1필에 30두에서 2두까지 15배나 폭등했다. 변경봉은 불행한 운수를 만나 제주인들이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술회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변경봉은 글의 말미에 “의롭지 못하게 도둑질하여 살아남는 것은 천명에 따라 죽는 것만 못하다”고 적었다. 그런 즉 살아나도 기쁘지 않고 죽는 다해도 두렵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백성 전체가 커다란 액운을 만나 고통에 빠졌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이를 기회로 이득을 보거나 남의 곡식을 도둑질하여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다. 제주가 고난을 겪자, 금수만도 못한 이들이 나타난 현상에 변경봉은 안타까워했다.

물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여 자신의 곡식을 기부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가령 전 대정현감 고한록은 여러 번 원납하여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다시금 가산을 기울여 육지로 나가서 곡식을 사다 진흙에 보탠 수량이 300섬이나 되었다. 또한 장교 홍삼필의 원납곡은 100섬이었고, 대정현의 유학 양성범이 원납한 곡물도 100섬에 달했다.

당시 제주목사 이우현은 “모두 궁벽한 바닷가에 사는 어리석은 무리이지만 능히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의리를 아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포상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조는 고한록을 대정 현감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에 임명하도록 조치했다.⁷⁴⁾

변경봉은 6~7만의 인명 손실로, 그리고 적어도 정부 기록에 따라도 1만 여명에 달하는 인구 감소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당시 제주목사 이우현의 실정(失政)에 대한 탄핵이 일어났다. 진휼청에서는 “제주목사 이우현이 진휼을 마치고 올린 장계를 보니, 굶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받들어 선양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어찌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환곡을 나누어 줄 백성과 진휼할 백성에게 똑같이 백급한 것은 여러 도에 전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색을 낼 거리로 삼은 데 불과하고, 또 본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흉년이 드는 때가 많은데 한번 선례를 만들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주목사를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세 고을 수령의 경우 굶어 죽게 한 죄를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고가 있었으니 특별히 참작하더라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⁷⁵⁾

아울러 기근시 원납곡을 납부하고 일종의 매관매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금하였는데, 제주의 고한록 등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니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조의 태도는 달랐다. “차라리 사실대로 말한 것이 그래도 숨기거나 속인 것보다는 낫다”면서 제주목사를 의금부로 잡아다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동시에 300섬을 원납한 전 현감 고한록은 매번 사재를 털어 곡식을 무역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다 밖의 풍속으로 능히 백성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므로 가상하다”고 칭찬했다.

사실 정조는 제주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원납제의 엄금을 제주에는 예외로 적용했다. 아울러 제주민들의 의기(義氣)를 높이 평가하고, 고한록을 특별히 대정 현감에 차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원납인 홍삼필과 양성범 등이 100섬을 바친 것은 육지의 1,000포(包)에 맞먹는 것이므로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특별하게 취급했다. 정조는 어려움에 빠진 공동체 구성원을 도우려는 제주인들의 의로운 행동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자 했다. 그것이 설사 약간의 위선에서 나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구제하려는 마음 씀을 인정하면 그만이었다. 이는 정조가 생각하기에 말세와 다름없는 조선 후기, 그것도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제주와 같은 섬이라면 더욱 그러했다.⁷⁶⁾

74)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5월 11일(신유)

75)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5월 11일(신유)

76)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8월 15일(계사)

1795년 전후 제주의 기근 상황이 심각했음은 1796년 1월 조정의 논의에서 확인되었다. 이 우현의 보고에 의하면, 1794년의 기민은 6만 여명이었는데 1795년 겨울 4만 7천여 명으로 무려 1만 8천명이나 줄어든 것이었다. 이에 제주목사 이우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논의가 다시 일어났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목사 이우현이 진휼 정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섬과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보고한 장계에서 논열한 것으로 보건대, 재작년 겨울 세 고을에서 뽑은 기구(飢口)가 6만 2,698 구(口)였는데 작년 겨울에 뽑은 세 고을의 기구는 4만 7,735구이니, 1년 동안에 감축된 기구가 1만 7,963구입니다. 굶주렸든 병들었든 따질 것 없이 이들은 모두 굶주려 죽은 자들입니다. 조정에서 그동안 섬 백성을 얼마나 돌보아 주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으면 하루 동안 수라를 들지 않겠다고 하고 하기까지 하셨으니 입은 은혜는 미물도 감동하였을 텐데 수령 된 몸으로 성상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선양하지 못하여 감축된 호구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덮어 두고 거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목사 이우현에게 속히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고 그 후임으로 문관 중에서 연소하고 전도유망한 자를 각별히 가려 차임하여 민사(民事)에 전념하게 하되 완전히 소생할 때까지는 해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미리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⁷⁷⁾

정조는 제주목사 이우현을 파직하는 동시에 조금 더 안정적인 제주의 구휼책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때 제주 출신의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사창의 설치를 제안했다.⁷⁸⁾

6. 변경우의 사창론

사실 환곡제도는 주자의 사창에 버금가는 훌륭한 제도였다. 정조는 관아의 문이 열리고 환곡이 나누어지면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뻐했다는 말로 환곡의 취지를 설명했다. 환곡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여 조선을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지가 문제였다. 1795년의 〈책문〉은 그러한 정조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77)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8월 15일(계사)

78)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8월 15일(계사)

환향의 법이 비록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총괄하여 논한다면 우리 백성을 진휼하는 것이다. 저 부옥(鄙屋)의 생애를 생각하면 마치 마소의 발자국에 괴어 있는 물처럼 마르기 쉽다. 집안은 경쇠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썰렁하고 밥솥에서는 먼지가 일며 빈 항아리에는 낱알의 곡식도 비축된 것이라곤 없고 이웃에는 한 움큼의 곡식도 빌릴 곳이 없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한 차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희망이라곤 없다. 이러한 때에 관아의 문에 방문이 내 걸리고 창고를 연다는 날짜가 정하여지면 남녀 할 것 없이 기쁨에 들떠서 빈손으로 갔다가 가득 얻어 돌아오는데, 얻는 것에는 그들 스스로 도리가 있고 취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금하지 않는다. 설날의 세찬으로부터 보릿고개에 이르기까지 이것으로 생활을 하고 이것으로 농사를 짓는다. 서쪽 밭의 종자와 남쪽 들의 점심을 일체 모두 이것으로 마련하고, 청명과 한식에는 분묘를 찾아가 조상에게 제사도 올리고 아들딸의 혼인도 맺어 이웃 손님을 대접하기도 한다. 그 밖에 신역(身役)이나 세곡의 미진한 것은 길쌈도 하고 방아품도 팔아 일을 완수하게 되니 환향이 백성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환곡은 평시에도 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이었다. 환곡을 받아 보릿고개를 이기고, 조상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또 곡식을 갖기 위해 애쓰는 노동의 원천이었다. 기근이라도 들면 환곡 없이는 죽음뿐이었다.

더구나 흉년이라도 한번 닥쳐서 한 톨의 곡식도 수확하지 못하게 되면 부자들도 다급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품에 안고 등에 지고 이끌고 헤매며 나뒹굴면서 떠나려고 하면 피붙이 살붙이가 마음에 걸리고, 머물려고 해도 구렁이 눈앞에 있으니 두려움과 근심으로 어느 곳도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러한 때에 진휼을 시작한다는 명령이 있고 기민(飢民)을 초명(抄名)하는 기간이 정하여지면 마치 동면하던 벌레가 봄을 만나고 마른 나뭇가지가 우렛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기뻐한다. 우리 처자식과 함께 서로 이끌고 찾아가서 이름이 공부(公簿)에 오르게 되면 파리한 얼굴에 희색이 감돈다. 들어가면 죽이라도 얻어먹고 나올 때는 곡식을 얻어서 나오니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것과 같다. 혹 나물 따위를 혼합하여 죽을 쑤기도 하고 혹 이틀에 한 번 꼴로 밥을 먹으며 십여 차례만 거치고 나면 목숨을 잘 이어 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와 같은 섬은 먹을 것을 육지에 의존하는 터라 늘 향산이 부족했다. 향산이 부족하면 향심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안정적인 환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주부(州府)와 군현(郡縣)에 이러한 비축이 없다면 성인이 담당한다 하여도 인정(仁政)을 행하여 의지할 곳 없는 궁한 백성을 구휼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어떻게 하여야 환향의 대정책에서 전일의 나쁜 습관을 통쾌하게 씻어 버리고 옛 뜻을 살려서 은택이나 법이 함께 어우러져 유행하게 하며, 이식은 알맞은 선에서 그치고 쌓아 둬는 편벽되지 않고 균등하게 하여 온갖 병통을 완전히 제거하고 만세에 길이 기준을 전하겠는가? 이리하여 환곡은 충실하고 진곡은 정밀하며 군향은 비축되어 우리 백성이 수화(水火)의 고통에서 벗어나 임석(衽席)의 안정을 누리며 풍년이 들면 배불리 먹고 즐기며 흉년이 들더라도 굶주림을 모면하게 하여 관청에나 민가에나 모두 부를 축적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일찍이 자목(字牧)의 직을 경험하였고 혹은 앞으로 백 리의 책임을 맡을 것이니 반드시 이롭고 병 되는 것을 속으로 강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규정을 따르지 말고 십여 일을 기한으로 한 통의 경륜(經綸)을 만들어 모두 대책 편에 저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⁷⁹⁾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지만 제주의 안정적인 곡물 수급을 위해 변경우는 사창의 설치를 제안했다.

“아, 제주도(濟州島)는 바다 밖에 외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들이 저축할 곡물이 없고 연이은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사태가 많으니,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차 풍년이 들 때면 쌀알이 넘쳐 나서 백성이 절약하여 쓸 줄을 모르고 1년 안에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연이어 흉년이 들면 채소를, 뿌리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도 백성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맞아 도랑과 골짜기를 전전하다가 죽어 갑니다. 이 때문에 기근을 당할 때마다 성상께서 잊지 못하고 염려하시어 곡식을 운송해서 먹여 주어 부황이 든 다급한 백성을 구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 누구의 살갓 하나 터럭 하나도 모두가 우리 성상의 하늘처럼 인자한 큰 덕과 지극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79) 《홍재전서》 권51 책문4. 〈환향(還餉): 음관(陰官) 응제(應製) 및 초계문신 친시(親試).을묘년(1795)〉

변경우는 제주의 풍속이 풍년에도 비축할 줄 모르고 모든 곡식을 탕진하여 매년 같은 기근의 재난에 처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육지의 곡물을 운송해 오지 않으면 자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곡물 운송 과정은 많은 폐단이 불가피했다.

첫째, 깊숙한 궐 안에 계시는 성상께 걱정을 끼쳐 드려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읍(沿邑)에 해를 끼쳐 육지에서도 지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람을 만나 기일을 지체하면 먹을 것을 기다리다가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면 어찌 구제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겠습니까.

이에 변경우는 제주에 창고를 만들고 사창을 운영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사창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기금이 마련되어야 했다. 변경우는 제주의 장세와 가경세를 사창의 기금으로 운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이 사창(社倉)에 대해 논한 선현(先賢)의 견해를 보니, 여러 차례 풍년이 든 해에 곡물을 모았다가 연이어 흉년이 든 때에 곡물을 흠어 주기 때문에 흉수나 큰 가뭄과 같은 재해가 있더라도 백성이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창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만 어찌 사창의 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므로 그 안에서 알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관아에서 녹봉(祿俸)을 덜기도 하고 백성이 재물을 출연(出捐)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관아의 형편이 궁색한 데다 백성의 생활도 어려우니,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방도를 강구해야 상황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한다는 취지에 합당할 것입니다. 3개 읍에는 말과 소를 기르는 목장이 수백여 리에 걸쳐 있는데, 경작을 금지한 땅이라고는 하지만 개간한 곳도 있습니다. 황야의 우거진 곳 중에서도 수초(水草)가 연하지 않은 곳은 백성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고, 숲의 나무가 뺨뺨해서 말과 소가 눈에 띄지 않는 곳은 사람을 모집해서 개간하게 하되, 이러한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을 장세(場稅)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기슭과 물가의 언덕은 백성이 대부분 개간하였으니 이러한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에서 거두는 세금을 가경세(加耕稅)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른바 장세와 가경세로 1년에 납부하는 것이 항상 수천 포 이상이 되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백성을 보호하는 재원에

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령이 규정 이외로 보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어사가 장세를 해당 목장에 넘겨주어 폐단을 구제하게 하였으나, 결국 감색(監色)이 자기 사육을 채우는 물건이 되고 말았으니, 보존해도 이익은 없고 혁파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세금을 해마다 받아서 사창에 쌓아 둘 경우에 5, 6년이면 1만여 포가 되고 10여 년이면 수만여 포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거둬 기근을 당하더라도 이것으로 애써 살아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우는 자신의 사창법이 백성에게 재물을 각출하거나 관료의 녹봉을 축내지 않아도 운용가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수령의 사적인 용도로 낭비되는 장세와 가경세를 활용한다면 해마다 곡식을 운반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제주의 민인들은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이 말씀드린 사창은 백성에게 재물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백성이 필시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관아에서 녹봉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아에도 필시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창고에 저축한 곡물은 해마다 생겨나니,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 주는 방도로 볼 때 어찌 수령이 규정 이외에 보태 쓰는 것 때문에 꺼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세금을 해마다 모두 사창에 수송하도록 하되, 모두 피곡(皮穀)으로 거두어들이면 오래 되더라도 썩을 염려가 없고 백성의 식생활은 풍족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원납곡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말하자면 사진(私賑)이나 원납곡을 애초에 금지하기 보다는 곡식의 가격이 하락한 풍년에 원납곡을 수납하여 이들을 향임 등의 직위에 임명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앞 다투어 곡식을 내놓을 것이요 사창의 곡물은 다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흉년이 들어 곡물 값이 비쌀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풍년이 들어 곡물이 쌀 때에 원납(願納)할 백성을 모집하여 가자(加資)해 주거나 토임(土任)에 차임한다면, 많은 백성이 앞 다투어 자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곡물을 이루 다 쓸 수가 없어 반드시 섬 백성이 수년간을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고, 흉년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조는 제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변경우의 사창론을 모당에 내려 논의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제주의 사창 설치 문제는 수년에 걸쳐 논의되었다가 결국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사실 제주에 사창을 설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주의 기후 탓에 곡물을 오래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던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제주에 사창을 설치하려는 국가의 정책을 제주인들은 앞으로 기근시에 제주에 어떤 진휼곡도 주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이해했다. 제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제주의 사창 설치는 없던 일이 되었다.

그리고 제주의 기근은 1795년에 이어 이듬해인 1796년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정조는 내탕금 1만 민을 내어 곡식을 무역하도록 했다.⁸⁰⁾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제주에 보내어 도백으로 하여금 숫자에 맞추어 곡식을 사서 계속해서 실어 보내 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수만의 백성들 마음을 위로하라. 이와 같이 했는데도 환곡과 진휼의 재원에 부족함이 있으면 제주목사로 하여금 즉시 급히 장계하게 하라.

기근 때마다 매년 정조의 내탕금이나 정리곡을 지급하여 곡식을 무역할 수는 없었다. 이에 제주출신 봉상시 관료 변경봉의 요청에 따라 그간 금지했던 제주민들의 육지로의 이동을 용인하는 방법까지 모색했다.⁸¹⁾ 제주에서 굶주려 죽기보다는 육지로 나와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도민에게 육지로 통하는 길을 허락한 것은 우리 성상께서 실로 궁박한 생명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 혹시라도 막아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는데, 감히 편의를 잘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이롭게 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삼가 생각건대, 때가 몹시 추운 겨울이고 길이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행하는데 심분 조심하고 삼간 뒤에야 후회가 없을 듯합니다. 지금 노약자, 병약자, 거지들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부류들을 모두 이미 진휼(賑恤)에 붙인 덕분에 연명하여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의 직임에 있으면서 이미 백성들을 굶주림 없이 편안히 살게 하지 못하는데다가 험한 바다를 건너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으니, 실로 가여운 일입니다. 그리고

80)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3일(경술)

81)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가령 육지로 나간 뒤에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는 것이 섬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험벗고 굶주린 허다한 무리들이 먼 길에 목숨을 붙이고 살 곳이 없어 필시 대부분 얼고 굶주릴까 걱정되며 먹을 것을 얻지는 못하고 혹시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른다면 실로 백성의 고통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성상의 훌륭한 뜻을 우러러 본받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무리들은 결코 나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젊고 건강하여 품팔이를 할 수 있는 자는 우선 금령(禁令)을 늦추어 살길을 열어 주어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하지만 이렇게 뻗길이 막히고 끊어졌을 때 무사히 건널 기약도 없이 소란만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거든 서서히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기에 지금 곧 이러한 뜻으로 마을에 타일러 원하는 바에 따라 차차로 내보내고 육지로 나가는 상황을 성책을 작성하여 비변사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제주목사는 과연 굶주린 제주 민인을 육지로 내보낸다고 하여 이들이 굶어죽지 않고 살아갈 방도가 있을지 의문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제주의 기민들에게 육지의 곡물을 계속 공급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기에 고육책으로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육지에 나가 품팔이라도 해서 살 수 있도록 한 정조의 정책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제주의 자치는 ‘먹을 것의 독립’에서부터 비롯했다. 기본적으로 호남의 곡식을 제주에 옮겨다 먹이지 않는다면, 제주의 자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실 제주의 기근 때마다 정리곡을 내주거나 내탕금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민들이 왕의 하늘같은 은혜를 칭송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항산 이후에 항심을 가르쳐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가는 ‘무위치(無爲而治)’의 이념을 추구했던 정조에게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796년 2월 제주목사가 진흙곡의 부족을 호소하자 정조는 다시금 목면(木綿) 500필과 4,000냥, 호초(胡椒) 100말, 단목(丹木) 300근을 제주에 특별히 내려 진흙 곡식을 구입하도록 조치했다.⁸²⁾ 신임 제주목사 유사모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육지의 도회관에서 곡물을 사들여 분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조는 “탐라에서 기근이 들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로 천리의 먼 바다가 마치 눈앞에 있는 듯 하여 밥상 앞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을 잊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잠자는 것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탄했다.

82)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2월 16일(임진)

섬에 사는 백성도 백성이고 육지에 사는 백성도 백성이다. 내가 차마 제주도 백성들 때문에 육지의 백성을 거둬 곤란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곡식을 옮기는 것을 의논하지 못하고 세초(歲初)에 특별히 내탕금 1만 5,000냥을 내린 뒤에 혹시 다시 청할 것을 염려하여 이미 남은 수량을 조처하였었다. 지금 또 특별히 목면 500필과 전 4,000냥, 호초 100말, 단목 300근을 내려 신임 목사에게 맡겨 도회관(都會官)에 이르러 좋은 쪽으로 곡물을 사들여 차례로 실어 가 기필코 날짜를 헤아려 순차(巡次)를 이어서 분급하게 하라. 신임 목사는 오늘 하직 인사하고 속히 후풍소(候風所)로 달려가 먼저 이러한 나의 뜻을 제주의 백성들에게 널리 일러 주고 편안히 살게 하여 내가 처음만 있고 끝이 없다고 탄식하지 않게 하라.

정조는 호남의 곡식을 제주에 옮겨가면 호남이 굶게 되고, 그렇다고 제주에 곡물을 운반하지 않으면 제주민이 모두 죽게 되니, 처음에는 내탕금을 주어 곡식을 사게 하고 이번에는 목면 등 물건을 내려 보내 곡식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왕에 제주의 민인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곡식을 제공하다고 끊어버릴 수는 없었다.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경계하는데 하물며 백성의 부모인 임금 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육지의 백성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물며 섬에 사는 백성이야 어떠하겠는가. 일반 백성이 살 곳을 잃는 것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수만 명의 목숨이 끊어질 상황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⁸³⁾ 정조는 제주의 기근이 일종의 밀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듯 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정조는 나리포창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했다. 나리포(오늘의 군산 근처)는 호남과 호서의 경계이므로 호남 연읍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제주의 물건을 나리포에 와서 팔고 이 돈으로 곡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지금 탐라(耽羅)에 진흥하는 일로 인하여 해마다 곡식을 운반하느라 백성과 고을이 모두 수고스럽기 때문에 성상께서는 때면 육지와 섬이 둘 다 편리하게 하는 일에 진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백성을 구제해 살리고자 하면 배를 띄워 곡물을 수송하는 폐해가 자연히 연해읍(沿海邑)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실로 폐단을 바로잡을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면 나리포에서 제주의 물산을 각 읍에 팔고 그 값으로 곡

83) 이상의 내용은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2월 16일(임진)

식을 사서 들여보내는 방법이 있으니, 농사의 풍흉에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 물산을 매매하여 곡식을 돌아가면서 제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나리포창을 호서와 호남의 교계(交界)인 임피현(臨陂縣)에 설치한 것은 당초에 법을 만든 취지가 모두 대단히 치밀하였으나 중간에 폐단이 생겨서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옛 제도를 잘 정비하되 이익이 오로지 제주도 백성에게 돌아가고 폐해가 연해읍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면 당장의 급선무에 부합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웁니다.”⁸⁴⁾

정조는 윤시동이 전라감사와 제주목사를 모두 역임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의 주장대로 섬과 육지를 모두 구제하는 방도로 나리포창의 복구만 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특히 미곡 등의 주식을 주로 호남 등의 육지에 의존하는 제주는 향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다. 아울러 제주민들의 상호 부조야말로 정조의 교화 정책과 깊이 맞물려 있었다.

제주목사 유사모는 장계를 올려 원납(願納) 주민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과 노기(老妓) 만덕(萬德)의 의행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목사 이우현은 곡물 1,251섬을 자비하였고, 이로서 지난 번 굶어 죽은 백성의 수가 많았던 허물을 조금이나마 덮고자 했다. 또 전 제주판관 조경일은 정조 500섬을 자비하였고, 대정 현감 고한록은 각 곡물 603섬을 자비하였으며, 정의 현감 홍상오는 정조 200섬을 자비했다고 보고했다. 유사모는 제주 수령들의 녹봉이 육지보다 박한데 이처럼 스스로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탬이니 이에 대해 치하해줄 것을 요청했다.⁸⁵⁾

사실, 제주에 대한 정조의 통치 의지는 그의 치세 25년간 한결같았다. 이러한 정조의 마음을 영의정 이병모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임금(정조)께서 제주의 백성을 진념하는 것이 육지 백성을 진념하는 것보다 곱절로 더합니다. 재해를 만나면 연읍의 곡물을 총동원하여 물에 빠진 사람이나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하듯이 했습니다.”⁸⁶⁾ 비록 제주민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취지였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에 대한 정조의 애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84)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3월 6일(임자)

85)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6월 6일(경진)

86) 《일성록》 정조 24년 경신(1800) 3월 15일(정묘)

IV. 항심(恒心), 교화와 소민(小民) 자발주의

정조는 당시의 ‘조선’을 한편으로는 말세의 풍속으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문화국가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정조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조선을 문명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고 동방 전체를 소유하여, 팔도로 나누니 주와 군이 별처럼 늘어서고, 사면을 에워싸 진(鎭)과 보(堡)가 바둑알처럼 깔렸다. 경도와 위도가 수천 리를 넘고 승평을 누린 지 수백 년이 되었다. 비옥한 들녘과 기름진 토양은 상마(桑麻)가 절로 넉넉하고, 깊은 숲과 큰 강에는 재물과 보화가 연일 생산된다. 남으로는 균로(筩簾)와 칠사(漆絲)가 풍부하고 북으로는 산삼·녹용·피혁이 산출된다. 산에는 아름답드리 재목이 있고 물에는 수많은 고기가 있다. 백성과 물산의 풍요로움과 풍속과 기질의 문명함은 거의 중국 외부의 국가 중 제일이다.”

물산의 풍부함과 백성의 문명교화가 중국 다음이라는 정조의 인식은 교화에 대한 정조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조는 변방 제주에까지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돌아보건대 우리 조정은 문교(文教)를 돈독히 숭상하여 비록 궁벽(窮僻)한 시골구석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거문고를 타며 글을 외는 즐거움을 잘 알며, 해외(海外)인 탐라(耽羅) 같은 데와 변방인 종성(鍾城) 같은 곳에도 (중략) 오히려 사당을 지어 선현(先賢)의 제사를 받드니, 여기에서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 보살피고 기르신 깊은 인애(仁愛)와 두터운 은택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는 가볍지 않은 지역이었다. 특히 남해의 해안을 방어하는 중진(重鎭)이었다. 이에 정조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이 동래(東萊)나 의주(義州)와 차이가 없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이나 수원(水原)에 비교해 보아도 도리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유독 이 제주목사는 전

조(銓曹)에 위임하고 있으니, 정사의 격식이나 관방(官方)에 모두 근거할 데가 없었다. 이에 정조는 제주목사를 묘당에서 의천하도록 명령했다.⁸⁷⁾

사실 제주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한데다가 향산의 안정이 가능해야 향심도 가능한 것이 문제였다. 정조는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이들을 만나 제주를 소생시키고 교화를 펼치라고 당부하곤 했다. 정조 5년(1781) 2월 정조는 성정각에서 각 지방에 부임하는 지방관을 소견하고, 제주목사 김시구(金蓍耆)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제주는 본래 해도(海島)의 사무가 매우 많은 고을로 평소 폐단이 많았고, 또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니, 그대는 반드시 위무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소생시키는 방도를 삼으라.”한 것이다. 이에 김시구는 “있는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⁸⁸⁾

제주를 교화하려는 정조의 의지는 1800년 춘당대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당시 과거에 응시한 자는 모두 10만 3,579인이었고, 시권을 바친 자는 모두 3만 2,884인에 달했다. 서울이 2,211인, 경기(京畿)가 3,586인, 해서(海西)가 3,111인, 관서(關西)가 3,173인, 호서(湖西)가 6,096인, 관동(關東)이 1,025인, 호남(湖南)이 4,700인, 영남(嶺南)이 5,231인이고, 북관(北關)은 관동의 숫자와 같았으며, 화성(華城)이 368인, 광주(廣州)가 356인, 송도(松都)가 210인, 강도(江都)가 90인, 제주(濟州)가 3인이었다.

당시 제주는 3만 2천여 명의 응시자 가운데 3명에 불과했을 만큼 독서인이 적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100명의 선발 인원 중에, 서울이 10인, 경기가 10인, 해서와 관서가 각각 8인, 호서가 11인, 관동이 7인, 호남과 영남이 각각 11인, 북관이 8인, 화성이 5인, 광주와 송도 및 강도가 각각 3인, 제주가 2인이었다. 3명의 제주 응시자 가운데 2명을 선발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제주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제주는 교화가 필요했고 교화되고 있었다. 부족하지만 제주의 풍속이 바뀌고 있었기에 이들을 더욱 우대할 필요가 있었다.

왕의 분신으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된, 제주의 교화를 담당했던 지방관(제주목사)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했다. 문제는 그동안 지방관의 잘못으로 제주의 풍속은 여전히 오랑캐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정조는 김윤옥(金潤玉)의 적서(嫡庶) 관련한 상언 사건을 계기로 가르치기 전에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자신의 교화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성록》에 기록된 김윤옥 상언 처리과정을 통해 제주의 일부 축첩 풍속과 이에 대한 정조의 교정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정조는 제주의 민인들이 인륜을 밝히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랐다. 노비 고취선이나 만덕, 그리고 의협 양제해 같은 인물들이 그러했다. 이들은 지역공동체

87)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4월 25일(을유)

88)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2월 19일(임술)

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인물들이었다. 정조는 이러한 소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기대했다.⁸⁹⁾ 아울러 정조는 용기있는 재[광자]들의 활약을 희망했다. 정조 치세에 먼 해외로 표류하여 조선이 의로운 나라임을 천명했던 이방익의 용기에 감동한 정조는 특별히 그의 표류기와 의행을 역사로 남기도록 했다.

1. 제주의 축첩(畜妾) 풍속

먼저 정조에게 제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던 만큼 풍속교화도 그만큼 더딘 곳이었다. 이를 깨닫게 된 상언이 1785년 접수되었다. 이해 2월 형조는 제주 김윤옥(金潤玉)의 상언을 보고했다. 김윤옥은 계묘년(1783, 정조 7)에 동종(同宗) 김명헌(金命獻) 등이 혈족의 계통을 족보로 작성해 놓으면 세족(世族)이 영구히 보존된다면서 몰래 속여 자신의 아버지를 ‘서자(庶子)’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완성된 족보를 살펴보다가 이를 발견하고는 분개하여 마침내 ‘서(庶)’자를 삭제하였는데 김명헌이 도리어 ‘서’자 아래의 ‘자(子)’자까지 다 깎아 내버리고 세계 단자(世系單子)를 향중(鄉中)에 발송한 결과, 동종과 영구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문종의 적서 다툼이 족보 작성의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정조는 제주목사로 하여금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했다.⁹⁰⁾ 이후 수개월이 지나 5월 제주목사 엄사만은 저간의 사정을 보고했다.⁹¹⁾

상언을 올린 김윤옥에게는 조부(祖父) 김서경(金瑞鏡)이 있었다. 김서경은 처음에 고씨(高氏)와 혼인했다가 처의 죄를 문제 삼아 내쫓으려고 관아에 정소(呈訴)하여 제사(題辭)를 받은 후 문씨(文氏)와 재혼을 했다. 재혼을 확인하는 혼장(婚狀)이 있었으므로 문씨와 사이에 낳은 자손이 정적(正嫡)으로 자처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다만 문씨와 혼인한 후에도 김서경은 고 씨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으며, 김서경의 부모가 돌아가시자 고 씨는 전례대로 상복을 입었다. 과연 김서경이 전처 고씨를 축출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말하자면, 전처를 축출(黜妻)하지 않은 채 재혼하여 처를 두 명이나 두었던 것이다. 제주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처를 두는 풍속이 조선 시대 내내 이어졌고 이는 조선 정부가 강조하는 일처(一妻) 제

89) 미국의 중국사 연구자 피터 볼은 송대 성리학의 실천운동(자발주의, voluntarism)이아말로 중국 지방 사회 변혁의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성리학자 정조가 이러한 백성들의 자발주의를 기대했다고 본다. 필자는 그동안 성리학의 이념을 지나치게 조선의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로 해석해왔던 일본의 연구동향과 이를 추종하는 한국사연구자들의 입론을 비판하고, 일종의 시민주의 운동의 토대로 성리학의 이념을 재해석한 피터 볼 교수 등 신중국사 연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피터볼, 김영민 역, 2010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90)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2월 11일(신묘)

91)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5월 12일(경신)

도와 충돌했다.

문제는 전처였던 고씨가 죽자 문씨 소생의 아들 김진태(金鎭兌)가 전모(前母)의 상으로 할지 출모(黜母)의 상으로 해야 할지를 관가(官家)에 물었고, 이에 관에서는 고씨에 대한 상복을 ‘출모의 상’으로 해석해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내를 쫓아내고 다시 장가드는 것은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 데도 김서경이 관에 정소하여 제사를 받아 두 명의 처를 둔 일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아울러 관가의 제사(題辭)라 해도 법에 어긋난 처리를 후일의 빙고(憑考)로 삼을 수는 없었다. 애당초 고씨가 쫓겨나게 된 것은 김서경이 사적으로 절연(絶緣)을 고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이미 고씨를 쫓아냈다고 하면서 재혼한 문씨 이외에 고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기까지 하였고 또 시부모의 상에 복(服)을 입게 하였으니 고씨의 입장에서 보면 쫓겨난 것으로 논할 수도 없었다.

이에 제주목사 엄사만은 “한 집안에서 아내 두 명을 거느리고 부양한 것은 김서경의 죄”임을 강조했다. 문제가 복잡하게 된 사연은 전처 고씨가 사망하자, 김서경과 문씨 사이에 나온 김진태가 관에 고한 후 출모복(黜母服)을 입었던 데서 비롯했다. 김진태에게 고씨는 생모는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아버지김서경이 고씨를 쫓아내는 듯했으나 나중에 다시 부양하였으니 ‘전모’라고 해도 될 것인데 이를 감히 출모의 상복으로 대우했다는 사실이 문제였던 것이다.

김진태는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인 고씨를 출모로 대접하고자 관에 호소했던 것이요, 이후 김진태를 적자가 아닌 서자로 만들어 버린 문중인 김명헌의 처리는 이러한 김진태의 처사를 괘씸하게 여겨, 적자가 아닌 첩(문씨)의 자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김진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그 대신 적자에서 서자로 둔갑한 데 대한 억울함을 상언했다.

결국 엄사만은 “바다 밖에 떨어져 있는 제주는 거칠고 궁벽한 곳으로 본래 예절에 맞게 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논외로 두어서는 안 되니 김진태가 관에 호소하여 단상(短喪)을 지낸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보고했다.

김진태가 어머니(고씨)의 상을 출모의 예로 대우한 데 대해 처벌한 후, 김진태를 서자로 둔갑한 데 대해서도 적자로 고쳐주어, 상언을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고씨와 문씨 모두 김서경과의 혼장이 있고 둘 다 처로 호적에 올랐으니 고씨도 처가 되고 문씨도 처가 된다고 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전처와 후처를 논할 것 없이 처의 소생은 당연히 적자가 되므로 김진태를 서자로 수정하여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원(伸冤)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당시 정조는 제주의 풍속을 문제 삼았다.

“아득히 먼 지역이어서 백성의 습속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하였으니 법으로 볼 때 금해야 마땅한데, 더구나 관가에 정소하여 처를 내쫓았고 재취(再娶)를 허락하는 제사를 얻었다. 해당 목사는 금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시행하도록 허락을 하였으니 상법(常法)이 아니고, 뒷날의 폐단에도 관계된다. 해당 목사는 즉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게 하고,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본사에서 초기로 논죄하라. 고씨 여인은 쫓겨났는데 도로 부양하였으니 이 역시 처이고, 문씨 여인은 빙례(聘禮)를 행하고 시집왔으니 이 역시 처이다. 전처와 후처라고 한다면 그래도 맞겠으나 출모와 서모(庶母)라고 일컬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국조(國朝)에는 개가(改嫁)하는 제도가 없으니, 전모의 복제(服制)는 실로 변례(變禮)에 해당한다. 이처럼 예(禮)를 모르는 자에게 변례를 행하매 예법에 맞게 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윤상(倫常)의 일은 풍화(風化)와 관계되므로 거듭 효유(曉諭)하는 데 힘을 써서 섬의 풍속으로 하여금 예방(禮防)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문씨 여인의 아들 김진태는 본래 적실 소생이라 할 수 있는데 예법에 어긋나는 복상(服喪)을 한 죄를 해당 목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징치(懲治)하게 한다면 이는 대체로 미리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셈이다. 의례(疑禮)는 가장 난해하여 예학(禮學)을 하는 자의 논쟁이 그칠 때가 없으니 만약 예경(禮經)을 참고하여 고증한 자료가 아니면 또 장차 어디에서 상고하겠는가. 특별히 《의례문해》와 《예의유집》 각 1질(帙)을 반사하니 본주 목사로 하여금 향교(鄕校)에 보관하게 하여 사민(士民)들로 하여금 익히게 함으로써 조정이 명교(名教)를 부식(扶植)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뜻을 모두 알게 하라.”

정조는 제주의 다처 풍속을 비판하고, 어머니(고씨)의 상복에 출모의 예를 적용한 김진태를 징치하자는 엄사만의 의견을 일축했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조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에 제주목사에게 《의례문해(疑禮問解)》와 《예의유집(禮疑類輯)》을 보내, 향교에 보관하고 사민(士民)들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2. 제주민의 상언(上言)과 소통

족보상의 기재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호소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도는 상언의 활용이었다. 조선은 모든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직접 상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했고 정조는 가장 적극적으로 상언을 취합하고 응대한 왕이었다.⁹²⁾

정조 치세에 가장 많은 상언은 공마와 관련한 문제들이었다. 가령 제주 백성 강주환(姜周煥)은 상언에서, 제주의 산마장(山馬場)을 영구히 준행(遵行)하라는 뜻으로 제주목사에게 관문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정조는 먼 지방을 진정하여 편안하게 해 준다는 뜻에서 강주환의 상언을 받아들였는데, 이처럼 목마(牧馬)와 관련한 폐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제주민들에게 고통이었다.⁹³⁾

제주의 유학(幼學) 양경천(梁擎天)은 제주의 시조 고, 양, 부를 모신 삼성묘(三姓廟)에 사액(賜額)을 해달라는 상언을 올렸다.⁹⁴⁾ 이에 정조는 비변사에 논의를 해보라고 명했고, 수일 후에 비변사는 “제주(濟州)의 유학 양경천(梁擎天)이 상언한 고(高), 부(浮), 양(良)의 삼성묘(三姓廟)에 사액하는 일로 인하여, 하교하신 대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서명선, 좌의정 홍낙성, 영도녕 정존겸, 판부사 이복원이 모두 ‘고, 부, 양 3성은 황량한 탐라(耽羅)를 개척한 사람들이니 다른 원우(院宇)와는 차이가 있고, 또 이 섬 백성들이 그 유택(遺澤)을 그리워하며 묘를 세우고 제사 지내 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글자의 아름다운 편액(扁額)을 반사(頒賜)하시어 일역(一域)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실로 먼 지방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에 합치됩니다.’라고 보고했다.”⁹⁵⁾

정조는 먼 지방의 평안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경천은 고, 부, 양의 순서를 뒤집어 양, 고, 부의 순서로 《탐라지》에 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족들 사이의 알력은 해당 지지(地誌)를 작성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읍지에는 해당 지역 유력 가문의 인사들을 정리하면서 종종 그 서차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에도 고씨와 양씨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던 모양이다.

1786년 제주 유학 고봉정(高鳳禎)은 고(高)·부(夫)·양(良) 세 성(姓)의 차례를 바로잡아 달라고 상언했다. 자신의 시조 고을나(高乙那)는 세 고을의 땅을 다스렸는데 비해 양을나(良乙那)는 그 신하였으며, 부을나(夫乙那)는 백성이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논의대로라면

92) 한상권, 1996 《조선 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93) 《일성록》 정조 4년 경자(1780) 9월 6일(신사), 제주도 마정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남도영, 2001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 박물관.

94)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2월 9일(기축)

95)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2월 12일(임진)

고, 양, 부의 순서가 합당했다. 그런데 후일 양씨의 자손이 관가에 고하지 않고 고·부 양성(兩姓)을 바꾸어 《탐라지(耽羅誌)》에 기재함으로써 역사를 조작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영조 27년(1751) 제주의 고후익(高厚翊)이 상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영조의 하교가 내려졌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조는 제주민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만큼 제주목사에게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명했다.⁹⁶⁾

상언은 제주 지역의 민폐나 갈등 요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도였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백성들은 왕의 통치가 자신들의 먼 지역에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폐단을 지적하고 상언할 것을 허락한 정조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정조는 제주의 풍화를 강조하면서,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이들을 칭송하였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했다.

1786년(정조 10) 9월 제주의 백성 고순창(高順昌)은 경강 사람 최원성(崔元成)의 포상을 촉구했다.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주에서 각사에 진상할 물종을 배에 싣고 운반하다가 충청도 바다에서 침몰할 지경에 놓였는데 이때 경강의 최원성이 구출해 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제주 백성 고순창(高順昌) 등 6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각사(各司)에 진상(進上)하는 물종(物種)을 상납하기 위해서, 윤7월 23일에 본목(本牧)에서 출발하여 8월 26일에 충청도의 식도(息島) 앞바다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 타고 있던 배가 급한 물결에 부서지고 상하여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경강(京江)에 사는 최원성(崔元成)이 타고 있던 배를 만나서, 진상할 물종과 배 안에 있던 6인을 최원성이 힘을 다해 그의 배에 옮겨 실었고, 본선(本船)은 그대로 표실(漂失)되었습니다. 진상할 물종을 폐단 없이 상납하고 선격(船格) 6인이 힘입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최원성이 건져서 구해 준 덕분이니, 별도로 상전(賞典)을 시행해서 격려하고 권장하도록 해 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서유린은 다만, 상언의 내용이 사건사(四件事)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내용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들의 말과 같다면 비록 가당한 일이지만 사건사(四件事)가 아니니 너무도 외람됩니다. 게다가 지방에서 올린 공문(公文)에는 근거할

96)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2월 26일(경자)

만한 것이 없으니, 뱃놈이 부화뇌동하여 간악한 짓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상언을 둘러싸고 백성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정조는 인명을 살린 일이니, 제주목사에게 조금 더 조사해서 가능한 상전을 베풀도록 명했다.⁹⁷⁾ 약간의 욕심이나 위선이 있다해도 소민들이 이와 같은 일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즉 소민의 자발주의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조의 소신이었다.

1790년(정조 14) 제주의 고영관(高榮冠) 등이 병조에 상언했다. 탐라도(耽羅島)는 서북과 본래 차이가 없는데 사로(仕路)에 있어서는 정해 준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병오년(1786, 정조 10) 봄에 무겸(武兼) 김귀택(金貴澤)이 소회(所懷)에서 「서북은 도목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초사(初仕) 한 자리를 붙여 주는데 유독 제주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었고 이후 정조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후 도목정사에서 끝내 제주 출신이 관직에 나아가는 은전을 입지 못했다는 불만이었다. 무관직의 제주의 무인들을 특별히 서용해달라는 요청은 정조 초반부터 계속되었고 고영관은 수년전 김귀택의 상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불만을 진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정 관료들은 관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연 사체(事體)를 모르는 외람된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정조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자, 고영관의 상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고영관의 상언은 제주의 요청에 정조가 귀 기울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였다.⁹⁸⁾

정조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제주의 풍속을 교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설사 약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해도 표창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제주의 민막을 수집하는데 일이라면 소민의 상언은 물론 공사(公私)간의 차이나 전·현직을 가리지 않았다. 현직 제주목사의 장계는 물론 이거니와 전직 제주목사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가령 1789년(정조 13) 11월 정조는 성정각(誠正閣)에서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각신(閣臣) 및 윤대관(輪對官) 등을 소견(召見)했다. 이 자리에는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김익(金燧)·이복원(李福源)·채제공(蔡濟恭), 우의정 김종수(金鍾秀), 검교제학 오재순(吳載純), 원임 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직제학 김희(金熹)·김재찬(金載瓚), 검교직각 서정수(徐鼎修)·정동준(鄭東浚)·정대용(鄭大容)·이만수(李晩秀), 원임 직각 윤행임(尹行任), 대교 김조순(金祖淳)이 입시하였다.

당일 윤대관 박상춘(朴尙春)이 올린 말은 자신의 대정현감 시절의 경험에 근거한 소회였다. 제주의 신역이 고르지 않아 권세와 부가 있는 이들은 이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모든 고역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97)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9월 8일(무인)

98)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2월 14일(을축)

“신이 대정현(大靜縣)을 맡고 있었을 때 가엾게 여길 만한 민폐(民弊)를 목격하였기에 우려러 아뢰입니다. 본 현은 가구 수가 많지 않은 매우 쇠잔한 고을로, 2개의 진보(鎭堡), 3개의 목장(牧場), 6개의 과원(果園), 10개의 연대(煙臺)가 있고 또 포작(鮑作), 산척(山尺), 답한(畓漢) 등 여러 고역(苦役)이 있는데 액수(額數)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경우는 1세부터 거의 모두 역(役)에 충원되고, 노인의 경우는 80세에 이르도록 더러 역을 면하지 못하는데, 또 모자란 액수가 많아서 인족(隣族)에게까지 징수하니, 온 고을이 뒤숭숭하여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본현의 백성 중에 고된 역을 피하고 험한 역에 나아가 명색이 바르지 않은 주역(州役)에 투속(投屬)한 자들이 무려 800여 명에 이르는데, 지금 만약 이 투속한 자들을 떼어 내어 전수(全數)를 대정현에 도로 내줌으로써 여러 고역에 채울 수 있게 한다면, 거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주역에 이미 투속한 자들을 모두 떼어 주기 어렵다면 한결같이 세 읍의 민총(民總)에 의거하여 쇠잔함과 흥성함에 따라 분배하여 바로잡고, 정액의 많고 적음을 다시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본 현이 반드시 치우치게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답한은 거처가 경작지에 있는 뒤라야 논을 일구어 미(米)를 납부할 수 있는데, 거처가 본 현에 있으면서 제주와 정의(旌義)의 답한에 채워진 자로서 더러 집과의 거리가 무려 4, 5십 리나 100여 리나 될 정도로 먼 자들이 거의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폐단을 엄히 신칙하여 변통하도록 하지 않으면 본 현은 장차 고을도 없고 백성도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시 정조는 여러 신하들에게 해법을 물었지만 대부분은 제주목사에게 실상을 조사하도록 한 후 대처하자는 논의에 불과했다. 정조는 “매우 괴로운 폐단인 줄을 알겠다. 듣기에 매우 가여우니, 기어코 좋은 쪽으로 바로잡도록 하라.”고 요청했다.⁹⁹⁾ 하지만 폐단은 정조의 지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1791년(정조 15) 2월 제주목사 이홍운(李鴻運)은 제주의 여섯 가지 민폐를 보고했다.¹⁰⁰⁾ 정조는 이른바 여섯 가지 고역(苦役)의 폐단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이에 즉위 초에

99) 《일성록》 정조 13년 기유(1789) 11월 1일(계미)

100) 《일성록》 정조 15년 신해(1791) 2월 20일(을축). 이홍운이 나열한 제주의 주요 폐단 즉 첫째 목자(牧子)들이 말을 몰아서 말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통, 둘째는 어포(魚鮑)를 떠서 말려 바치는 것, 셋째는 둔전(屯田)에 대한 일, 넷째는 지장(紙匠)의 문제, 다섯째 선격(船格)에 대한 일이고, 여섯째는 유군(遺軍)에 대한 문제, 일곱째 배번(排番)을 헤아려 감해 주는 일과 교원생(校院生)은 원래 정해진 수 외에는 모두 태거하는 것에 대한 일 등은, 사실상 전

대전복(大全復)의 공납을 면제해 주었고, 몇 해 전에는 또 어느 정도 폐단을 막고 폐막을 바로잡는 일을 시행하였으나 사실상 전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조는 이 흥운의 장계를 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난다고 고백했다.

“장본을 살펴보니, 그 고역은 여전하고 그 고통은 더욱 심해져서 위에서는 공역을 덜어 준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아래에서는 실제로 은혜를 입지 못한 채 덧없이 세월만 흘러보내고 멀리서 남의 일 보듯 해서 바다 바깥의 백성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호소할 길이 없게 하였으니,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⁰¹⁾

이처럼 제주의 민폐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폐단을 탐문하고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조는 어떻게든 <제주의 사정>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소민들로부터 그리고 전직과 현직의 관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폐단을 알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하면서도 이를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던 정조의 의지 그것은 제주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이를 대면하려는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다.

3. 탐라의 빈흥(賓興)과 인재 선발

정조는 제주의 교화를 강조했고, 이는 제주인에 대한 특전으로 나타났다. 가령, 1782년 성정각에서 치러진 문과 시험에서 “제주 유생으로 부(賦)에서 삼중(三中)을 받은 유학(幼學) 김용(金壙)과 삼하(三下)를 받은 통덕랑 변경우(邊景祐), 유학(幼學) 강성익(康聖翊)을 모두 직부 전시하도록 했다.¹⁰²⁾ 아울러 1783년 춘당대(春塘臺)에서 시행된 무과 시험 결과, 무과전시를 통과한 제주인은 30명 가운데 6인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제주로 돌아갈 판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이들에게 특별 기회를 제시했다. 하루의 말미를 준 후 병서 한권이라도 암송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 무과 합격을 허락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연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오래된 적폐였다.

101) 《일성록》 정조 15년 신해(1791) 2월 18일(계해)

102) 《일성록》 정조 6년 임인(1782) 1월 12일(기유)

“아득히 먼 해도(海島) 사람이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왔는데, 이번에 입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7기(技) 중에 아직 3기가 남았는데 너희들이 잘하는 것은 어떤 기예인가?” 하니, 거자들이 각각 잘하는 기예를 말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들은 병서(兵書)를 제대로 읽었느냐?” 하니, 거자들 중에 4, 5인 외에는 모두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해가 아직 정오가 안 되었으니 해가 질 때까지 힘써 배운다면 1편은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이 병서를 충분히 익혔으니 너희들은 가서 배우고 마지막 차서에 진강(進講)하라.”¹⁰³⁾

제주의 먼 섬에서 파도를 넘어 서울에 시험을 치러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들이 “부질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어찌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겠는가.”¹⁰⁴⁾

이해 치러진 문무과 시험에서 제주출신의 문과 합격자는 3명, 무과는 30명이 모두 합격했다. 정조는 문과(文科) 출신(出身)을 6품직에 서용하도록 하고, 무과(武科) 출신은 서북(西北)의 예에 따라 직임을 맡기도록 했다. 서북지역의 민심을 진정시키는 방도를 제주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서북의 도과(道科) 때 문과 출신으로 상경한 자를 특별히 출륙(出六)하여 조용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먼 지역의 사람을 진정시키는 뜻이었다. 더구나 탐라는 먼 지역이니 조정에서 생각해 주는 방도에 있어 어찌 양도(兩道)의 전례를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주의 문과 출신인 변경우(邊景祐), 김용(金壩), 강성익(康聖翊)을 모두 해조로 하여금 6품에 천전(遷轉)하게 해서 낭서(郎署)의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하게 하라. 무과 출신 30인도 서북의 예에 따라 병조와 각영(各營)으로 하여금 수용한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¹⁰⁵⁾

변경우, 김용, 강성익 등은 정조대 서용된 대표적인 제주인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퇴직 후에도 제주의 민폐를 적극적으로 상소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이처럼 정조는 제주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이들 역시 정조의 파격적인 대우에 호응하여 제주 지역의 각종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변경우는 제주에 사창을 설치하자는 논의를 주도했으며,¹⁰⁶⁾ 강성익은

103)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4월 20일(경진)

104)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4월 24일(갑신)

105)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4월 26일(병술)

106)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건릉) 8월 15일(계사)

제주에 별고(別庫)를 설치하여 기근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제주에 흉년이 자주 들기 때문에 연읍(沿邑)에서 곡식을 수송해 오는 폐단을 근심하여 비국에서 본주에 관문(關文)을 보내 창고를 설치하고 곡식을 거두어 흉년에 미리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목사가 곡식 수천 섬을 마련하여 별고(別庫)를 신설하고 세 고을에 나누어 두어 섬의 백성을 위한 구황책(救荒策)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본주는 봄부터 가을까지 축축한 바람이 불고 장기(瘴氣) 서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촌가의 방 안에 향아리며 자루 속에 놓아둔 곡식이라도 몇 년이 되지 않아 썩어 곰팡이가 생기므로 손만 대면 가루가 되어 끝내 먹지 못할 물건이 되고 맙니다. 옛날부터 섬 안에 곡식을 많이 저축해 두지 않아서 흉년이 들 때마다 쌀을 사들일 데가 없었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허물며 흙으로 쌓은 창고에 쌓아 둔 곡식이 장마를 겪어도 상하지 않고 여러 해를 넘겨도 썩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무지한 섬의 백성들은 모두 ‘앞으로 진흙 정사는 이 창고만 의지할 뿐 곡식을 옮겨 오는 문제는 그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으니,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장차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고, 이구동성으로 그 제도가 불편하다고 다투어 말합니다. 하지만 신은 삼가 생각건대, 새로 설치한 창고에 저축해 둔 곡식을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변통하되 매년 환곡으로 운용하는 다른 곡물 가운데 정실(精實)한 것을 골라 새 창고의 것과 바꾸어서 1년에 한 차례씩 개색(改色)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 다 온전하여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정조는 제주에서 이처럼 절실하게 민폐를 아뢴데 대해 가상하다고 칭찬했다.¹⁰⁷⁾ 변경우는 중앙의 관료를 역임하고 제주에 귀향하여 말년에 정의현감을 맡기도 했다.¹⁰⁸⁾

한편, 1790년(정조 14) 9월 정조는 무과(武科) 초시에 입격한 제주인들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허락했다. 전라 병사 이장한(李章漢)이 무과 초시에 입격한 제주인 한량(閑良) 홍범서(洪範瑞)·홍여직(洪汝直)·한계휴(韓繼休) 등의 명단을 보고하자, 이들에 대해 “멀리 큰 바다를 건너 시험 기일에 제대로 맞추어 온 것이 매우 기특하고 기쁘다. 입격자가 세 사람에게 불과하니 다시 회시(會試)를 보게 할 것이 뭐 있겠는가. 모두 직부전시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¹⁰⁹⁾

107) 《일성록》 정조 24년 경신(1800) 윤4월 26일(무인)

108) 《일성록》 순조 5년 을축(1805, 가경) 12월 28일(정미)

109)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9월 11일(무자)

수년이 지난 1794년 제주의 진흥 상황을 파악하고 제주의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제주어사 심낙수는 제주의 다양한 문제들을 탐문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어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심낙수의 해안이 돋보이는 것은 제주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요충지>로 파악했다는 사실이다.¹¹⁰⁾ 심낙수는 제주를 호남의 울타리로 파악했다. 제주도야말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바다의 길목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5, 6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근거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가 외적들과 반란이라도 도모한다면 큰 낭패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대판(大坂), 강호(江戶), 복건(福建), 강남(江南)은, 제주도가 그 사이에 끼여 있으므로 동쪽이나 서쪽에서 순풍(順風)을 만나면 돛을 한 번 올려 5, 6일 만에 닿는 거리에 불과합니다. 고려(高麗) 때 삼별초(三別抄)가 반란을 일으켜 이 섬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김방경(金方慶)이 토벌하러 오다가 바다 가운데서 바람을 만나자 크게 탄식하기를, ‘국가의 안위가 이 한 번의 조치에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김방경은 드물게 보는 명장(名將)으로서, 작은 섬에서 일시적으로 반역한 역적들을 조만간에 섬멸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의 안위가 이 한 번의 조치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한 것은 역적들이 외국과 연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심낙수는 임진왜란 당시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호남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모두 호남이 제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진술했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국가가 중흥(中興)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힘 때문이었고 호남이 안전했던 것은 이 섬에 힘입어서 다행히 왜적과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령을 가려 임명할 때면 대부분 지략이 있는 무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점차 무능한 문관들이 제주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그저 착취에 몰두하니 이들은 제주의 미역과 피혁(皮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장사꾼처럼 이익을 남겼을 뿐이요, 이에 제주의 백성들은 수령을 대할 때면 항상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110)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3월 8일(을미)

혹자는 제주는 석벽(石壁)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라 외적을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지만, 심낙수는 화북포(禾北浦)와 조천포(朝天浦)의 밖에 있는 수산포(水山浦), 서귀포(西歸浦), 모슬포(慕瑟浦), 명월포(明月浦) 등은 평평한 항구나 모래섬이 있어서 큰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제주를 탐방했을 때 조사해본 결과, 해마다 바람이 잔잔할 때면 거대한 배가 우도(牛島) 등 2, 3리 사이에 닻줄을 내리고 물을 길는 것을 번번이 보았으며, 이러한 이양선들은 비변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낙수는 관북의 10개 고을 중에 회령(會寧)이 상당히 정비되어 있고 침탈의 폐단도 적은데, 이는 모두 지방관의 수령의 신분과 명망이 상당히 높아서 관료로서의 앞 길을 스스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 역시 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회령보다 더 중하므로, 제주목에 명망에 걸맞은 무신을 가려 차임하여 보내고 두 읍에도 앞길이 유망한 젊은 무신을 쓴다면 이상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상소했다.

어사 심낙수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재의 선발이었다. 제주의 민인들을 서북민에 대한 우대책만큼 대우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었다. 1793년 11월 심낙수가 제주에 내려가진 전에 병조는 무과 시험의 규칙과 사목을 준비했다.

무과합격의 기준은 철전(鐵箭), 유엽전(柳葉箭), 기추(騎蓆), 조총(鳥銃)으로 낙점하고, 이어서 철전은 2발을 90보(步) 쏘는 것으로, 유엽전은 5발을 쏘아 1순(巡)에 120보에서 2발을 맞히는 것으로, 기추는 1차에 2개를 맞히는 것으로, 조총은 3발을 쏘아 1순에 2분(分)이상을 얻는 것으로 하여, 2기(技)를 취하도록 했다. 당시 마련된 구체적인 시험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1. 본주의 중군 이하 출신, 장관(將官), 군관, 무학(武學), 업무(業武), 한량 등을 전례대로 모두 시취한다. 그러나 중군과 군관 중에 서울에서 데리고 간 자는 시취하지 못한다.
1. 각종 군병은 양인(良人)과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모두 시취할 수 있다.
1. 시재할 때의 차비관은 본주의 판관과 두 고을의 수령으로 차정(差定)하되 만약 부족하면 본주에 사는 무변으로 차정한다.
1. 시재할 때에는 어사의 주관으로 설행한다.
1. 시장(試場)의 여러 가지 기구는 본주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한다.
1. 시재에 응할 사람들의 역(役)과 성명을 본주로 하여금 성책(成冊)에 상세히 써서 올리게 하여 난잡한 폐단이 없도록 한다.
1. 유엽전은 과녁의 길이를 6자 6치로, 너비를 4자 6치로 하고, 관(貫)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과녁의 길이와 너비의 3분의 1로 한다. 조총은 과녁의

길이를 7자로, 너비를 2자로 하고, 관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과녁의 길이와 너비의 3분의 1로 하되, -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쓴다. - 모두 두 곳에 배설(排設)한다.

1. 누수통(漏水桶)은 본조에 있는 것을 내려보낸다.

1. 철전 100개를 균기시로 하여금 실어 보내게 한다.¹¹¹⁾

당시 무사의 시재는 한마디로 대성황이었다. 장관(將官), 출신, 한량, 군병(軍兵), 공천(公賤), 사천(私賤)을 막론하고 시험에 응시한 이들의 수가 무려 1,558명에 달했다. 시관(試官)은 어사(御史) 심낙수와 정의현감 남속(南涑) 그리고 제주 판관 홍이조(洪履祚)였으며, 합격자는 48명이었다.¹¹²⁾

한량 홍범익(洪範翼)은 육량(六兩)에서 첫 번째 화살이 110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105보에 이르렀으며, 기추(騎蓐)에서 3개를 맞혔다. 김응복(金應福)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10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8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3개를 맞혔다. 고우태(高遇泰)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9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7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3개를 맞혔다. 백운장(白雲嶂)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8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3개를 맞혔다. 서종련(徐宗連)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5보에 이르렀고, 기추에서 3개를 맞혔다. 강제보(姜齊寶)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4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3개를 맞혔다. 한처대(韓處大)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4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3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3개를 맞혔다. 이상 7인은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한편, 한량 정의교(鄭義喬)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4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유엽전에서 2발을 맞혔다. 이광엽(李光燁)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3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2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과 변에 각각 1발씩을 맞혔다. 장한택(張漢宅)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5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한천대(韓天大)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3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신광복(申光福)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3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신흥(愼弘)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2보에 이르렀으며, 유엽전에서 2발을 맞혔다. 한익유(韓益有)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2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3보에 이르렀으며, 유엽전에서 2발을 맞혔다. 백순태(白順泰)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9

111)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11월 22일(신해)

112)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3월 2일(기축)

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안잠(安岑)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8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성대협(成大協)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8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진영후(秦永後)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조광진(趙光震)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홍응주(洪應疇)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2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강위상(姜渭尙)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홍창휘(洪昌輝)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박창해(朴昌海)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2보에 이르렀고,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양중욱(梁重旭)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3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김덕귀(金德貴)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2보에 이르렀고, 유엽전에서 2발을 맞혔다. 문귀방(文貴芳)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2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김종삼(金重三)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4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이동창(李東彰)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기추에서 2개를 맞혔다. 오광호(吳光豪)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2발을 맞혔다. 부몽필(夫夢弼)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4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2발을 맞혔다. 이상은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한량 이동엽(李東燁)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9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강이태(姜利泰)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고익빈(高益贄)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8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10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강필방(姜弼芳)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고한규(高漢奎)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6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장익빈(張益彬)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9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이광눌(李光訥)은 기추에서 2개를 맞히고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통덕랑(通德郎) 김종집(金鍾輯)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100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5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한량 장한필(張漢

彌)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박수병(朴秀秉)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이 90보에 이르렀고 두 번째 화살이 92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정세기(鄭世機)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이동신(李東新)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강덕의(姜德義)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으며,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김응채(金應采)는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김정순(金鼎順)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김시철(金始喆)은 육량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모두 90보에 이르렀고,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다. 이상은 각각 궁대와 동개 1부를 사급하도록 했다.

당시 문과 시험 역시 성대하게 치러졌다.¹¹³⁾ 3일 연속 시장(試場)을 열었는데, 첫째 날은 195인이 입문(入門)하여 시(詩)와 부(賦) 시권(試券) 54장을 거두었고, 둘째 날은 97인이 입문하여 명(銘)과 송(頌) 시권 59장을 거두었고, 셋째 날은 65인이 입문하여 논(論) 시권 36장을 거두었고 책(策) 시권은 3장만 거두었다. 제주의 학문하는 이들은 거의 모두 참여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정조는 심낙수가 제주 내려갈 때에 논, 책, 시, 부, 명, 송 등 각 시제를 준비하도록 하여 제주의 식자들을 많이 시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람을 등용할 길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먼 지방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강조한 정조는 제주와 같이 천리의 바다 건너는 비록 재능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해도 조정의 관료로 능력을 보일 기회가 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다양한 문체(文體)로 시험을 보인결과 상당히 흡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조가 항상 강조하여 말한, 인재는 지역의 멀고 가까운 것, 신분의 고하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제주가 증명하고 있었다.

당시 논에서 수석을 차지한 대정(大靜)의 유학(幼學) 변경봉(邊景鵬)은 우여곡절 끝에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책에서 수석을 차지한 정의(旌義)의 유학 부종인(夫宗仁), 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정의의 유학 고명학(高鳴鶴), 부에서 수석을 차지한 제주의 유학 홍달훈(洪達勳), 명에서 수석을 차지한 제주의 유학 이태상(李台祥), 송에서 수석을 차지한 제주의 유학 정태언(鄭泰彦)에게는 모두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종이, 붓, 먹을 갖추어 선물로 주어 격려했다.

113)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4월 21일(정축)

〈표 1〉 탐라 빈흥시 합격자 명단

姓名	生年	字	貫鄉	父名	居住	年 榜	
변경봉	갑자	萬里	原州	聖林	대정	乙卯式年(정조 19년, 1795)	丙科
부종인	정해	子讓	濟州	道勛	정의	을묘식년 " " "	"
고명학	기축	子和	濟州	天柱	정의	을묘식년 " " "	"
홍달훈	병자	汝浩	南陽	秀澤	제주	을묘식년 " " "	"
이태상	병자	君弼	古阜	最新	제주	을묘식년 " " "	"
정태언	갑자	-	東萊	錫祿	제주	戊午親臨(정조 22년, 1798)	"

당시 정조가 제주의 인재를 시취하려는 의지는 《탐라빈흥록》으로 전하고 있다. 정조의 탕평책은 노론과 남인, 소론과 북인 등 당파를 넘어선 관료의 등용에 머물지 않았다. 사실 상 정조의 탕평에서 인재 탕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정조는 서북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제주의 인재를 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했다. 현재 전하는 《탐라빈흥록》은 이러한 정조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이다.¹¹⁴⁾ 당시 정조의 책문은 제주의 역사와 조선의 중요한 변방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가하면, 〈논〉의 시제를 통해 제주의 호연지기를 시험하고 있었다.¹¹⁵⁾

먼저 〈논〉의 시제는 《맹자》 〈진심 상(盡心上)〉의 “바다를 구경한 자에게는 물이 되기 어렵다.[觀於海者 難爲水]”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었다.¹¹⁶⁾ 이른바 ‘난위수’의 기상을 강조한 제목으로 드넓은 바다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지간한 물은 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주의 너른 바다를 항상 보고 자란 제주의 문인들의 호쾌한 기상을 기대한 제목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조는 의협이나 용기있는 광자들을 좋아했다. 그가 평안도의 성질이 직선적이기에 좋아한다는 바로 그 의미였다. 따라서 답안지를 보고 제주의 호연지기를 드러낼만한 의협을 선발하려던 것이다.

변경봉이 〈논〉으로 합격했지만, 답안지는 정조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물의 물리(物理)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시재의 취지였던 〈바다를 보고 자란 호방한 의지〉를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 삼하(三下)의 성적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

114) 이하 서술은 고창석 역주, 2013 《(譯解) 耽羅實興錄》, 제주교육박물관 참조.

115) 《弘齋全書》 권51 책문4 〈탐라(耽羅):제주 세 고을 유생들의 시취(試取)〉 ○ 갑인년(1794)

116) 《맹자》의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 보고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가 보고 천하를 작게 여겼다. 그러므로 바다를 구경한 자에게는 물이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유학한 자에게는 좋은 말 되기가 어려운 법이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

아, 바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물건이어서, 고래나 봉새 같은 큰 것과 새우나 게와 같은 작은 것까지도 모두 받아들여 의지해 살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경봉은 넓은 바다의 덕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이를 정조의 제주도를 품어 안으려는 도량에 빗대었다. 이어서 그는 “옛날에 공자께서 노나라의 동산(東山)에 올라가셔서 는 노(魯) 나라를 작다고 여기셨고, 태산(泰山)에 올라가셔서 는 천하를 작다고 여기셨습니다. 부자(夫子)의 시야는 한결 같으나 앞뒤가 같지 않는 것은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야는 더욱 더 멀어지는 데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물에 대해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축자해석을 가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고 바다를 본 사람에게 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이를 “이것은 제왕(帝王)의 시야가 끝이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고 가지를 보면 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태산과 바다를 왕의 지혜로 칭송했다. 실로 제주인의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호연지기를 바라던 정조에게 변경봉은 지나치게 왕의 덕망을 높이는 쪽으로만 생각이 머물렀다. 결국 왕의 덕을 계속 논하다가 는 끝맺음이 불경스러워질 수 있었기에 변경봉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차라리 큰 바다를 보다가 그 바다에 도달하지는 못할지언정 한 줄기의 물로 글의 깊은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왕의 가없는 지혜와 덕성을 논할 수 없다고 마무리 짓고 말았다. 출제의 의도와는 좀 다른 답안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의 답안은 부족했지만 글씨와 풍채의 훌륭함을 보고 정조는 변경봉을 조정의 낮은 관직으로 불러 들였다.

한편, 정조는 탐라의 역사를 논하는 책문을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제주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역사와 문헌에 밝은 지 시험했다.

왕은 말하노라. 아, 그대 제주의 제생아. 그대 제생이 생장한 땅은 옛날 구한(九韓)의 하나인 동방 영주(瀛洲)가 이곳이다. (중략) 지역이 구분된 차례와 풍속의 순박하고 경박함과 연혁의 유래와 수륙의 알맞은 풍토에 대해서는 그대 제생이 이 고을에서 태어났고 이 고을에서 성장하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자연히 듣는 것도 아는 것도 많을 것이다. 내가 이 고을에 대해 알고 싶는데 그대 제생이 아니면 누구에게 들겠느냐.

정조는 제주의 문사들에게 제주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정보를 물었다. 제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 지역의 역사를 잘 알겠는가? 제주의 지식인 가운데 고사와 문헌에 해박한 인물이 있다면 천거해 등용하려는 마음이었다.

오직 우리 국가는 성신(聖神)이 계승하여 방패와 깃털로 왕정에서 춤을 추면 문덕(文德)이 멀리 파급되어 해 뜨는 바닷가에까지 따르지 않는 곳이 없다. 옛날 우리 태종 초년에 탐라국에서 국빈으로 방문하여 관작의 호칭을 고쳐 주기를 청하여 성주(星主)와 왕자를 좌우 도지관(左右都知管)으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제도가 차츰 갖추어지게 되었다. 동도와 서도에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을 두어 목사(牧使)는 절제사를 겸하게 하고 판관(判官)은 감목도위(監牧都尉)를 겸하게 하였으며, 심약(審藥)과 왜학(倭學)과 역학(譯學)을 각각 갖추어 직책을 분장한 것은 모두 국내와 같이 관리하게 하였다. 흉년이 들면 바람과 파도를 무릅쓰고 곡식을 싣고 가 먹이고 공물이 도착하면 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따스한 은혜를 한층 더해 주니, 열성조의 먼 곳을 회유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진 혜택을 온 섬 안에서 잊지 않고 입에 담아 노래하고 칭송한 지 몇 백 년이 되었다.

선초부터 조선의 선왕들은 제주의 통치체제를 구비했고,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주었고 공물을 바치면 솜옷을 나누어주었다. 이제 정조는 자신이 통치하면서 선왕들의 훌륭한 정치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근래 흉수와 가뭄 등 재난이 제주에 빈번하여 백성들을 생각할수록 자신의 몸이 병든 것 같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부덕한 내가 계통을 이어받았으니 선대 제왕의 현장을 따라 이 백성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일에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구중궁궐이 깊어서 숨은 폐단을 진달하지 못하지나 않은지, 백성의 무리가 많아서 혜택이 두루 미치지 못하지나 않은지, 관리들이 잘못하고 있지나 않은지, 사물의 곡절이 불리하지나 않은지를 늘 두려워하고 있다. (중략) 근년 이래로는 흉수와 가뭄이 번갈아 겹치고 흉년이 자주 드니 남방에 대한 염려가 마치 몸에 질병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정조는 제주의 구체적인 역사 문제를 제주의 유생들이 고증하기 바랐다. 먼저,

1. 첫째, 고을 이름을 탐라라고 한 것은 대체로 탐진(耽津)에 정박하여 신라에 조회한 것으

- 로 인하였다고 하는데, 혹 탁라(毛羅)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탐모라(耽牟羅)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취한 뜻이나?
2. 둘째, 고씨(高氏)는 성주(星主)를 세습하고 양씨(梁氏)는 왕자를 세습하였다. 문창우(文昌佑)가 왕자의 작호를 얻었는데 기록에는 양씨를 계승한 왕자를 고씨를 계승한 것으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른바 제주의 고, 량, 부와 양, 고, 부의 순서를 두고 제 종족이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 사인들의 해석과 고증은 어떠한지 물었다.
3. 셋째, 제주의 공물에 대한 고증이였다. 예실불(芮悉弗)이 북위 세조에게 고하기를, “황금은 부여(夫餘)에서 생산되고 진주[瑤璠]는 제주[섭라(涉羅)]에서 생산되는데, 백제(百濟)에 합병되고 나서 두 물품이 왕부에 오르지 않는다.”고 한 바 있는데 과연 섭라가 바로 탐라인가?
또 탐라적[塔羅赤]은 원 나라 사신인데, 그가 소·말·낙타·당나귀·양 등을 싣고 와서 수산평(首山坪)에 방목했다는데 지금도 낙타와 양의 종자가 있느냐?
4. 넷째, 또는 달로화적부[達魯花赤府]는 어떻게 먼 곳에 있는 중국(中國)에서 관할하였으며 군민안무부(軍民安撫府)는 어떻게 고려에 예속되었는가,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5. 다섯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예로부터 삼성혈(三姓穴)이 전해 오고,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곡식과 종자와 처녀를 보내왔다는 설이 있다. 혹 지금까지 석함(石函)의 자취가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여섯째, 아막(阿慕)과 양 도의 설치는 그 본말을 자세히 고증할 수 있는가?
7. 일곱째, 은하수를 잡을 듯하여 진산(鎭山·한라산)이라 했으니 이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현인[神人]은 몇 사람이나 되느냐? 질푸른 바다가 끝이 없고 암벽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바닷속 신기한 생물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이하 한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여, “그대 제생은 듣고 본 것을 모두 말하여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는 나의 뜻에 보답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정조는 제주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다양한 바다의 물산에 대한 지식을 ‘고증’하도록 했다. 당시 합격했던 유학(幼學) 부종인(夫宗仁)의 답지는 제주 지식인의 수준을 잘 드러내 보였다.¹¹⁷⁾ 부종인은 정조의 큰 덕을 칭송하는 말로 시작했다. “아, 탐라는 천리 밖의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전하께서 먼 지방 사람들을 보살피는 교화를 특별히 입어왔습니다. 인재를 찾

117) 《탐라빈흥록》 97~104쪽

아내고 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년 어사를 파견하였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형벌을 신중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방 관리들을 신칙(申飭)하였습니다 기근을 알리면 배로 곡식을 실어다 먹였고, 토산물을 바치면 식량을 주어서 보내었기 때문에 나라에는 자주 풍년이 드는 상서로움이 있었고 백성들은 굶어 죽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만백성을 안정시킨 성주(成周, 주나라의 전성기)의 교화와 사방에 미친 당요(唐堯, 요순의 치세)의 덕화(德化)를 천백 대(代) 뒤에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늘과 땅, 해와 달의 밝음이 아니고서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종인은 정조의 통치가 요순의 정치를 이어받았다는 찬사를 글의 모두에 장황하게 쓰는 데 머물고 말았다.

사실 정조는 문헌에 밝은 데다 제주의 역사와 지리를 두루 꿰고 있는 해박한 실학자를 원했다. 부종인의 실력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스스로 겸손하게 “신은 절역(絕域)에서 태어나고 초가 집 지붕 밑에서 자랐습니다. 온 하늘의 은택이 남녘에 미치는 덕화에 설사 젖어 있었다고 하지마는 천 리나 되는 큰 바다가 오랫동안 북학(北學, 육지로 유학)의 길을 막았으니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고 견문이 천박하여 전하의 두터운 신망(信望)에 부응하여 전하의 밝은 뜻을 받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면서 제주의 문헌이 부족하고, 본인 역시 견문이 짧아 정조의 취지에 걸맞은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밝은 명덕(明德)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믿고 답변을 서술하겠다고 말했다. “뒤편한 성품은 현명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다 일치하므로 어찌 지역의 멀고 가까움과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타고난 성품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회를 얻었으니 자신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제주의 역사를 고증한 내용은 정조의 책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탐라의 이름에 대한 고증 역시 상식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신은 견문이 천박하고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 어찌 고사(故事)를 알아서 전하의 하문(下問)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탐라라 한 것은 대체로 삼고(三高, 고을나의 세 명의 후손)가 탐진(耽津, 강진)에 정착하여 신라에 조회하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부종인은 스스로 제대로 된 답안을 쓰지 못하자, 곧 역사의 고증보다는 현재의 제주문제를 논하겠다고 밝혔다.

신은 청하건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그만두고 현 세대의 할 일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략) 가만히 옆드려 생각하건대, 탐라는 궁벽하게 바다 가운데 위치하여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풍속은 어리석고 거리가 멍니다. (중략) 백성들의 고통과 고을의 폐해는 오직 수령들의 장부(臧否; 善惡)에 달려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관리가 현명하면 교체가 줄어들어 공덕이 널리 퍼지고, 도구가 예리하면 힘을 적게 쓰면서도 효과는 크다.”고 했습니

다. 예전에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교화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종인은 제주의 고통을 덜고 교화를 감당할만한 지방관의 선발을 강조했다. 지방관으로서 책임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제주에 부임하는 지방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아닐 수 없었는데, 사실 조선시대 지방의 사인들은 직접 관할 지방관을 비판할 수 없었다. 처벌받을만한 일이었지만 도리어 부종인은 용기를 내었다.

그는 최근 이어지는 기근으로 백성과 만물이 쇠잔하고 피해를 겪은 오직 천시(天時)가 불리한데 있을 뿐이요, 지방관이나 왕의 탓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도리요, 인간은 퇴폐한 정치를 개혁할 따름이었다. 이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주의 지방관에 청렴한 현자를 부임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퇴폐한 정사는 마땅히 개혁하고 이로운 일은 마땅히 일으키며, 백성들이 하고자하는 바는 반드시 좃게 하고 백성들이 곤궁해 하는 바는 반드시 펴게 하는 것도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일을 맡기거나 시키는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면, 백성들이 안도하고 온갖 물품이 모두 넉넉하여 우리 전하께서 남쪽 지방을 돌아보는 생각(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전하의 물음에 따라 다시 진술하고자 청하옵니다. 기강과 명분이란 것은 나라의 대전(大典)이요 백성을 다스리는 급선무입니다. 지역은 멀고 가까움이 없이 왕의 땅 아닌 것이 없고, 사람은 현명하고 우매함이 없이 왕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습니다. 어찌 왕의 신하가 왕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왕법(王法)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기강과 명분이 무너지는 것은 이곳보다 지나친 곳이 없습니다. 만일 지금에 이르러서 펼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¹¹⁸⁾

당시 제주의 역사와 지리를 고증하라는 책문의 답변치고는 부종인의 답안지는 제주지방관의 문제를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조는 부종인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고 그를 합격시켰다. 변경봉과 부종인 모두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정조의 제주에 대한 특혜를 받은 것이다. 1794년(정조 18) 5월 정조는 중희당(重熙堂)에서 예조 판서 민중현(閔鍾顯)을 소견하면서, 탐라의 과거 시험 결과에 만족해했다. 정조는 민중현을 불러 《탐라빈흥

118) 이상은 《역해 탐라빈흥록》 pp.80-104 참조.

록(耽羅賓興錄))을 보았는지 묻고 “각 문체(文體)마다 틀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송(頌)과 부(賦)는 잘 지었다”고 말했다. 먼 바다 밖의 제주의 유생들이 이처럼 잘 지었으니 가상할 따름이라고 칭찬한 것이다.¹¹⁹⁾ 물론 논과 책 보다는 송과 부의 평가가 높았던 것은 당연했다.

어쨌든 기근의 어려움 속에 치러진 과거시험과 정조의 인재 등용 정책을 두고 당시 제주 인들은 상당히 흡족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탐라에서 과거가 실시된 후로 갑인년(1794)만큼 성대한 적은 없었다. 등과한 사람이 모두 7인인데 고씨와 부씨가 합격했고, 나머지 사람들 역시 고, 양, 부 3성과 중복되는 인척이니 삼성혈에서 여러 용들이 하늘로 오르는 꿈이 어찌 거짓 조짐이겠는가?¹²⁰⁾

4. 교화의 증거, 소민들의 의행(義行)

4-1. 인륜의 구현자

당시 제주에 어사로 파견되었던 심낙수는 일 처리가 분명하여 정조의 신뢰를 받았고 곧 제주목사에 임명되었다. 심낙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주목사를 사직했지만 정조의 의지는 매우 분명했다. 이후 목사로 부임했던 심낙수는 매우 적극적으로 제주의 상황을 보고했다. 당시 정조는 “누가 천리나 멀리 떨어진 지역인 데다가 바다까지 가로막혔다고 하겠는가. 여러 장의 장계 내용을 살펴보니, 섬 안의 일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¹²¹⁾고 칭찬했다.

이처럼 심낙수는 정조의 명을 충실하게 거행했다.¹²²⁾ 정조는 과거 시험에서 제주의 식자와 무인들을 우대하여 선발하는 일 외에도 제주 소민들에 대해 격려할 방도를 찾았다. 심낙수에게 내려진 어명 가운데 하나는 총·효·열의 증거를 찾아 표창하는 일이었다.

이른바 성리학 교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과 효 그리고 열부의 사례를 찾으려 한 것이다. 심낙수는 별단의 첫머리에 “신이 왕명을 받든 이후로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행하였으나, 재주와 식견이 부족하여 성상의 뜻을 잘 알아차려서 실행할 수가 없었습

119)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5월 4일(경인)

120) 《변경봉문집》 p.63

121)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5월 12일(무술)

122) 이하 심낙수의 장계와 정조의 전교는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4월 22일(무인)

니다.”라고 적어, 본인이 노둔하여 왕명의 본의를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로 충효열의 사례를 수소문하는 일을 꼽았다. 자신이 충신과 효자와 절부(節婦) 중 사실이 파문혀서 드러나지 않은 자를 일일이 찾았다는 보고였다.

가장 먼저 충신 오흥태였다. 그는 무신난(1728, 영조 4) 당시 의병(義兵)을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자는 격문(檄文)을 손수 지었는데, 그 격문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격문의 맨 앞에는 ‘충성과 효도가 두 길이 아니니,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위급함을 구하지 않거나 신하로서 임금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금수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고, 중간에는 ‘역적의 기세가 매우 강하여 무식한 백성이 역(逆)과 순(順)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말하였으며, 또 ‘섬 백성은 육지의 백성과 다르다. 계년(癸年)과 갑년(甲年)의 흉년에 섬 백성이 모두 죽을 판이었는데, 진휼(賑恤)해 주시는 은택을 특별히 입어 부모와 처자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섬 백성은 선왕(先王)을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구제해 주신 은택을 생각하여 국가의 난리에 일제히 나아가서 죽음으로써 보답해야만 한다. 국가가 위태롭고 혼란한 시기를 맞아 죽게 된다면 이는 영광이고, 흉악한 역적이 횡행하는 날을 당하여 살아남는다면 이것도 치욕이다. 성공과 실패, 율리와 불리는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곧바로 3개 읍에 격문을 전달하여 수백 인을 대략 모집하여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난리가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지한 바 있었다. 그 격문은 충성심으로 인한 분노가 격렬하게 표현되어 말이 준엄하고 명분이 정당하여, 연기에 그을리고 너털너털해진 문서인데도 당시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일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섬 안의 민속(民俗)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길로 볼 때 표창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오흥태의 일은 끝내 표창이 없었고 현재 오흥태의 후사(後嗣)는 없고 조카인 늙은 유생만 남아 격문을 서원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다.

둘째, 효자 박계곤이었다. 그는 타고난 효성의 소유자였는데, 상경(上京) 중에 바다 한 가운데에서 배가 부서져서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부서진 배의 판자에 부모와 영영 이별하는 내용을 몇 자 적어 하늘에 축원하며 바닷물에 띄워 보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무판자가 아버지의 집 앞에 흘러와서 그의 아버지가 판자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고하여 작은 배를 띄워 박계곤을 찾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믿기 힘든 일화였다. 섬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는 박계곤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박계곤에게는 과부가 된 딸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절개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자 이를 불쌍히 여겨 계집종 하나를 붙여 주어 청소를 도와주도록 했다. 계집종의 이름은 고소락(高所樂)으로, 머리털이 더부룩하여 여러 갈래로 땀았는데, 제주의 풍속에 머리를 땀아 올린 이를 고소락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고소락은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시다가, 나이가 들

어 주인이 시집보내려고 하자 사양하면서, ‘나의 주인은 몸을 지키며 정절에 힘쓰는데, 내가 남자와 함께 살면 불결하니 어떻게 감히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운명이 박하여 남의 계집종이 되었으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다가 또 남의 계집종을 낳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인이 그의 뜻을 가엾게 여겨서 양민(良民)을 허락해 주었으나, 역시 시집가지 않고 더욱 성실히 일을 하여 주인과 계집종이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늙어 죽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계곤 본인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효자요, 그의 딸은 열부(烈婦)이고 또 열부에게 충성스러운 계집종이 있으니 효(孝)와 열(烈)과 충(忠)이 한 집안에 감응하여 기이한 전설이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심낙수는 오흥태와 박계곤, 그리고 박여인 및 고소락에 대해 정문(旌門)을 내려 포상하여 풍교(風教)를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조는 “어사를 차출하여 보낸 것은 어찌 백성을 위유(慰諭)하기 위한 목적뿐이겠으며, 또한 어찌 안핵(按覈)과 시재(試才)를 위한 목적뿐이겠는가. 섬 안의 무지한 백성 중에서 절개 있는 사람을 탐문하고 인재를 수소문하여 깊은 굴 안에서 하문(下問)했던 취지에 부응하는 것은 참으로 어사의 직분에 있어서 급선무이다. 이것이 순무(巡撫)라는 직함을 붙여 준 이유이다. 이 어사의 별단을 보면 나에게 보고한 사람이 한두 명 있으니, 어찌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 회계(回啓)하게 하여 고무시킬 방도를 소홀히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곧바로 정문을 내리고 이들을 치하했다.

정조의 고 학생 오흥태의 나라를 위한 충의와 제주의 고 효자 박계곤의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은 섬 이북의 여러 도에서는 듣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오흥태와 박계곤에게 지금까지도 전혀 정려한 일이 없었으니 실로 흠이 된다. 박계곤의 집에 또 열부(烈婦)가 된 그의 딸이 있고, 열부에게 또 충성스러운 계집종이 있어 효, 열, 충이 모두 모였으니, 기이하다. 그의 손자 박중환이 할아버지의 경계를 받들어 가업(家業)을 이으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병학(兵學)을 익히는 데 골몰하였다고 하였으니, 또한 한번 거두어 임용해야 한다. 어사가 오흥태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의사(義士)’라고 하고, 박계곤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효자열녀(孝子烈女)’라고 하며, 한 줄을 낮추어서 충성스러운 계집종의 이름을 써넣게 하라.

이뿐 아니라 제주인들에게 이들 집 앞을 지날 때는 항상 말을 타고 가더라도 경의를 표시하도록 명했다. 풍교의 증거가 널리 회자되어 제주의 민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어사가 그들의 사적을 기록하는 내용을 각각 글로 지어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제주 사람 중에서 말을 타고 가는 자는 경의를 표하도록 하고 걸어가는 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원히 풍고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효자 박계곤의 손자 박중환의 일화이다. 정조는 제주의 무관들을 특별히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특별 서용했다. 따라서 심낙수는 제주의 군교들을 대상으로 병서를 강론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기를 다뤄보도록 하는 등 인재를 발굴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이 가운데 제주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박중환이 병서를 완전히 배송(背誦)하는 일이 있었다. 군교들 대부분이 무식자였는데 병서를 완전히 암기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으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박중환은 바로 효자 박계곤의 손자였으며, 집안에서 병서(兵書)를 읽고 무기(武技)를 익혀서 비상사태가 일어나거든 나라에 보답하라는 경계를 조부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효자와 충신의 가학이 이어져오는 미담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조는 박중환을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여, 병조 낭청의 자리에 임명하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다.¹²³⁾

4-2. 만덕의 의행

정조는 특히 충과 효와 열의 인륜을 다하려는 소민들의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의 소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보고 싶어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796년 제주가 또 다시 기근으로 고통 받을 때, 기녀 만덕이 보여준 의행이었다. 그녀는 곡식을 무역하여 기민들을 살리는 환난상휼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만덕'은 정조가 충과 효와 열의 사례로 발굴한 최대의 성과 중 하나였다.

선왕 영조의 교화가 있는 지 50년이 되면서 점차 제주는 교화의 증거를 쌓아가고 있었다. 소민들에게도 군자의 명예를 알도록 가르쳤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명예를 아는 재(好名之士)'에 대한 칭송은 정조의 향촌교화론의 핵심이었다. 진흙에 앞장선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선행이야말로 제주의 기근을 구제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도였다. 환난상휼을 단지 명목상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이들이야말로 교화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미 만덕에 앞서 1785년 노비 고취선은 자신의 돈으로 곡식을 구해 제주의 기민을 구휼하는 선행을 보인바

123)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건륭) 4월 22일(무인)

있었다.

10년 전 1785년(정조 9) 제주에 기근이 들었을 때, 제주 판관 김재욱(金再郁)과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 등은 100석에 달하는 곡식을 마련하여 진휼에 보태었다. 정조는 직분상 의무라고 하면서도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노비 고취선(高取善)의 선행이었다. 그는 배를 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로 나가 쌀을 샀으며 가산(家産)을 아까워하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을 구휼했다. 그가 나누어준 곡물은 미(米)와 조(租)를 합쳐서 도합 200여 석이나 되었다.

정조는 판관 김재욱과 정의 현감 이갑룡은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가지고 자비(自備)한 것이 이와 같으니 가상하다. 포장(褒獎)을 시행해야 합당할 것이니 김재욱은 준직에 제수하고 이갑룡은 4품직에 제수하되 모두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서 내외직(內外職) 가운데 조용(調用)이라고 명했다. 아울러 고취선이 바다를 건너가 쌀을 사 오고 재화를 다 기울여 빈민을 구제한 것을, 포(包)로 계산하면 수량이 수백 여를 넘고 전부 살려낸 것도 몇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육지에 사는 부호(富戶)도 오히려 마련하기 어려운 데 이것이 어찌 거칠고 궁벽하고 인색한 습속이 있는 지역에서 쉽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특별히 시상해야 섬사람을 분발시킬 수 있을 것이니 면천(免賤)시켜 가자(加資)하고 이어 전례를 끌어와서 승천(陞遷)시키라고 도신과 목사에게 명령했다.¹²⁴⁾

일찍이 제주는 궁벽한데다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취선이라는 노비는 부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스스로 곡식을 구입하여 제주 민인들에게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정조는 제주의 풍속이 변하여 ‘환난상휼’의 인간다움[도리]을 베풀 줄 아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고취선을 칭찬함으로써 제주의 인민들을 분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정조는 조선후기를 향원마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말세라고 탄식했다. 모든 이들이 사익만을 추구할 뿐 진정한 명예를 아는 선비를 구경할 수 없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정조는 명예만을 좇아서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명예를 취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세에는 명예욕을 가진 자를 위선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였다.¹²⁵⁾

소동파의 “삼대 이후에는 명예[名]를 좋아하는 사람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구절은 비록 작은 병폐가 있지만 매우 좋은 말이다. 대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능히 명예가 추구할만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반드시 가다듬고 노력하여

124) 《일성록》 정조 9년 을사(1785) 5월 12일(경신)

125) 이하 내용은 김호, 2016 <연암 박지원의 刑政論> 《法史學研究》54 참조.

한 시대의 맑은 이름을 취하지만, 명예가 추구할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람은 대개 옹졸하고 천박하니 무슨 취할 만한 점이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대부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겨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¹²⁶⁾

삼대 이후에는 명예를 좋아하지 않을까 도리어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조선후기는 성 인군자는 커녕, 향원의 비난을 각오하고 명예욕이라도 추구하기를 바랄 정도였다. 명예욕은 일종의 사심이 끼어든 상태로 선한 동기라기보다 허위와 위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삼대 이후 풍속이 퇴폐한 상황에서는 그런 명예욕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선이라도 명예 욕구를 추구한다면 이를 허용해야만 했다.¹²⁷⁾

앞서 보았듯이 제주는 향산이 부족하여 향심의 교화를 추구할 만 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 남자는 태어나면 군교를 희망했고 여자는 기녀의 삶을 바라던 곳이었다. 제주를 방문했던 이들의 기록에 남겨진 제주는 유교의 교화가 지체된 장소였다.¹²⁸⁾ 그런데 노기 만덕이 자신의 돈을 쾌척하여 제주의 기민(飢民)을 구한 것이다. 정조는 만덕의 의행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목사 유사모의 말대로, “노기 만덕은 사리상 진실로 구할 바가 없는데도 재물을 가볍게 여길 줄 아니, 비천한 무리가 더욱 능하기 어려운 일이었다.”¹²⁹⁾ 다른 원납인 들처럼 대정 현감의 지위를 노리거나 만호가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만덕은 세속의 구하는 바가 없었다. 결국 그녀의 바람은 평생 비천한 무리라는 손가락질을 벗어나 진정 인간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구’에 다름 아니었다.

사실 만덕이 서울에 올라온 것은 11월 말 한 겨울이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만덕이 서울에 왔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관에서 방황하다 자신을 찾아 울며 하소연하였다는 것이다. 만덕이 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의리가 가상하고 정상이 불쌍하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조는 “제주인들에 대한 자신의 염려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특별하다.”고 강조하고, 만덕이 천한 기생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도와준 일만도 매우 가상했는데, 그 소원을 들어보니 더욱 평범하지 않아 놀랍다고 강조했다.¹³⁰⁾ 잘 알려진 대로 그녀는 스스로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와 보고 그 길에 금강산을 구경

126) 《홍재전서》 권172 <日得錄> “東坡謂三代以後 不可不取好名之士 此言雖有些少病敗 却甚好 蓋好名者 能知名之可好 故必矜飭勸勵 以取一世之清名 而其不知名之可好者 率庸瑣鄙薄之人 顧何足取哉 今日士大夫 政當服膺此言耳”

127) 《홍재전서》 권172 <日得錄> 13 “三代以下 猶恐其不好名 名以士流 猶勝於流俗 爲人上者 不可不扶植”

128) 김호, 2019 <위선(僞善)의 한계는 어디인가? -다산 정약용의 '광자(狂者)' 유감> 《다산과현대》12 참조.

129)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6월 6일(경진)

130)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4일(을축)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조는 그녀가 비록 천인(賤人)이기는 하지만 의로운 기상은 옛날의 정의로운 협객에 부끄럽지 않다고 칭송했다. 그리고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주고 곧바로 내의원의 차비 대령인 행수 의녀로 총원한 후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조처했던 것이다.¹³¹⁾

정조는 만덕의 행동을 역사 속의 '의협'에 비유하고 제주의 백성들이 그녀의 삶을 따라 어려운 기민들을 서로 돕는 의행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정조는 초계문신의 시제로 〈만덕〉을 출제하기도 했다.¹³²⁾

역설적으로 당시 일부 식자들 가운데 평생 이윤을 좇았던 만덕의 구휼 행위가 진정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덕의 의행을 명예의 전당에 오르려는 위선의 욕망이라고 폄하했던 이는 제주목사 심낙수를 좇아 제주에 기거했던 그의 아들 심노송이었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일을 자못 자세히 들었다. 그녀의 성품이 음흉하고 인색하여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났는데 (남자의)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았다. 소장하던 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 매번 바지를 벌에 말릴 때면, 제주의 기녀들조차 침을 빨고 욕을 했다. 육지에서 온 상인들이 만덕으로 패망하는 이가 연이었다. 이렇게 제주의 최고 부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형제 가운데 구걸하는 이가 있었지만 돌보지 않다가 제주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 서울과 금강산 유람을 원했다. 그녀의 말이 진솔하여 볼 만하다고 여긴 여러 학사들이 전을 지어 수다히 칭송했다. (중략) 무릇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남이 많으니 슬프도다.¹³³⁾

심노송은 만덕을 위선자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만덕이 배궁는 형제는 돌보지 않으면서 의행을 칭송하는 정조의 정책에 편승하여 명예욕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짜'인데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조는 생각이 달랐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말세에는 향원(위선자)도 차라리 귀할 정도라는 것이다. 정조는 약간의 위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만덕의 기민에 대한 구제는 칭송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조금의 위선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기민들이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보다는 만덕처럼 기꺼이 곡물을 내어 죽을 지경의 사람들을 구휼하고 혹은 헌감이나 만호의 지위를 노리면서 원납곡을

131)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5일(병인)

132)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8일(기사)

133) 《孝田散稿》 권7 〈桂織傳〉 “余在島中 聞德事頗祥 性凶恪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贖男子衣袴累百數 每纏纏出點暴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有可觀 諸學士敘傳多稱之 余既爲桂織傳 又附見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

자비했던 고한록이나 홍삼필의 그리고 양성범의 욕망이 필요했다.

정조는 기꺼이 제주의 민인들에게 〈명예를 욕망〉하라고 주문했다. 그럼으로써 더욱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더 많은 제주의 민인들이 문과와 무과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환난상환이 필요한 때 앞 다투어 서로 돕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설사 ‘만덕이 약간의 위선’을 가지고 기민을 구제했다고 해도 이를 교화의 방도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정조의 교화책은 그런 것이었다. 만덕이 보다 성리학의 도덕감에 충실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정조가 보기에 제주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늘 향산의 기초가 부실하여 향심의 교화를 강요하기에는 부족했던 제주에 기녀 만덕이라면 충분했다. 제주민인들이 만덕과 같은 ‘의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것이다.

4-3. 이어지는 의협, 양제해

잘 알려진 대로 강진에 유배되었던 다산은 많은 지역의 제자들을 키워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강회였다. 그의 5대조는 윤선도의 사위였는데 윤선도가 보길도로 이주하자 가족을 이끌고 강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광주 이씨들은 내내 강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강회는 강진에 유배왔던 다산을 좇아 공부하다가 다산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자 신안의 우이도로 들어가 평생을 《주례(周禮)》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⁴⁾

이강회는 우이도에 살 때 문순득의 집에 기거하였는바, 그곳은 다산 정약용의 형님 정약전의 유배처이기도 했다. 이강회가 문순득의 집을 찾았던 이유는 정약전의 문순득 표류기 때문이었다. 우이도의 어부였던 문순득은 1801년 우이도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여 지금의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 그리고 마카오 등지를 떠돌다가 1805년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온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¹³⁵⁾

우이도에 거주하던 정약전은 문순득의 이러한 특이한 경험을 〈표류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남겼는데, 우이도에서 흑산도로 유배지를 옮겨야 했던 정약전은 표류기에 충분한 사실을 수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강회는 문순득의 표류기를 자세하게 보충할 계획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조선후기의 식자(識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강회 역시 섬사람들의 원망을 글로 써주거나

134) 이강회에 대해서는 안대희, 2006 〈다산 제자 李綱會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10; 조성산, 2008 〈이강회의 《耽羅職方說》과 제주도〉 《다산학》12 참조.

135) 최성환, 2012 《문순득 표류 연구 - 조선 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민속원)

사또가 보고해야 할 공문서를 대작(代作)하면서, 틈틈이 섬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적을 조사하고 흥미로운 기록을 조사하여 글로 남겼다.¹³⁶⁾

이강회는 당시 우이도에 유배와 있던 김익강이라는 사람을 만나 제주도 양제해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었다. 김익강은 제주인으로 그의 사위 양제해가 역모죄로 처형당하자, 연좌에 걸려 죽을 때까지 우이도에 유배되었다. 김익강으로부터 양제해 사건의 시말을 듣게 된 이강회는 양제해를 신원하고 제주 서리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 이른바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이하 <시말)>이라는 짧지 않은 문장이다.¹³⁷⁾ 상찬계는 제주 향리들의 상호 친목을 위한 모임이었다. 제주의 남자들은 과거에 도전하기보다 서리나 군교(軍校)를 바랐다는 풍속에 비추어보면, 제주의 권력은 몇 년안에 교체되는 제주목사보다 상찬계가 농단했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이강회는 <시말>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자 무능한 관리와 부패한 서리배들의 가렴주구로 제주백성들의 삶이 지옥과 다를 바 없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강회는 제주의 양제해의 역모는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제주 서리배들의 무고로 벌어진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밝혔다. 양제해야말로 반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항우의 용기를 지닌 호걸로, 그가 한번 죽기로 마음먹자 제주 백성들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칭송했다.

스승 다산이 그러했듯이 이강회는 성리학을 공부한 식자로서 백성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과거에 합격하고 관료가 되어 선정(善政)의 포부를 펼칠 수 있다면 최선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기개를 칭송하는 일 또한 중요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방도였다.

양제해의 의거(義舉)를 두고 앞뒤로 이루어진 정부의 조사 및 관련 기록들은 한결같이 이를 '모반'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813년 제주의 양제해라는 자가 제주목사 등을 살해하고 독립국을 세우려는 역모를 꾀했다가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사건당시 제주목사 김수기는 양제해가 거병 모의를 했다는 장계를 올렸다. 제주 중면(中面)의 풍헌 양제해가 역모를 준비했다는 소식에 급히 군병을 파견하여 이들을 체포했다는 내용이다. 제주의 윤광중이라는 자가 흥계를 고발했다.

“양인 윤광중의 고발을 보니, 중면의 풍헌 양제해는 원래 간사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자로 항상 분수에 넘치는 흥심을 품고 있다가, 흥경래 난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무리를 모아 모반할 계획을 세운지 오래였습니다. 마침

136) 경상도 고성(處士) 구상덕의 청원활동(김건우, 2010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중앙연구원출판부)이나 신안 우이도의 幼學 김이수의 활동이 그러하다(고석규, 2003 앞의 글 참조).

137) 정민, 2008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을 통해본 양제해 모반사건의 진실> 《한국실학연구》15 참조.

내 앞장서기를, ‘근래에 섬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무거워 편히 살 수가 없다. 무리를 모아 힘을 합쳐 제주 영읍(營邑)의 관원을 죽이고 섬 전체를 내가 주장하여 섬의 배는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육지의 배가 오면 재물을 빼앗고 북으로 통하는 길을 막는다면 후환이 없을 것이다.’라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¹³⁸⁾

순조는 제주목사 김수기의 계문을 비변사에 내려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논의 끝에 비변사 관료들은 제주 양제해 모반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할 찰리사 이재수를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1814년 윤2월 이재수는 제주목사 등 사또들을 살해하고 제주를 자신의 관할로 삼으려는 양제해의 모반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 “이번 옥사는 양제해가 제주의 품관(品官)으로 동지들과 약속한 후 세 고을의 사또를 살해하고 배와 재물을 빼앗아 육지와의 교통을 막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꺾어 무리를 모은 것입니다.”¹³⁹⁾

이재수는 사건 관련자들의 죄에 따라 사형과 유배 그리고 석방으로 등급을 나누어 양제해와 그의 아들 양일회, 거병을 준비했던 고덕호는 사형에 처하고, 역모를 방조한 강필방, 김익강 등은 유배형에 처하며, 사건을 고변한 윤광종은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찰리사 이재수는 사건의 전모와 더불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의하면, 제주의 서리들은 상찬계를 만들어 제주의 여러 보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었다. 때문에 양제해의 변고는 상찬계에 들지 못한 이들이 지방의 좌수나 천총(千摠)의 직책을 맡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 되었다. 따라서 제주목사가 제주목의 서리는 물론 지역의 좌수·별감이나 군교 지위를 공정하게 선임한다면, 상찬계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요 상찬계에 불만을 품고 발생한 양제해 사건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제주목사가 여러 가지 신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리에 품관을 비롯하여 소민들을 공정하게 차임(差任)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했던 것이다.¹⁴⁰⁾

요컨대, 이재수는 상찬계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양제해가 백성들을 부추겨 일으킨 변고에 불과하므로, 차후에 제주목사를 비롯한 대정 및 정의현감 등이 서리 등의 임명 시에 공평무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재수의 건의가 접수되자 바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고덕호, 양일회 등은 제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효수되었고, 김익강, 강필방 등은 우이도 등으로 유배되었다. 사건과 무관했던 25명은 석방

138) 《순조실록》 순조 13년(1813) 12월 3일(병신).

139) 《순조실록》 순조 14년(1814) 윤2월 14일(병자).

140) 《순조실록》 순조 14년(1814) 윤2월 14일(병자).

되었으며, 고변의 주인공 윤광종은 상을 받았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윤광종은 상찬계의 실제 우두머리 김재검의 겸인(僉人)이었다.

이상 양제해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기록은 일관되게 풍헌 양제해가 제주 서리들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일으킨 변고라고 설명했지만, 다산의 제자 이강회는 전연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다. 제주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양제해의 의거가 도리어 상찬계의 무고로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¹⁾

진실한 요기와 타인을 돕는 의협을 칭송하고 열전을 지어 세상에 알리도록 한 정조의 의지는 당대의 식자들로 하여금 의행에 앞장서도록 하는가 하면 의거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격려했다.¹⁴²⁾ 이강회는 〈시말〉에서 양제해를 진정한 제주의 의협으로 묘사했다.

“양제해는 제주의 향관(鄕官)이다. 경인년(1770년)에 태어났고 계유년(1813년)에 화를 당했으니 향년 44세였다. 그는 본래 제주의 세족(世族)으로 사람됨이 공평하고 백성을 사랑했다. 집안이 가난하여 문장을 배우거나 글을 알지 못했으나, 여러 번 향감(鄕監)을 지냈으며 방헌(防憲)을 재임했다. 제주에는 방헌(防憲)이 한 동네[坊]의 수장으로 현소(憲所)에 거주하면서 큰 사건은 제주부로 보내지만 작은 사건들은 스스로 처리했다.

때는 계유년(1813) 봄 양제해는 중면의 현장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난 때였다. 1813년 10월 그믐, 양제해는 공적인 일을 알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허실을 보고하고자 했다. 당시 여러 동리 사람들이 모여 양제해에게 말하기를 ‘아전의 간악함으로 민폐가 이러한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장차 힘이 다해 쓰러질 것이다. 지금 방헌은 마을의 대표[坊長]이시고, 듣자 하니 사또께서 서리들의 병폐를 잘 알고 계신다 하니 뜻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라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방헌께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제해는 ‘서리들의 간악한 소굴인 상찬계를 타파하는 데 있소이다. 그런 연후에야 백성들이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누군가 선두가 된다면 반드시 곤욕을 치러야 할 텐데, 이 마을에 이를 위해 앞장 설 자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모여든 백성들이 모두 ‘오직 방장(坊長)이라야 가능할 것이요.’라고 답했다. 양제해는 ‘그렇다면 글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합시다. 내 장차 백성을 위해 한번 죽겠소.’라고 말했다.

141) 정약전·이강회 《柳菴叢書》(김정섭 등 번역) 2005 新安文化院 참조.

142) 손혜리, 2005 〈成海應의 烈女傳에 대하여-열녀인식과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35 참조. 성해응의 의열에 대한 칭송도 광자에 대한 정조의 높은 평가와 관련이 깊다.

당일 모임에 참여했던 윤광중은 김재검의 겸인(兼人:심부름꾼)이었는데, 김재검이야말로 상찬계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다. 윤광중은 김재검에게 달려가 ‘오늘 현장 양제해와 백성들이 서로 모여 상찬계를 타파하기로 목숨으로 결의하였으니 어찌 당신들이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알렸다. 김재검은 놀라 ‘나는 양제해를 잘 안다. 제주를 통틀어 상찬계의 뿌리를 가장 잘 아는 자이다. 양제해를 상찬계원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항상 두렵고 삼가고 있었다. 이제 저들이 서로 돕기로 하였으니 헛된 말이 아니다. 비록 죽더라도 굽히지 않을 터이니 우리 목숨이 그에게 달린 꼴이다.’라고 말하고는 한밤중에 제주목사에게 달려가 양제해가 변을 피한다고 무고하였다. 이에 제주목사는 곧바로 포졸을 풀어 양제해를 체포하여 모변을 자백하라고 고문했고 양제해는 그만 옥사했다. 이후 찰리사 이재수가 내려왔지만 그 역시 상찬계의 조직을 철저히 파헤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치고 말았다.”¹⁴³⁾

이강회는 양제해 사건의 본질을 의거로 규정했다. 향촌 자치의 수장을 맡아 백성들의 의견을 사또에게 전하려던 양제해를 서리배의 사조직인 상찬계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염려하여 역모로 무고한 사건이었다. 당시 양제해와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후 찰리사 이재수는 상찬계의 뿌리 깊은 폐해를 철저히 파헤치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강회는 양제해야말로 목숨을 바쳐 제주도민을 사랑한 의인이었다고 칭송하고, 이를 외면한 제주백성들을 의리도 모르는 오랑캐라고 질타했다. 다산 정약용은 《흫흫 신서》에서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아버지를 부당하게 죽인 사또를 아들이 척살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¹⁴⁴⁾ 다산의 제자였던 이강회 역시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에 맞선 양제해의 행동을 ‘의롭다[義]’고 기록했다.

“양제해 본인은 죽고 가족마저 폐했지만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 자이다. 내가 살던 곳이 탐라의 바다와 마주하여 종종 탐라의 사정을 들어왔는데 양제해의 옥사가 그러하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제해는 오늘의 항우(項羽)이다. 하루에 세 번 한라산을 돌고 매번 정상에 올라 아무도 모르게 팔진의 법을 익혔다고 한다. 집에서 키우는 말은 총 3백 필이나 되고 신이한 총도 수백자루며 활과 화살은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돈도 창고에 몰래 저장해두고 염

143) 이강회, 2005 《柳菴叢書》 참조.

144) 김호, 2012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다산의 《흫흫신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84 참조.

탐하는 이를 서울에 두어 살렸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양제해의 집 담장을 철로 둘러싸고 계단을 금으로 포장하였다'고도 말한다.

후일 들어보니 양제해의 집에서 키우는 말은 오직 한 마리로 부모를 위해 사슴을 사냥하는 용도이고 총도 한 자루뿐이었다. 찰리사가 사람을 보내 집을 살펴보았는데 기와만 새로 이었을 뿐 금으로 계단을 덮고 철판으로 담장을 만들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양제해가 성을 공격하여 관리들을 죽이려했다는 말은 모두 상찬계원들의 거짓말이었다. 그의 죽음이 비록 원통하지만 사건 이후 상찬계 역시 숨어버리고 4~5년이 지나도록 백성들은 서리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 어찌 백성들에게 끼친 은혜가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백성을 구제한 그를 위해 한 번의 제사로 외로운 혼령을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듣자하니 탐라 사람들은 양제해의 집안을 폐족(廢族)이라며 부끄러워하고 그의 친인척과 혼인하기 꺼려한다니 오랑캐의 풍속[蠻俗]이 어찌도 이리 지나칠 수 있는가?"¹⁴⁵⁾

정조가 바란 사회는 불의와 부도덕에 침묵하는 이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정조는 부당한 권력에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선의, 이것들이야말로 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로 보았다. 전국에 그러한 용기와 선의를 가진 자들이 가득해져야 할 것이었다.

145) 이강희, 2005 《柳菴叢書》 참조.

V. 선린(善隣), 표류객의 환대

제주는 다양한 공물을 육지로 실어 나르고 반대로 곡물을 제주로 운반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배들이 험한 바닷길로 항해했고 이 과정에서 종종 표류민이 발생했다. 일본과 유구 그리고 중국으로 흘러가는 제주인들은 물론 일본과 중국 및 유구 사람들이 제주에 흘러들어왔다. 심지어 아란타인들도 제주에 표류했다. 잘 알려진 <하멜 표류기>가 그것이다. 《일성록》에는 제주도에 표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문정기는 물론 해외에 표류한 제주인들의 송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기본적으로 정조는 ‘대의(大義)’에 기초하여 이들 외국의 표류객을 대접했다. 제주를 포함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외국으로 표류하여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귀국할 수 있으려면 조선 역시 외국의 표류객들을 대의의 관점에서 대접할 필요가 있었다.

정조대 타이완으로 표류했다가 귀국한 위장(衛將) 이방익(李邦翼)을 직접 만난 적이 있던 정조는 대만에서 이방익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춘추의리’의 외교로 이해했다. 이방익은 대만인들이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말을 듣자 접대하는 범절이 몹시 공손했는데, 조선을 흠모하는 정도가 여느 오랑캐들이 중국을 사모하는 정도일 뿐만이 아니어서,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대만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춘추(春秋)의 의리(義理)를 잘 알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조는 춘추의 대의란 비록 공허한 말인 듯하지만, 그것이 온 천하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¹⁴⁶⁾

이 때 춘추대의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려는 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표류객은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 옷을 입은 외국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접할 의무가 있었다. <타인에 대한 환대>야말로 만고불변의 ‘의리’였다.

한때 제주인들이 외국에 표류하면 ‘제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제주에 표류했던 유구의 왕자가 살해되었던 역사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인들이 타지에 표류하면 해남

146) 《홍재전서》 제178권 / 일득록(日得錄) 18 훈어(訓語) 5

혹은 강진 등을 둘러대고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이다. 이상 제주의 표류를 둘러싼 흑역사의 진위여부를 떠나 적어도 표류와 관련한 '제주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탐라 사람이 이국에 표류된 경우 본적을 일컫기를 꺼리고 영광(靈光)·강진(康津)·해남(海南)·전주(全州) 등의 지방으로 둘러대는 것은, 속(俗)에서 전하기를 유구(琉球)의 상선(商船)이 탐라 사람의 해를 입은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구가 아니고 안남(安南)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그에 대한 시(詩)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될 만한 옛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세속의 유전(流傳)일 뿐이니 굳이 그 진위(眞僞)를 분변하려 들 것은 없습니다.¹⁴⁷⁾

정조는 제주에 표류하는 어떤 외국인도 반드시 <문정기>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잘 대접하여 본국에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물론 다산 정약용의 지적을 보면 이러한 표류민에 대한 환대의 원칙이 어느정도 잘 지켜졌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조는 조선이 먼저 대접해야 타국도 대접한다는 원리, 아울러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의'를 지키는 선에서만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1. 중국

1-1. 중국에 표류한 조선인

먼저 제주사람으로 중국에 표류했던 사례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물인 청귤(靑橘)을 싣고 육지로 가던 이들은 종종 중국으로 표류했다. 당연히 청귤은 모두 상하여 봉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778년(정조 2) 8월 예조의 보고를 보면, 제주목사가 봉진한 청귤을 실어 나르던 교리(校吏)가 표류하여 중국 소주(蘇州)에 흘러들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는 것이다. 청귤은 전부가 썩고 말라서 천신(薦新)에 합당하지 않았다. 이에 정조는 하교하기를, 천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를 수용할 사옹원(司饗院)에서도 제주목의 청귤과 추복(搥馘), 조복(條馘), 인복(引馘) 모두를 한시적으로 봉입하지 말도록 명령했다.¹⁴⁸⁾ 정조는 공물의 진배 과

147) 《연암집》 권6 <書李邦翼事>

148) 《일성록》 정조 2년 무술(1778) 8월 5일(임술)

정에서 배가 침몰하여 표류하는 제주인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이를 심상하게 여길 수 없다고 보아 공물의 진상을 상당 부분 탕감하고자 노력했다.

“이 제주목사의 장계를 보니, 표류한 사람의 수가 이토록 많으니 매년 보통 있는 일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각 진보(鎭堡)에 신칙하여, 표류했거나 몰사한 형상을 신속히 탐문하여 장문(狀聞)하도록 비국(備局)은 즉시 전라 감사와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라. 각 사에 진배하는 물종을 탕감하는 것은 이미 선조(先朝) 때 두 해에 걸쳐 시행한 예가 있다고 하니 어찌 굳이 회계(回啓)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봉(改封)하지 말게 하고 모두 탕감하도록 일체 분부하라.”¹⁴⁹⁾

한편, 중국에 표류했던 조선인들은 육로와 수로 등을 이용하여 북경에 도착한 후 의주를 거쳐 조선에 귀국했다. 때문에 정기적인 외교 사절단의 중국 방문길에 반드시 표류객의 송환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1779년(정조 3) 7월, 정조는 제주의 표류민을 보내 준 데 대해 회답하는 자문(咨文)을 지어 북경에 전달하고 사은 표문(謝恩表文)을 외교사절 편에 부치도록 했다. 당시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은 “표류했던 제주 사람 윤도준(尹道俊) 등 9명을 내보내 준 일에 대한 예부(禮部)의 자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자문을 지어 의주(義州)에 내려 보내 봉성장(鳳城將)에 전해 주어 북경에 전달되게 하고, 표류민을 내보내 준 뒤에는 으레 방물(方物) 없는 사은 표문을 보냈으니, 사은 표문도 지어내어 절사가 가는 편에 부치라는 뜻으로 승문원과 해조에 분부하소서.”라고 상주했고 정조는 그대로 윤허했다.¹⁵⁰⁾

1791년(정조 15) 10월에도 표류민을 보내 준 데 대한 회답 자문(回答咨文)을 지어서 북경(北京)에 전달했다. 당시 좌의정 채제공은, “제주에서 표류해 온 백성을 보내 주겠다는 자문(咨文)이 왔습니다. 회답 자문을 짓고 별도로 금군을 정해서 만부(灣府, 의주)에 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달하여 북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정조에 문의했다.¹⁵¹⁾

중국에서 의주를 거쳐 조선으로 귀국한 표류민들은 반드시 거주처의 지방관이 공초를 받아 중앙에 보고하도록 했다. 1792년(정조 16) 11월 전라 감사 정민시(鄭民始)는 중국에 표류되었다가 귀국한 제주인 김막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김막대는 제주에 귀향하기 전 도회관인 해남현감의 조사를 받았다.

149) 《일성록》 정조 3년 기해(1779) 12월 19일(기사)

150) 《일성록》 정조 3년 기해(1779) 7월 10일(임진)

151) 《일성록》 정조 15년 신해(1791) 10월 9일(경술)

“해남현감 이운춘(李運春)의 첩정(牒呈)에,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제주목의 김막대(金莫大) 등에 대해 평안 감영에서 공문을 만들어 주어 해남현에 도착하였습니다. 문목을 만들어 공초해보니 어부 김막대 등 8명은 「금년 4월 26일에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제주의 엄장포(嚴莊浦)에서 출발했는데, 비바람이 크게 일어 큰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윤4월 3일 한 곳에 도착했는데 어떤 뱃사람들이 구제하여 먼저 죽을 주었습니다. 글로 지명을 물어보니 대청국(大清國) 소주부(蘇州府) 통주(通州) 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관리들이 와서 다시 사정을 묻고서 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사찰로 데리고 갔습니다. 4일에는 갯마을로 데리고 가서 묵게 했으며 5일에는 배에 태워 주어 통주부(通州府)에 도착하였습니다. 26일에 소주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는데, 은자 192냥, 푸른색 무명 두루마기[靑木周衣] 각각 1벌(領)씩, 원선(圓扇) 각각 1자루씩, 단선(團扇) 각각 1자루씩, 왕골로 짠 돛자리[莞骨席] 각각 1넙(立)씩, 무명 버선[綿襪] 각각 1부(部)씩, 삼베 수건 각각 1건(件)씩, 홑이불[單衾] 4건, 모기장[蚊帳] 4건을 제공(帖給)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때는 나귀를 타게 하고 어떤 때는 태평거(太平車)를 타게 하여 두 배나 빠른 속도로 4,700리를 달려 8월 6일에 북경에 도착했더니 무명 바지[綿袴] 각각 1건씩, 푸른 색 무명 휘항[靑綿揮項] 각각 1건씩, 무명 버선 각각 1부씩을 제공해 주고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에 관원을 정해서 데려다 주어 10월 2일에 의주(義州)에 도착하고 차례차례 내려왔습니다.」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두 살아서 돌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어서 특별히 튼튼한 배를 정하여 본주로 들여보내라는 내용으로 신칙하는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습니다.”¹⁵²⁾

이상의 조사를 통해 제주의 표류민 김막대 등은 중국 소주에서부터 북경을 거쳐 의주를 통해 귀국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주에 수개월 머무는 동안 은자는 물론, 두루마기와 부채, 돛자리, 버선, 이불 등 다양한 물건을 지급받았다. 이후 나귀나 수레를 타고 육로를 달려 북경에 도착했고 이때도 무명 바지 등 옷가지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조선의 표류객을 상당히 융숭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낸 사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결국 조선으로 표류하는 외국인들을 이와 마찬가지로 대접할 필요와 의무가 생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표류객을 대접하여 보낸 만큼 귀국한 표류민들은 조선에서 보

152) 《일성록》 정조 16년 임자(1792) 11월 17일(임자)

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조는 제주로 돌아가는 표류민이 지나는 고을에 신칙하여 옷과 양식을 넉넉히 지급하고 또한 말을 지급하여 본적지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명령했다.

1796년(정조 20) 8월 평안 감사 박종갑(朴宗甲)은 “의주 부윤(義州府尹) 심진현(沈晉賢)의 보고를 인용하여 바다에 표류했던 조선인 신덕태(申德泰) 등 8명을 넘겨받아 차례로 조사하여 보고하겠다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정조는 “제주의 많은 표류민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지나는 각 고을에 신칙하여 옷과 양식을 넉넉히 지급하고 각기 쇠마를 태워서 기필코 무사히 원적관에 넘겨주도록 하라.”고 특별히 전교했다.¹⁵³⁾

이듬해인 1797년(정조 21)에도 제주사람 8명이 중국을 거쳐 의주에 도착했다.¹⁵⁴⁾ 평안 감사 박종갑(朴宗甲)은 8명의 표류민인 의주(義州)에서 나온 사실을 급히 장계했다.

“방금 의주 부윤(義州府尹) 심진현(沈晉賢)의 장계 등보(狀啓騰報)를 보니, 통관(通官)이 바다에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 8명을 영솔하고 나왔기 때문에 바다에 표류한 사람인 이방익(李邦翼), 이방언(李邦彦), 김대성(金大成), 이유보(李有寶), 임성주(任成柱), 윤성임(尹成任), 이은성(李恩成), 김대옥(金大玉) 등에게 문정(問情)한 뒤에 이어 전로(前路)를 교부하여 차차로 올려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익 등 8명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였다가 모두 살아 돌아왔으니, 아주 기이하고 다행입니다. 연로의 각 읍에 신칙하여 각별히 공궤하고 장교를 정하여 원적관(原籍官)인 제주목에 차차로 호송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조는 제주인을 잘 보살피고 귀국 시켜준 일에 대하여 사은(謝恩)하는 회답 자문(回答咨文)을 의주(義州)에 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달하도록 했다.¹⁵⁵⁾ 우의정 이병모는 “표류한 제주 백성을 보내준 일에 청나라 예부(禮部)의 자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외교 사행(使行)이 중국에 갈 때 표문(表文)을 지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뜻으로 회답 자문을 짓고 정서(正書)하여 어보(御寶)를 찍고, 금군 기발(禁軍騎撥)을 정해서 의주부에 내려 보내도록 하여, 의주부로 하여금 봉성장에게 전해 주고 다시 이를 북경(北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라고 요청했고 정조는 의례히 이를 윤허했다. 나아가 당시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표류민 전 총장장(忠壯將) 이방익(李邦翼)을 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방익에게 전라 감영의 중군 자리를 주도록 한 것이다.

153)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8월 5일(정축)

154)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윤6월 10일(무신)

155)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윤6월 20일(무오)

“지금 비변사에서 써서 들인 것으로 인하여 보건대, 바다를 표류한 탐라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살아서 오늘 경기 감영에서 원적관(原籍官)으로 압송해 넘길 것이라고 하니, 그들을 위하여 아주 다행스럽다. 그런데 그중에 전 총장장 이방익은 무지한 섬 백성과 달라 당상인 조관(朝官)이니, 경들이 불러다가 위로하고, 병조로 하여금 걸맞은 관직에 자리를 만들어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조용하게 하라. 그가 필시 고향 생각이 나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니 머물러 둘 필요는 없다. 이러한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라고 비변사 낭청으로 하여금 좌상과 우상에게 전하게 하라.”

당시 이방익을 서울의 오위장으로 추천하는 망단자(望單子)가 올라오자, 정조는 번(番)을 서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직책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라 감영의 중군직을 맡기로 한 것이다. 혹 이방익이 제주를 떠나지 않겠다면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¹⁵⁶⁾

1-2. 이방익 표류기

앞서 언급했듯이 이방익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그가 단순한 어부나 공물 진상을 위해 동원된 격군이 아니라 어엿한 무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찍이 역모 사건 등에 연루되어 유배를 경험하기도 했다.¹⁵⁷⁾ 특히 정조는 대만에서 보인 이방익의 풍모와 행동거지 등이 조선의 대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기에 대만인들이 조선을 흠모하는 정도가 남달랐다고 파악했다. “그곳 사람들도 역시 조선이 춘추(春秋)의 의리(義理)를 잘 지키고 있음을 알도록 한” 공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¹⁵⁸⁾

정조는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에 건너가 알린 안용복 등을 용기있는 의협으로 칭찬한 바 있었다. 정조의 의협과 의행에 대한 애호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이방익의 표류 행적 역시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연암 박지원이 면천군수 시절 사은숙배를 위해 입시하자 정조는 직접 <이방익전>을 짓도록 명했을 정도이다.¹⁵⁹⁾ 정조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¹⁶⁰⁾ 이방익의 표류 과정과 여정에 관한 고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156)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윤6월 20일(무오)

157) 남정희, 2018 <18세기 후반 정조 초엽, 이방익의 <홍리가>에 나타난 유배 체험과 인식 고찰> 《어문연구》96

158) 《홍재전서》 제178권 / 일득록(日得錄) 18 훈어(訓語) 5

159) 권무일, 2017 《이방익 표류기》 (평민사)

김문식, 2008 <<書李邦翼事>에 나타나는 朴趾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15

김강식, 2019 <李邦翼《漂海錄》 속의 표류민과 海域 세계> 《역사와 세계》55

160) 《연암집》 권6 <書李邦翼事>

연암은 글 첫머리에 1796년 9월 21일 제주인 전(前) 총장장(忠壯將) 이방익이 서울에 있는 자기 부친을 뵈기 위해 배를 탔다가 큰바람을 만나 표류되어 10월 6일에 팽호도(澎湖島)에 도달했고, 청의 관에서 의복과 음식을 주어 십여 일을 머물게 한 뒤에 호송하여 대만(臺灣)에 당도한 후 거기서 하문(廈門)을 경유하여 복건(福建), 절강(浙江), 강남(江南), 산둥(山東) 등 여러 성(省)들을 거쳐 북경(北京)에 도달하고, 요양(遼陽)을 경유하여 이듬해인 1797년 윤 6월 서울에 돌아오니, 수륙(水陸) 만여 리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이후의 글은 이방익의 기억에 대한 박지원의 고증과 설명이 이어졌다.

과연 ‘수륙 만 리’를 건너온 이방익의 표류기는 이국의 다양한 풍속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할까? “이방익의 사건이 몹시 기이한데 좋은 기록이 없어 애석하니 네가 한 책을 지어 올리도록 하라.”는 정조의 주문대로 이방익 표류기는 기이한 일화에 머물지 않았다. 정조는 당대의 풍속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데가 용기있는 자들이 없다고 비판하고, ‘의협’과 같은 용기있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했다. 이에 연암 박지원은 이방익의 의협으로서의 기질이 실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이방익의 부친도 일본에 표류했다가 귀국한 경험이 있었다.

방익의 부친은 전(前) 오위장(五衛將) 광빈(光彬)인데 일찍이 무과에 응시하려고 바다를 건너다가 표류되어 일본 장기도(長崎島)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 선박들이 많이 모이고 시장과 마을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때 의사(醫士) 한 사람이 광빈을 맞아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광빈이 굳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하니 의사가 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쁘장한 젊은 계집을 나오라 하여 광빈에게 절을 시키면서, “내 집에 천금 재산을 쌓아 놓았으나 사내자식은 하나도 없고 다만 이 계집애가 있을 뿐이니, 원컨대 그대는 내 사위가 되어 달라. 내가 늙어서 죽게 되면 천금의 재산은 그대의 차지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계집을 슬쩍 보니 치아가 서리같이 하얗고 아직 철즙(鐵汁)을 물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연 처녀였습니다. 광빈이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제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재물을 탐내고 여색에 연연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개돼지만도 못한 자이다. 더구나 나는 내 나라에 돌아가면 과거에 올라 부귀를 누릴 수 있는데, 하필 그대의 재물과 그대의 딸을 탐내겠는가.” 했더니, 의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광빈이 비록 섬 속의 무인(武人)이지만 의젓하여 열사(烈士)의 기풍이 있었으며, 그 부자(父子)가 멀리 이국에 노닐게 된 것도 역시 기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여색에 빠져 왜인이 된다면 금수만도 못한 자일 뿐이라는 이광빈의 주장은 '의열'을 강조하고자 했던 정조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조의 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제주인의 뜨거운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연암은 제주가 어떤 곳인 지부터 고증했다. 고대 이래 탐라로 불리는 제주는 백제에 복속되었다가 후일 신라에 복속된 섬나라였다. 아울러 고려시대에도 제주는 확고히 고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 《고려사》에 “천수 20년에 탁라 도주(毛羅島主)가 내조(來朝)하여 왕이 작(爵)을 내렸다.”거나 제주에서 고려에 올리는 표문(表文)에 ‘둔라도’라 칭한 것이 이를 증명했다. 한마디로 고대 이래 한반도의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려에 대대로 복종했으며 지금 정조의 치세에도 제주가 조선의 땅임이 분명했다.

제주인은 조선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만 여리의 험로를 극복하고 아버지는 일본에서 아들은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것이다. 그 뜨거운 마음[의열]을 거두어 무관직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외 중국에서 보여준 이방익의 행적 또한 정조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방익은 대만에 머물다가 하문에 도착하자 바로 자양서원에 들러 주자의 상에 절을 했다. 중국의 유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조선이 춘추의리를 아는 나라로 인정하게 되었다.

“대만에 머문 지 7일째 되던 날 글을 올리고 돌아갈 것을 청했더니 관에서 옷 한 벌을 내주고 전별연을 열어 송별해 주었는데 손을 꼭 잡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배로 하문(廈門)에 이르러 자양서원(紫陽書院)에 머물렀는데, 들어가서 주자(朱子)의 상(像)에 절을 하니 유생 수백 명이 와서 보고 다정스레 대해 주었습니다.”

하문의 자양서원은 박지원의 고증에 의하면, 주자가 동안현의 주부(主簿)로 있을 때에 고사헌(高士軒)을 지어 여러 유생과 더불어 그곳에서 강습한 일이 있는데 지금의 서원 자리가 바로 그 옛터였다. 원대 지정(至正) 연간에 공공준(孔公俊)이 서원을 세우고 청하여 대동서원(大同書院)이란 액호를 하사받았으니 바로 자양서원의 전신이었다.

또한 복건성에서는 조선의 의복이 중화의 유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많은 복건 사람들은 조선의 옷을 입어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청에 복속되어 변발을 하고 청나라의 복식을 입은 이들에게 중화의 복제가 그대로 유지된 조선인 이방익은 춘추대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정월 초닷새날 복건성(福建省)에 들어서니 문안에 법해사(法海寺)라는 절

이 있었고 보리는 하마 누렇게 익었으며 굴과 유자(柚子)는 열매가 드리워 있고 의복과 음식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탕수수를 던져 주었으며, 어떤 이는 머뭇거리고 아쉬워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고 어떤 이는 우리의 의복을 입어보고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옷을 안고 돌아가 가족들에게 보여 주고 돌아와서는 ‘소중하게 감상하면서 가족들과 돌려 보았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이방익은 단순한 표류민이 아니었다. 조선이 중화의 나라임을 청나라에 떨치고 온 의협이 었다. 주자학에 대한 존경과 중국에서 제공한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중화의 유풍이 남아 있는 조선의 복식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방익은 조선이 문명국임을 새삼 드날리고 온 것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에 표류했다가 생존하기 급급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면모였다. 이에 정조는 연암 박지원에게 특별히 이방익의 표류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정조는 이미 신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방익을 만난 느낌을 언급한 바 있었다.¹⁶¹⁾

“어제 전라 중군 이방익(李邦翼)을 소견하니, 사람의 됬됨이가 매우 똑똑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 보아도 장관(壯觀)이라고 할만 했다. 같은 배를 탄 여덟 사람이 3만 리 길을 무사히 갔다가 돌아왔으니 너무나 기이하고 다행스럽다. 그리고 자양서원(紫陽書院), 자릉조대(子陵釣臺), 악양루(岳陽樓), 금산사(金山寺) 같은 곳을 모두 돌아다녔다고 하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길이 대만(臺灣)을 경유했는데, 그곳의 음식 품질이 우리나라와 다름이 없고 문물의 성대함과 토속의 화려함은 복건(福建)이나 소주(蘇州), 항주(杭州)가 미치지 못할 바라고 한다. 남방(南方)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의관(衣冠)을 착용해 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이것으로 보건대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어찌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야 되겠는가.”

연암은 산동성 이후로 북경에 이르는 여정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연암은 이를 ‘그들의 풍속이 비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 바로 춘추대의를 불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암 박지원이 이방익에 버금갈만한 표류사실로 선조(宣祖) 치세에 무인(武人) 노인(魯認)

161)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윤6월 22일(경신)

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친 후 중국 무주(婺州)의 고정서원(考亭書院)에서 능생(廩生)으로 지내다가 압록강을 건너 귀국한 일을 꼽았다. 노인이 민중(閩中·북건성)의 지식인들과 교류한 시문들이야말로 조선의 문명국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정조가 이방익을 불러 격려하고 전라도 중군(全羅道中軍)을 제수할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표 2〉 이방익 일행의 귀국 소지품

이름	소지품
이방익	무명 이불 1件, 羊皮 저고리 4건, 청색 조각전[靑片氈] 1조각, 貢緞 20尺, 帽緞 10자, 雜香 6개, 바늘 1封, 斗靑 4자, 石鏡 1面, 담뱃대 15개, 가위 3개, 모자 2남[立], 붓 3자루, 색실 1냥, 唐墨 1頂, 색주머니 1개, 斑布 보자기 1건, 諺書日記 3건, 皮布 2자, 청색 무명 長衣 3건, 花子皮 저고리 1건
이방언	黑角 20張, 부싷돌 1개, 화자피 저고리 1건, 청색 무명 장의 1건, 반포 6匹, 당묵 2정, 禾紬 5필, 헌숨 2근, 꽃 그릇 17개, 무명 휘황 2건, 낚시줄 3部
김대성	양피 저고리 6건, 모단 7자, 공단 1자, 모자 1남, 담뱃대 25개, 가위 4개, 큰 바늘 1봉, 火金 2개, 白簪 1냥, 후추 1냥, 무명 휘황 2건, 색실 1냥, 참빗 5개, 角香 2개, 반포 1필, 청색 무명 장의 3건, 잡향 1개, 헌숨 4근, 꽃 그릇 25냥, 무명 이불 1건
이유보	搗馬尾 2桶, 등채[藤鞭] 3개, 흑각 12장, 낚시줄 1부, 화자피 저고리 8건
임성주	헌숨 3근, 참빗 7개, 청색 무명 장의 7건, 모자 2남, 무명 휘황 2건, 반포 1필, 낚시줄 2부, 가위 3개, 모단 13자, 공단 3자, 두청 4자, 담뱃대 7개, 잡향 2개, 화자피 저고리 4건
윤성임	흑각 4장, 무명 휘황 1건, 모자 1남, 양피 저고리 4건, 반포 10필, 청색 무명 장의 1건, 헌숨 4근, 참빗 5개, 가위 8개, 화금 2개, 꽃 그릇 10냥, 백반 1냥, 두청 4자, 석경 1면, 부싷돌 반근, 당묵 2정, 담뱃대 4개
이은성	무명 휘황 1건, 모단 5자, 香丹子 1개, 가위 2개, 참빗 2개, 각향 8개, 담뱃대 7개, 백반 1냥, 침피枕皮 1건, 모자 1남, 청색 무명 장의 2건, 헌숨 2근, 양피 2장, 화자피 저고리 4건, 낚시줄 1부, 반포 5필, 靑花 5냥
김대옥	흑각 6장, 무명 바지 1건, 반포 17필, 木香 11개, 각향 15개, 색주머니 2개, 참빗 3개, 청화 5냥, 낚시줄 3부, 청색 무명 장의 3건, 헌숨 3근

한편, 이방익 일행이 중국에서 받은 대접은 매우 융숭했다.¹⁶²⁾ 이들을 조사한 결과 소지품이 상당했다.¹⁶³⁾ 표류민을 대의에 기초하여 환대하였다면 조선 역시 중국의 표류객들을 이와 마찬가지로 응대해야만 했다. ‘선린’이란 쌍방의 환대로 가능했다.

162) 김강식, 169쪽 참조

163)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윤6월 10일(무신)

1-3.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들

1789년(정조 13) 1월 제주목사 홍인묵(洪仁默)은 제주에 표착한 중국인들을 문정(問情)하여 보고했다. 표류객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는 조천진 조방장 윤구종이었다. 그의 치보에 근거하여 제주목사는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이달 4일 조천진(朝天津)의 조방장(助防將) 윤구종(尹九宗)의 치보(馳報)에, ‘정체불명의 배 1척이 본진(本鎭)의 앞 해상에 도착하여 육지와 1마장(馬場)쯤 떨어진 데서 돛을 내렸습니다. 그 배의 모양을 보니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며 세 개의 범죽(帆竹)을 꽂은 것이 필시 외국의 배였습니다.’ 이에 겸중군(兼中軍) 제주 판관 김봉길(金鳳吉), 역학(譯學) 조경식(趙慶植), 왜학(倭學) 정사박(鄭思博)으로 하여금 문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주판관은 곧바로 작은 배를 띄워 표착한 선박에서 몇 사람을 내리도록 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저들이 대답하기를, 「풍세(風勢)가 험악한데 닢줄이 닳아 끊어졌으니, 내포(內浦)로 배를 끌어들인 뒤라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군인을 많이 동원하여 내포로 끌어들인 뒤에 소선(小船)으로 저들 중 영리한 자 3인을 내려오도록 하고서 표류해 온 곡절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들 19인은 소주부(蘇州府) 태창주(太倉州) 진양현(鎭洋縣) 사람으로서, 본현(本縣) 사람 이광성(李廣盛)의 서찰을 받고 이광성의 선척에 함께 타고서 지난달 14일에 콩(豆)을 싣고 돌아오기 위해 청강(靑江)을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 27일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표류하다가 귀경(貴境)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배 안의 물건은 소전(小錢) 304냥, 백미(白米) 30두였습니다. 또 포토(浦土) 100여 석을 싣고 있었으므로 그 까닭을 물어 보니, 「배가 가볍기 때문에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류선박의 크기와 모양 등을 기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처를 기록했다.

“체선(體船) 우측 바깥의 삼판(杉板)에 「강남태창주진자제칠갑륙호 이광성상선(江南太倉州鎭字第七甲陸號李廣盛商船)」 등 17자를 대자(大字)로 양각(陽刻)하고 청채(靑綵)로 박아넣었으며, 또 소선(小船)이 있었습니다. 귀환할 시기를 물으니, 「풍세가 아직도 험하니 천천히 계춘(季春)을 기다려서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온 뒤에야 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저들을 불러들여 먼저 음식물을 먹이고 본영(本營)의 성내(城內) 공해(公廩)에 안접(安接)하게 한 다음, 파수하고 공궤(供饋)하기를 <규례>대로 하였습니다.”¹⁶⁴⁾

1788년 12월 4일 중국 소주의 상선이 제주에 표류한 것이다. 이양선이 나타나거나 표류하면 이를 보고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배의 선원들과 표류하게 된 이유 그리고 배의 모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관련자들은 공관 근처에 거처하도록 하고 음식물과 옷 등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목사는 이국인에 대한 공궤를 규칙대로 진행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다만 서해상에서 제주에 표류할 때 서쪽의 명월진(明月鎭)과 차귀진(遮歸鎭)의 만호들은 전연 기미를 살피지 못한 채 보고하지 않아 이들을 처벌하는 조처를 아울러 취했다. 명월진 만호 이경철(李景喆)은 우선 파출하고, 차귀진 조방장 장익걸(張益傑) 역시 곧 태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조는 의복과 양식을 후하게 지급하고 원하는 대로 바람을 살피 떠나보내도록 명했다.¹⁶⁵⁾

점차 제주목사의 장계는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는 대신 부록으로 <문정기(問情記)>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1797년(정조 21) 11월 제주 목사 조명집(曹命楫)은 중국 소주에서 표착한 선원들을 조사하여 보고했다.

“11월 15일 신시(申時) 모슬진(慕瑟鎭)의 조방장(助防將) 윤광종(尹光宗)과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치보(馳報)에 ‘배 1척이 서쪽 대양(大洋)에서 동쪽 대양으로 향하다가 전전하여 저별봉(貯別烽) 동편 형제도(兄弟島) 앞바다에 이르러 돛을 내리고 정박하였습니다. 선박이 건조된 모양을 보건대

164) 《일성록》 정조 13년 기유(1789) 1월 28일(을유)

165) 이상의 내용은 《일성록》 정조 13년 기유(1789) 1월 28일(을유)

틀림없이 이양선으로 풍랑이 거세어 자세하게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대정 현감 고한록을 겸중군(兼中軍)에 차정(差定)하여 각별히 방비해서 삼엄하게 경계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고, 한학(漢學) 안시명(安時明), 왜학(倭學) 홍득영(洪得榮) 등을 즉시 보내 겸중군과 함께 문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정현감 고한록은 통역관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표류 선박 근처에 다가가 직접 배에 올라 탄 후 선적한 물건을 살피고 조사했다. 왜인인줄 알았으나 청나라 사람들이었다.

대정 현감의 치보 및 한학과 왜학 등의 수본(手本)에 ‘17일 진시(辰時)에 저별 봉 아래 저들의 배가 있는 곳에 급히 가니, 주성(州城)과의 거리는 100리가 되고 북쪽으로 대정현까지는 5리가 되고 서쪽으로 모슬진까지는 7리쯤 되었습니다. 풍랑이 거세어 서로 의사소통하기에 역부족이라 파도가 가라앉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통사(通事)를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저들의 배로 올라서 먼저 선적한 물품을 살피고 그들의 생김새를 보니 머리에 축올라(于兀羅)를 쓰고 몸에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었고 발은 버선[襪鞋]을 신었으며, 머리는 살별 모양으로 깎았으니 왜인(倭人)이 아니라 청인(淸人)이었습니다. 그중에 문답할 수 있는 자 세 사람이 우선 내렸는데 말로는 의사소통하기 어려워 글로 써서 한번 물어보니 답하려 하지 않았고 상당히 지친 기색이 있기에 급히 죽물(粥物)을 마련해서 모두 나누어 먹이고 조금 정신이 안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글을 써서 묻기를 「그대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로 어느 곳을 가다가 이곳으로 표류해 왔는가? 그리고 한 배에 탄 사람은 몇 사람이고 모두 별 탈은 없는가?」 하니, 저들이 답하기를 「대청국(大清國) 강남(江南) 소주(蘇州)에 속한 통주(通州) 여사인(呂四人)이다. 올해 9월 24일 같은 마을 고리릉(高利隆)의 선척과 서찰을 가지고서 콩(黃豆)을 운반하러 산둥(山東) 교주(膠州)의 서묵암(徐默菴)에게 가다가 올 10월 15일 이곳으로 표류했고, 한 배에 탄 20인의 나이와 성명은 직접 써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국의 선척을 경솔하게 육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지만 배가 1척 뿐이고 인원수도 적어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니 그대로 해상에 두는 것은 표류민을 구제해 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풍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염려해 주지 않아서는 안 되기에 계속 죽물을 착실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변방의 정

세는 중대한 사안이라 보고하는 일이 시급하니 즉시 배를 움직여서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다시 상세하게 문정하라고 신칙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정현감은 중국의 선박을 모슬포로 끌어와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은 극구 수심이 낮은 곳으로 예인하면 배가 부서질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아마도 조선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연유한 듯하다. 하여간 세 사람을 내리도록 하여 조사를 이어갔지만 글자를 전연 알지 못하는 무식한 선원들이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18일 묘시(卯時)에 도착한 대정 현감의 치보 및 한학과 왜학 등의 수본에 ‘모슬진의 포구는 본래 크고 작은 배들이 항상 정박해 있는 곳으로, 전부터 이국의 배가 표류해 왔을 때 모두 이 포구로 예인해 들이도록 하였기 때문에 파도가 고요해진 틈을 타서 당일 미시(未時)에 저들의 배를 움직여 이곳에 정박하려고 닦을 올리고서 호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리도 못 와서 저들이 멀리서 지형을 보더니 대정실색하며 「우리 배는 수심 3길에 되지 않으면 뜰 수 없다. 더구나 이 포구는 암석이 많을 뿐더러 조수(潮水)도 드나드는 곳이니 결코 우리 배를 띄울 수 있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고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의견을 고집하며 즉시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대로 닦을 내리고 이동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의 선적물을 낱낱이 점고(點考)하고 다시 3인을 내리도록 해서 반복하여 물어보았는데 이른바 식자라는 자가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말을 하려고는 하나 자세하지 않고 글로 쓴 것도 문맥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우선 말이나 글로 얻은 내용을 가지고 대략을 기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公文) 1장 및 서찰 3봉(封), 각 사람들의 성명과 나이는 모두 적어서 동봉(同封)하여 우선 올려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대정현감 고한록은 중국 선박의 길이와 크기 등을 조사했다.

선박이 건조된 모양은 이렇습니다. 전면이 낮고 후면이 높으며 본판(本板)은 길이가 20파(把), 너비가 3파 반이고 높이도 3파 반입니다. 앞 돛대는 길이가 10파, 둘레가 1파이고 돛대 위에 용두목(龍頭木)을 덧붙였는데 길이가 1파 반이며, 쇠로 위아래를 두른 것이 모두 8곳입니다. 돛은 백목(白木) 25폭(幅)으로 붙였는데 길이가 8파, 너비가 4파입니다. 가운데 돛대는 길이가 15파, 둘레

가 1파 반이고 돛대 위에 용두목을 덧붙였는데 길이가 2파 반이며, 쇠로 위아래를 두른 것이 모두 12곳입니다. 그 위에 붉은 명주로 만든 단폭기(單幅旗)를 꽂았는데 길이가 1파 반입니다. 돛은 백목 30폭으로 붙였는데 길이가 13파, 너비가 9파입니다. 뒤 돛대는 길이가 7파, 둘레가 2자이고 돛대 위에 붉은 명주로 만든 삼폭부기(三幅付旗)를 꽂았는데 길이가 2파입니다. 돛은 백목 13폭으로 붙였는데 길이가 5파, 너비가 2파입니다. 치목(鷓木 배의 키)은 6편(片)을 붙였는데 길이가 5파 반이고 둘레가 1파입니다. 미로(尾櫓 작은 노)가 1개인데 길이가 6파, 둘레가 1자이며, 쇠닢[鐵碇]은 5개입니다. 배 안은 기이하고 괴상하게 꾸몄습니다. 판옥(板屋)의 아래에 5개의 누방(樓房)을 만들어 3곳에 현관을 걸었는데, 하나는 「풍염낭정(風恬浪靜)」이라 하고 다음은 「등비독승(騰飛獨勝)」이라 하고 그다음은 「해불양파(海不揚波)」라고 하였으며, 모두 양각하고 금빛을 칠하였습니다. 또 「강부재차제사피금(姜父在此諸事避禁)」이라는 8글자를 당지(唐紙)에 써서 걸어 놓았습니다. 나무 창문 4곳은 유리로 발랐습니다. 누방 아래에 또 침실 2곳이 있었는데 뒷면에 판(板)을 연이어 붙여 바람막이를 만들고 오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위에 「순풍상송(順風相送)」 4글자를 새기고 금빛으로 칠하였으며 전면에 용을 그렸는데 단청(丹青)이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판옥의 뒷문은 무지개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앞문 2짝은 모두 목판으로 만들었는데, 좌우에 채색한 목판에 각각 「강남소주원자제십칠호고리룡상선(江南蘇州元字第十七號高利隆商船)」이라고 15글자를 크게 써서 양각하고 먹을 발랐습니다. 또 작은 배 1척이 있었는데 길이 3파 반, 너비 1파 반, 높이 2자였고, 역시 「고리룡예선(高利隆船)」이라고 5글자를 크게 써서 새겼습니다. 미로(尾櫓)가 1개인데, 길이 1파, 둘레 5치로 본선(本船) 위에 두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였습니다. 배의 제반 짐물이 모두 완전하였으며 의복은 여별이 있었고 식량은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쌀감과 물, 찬거리뿐이었기에 양식용 쌀과 함께 적절하게 헤아려 지급하였습니다. 배에 실은 물품은 황죽(篁竹) 600개, 목화(木花) 56봉(封)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소소한 잡물도 따로 적어서 봉하여 올려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제주에 표류하면 반드시 제주목 관아로 데리고 와 조사하고 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 규식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일부만을 제주관아로 데리고 와서 규례대로 1명당 백미(白米) 10말로 넉넉하게 지급하고 염장이나 쌀감, 물 등을 충분히 공급했다.

이국인이 본도(本島)에 표류해 왔을 때에 주성(州城)으로 거느리고 들어와 경위를 따져 묻고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이미 행해 온 규례입니다. 그래서 중군과 한학 등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일 신시(申時)에 영솔(領率)하여 불러들인 다음 음식물을 후하게 먹이고 더 자세하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용렬하고 무식한 부류였고 8인 중에 고봉창(高鳳昌)이라는 자가 문자를 조금 알았으나 예사롭게 사용하는 말도 태반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통사 등으로 하여금 간신히 문답하게 하니 그들이 글로 써서 바친 것이 대부분 말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문정한 것과 차이가 없었기에 문정별단(問情別單)을 삼가 기록하여 급히 장계하였습니다. 표류민이 바친 서찰 3봉을 그에게 열어 보게 하니 안에 7장이 있었는데 범자(梵字)로 계송(偈頌)을 쓴 것이 많고 문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억지로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서찰과 공문은 일일이 베껴 쓰고 그들의 성명, 나이, 선적물과 함께 별도로 적어서 성책(成冊)하여 비변사로 올려 보냈습니다. 표류해 온 실상을 안 이상, 일부는 대양에 두고 일부는 주성(州城)에 두는 것은 후히 대하는 뜻이 아니고 매우 소홀히 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내항(內港)으로 배를 이동해서 바람이 평온해지기를 찬찬히 기다리라는 뜻으로 갖가지로 타이르니, 일제히 일어나서 온갖 말로 떠들어 대며 끝까지 거부하면서 ‘정리(情理)로나 사적인 계책으로나 모두 몹시 절실하고 걱정스러우니 부디 만류하지 말고 지극한 소원을 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지 못한 만큼 끝내 각각 두기 어려워서 겨우 하루를 머물게 하고, 이어 중군과 통사 등으로 하여금 본선(本船)으로 영솔하여 두게 하였습니다. 음식물은 1명당 양미(糧米) 2되, 닭 2각(脚), 생어(生魚) 2미(尾), 감곽(甘藷 미역) 2냥(立), 남초(南草 담배), 염장(鹽醬)을 마련하여 지급하게 하고, 의복은 1명당 주의(周衣) 1건, 버선 1부(部)를 만들어 주게 하였습니다. 양식은 규례대로 1명당 각각 백미(白米) 10말로 계산하여 주고, 염장과 쌀감, 물 등의 물품도 넉넉하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바람의 형세를 면밀히 살펴 원하는 대로 출발하게 할 생각입니다.”¹⁶⁶⁾

제주 목사의 장계 뒤에는 별도의 〈문정기〉가 부록되었다.

166)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11월 17일(임오)

〈표 3〉 1797년 11월 청인 고봉창 표류 문목

問目	내 용
문	그대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인가?
답	우리는 모두 대청국 강남(江南) 소주부(蘇州府)에 속한 통주현(通州縣) 여사인(呂四人)이다.
문	그대들은 무슨 일로, 몇 월 며칠에 어느 곳에서 승선하여 어느 곳으로 가던 중이었던가?
답	우리는 통주 고리릉(高利隆)의 선척과 서찰을 가지고 황두(黃豆)를 운반해 오기 위해 9월 24일 여사(呂四)에서 출항하여 교주(膠州) 서묵암(徐默菴)에게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항로의 절반에 이른 28일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대풍을 만나 이곳까지 표류해 오게 되었다.
문	고리릉과 서묵암은 어떤 사이기에 단지 편지 한 장만으로 빈 배를 가지고 가는가?
답	모두 좌상(坐商)으로 피차간에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여 물품을 구하는 대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서찰을 전하면 무슨 물품이든 마련하여 실어 올 뿐이다.
문	황두를 반드시 배 전체에 운반해 오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답	황두는 장(醬)을 담거나 두부를 만드는 데 쓸 뿐 아니라 변유(汙油)를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본래 많이 사용되는 물품인데 통주에서는 나지 않고 교주에서 난다. 이곳은 귀하고 저곳은 싸니 이 때문에 많이 운반해 온다.
문	여사는 읍명(邑名)인가, 촌명(村名)인가?
답	바로 통주현 동쪽에 위치한 지명이다.
문	여사에서 통주까지는 육로로 몇 리쯤 되고 수로로 몇 리쯤 되는가?
답	육로로는 140리이고 수로는 없다.
문	통주에서 교주까지는 육로와 수로로 몇 리쯤 되는가?
답	수로로는 1,800리이고 육로로는 1,100리이다.
문	그대들이 배를 가지고 상업을 하는 만큼 무슨 근거할 만한 공문이나 부패(部牌)가 있는가?
답	과연 선표(船標)가 있어서 이것으로 현납(現納)한다.
문	바람을 만날 날로부터 표류하여 정박한 날짜를 계산하면 모두 17일이다. 그간 어느 곳에 배를 둔 것 인가?
답	바람이 치는 대로 표류하면서 대양 속에서 요동하느라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배를 제어하기에도 역부족이라 며칠인지, 어느 곳을 지나는지, 어느 지역에 머무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문	한 배에 탄 사람이 몇 사람쯤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 목숨을 보존하고 선적물도 모두 완전한가?
답	우리 20명이 다 별 탈이 없고 선적물 역시 하나도 파손당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 것은 쌀감과 물, 양 식뿐이다.
문	그대들에게 부족한 물품들은 하나하나 구해서 지급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대들의 나이와 성명을 써서 바치도록 하라.
답	선호(船戶) 고리릉의 대리인 주옥파(朱玉波) 32세, 타공(舵工) 정수원(程遂元) 53세, 수수(水手) 고봉창(高鳳昌) 32세, 팽우남(彭南) 33세, 고조원(顧朝元) 38세, 이회림(李會林) 34세, 관신림(管慎林) 30세, 진옥서(陳玉書) 47세, 고장림(高長林) 27세, 반요정(潘耀廷) 24세, 유정고(劉正高) 27세, 고영산(高泳山) 26세, 위원장(魏元章) 51세, 고정표(顧廷標) 18세, 원건고(袁堅皐) 37세, 이장송(李長松) 25세, 장봉안(張鳳安) 34세, 팽대성(彭大成) 49세, 장자문(張子文) 38세, 팽문광(彭文廣) 23세이다.

問目	내 용
문	그대들의 성명을 공문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성명이 서로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문보다 1인이 더 많은 것은 어째서인가?
답	선호 고리룡이 출항에 임박하여 병이 나서 주옥파로 대신 보냈는데 아무래도 허술할까 우려하여 그의 조카 고봉창을 과연 공문에 기재된 사람 이외에 더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긋날 뿐이다.
문	배에 실은 선적물 중에 3섬의 개흙[浦土]과 600개의 황죽(篋竹)은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가?
답	이것들은 다 긴요한 물품이다. 개흙은 배의 틈을 막기 위한 것이고, 황죽은 선호가 서목암에게 보내는 것인데 선박 집기에 쓰거나 가재(家材)에 쓴다
문	그대들 28인 중에 8인만 이곳에 오고 12인은 배에 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답	다행스럽게 귀국(貴國)에 도착하여 이렇게 돌보아 줌 받았으니 어찌 일제히 달려와 사례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만금(萬金)을 들여 만든 선척을 바다에 버려두고 대번에 모두 오는 것은 매우 허술한 처사이기에 12인은 본선(本船)에 남겨 두어 지키게 하였던 것뿐이다.
문	그대들의 배가 지금 있는 곳은 애당초 해안 부근의 안운한 곳이 아니어서 실로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받을 우려가 많다. 그러나 잠시라도 지체하여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고 즉시 내항(內港)으로 옮겨 정박해야 할 것이다.
답	근처를 둘러보니 돌부리가 은미하게 포진되어 있으니 내항으로 들어오면 조수가 밀려나 물이 얕아질 때 돌에 부딪혀 파손당하는 우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형세상 수심이 깊은 곳을 택한 다음에야 안온하고 편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머물고 있는 곳도 충분히 염려가 없으니 그대로 우선 이곳에 있으면서 동풍이 불면 즉시 돌아가려고 한다. 제발 배를 옮기도록 하지 말아 달라.
문	이런 엄동설한에는 동풍을 쉽게 만날 수 없으니 어찌 단시일에 속히 떠날 수 있기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서 편안히 배를 돌리기를 꾀하는 것이 좋겠다.
답	부모가 계신지라 밤낮으로 간절히 기다리기에 결코 오랫동안 머무르기 어렵다. 지금 조석으로 바람을 기다려 반드시 속히 돌아가려 하니 다른 것을 어찌 번거롭게 말하겠는가.
문	그대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들으니 참으로 몹시 불쌍하다. 정세(情勢)야 이와 같기는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지기 전에는 차마 돌아가도록 허락할 수 없다. 조만간에 편리한 쪽으로 안착할 방도가 있을 것이니 더는 염려하지 말고 지휘만 기다리도록 하라.
답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이렇게 배불리 먹여 주고 이렇게 돌봐줌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장사를 업으로 하고 생활 수단이 배이니 어찌 배를 버리고 편한 곳에서 한갓 시일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오직 바라건대 배로 돌아가는 것을 즉시 허락하여 배를 지키며 바람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 달라.
문	선표(船標) 중에 원화현(元和縣) 3글자는 선호(船戶)나 그대들이 사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쓴 것은 어째서인가?
답	원화(元和)라는 것은 바로 당초에 배를 건조한 곳의 지명이므로 의례적으로 쓴 것이다.
문	여사에서 원화현까지는 수로와 육로로 몇 리가 되는가?
답	수로로는 300리이고 육로로는 200리이다.
문	배에 개를 기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답	해적이 침범하는 근심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람을 보고 짚는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다.
문	그대들이 사는 여사에서 황성(皇城)까지는 몇 리쯤 되는가?
답	우리는 먼 땅의 선상(船商)이라 한 번도 황성을 왕래한 일이 없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예 모른다.
문	통주에서 소주까지는 수로와 육로로 몇 리쯤 되는가?
답	수로로는 300여 리이고 육로로는 200여 리이다.

한편, 1798년(정조 22) 1월 전라 감사 이득신(李得臣)이 제주에 표류해 온 청인(淸人)의 문정기를 보고했다.¹⁶⁷⁾ 1797년 11월 겨울에 명월진 만호 이광수가 발견한 이양선이었다. 얼마 전에 위에서 언급한 청나라 상인의 배가 표류했는데 또 한 척의 상선이 표류한 것이다.

“제주 목사 조명집(曹命楫)의 등보(謄報)에 ‘정사년(1797, 정조 21) 11월 25일 진시(辰時)에 명월진 만호(明月鎭萬戶) 이광수(李光秀)가 급히 보고하여 「국적을 알 수 없는 배 한 척이 본 포구에 표류해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주관관 겸임 정의현감(濟州判官兼任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를 겸중군(兼中軍)으로 차정하여 각별히 지키게 하고 이어 자세히 문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에 축올라(于兀羅)를 쓰고 몸에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머리는 살별 모양으로 깎았으니 청나라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짐을 자세히 살펴보니 또한 모두 상인(商人)이었으며 표류한 것이 사실이고 달리 의심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 배는 앞부분이 낮고 뒷부분이 높았는데 뒤쪽의 높은 것은 판옥(板屋)이었습니다. 판옥의 내부에는 좌우에 방이 4개가 있는데 「순풍을 맞아 만 리를 가서 가득 신고서 영화롭게 돌아오도다.[順風行萬里 滿載得榮歸]」 등의 10글자나 혹은 「바람이 순조롭고 파도도 순조롭고 일도 순조로우며 연이어 뜻대로 잘되어, 재물이 생기고 보물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금이 생기네.[順風順水 順事連順意 生財生寶 生喜又生金]」라는 18글자를 모두 먹으로 각각 그 방문 가운데 및 범죽(帆竹 돛대) 옆에 썼습니다. 또 판옥이 있는데 좌우에 방이 6개가 있었습니다. 방문 가에는 「순풍에 득의하여 돌아오리니, 운항하는 것이 아침 해 사이를 달리는 듯하네.[順風得意回 運如曉日間]」 등의 10글자나 혹은 「금과 옥은 궤 속에 천년토록 담겨 있고, 향연 피우고 전자로 평안이라는 글자를 쓰도다.[金玉櫃中千古在 香煙篆書平安字]」 등의 14글자를 역시 먹으로 썼습니다. 판옥 방의 위쪽에는 3좌(座)의 금부처가 있었고, 비단 휘장을 늘어뜨려 놓았는데 휘장 쪽에는 금으로 「천후성단(天后聖丹)」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었고, 휘장 밖에는 백철(白鐵)로 만든 촛대 2쌍이 있었습니다. 쌍창(雙窓)을 내었는데 한 곳에는 금을 발랐고 창밖의 양쪽 난간에도 금을 발랐으며, 난간 밖에는 빈방이 있는데 가는 갈대로 짠 자리를 깔아 놓았으니 이곳은 그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하는 곳입니다. 중장(中粧)에 칸막이로 가린 데가 27곳이고 하장(下粧)

167)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월 14일(기묘)

에 칸막이로 가린 데가 15곳인데 사람이 거쳐하기도 하고 짐을 쌓아 두기도 하였습니다. 본판(本板)의 길이는 23파(把)이고 너비는 6파이며 높이는 4파였습니다. 앞의 범죽의 길이는 7파이고 둘레는 1파였습니다. 범석(帆席 돛)은 대자리로 만들었는데 길이는 5파이고 너비는 3파이며, 또 목면(木綿)으로 만든 돛 14폭을 붙였는데 길이는 4파이고 너비는 3파였습니다. 가운데의 범죽의 길이는 15파이고 둘레는 2파 반이었으며, 범죽의 머리 부분에 1폭짜리 목면으로 된 붉은 깃발을 꽂았고 길이는 1파 반이었습니다. 범석은 대자리로 만들었는데 길이는 14파이고 너비는 10파이며, 또 목면으로 만든 돛 32폭을 붙였는데 길이는 12파이고 너비는 10파였습니다. 뒤의 범죽의 길이는 5파이고 둘레는 1자(尺) 반이었습니다. 범석은 대자리로 만들었는데 길이는 3파이고 너비는 1파 반이며, 또 목면으로 만든 돛 14폭을 붙였는데 길이는 3파이고 너비는 2파이며 치목(鷓木)은 5편(片)을 붙였고 길이는 7파인데 그 자루에 쇠로 두른 곳이 6곳 있고 대목정(大木楹)이 4개이고 대철정(大鐵楹)이 1개이며 소철정(小鐵楹)이 1개였습니다. 급수선(汲水船) 2척 중에서 1척은 길이가 3파이고 너비가 1파 반이며 높이는 2자인데 칸막이로 가린 데가 3곳이었고, 다른 1척은 길이가 2파 반이고 너비는 1파 남짓이며 높이는 2자인데 칸막이로 가린 데가 3곳이었습니다. 배와 관계된 집기는 모두 완전하고 견고하였는데 그중에 범궁죽(帆弓竹 돛의 활대) 40지(枝)와 굵은 밧줄, 가는 밧줄 등의 물건은 약간의 손상이 있었고, 실었던 황두(黃豆)·청두(靑豆)·녹두(菘豆)·오두(烏豆) 및 양식인 백미(白米)가 모두 1261담(擔)이었습니다. 1담에 담은 것은 우리나라의 40말가량에 해당합니다. 손상된 집기는 지금 한창 수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상선에는 책들이 몇 권 발견되었다. 각각 소설이나 병가의 책들로 보이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책자 중 하나는 《손방연의(孫龐演義)》라고 하는데 병가(兵家)의 의론인 듯하고, 하나는 《척독(尺牘)》이라고 하는데 편지의 형식과 같습니다. 《설당정서(說唐征西)》 2책은 잡기(雜記)에 불과하며, 또 하나 《곡부남관북조륙(曲簿南管北調六)》이라고 하는 것은 음영(吟詠)한 것을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표류한 상선에 곡식이 충분했지만 <규례>에 따라 1인당 얼마간의 식료품을 지급했다.

그들의 의복과 양식이 모자라지는 않았으나 1명당 쌀 2되, 닭 2각(脚), 생선(生鮮) 2미(尾), 감곽(甘藷) 2냥(立)씩을 규례를 원용하여 지급하고 남초(南草)와 소금, 장(醬), 팥감, 물 등의 물자를 후하게 준비하여 지급하며, 1명당 장포목(匠布木)으로 만든 두루마기 1건(件)과 버선 1부(部)씩을 만들어 주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때 필요한 양식과 반찬, 팥감, 물 등의 물품 또한 적절히 헤아려서 제급(題給)하였습니다.

이번 상선은 동풍이 불어오자 급히 배를 띄워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려왔고 제주의 조방장은 배를 내어 인도했다. 대정현에 표류했던 고봉창의 선척과 달리 온전한 상태로 순풍을 맞아 귀로에 올랐으니 다행이라고 보고했다.

20일 오시(午時)에 동풍이 막 불기 시작하자 저쪽 사람 2명이 작은 배를 타고 파수(把守)하고 있는 곳에 와서 말하기를 「저희들은 돌아가고자 하니 길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닻을 올리고 이어 즉시 돛을 달았기 때문에 능로군(能櫓軍)을 시켜 출항할 길을 알려 주게 하였더니 곧바로 서남쪽의 큰 바다를 향하여 가서 순식간에 바다를 건너 묘연히 형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앞서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했던 청인 고봉창(高鳳昌) 등 20명은 일전에 바람의 형세를 오인하고 갑자기 출항했다가 중간에 위험을 겪고는 즉시 돌아와 정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나머지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30여 인은 모두 온전히 보전하고 배와 짐기 또한 모두 온전한 상태로 순풍을 만나 즉시 돌아갈 수 있었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문정기(問情記)는 뒤에 열거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중국의 상선이 제주에 표류했다가 해상으로 귀로에 올랐다는 이해 1월 승문원의 자문으로 중국에 보고되었다.¹⁶⁸⁾ “제주목 명월진(明月鎭)에 표류해 온 중국인 31명을 이미 수로로 보냈다는 내용”의 자문을 금군(禁軍)으로 하여금 의주에 보내도록 하고 이를 다시 중국의 봉성 장에게 전하여 북경의 조정에 보고한 것이다.

168)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월 15일(경진)

〈표 4〉 1797년 11월 청인 진가서 표류 문목

問目	내 용
문	“너희는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인가?”
답	“우리는 모두가 대청국(大清國)의 복건성(福建省) 장주부(漳州府) 해징현(海澄縣) 사람입니다.”
문	“모두 읍내에 거주하는가, 촌(村)에 거주하는가?”
답	“읍내에 거주하기도 하고 촌에 거주하기도 합니다.”
문	“너희는 무슨 일로 어느 해 몇 월 며칠에 어느 곳에서 출항하여 어느 곳으로 가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답	“우리는 모두 배를 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으로, 올해 7월 3일에 복주(福州)에서 종이를 담은 상자를 싣고 천진(天津)에 가서 팔고, 산해관(山海關) 동남쪽 금주(金州)로 방향을 돌려 황두·청두·오두·녹두 등의 곡물을 사서 싣고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달 20일 산둥(山東) 지방에 도착했을 때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을 만나 귀국(貴國)으로 표류해 오게 되었습니다.”
문	“너희가 당초에 싣었던 종이 담은 상자는 얼마나 되며 모두 너희의 물건이었는가?”
답	“선주(船主)가 스스로 구입한 종이가 4800상자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가 4,870상자로 도합 9,670상자였습니다.”
문	“한 상자에 담은 종이는 얼마나 되는가?”
답	“한 상자에는 6덩이의 종이가 들어갑니다.”
문	“한 덩이는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
답	“한 덩이는 120장(張)이고 한 상자는 본은(本銀)으로 8전 2푼입니다.”
문	“각 곡식은 얼마나 실었는가?”
답	“청두는 600담, 황두는 630담, 녹두는 9담, 오두는 20담이고 고량미(高糧米)는 작은 포대로 하나입니다.”
문	“1담은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 고량미라는 것은 어떤 곡식인지 모르겠는데 값은 또한 얼마나 되는가?”
답	“고량미는 촉미(蕎米)인데 작은 한 포대의 값은 2전입니다. 1담에는 10말 정도가 들어가며 값은 전(錢)으로 3냥 5전이고, 녹두나 오두의 경우 값이 3냥 3전입니다.”
문	“배를 함께 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목숨을 부지하였으며, 배의 집기도 모두 완전한가?”
답	“저희들 31인이 모두 아무 탈 없습니다. 다만 폭풍으로 인해 표류할 때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청두와 황두를 아울러 7, 8십 담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범죽 40지(枝)와 굵은 밧줄, 가는 밧줄 등의 물건에 조금 손상이 생겼습니다.”
문	“손상된 배의 집기들은 즉시 준비해 지급하겠다. 너희의 성명과 나이를 먼저 써서 바치도록 하라.”
답	“선호(船戶) 진가서(陳嘉瑞)는 23세이고, 타공(舵工) 장마(蔣媽)는 55세이고, 수수(水手) 진산(陳山)은 50세, 채강(蔡江)은 46세, 손남(孫南)은 33세, 정미(鄭尾)는 29세, 장찬호(莊鑛湖)는 30세, 진찬(陳贊)은 30세, 소공(蘇恭)은 38세, 채문(蔡汶)은 43세, 왕풍(王馮)은 31세, 임부래(林富來)는 35세, 안복(顏福)은 50세, 주성지(周成祗)는 41세, 진한(陳漢)은 28세, 석전(石全)은 26세, 장장(蔣壯)은 47세, 주세로(周世老)는 22세, 임왕(林旺)은 32세, 여맹(餘猛)은 40세, 곽친(郭親)은 39세, 소방(蘇房)은 37세, 소의(蘇義)는 30세, 오군(吳君)은 34세, 소이(蘇二)는 24세, 진로(陳老)는 23세, 장향(蔣香)은 21세, 장유흥(莊允興)은 22세, 손선(孫綫)은 31세, 유순(劉巡)은 39세, 채광평(蔡光平)은 47세입니다.”
문	“너희가 배를 가지고 상업을 하는 만큼 무슨 근거할 만한 표문(標文)이 있는가?”

問目	내 용
답	“공문과 부패(部牌)가 현재 배에 있으니 뒤에 바치겠습니다.”
문	“태풍을 만난 날로부터 이곳으로 표류해 오기까지가 4, 5일 사이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식과 반찬 등의 온갖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답	“저희들이 신고 온 물건이 많았으니 무슨 부족할 우려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 밤낮으로 그립습니다. 손상된 배의 집기들을 다시 장만하게 되면 즉시 바람을 살피 돌아가겠습니다.”
문	“바람이 어떠한가 편안히 돌아갈 수 있는가?”
답	“동풍이 불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오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바람이 세고 추우니 오랫동안 바다에 머무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된다. 배는 균줄을 많이 정해서 착실히 잘 말아 지키도록 하였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31인을 성읍(城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편의대로 편안히 거처 하게 하고자 한다.”
답	“저희들의 생계가 오로지 배와 화물에 달려 있으니 어찌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저희는 오직 속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좋은 바람을 놓칠까 염려되는 상황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배에 머무르면서 바람이 순해 지기를 기다리게 해 주소서.”
문	“해징현에서 복주(福州)까지가 육로로는 몇 리나 되며, 수로(水路)로는 몇 리가 되는가? 장주(漳州)까지는 또한 몇 리나 되는가?”
답	“복주는 수로로 2일의 노정이고 육로로는 300여 리입니다. 장주는 수로로 1일의 노정이고 육로로는 100리입니다.”
문	“복주에서 천진(天津)까지는 육로로 몇 리나 되며, 수로로는 몇 리나 되는가?”
답	“수로로 20일의 노정이고 육로로는 5000여 리입니다.”
문	“천진에서 산해관 동남쪽 금주(金州)까지는 육로로는 몇 리나 되며, 수로로는 몇 리나 되는가?”
답	“수로로는 5일의 노정이고 육로로는 2000여 리입니다.”
문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황성(皇城)까지는 수로로는 몇 리나 되며, 육로로는 몇 리나 되는가?”
답	“수로로는 20일의 노정이고 육로로는 5000여 리쯤 될 듯합니다. 저희들은 상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에 머물고 육지로 내왕한 일이 없어서 몇 리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문	“장주로부터 복건(福建)까지 수로로 몇 리나 되며 육로로는 몇 리나 되는가?”
답	“수로로는 2일의 노정인데 육로로는 400여 리입니다.”
문	“배에서 금수(禽獸)를 많이 기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답	“저희들은 어릴 적부터 행상(行商)을 해서 배를 집으로 여기는데,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간혹 반찬거리로 쓰기도 합니다. 기타 고양이나 새 같은 것들은 애완동물에 불과합니다.”
문	“너희들이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물력은 얼마나 되는가?”
답	“은자 1만 냥 남짓입니다.”
문	“너희들 배의 범목(帆木)이 매우 큰데 값은 얼마나 되는가?”
답	“이것은 서양(西洋)의 나라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값은 은 2500여 냥입니다.”
문	“뒷면에 새겨진 ‘금보발(金寶發)’이라는 세 글자는 그 뜻을 모르겠다.”
답	“이는 배의 이름입니다.”

2. 일본

2-1. 일본에 표류한 제주인

조선인들의 표류는 중국은 물론 이웃 일본으로의 표류도 매우 잦았다. 아울러 조선 정부는 자국민들이 해외로 표류한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추적하여 본국 소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가령 1782년(정조 6) 9월 경상감사 조시준은 일본의 대마도에 표류했다고 전해진 제주인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보고했고, 이에 정조는 부산의 왜관을 통해서 대마도에 서계를 표류한 제주인들의 행적을 조사한 후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시준(趙時俊)이 장계하기를, ‘제주의 표류했던 사람들이 물으로 올라온 뒤에 10명은 간 곳을 알지 못하니 자취가 해괴하고 의아합니다. 대마도(對馬島)에 서계하여 실상을 추적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10명의 생사를 막론하고 간 곳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니, 다시 더 추적하여 돌려보내라는 뜻으로 서계의 회답 중에 말을 잘 만들어 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그대로 따랐다.¹⁶⁹⁾

일본으로 표류한 제주민들 역시 일본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음식과 거처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1786년(정조 10) 7월 제주목사 이명준은 일본에 표류했던 제주인들이 대마도에서 동래를 거쳐 제주에 돌아왔다고 보고했다.¹⁷⁰⁾

제주목사 이명준(李命俊)이 장계하기를, “정의사(旌義寺)의 노비 고영백(高永白) 등 10명이 작년 10월에 바람으로 인해 표류한 경위를 전 목사 윤득규(尹得逵)가 이미 치계(馳啓)하였는데, 이번 5월 7일에 모두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표류하게 된 원인과 그곳에 이르게 된 사정을 물으니, 그들이 작은 배

169) 《일성록》 정조 6년 임인(1782) 9월 29일(계해)

170)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7월 2일(계묘)

한 척에 함께 타고서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갑자기 서북풍을 만나 표류하였는데, 문득 작은 배 한 척이 나와 그들의 배를 맞이하여 섬 안으로 끌어다 대고는 칼을 찬 몇 사람이 뱃머리를 지키면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죽 같은 음식을 주기에 그 나라의 이름과 지명을 물으니 일본국(日本國) 오도(烏島)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날이 저물자 상관(上官)이라고 칭하는 자가 와서 표류하게 된 절차를 묻고는 그들의 배를 신기도(神奇島) 앞바다에 돌려 대고 저들의 배로 사방을 둘러싸고 밤낮으로 지키다가 3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포위를 풀고 배에서 내리게 하여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2일이 지나자 대상관(大上官)이라고 칭하는 자가 또 와서 문정(問情)한 뒤에 배 위의 파손된 집기를 일일이 고쳐 정비해 주고 그들을 그 배에 타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날이 저물 무렵 장기도(長崎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청목면(靑木綿)으로 된 두루마기를 1벌씩 만들어 주고 내보냈으므로 대마도(對馬島)에서부터 동래(東萊)를 경유하여 본주(本州)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표류한 조선인들의 배를 수리하고 옷과 음식 등을 제공한 후 동래의 왜관을 통해 귀국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처럼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의 해상 조난의 상호 부조 사례는 일종의 ‘곤경에 처한 인간에 대한 환대’라는 대의에 기초한 도움의 손길이었다.

표류민들의 귀국 및 송환에 대해서 해당 지방관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1795년(정조 19) 3월, 표류했던 제주민들이 본도로 귀환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강진 현감과 신지도 만호가 모두 파직되었다.¹⁷¹⁾ 당시 전라감사 이서구는 이들의 직무 태만을 문제 삼아 처벌해야 한다고 장계한 것이다.

전라 감사의 장계에, “표류되었다가 돌아간 제주인 6명은 동래부에서 차례로 호송해서 신지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진(鎭)에서 애당초 지방관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또한 본영(本營)에 낱낱이 보고하지도 않은 채 곧장 호송하였다가 4일이 지난 뒤에야 본읍(本邑)에 공문을 보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리포(加里浦)에서는 이미 양식을 지급해서 제주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진의 경우는 비록 진이 빈 상태라고는 하지만 유진장(留鎭將)이 마음대로 곧장 보낸 것은 더욱더 무엄합니다. 도회관(都會官)인 강진 현감이

171)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18일(기사)

면회의 경우는 문정(問情)을 거행하지 못한 것이 두 진이 경솔하게 곧장 보냈기 때문이지만 배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지방이면서 전혀 알지 못해 행해야 하는 규례를 폐기하고 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강진 현감 이면휘, 신지도 만호 이시육은 모두 파출해야 합니다.”

표류객을 일본인들이 직접 배를 몰아 기장 등으로 데려 오는 경우도 있었다. 1795년(정조 19) 여름 동래부사 윤장렬은 차왜(差倭) 등영평정(藤榮平定)이 조선의 장흥(長興)과 강진(康津)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기장의 무지포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¹⁷²⁾

동래 부사의 장계에, “부산첨사(釜山僉使) 홍용건(洪龍健)의 보고에, ‘차왜 등씨영(藤氏榮) 평정행(平定行)이 우리나라 표류민을 영솔하여 기장현 무지포(武知浦)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된 연유를 물어보니, 강진 신지도(薪智島)의 표류민이 고하기를 「저희들 8명이 물고기를 교역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 울산 방어진(魴魚津)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람을 만나 떠나려가 일본국 장문주(長門州) 뇌호기포(瀨戶崎浦)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이 조석으로 음식을 주고 본주의 부중(府中)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거기에서 띠를 갖춘 청목면(靑木綿) 첩장의(貼長衣) 각 1벌(領), 유삼(油衫 비옷) 각 1건, 사립(蓑笠 도롱이와 삿갓) 각 1넝(立), 연죽(烟竹) 각 1개, 말목(襪木 버선 만드는 무명) 각 3자를 선물로 주고, 삼판(杉板)도 고쳐 주었습니다. 장기도(長崎島)의 부중에 도착하자 제주의 표류민 6명과 덕원(德源)의 표류민 5명이 저희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는데, 밥통과 물통 각 1좌(坐), 밥술 2좌, 소반과 사기 접시 각 1넝, 사기 중발(中鉢)과 초석(草席) 각 2넝, 채도(菜刀 채갈) 1자루, 남초갑(南草匣)과 연죽 각 1개, 백목(白木 흰무명) 7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함께 체류하였는데, 두 개의 범죽(帆竹)과 철로 된 질정(蛭釘) 120개, 초둔(草菴) 50번(番), 풍석(風席) 18넝, 황죽(篁竹) 14개, 목정(木碇) 1좌를 아울러 갖추어서 내주었습니다. 제주와 덕원의 표류민은 먼저 출발하였고, 또 장흥의 표류민 9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왜인이 보호하며 영솔하여 대마도(對馬島)의 부중에 도착하였더니, 그곳에서는 띠를 갖춘 백목면(白木綿) 단장의(單長衣) 각 1벌, 단목(丹木) 각 2근, 소갑초(小匣草) 각 10개, 질정 15개, 초둔 20번, 고정삭(藁碇索) 1

172)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7월 22일(신미)

장(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하였습니다. 장흥 평일도(平日島)의 표류민이 고하기를 「저희들 9명은 쌀을 교역하기 위해 배를 띄워 울산 서생포(西生浦) 앞바다에 반쯤 도착했을 때 표류하여 일본국 장문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청목면으로 만든 띠를 갖춘 첩장의 각 1벌, 유삼·사립·연죽·초석 각 1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인이 영술하여 장기도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밥술 2좌, 크고 작은 물통과 밥통 각 1좌, 소반과 사기 접시와 초석 각 1냥, 사기 중발 각 2냥, 채도 1자루, 말목 40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손상된 것을 대체할 범죽과 철로 만든 질정 60개, 초둔 30번, 황죽 30개, 고정삭 2장, 목정 1좌도 갖추어 내주었습니다. 강진의 표류민들과 함께 저희를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왜인을 따라 대마도의 부중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띠를 갖춘 백목면 단장의 각 1벌, 단목 각 2근, 소갑초 각 10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곳의 표류민들이 이미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차왜가 영술해 온 일에 대해서는 규례에 따라 접대해야 하니, 접위관은 부근 고을의 수령 중에서 차정(差定)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차왜에게 베풀어 줄, 연례(宴禮) 때에 예단(禮單)으로 쓸 잡물(雜物)은 예조로 하여금 규례에 비추어 마련해 내려보내게 해 주소서.”하였다.

당시 표류민들을 조사한 결과 이미 장기도(長崎島)에는 제주와 덕원에서 표류한 조선인들이 보호받고 있었다. 예조는 표류민을 무사히 보내온 일본인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고 선물로 줄 예단을 규례대로 동래에 내려주도록 했다. 전례대로 인삼과 비단 그리고 음식 등을 제공했다.

1797년(정조 21) 6월 전라감사 이득신(李得臣)이 일본에 표류했다가 귀국한 제주의 조인안(趙仁安) 등을 문정(問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¹⁷³⁾ 제주의 도회관인 해남에서 조사한 내용이 었다.

“제주목의 도회관(都會官)인 해남 현감(海南縣監) 홍계선(洪繼善)의 첩정에 ‘제주목 정의현(旌義縣)의 뱃사람 조인안 등 7명이 왜국(倭國)에 표류하여 들어갔다 지금에야 살아서 돌아왔으므로 문목(問目)을 만들어서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다. 조인안 등의 공초에 「저희들 7명이 올해 2월 3일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함께 한 배에 타고서 앞바다에 나갔는데 서북풍이 크게 불어서 파도

173)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6월 21일(경인)

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치솟아 치목(鷗木)이 먼저 부러지고 돛대가 또 부러져서 배를 제어할 길이 없었는데 파도가 일어 6일 동안 대해(大海)를 표류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작은 배라서 애초에 밥술이나 양미(糧米)가 없었으므로 기갈(飢渴)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같은 달 8일에 산자락에 있는 육지와 잇닿은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다섯 사람이 와서 선척을 강변에 매어 놓고서 저희들을 육지에 내리게 하여 촌락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처음에 삶은 제근(薺根)을 주기에 애써 삼켜 보았더니 그 맛이 달아서 요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죽을 썬 주고 난 뒤에 그중에 한 사람이 글을 써서 너희들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방 사람으로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표류하여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중에 박장명(朴長命)이 문자를 좀 알므로 또한 글자를 써서 조선국(朝鮮國) 해남현의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제주 사람을 해남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제주》라는 두 글자를 다른 나라에 숨기는 것이 곧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왔다가 바람이 불어 표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더니 곧이어 또 밥을 주었으므로 저희들이 글을 써서 이 땅이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이냐고 묻자 일본국(日本國)의 오도(烏島) 하삼마포(夏參麼浦)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왜인이 저희들을 데리고 이전에 있었던 저희들의 배로 나갔는데 이른바 왜인의 상관이 한 척의 중선(中船)에 타고서 또 소선(小船) 10여 척이 함께 늘어섰습니다. 왜인이 저희들을 저희들의 배에 끌어다 앉힌 후에 왜인의 상관이 몸에 검(劍) 두 자루를 차고 앞에 삼지창(三枝槍) 1개를 꽂은 채 선상(船上)에 꿇좌(跪坐)하고서 왜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써서 저희들이 거주하는 지명과 표류하게 된 사정, 성명과 나이를 묻게 하였으므로 일일이 글을 써서 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너희들은 수로를 통해 돌아가겠느냐, 육로를 통해 돌아가겠느냐 하고 묻기에 저희들이 수로를 통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 배의 짐물(什物) 중에 파손된 것을 일일이 써서 보여 주면 다시 장만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돛대, 치목, 범석(帆席), 지줄(旨), 용총줄(龍總), 밥술, 물통, 초둔(草菴) 등의 물건을 장만해 달라는 뜻으로 글을 써서 보여 주었더니 왜인의 상관 이 타고 있던 배에서 일일이 내주었으며 소선 10척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제공한 음식은 매일 1명당 백미(白米) 3되를 주었고 반찬은 도미어(道味魚), 방어(魴魚), 단간장[甘醬] 등의 식물을 날마다 보조하여 지급하였으며 의복은 청면(靑綿)의 장주의(長周衣)를 각 1벌씩 지어서 주었습니다. 그곳에 머문 지 17일째가 되는 2월 25일에 왜인의 상관 이 저희들의 배를 끌어내

어 그 선미(船尾)에 묶고서 왜관(倭官)이 탄 배 2척과 호송하는 배 2척, 저희들의 배 1척, 도합 5척의 배가 동시에 출발하였는데 다행히 하루 종일 순풍이 불어서 1,000여 리를 향해하여 저녁 무렵에 한 섬의 포항(浦港)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도왜(島倭)의 상관 한 사람이 통사관(通事官)을 이끌고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 말로 저희들에게, 이곳은 장기도(長琦島)이며 너희들은 함께 관가에 들어가서 문정(問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기에 저희들이 따라갔습니다. 대상관(大上官)이 저희들을 불러서 뜰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깔고 서자 통사관이 말을 전하여 세 차례 배례(拜禮)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습니다. 상관은 고현(高軒)에 앉아 있었으며 시종하는 사람 8, 9인이 좌우로 나뉘어서 있었고 통사관 1인은 계단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하는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따져 물은 후에 통사관이 객관(客館)에 데려다 놓았는데 이른바 객관이라는 것은 기와집 4칸으로 조선관(朝鮮館)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 20명을 만나고서 깜짝 놀라 기쁜 마음에 물어보았더니, 자신들은 기장(機張) 사람들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왔다가 표류하여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대답하였기에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한 관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공한 음식은 매일 1명당 양미(糧米) 3홉씩 두 끼를 마련해 주었으며 반찬은 건멸어(乾蔑魚), 토장(土醬), 채근(菜根) 등의 식물을 날마다 계산해서 주었고 이어 저희들로 하여금 밥을 지어 먹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통사관의 말을 들어 보니, 기장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을 먼저 호송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저희들이 함께 돌아가게 해 달라는 뜻으로 연이어 간절히 청하자 통사관이 만류하지 못하였습니다. 객관에 머문 지 22일째 되는 날 대마도(對馬島)의 왜관이 통사관 한 사람을 데리고서 배 1척을 가지고 저희들을 영솔해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장현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도 동시에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바닷바람이 순조롭지 않아서 3월 그믐날에 대마도에 도착하고 보니 수로가 2,000리였다고 하였습니다. 관(館)에 머문 지 5일이 지나자 도왜관(島倭官)이 백면포(白綿布)의 장주의 각 1벌, 우산 각 2자루, 남초갑(南草匣) 각 10개를 내주었으며 비로소 저희들의 거주지와 성명, 표류하게 된 사정을 물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은 장기도와 마찬가지로 배의 짐물 중에 초석(草席) 7벌, 철정(鐵釘) 20개, 거멸못[巨勿釘] 100개를 보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어 그곳에 머문 지 25일째 되는 날인 4월 25일에 대마도의 호송관(護送官)이 통사관 한 사람을 데리고 저희들의 배와 기장 사람들의 배를 영솔하여 포항에 띄웠는데 비바람이 자주

붙어서 16일을 체류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배를 띄워 12일에 가까스로 도착하고 보니 수로가 500리 정도였으며 대마도가 관장하는 사소내도(沙所乃島)는 통사관이 나와서 수색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바다를 건너올 때에 양식과 반찬을 몸소 받아 왔으므로 호송관이 날마다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문 지 5일 후인 같은 달 17일에 배를 띄워 수로 480여 리를 지나서 18일 아침에 동래부(東萊府)의 왜관(倭館)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달 6월 9일에 본현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주의 뱃사람 조인안 등 7명이 표류하여 이역(異域)에 들어갔다가 모두 살아서 돌아왔으니 실로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착실히 안주하게 할 방도에 대해 해당 목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분부하소서. 이후로는 상선(商船)이든지 어선(漁船)이든지 간에 절대 경솔하게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연해(沿海)의 읍진(邑鎭)에 잇달아 엄히 신칙하였습니다.”하였다.

당시 제주의 조인안, 박장명 등은 일본 큐슈의 가고시마 근처의 사쿠라지마로 표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의해 구조된 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되어 이른바 ‘조선관’에 머물렀다. 조선관은 나가사키에 설치된 조선인 숙소로 보이는데, 조선의 표류민들을 보호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조인안은 기장에서 표류한 20명의 조선인을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일본인의 호송을 받고 대마도를 거쳐 동래의 왜관에 도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는 조선 표류민을 위한 숙소까지 마련했을 정도로 조선 사람들의 일본 표류가 매우 잦았다. 1798년(정조 22) 제주목사 제주백성 조필혁(趙必赫) 등이 표류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급하게 장계하였다. 이들 역시 오늘날 나가사키 현에 해당하는 비전도(肥前島) 안천평산(安川平山)의 북진포(北津浦)에 기착했다가, 섬의 관원이 장기도(長崎島)에 호송하였는데 뱃길로 대략 2천여 리(里)나 되었으며, 1798년 1월에 장기에서 대마도로 호송되었다가 부산을 거쳐 귀국했다.¹⁷⁴⁾

이들 조필혁과 이원갑 등은 상인으로 물건을 사서 제주에 돌아가던 중 추자도 근처에서 난파되었는데, 일본 표류당시 자신들에 대한 일본 측의 대접이 매우 극진했다고 진술했다. 일본인들은 조석으로 음식을 후하게 주었을 뿐 아니라 난파된 배를 모두 고쳐주었으며 15일 간 머무는 동안 두터운 정을 보였다는 것이다.¹⁷⁵⁾

174) 《정조실록》 정조 22년(1798) 8월 1일(임진)

175)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8월 1일(임진)

제주목사의 장계에, “방금 도착한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보내온 공문에 ‘제주목에 사는 이원갑(李元甲) 등 8명이 왜국(倭國)에 표류했다가 지금에야 살아서 돌아왔기에 원적(原籍)이 있는 고을에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규례대로 내막을 추문(推問)하니 ‘저희들은 모두 본주에 사는 백성으로 장사하기 위해 물건을 마련해 놓고 조필혁(趙必赫)과 이원갑의 집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작은 배를 빌려서 짐을 싣고 작년 9월 21일에 잠수포(潛水浦)에서 출발하여 조천포(朝天浦)의 후풍소(候風所)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10월 6일이 되어서야 순풍을 만나 출항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추자도(楸子島)와 여서도(餘鼠島)의 앞바다에 겨우 이르렀는데 서풍과 북풍이 돌연 한꺼번에 불어 갑자기 배를 제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파도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일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은 짐은 모두 물속에 빠진 채 바람에 따라 정처 없이 표류하였습니다. 같은 달 11일에 어느 곳에 정박하였는데 물길이 끝나고 육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6일 동안 굶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닻을 내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에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이환도(二環刀)를 차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이 한 명 와서 저희들을 보기만 하고 애당초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습니다. 얼마 안 되어 검(劍)을 찬 여섯 사람이 또 와서 말하려고 하다가 말하지 않고 그중에 한 사람이 급히 저희들의 배에 있는 나무통을 가지고 물을 떠와 배(腹)와 입을 가리고 누차 마실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 한 그릇을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 소선(小船) 20여 척이 저희 배가 정박한 곳에 일제히 와 있었는데 상관(上官)이라는 한 사람은 배에 똑바로 앉아 창검(鎗劍) 1쌍을 나누어 세워 놓았습니다. 또 여러 명의 추솔(騶率)이 있었는데 입은 복색은 상관이나 아랫사람이나 같았지만 상관이 찬 2개의 검이 하인이 찬 것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 배들로 하여금 앞에서 저희 배를 인도하게 하였는데 관원이 탄 배는 저희 뒤에 있었습니다. 3리쯤 가자 항구 하나가 나왔는데, 인가가 즐비하고 선척이 많이 묶여 있었으며 관장(官長)이 거주하는 관아도 그곳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영진(營鎭)과 거의 같았습니다. 정박한 뒤에 먼저 밥, 국으로 저희들을 대접하고 또 청주(淸酒)를 각각 한 잔씩 권한 데다 남초(南草)를 나누어 주고 나서 글로 써서 묻기를 「너희들은 조선의 어느 도(道) 어느 주(州)의 사람으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글로 써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사람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면 늘 제주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번번이 다른 지역을 말했다는 말을 일찍이 들

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강진현(康津縣) 사람으로 장사하려고 바다에 나왔다가 역풍(逆風)에 몰려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관원이 배에 앉아 붓을 잡은 한 사람에게 표류한 전말을 자세히 물어보게 한 뒤에 관원은 배에서 내렸는데, 우리 앞에 긴 창검 1쌍을 세워 놓고 검을 찬 하례(下隷) 몇 사람만 데리고 관아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호송하고 온 여러 배들은 놔두고 6척의 배를 다시 정해 저희 배를 에워싼 채 밤낮으로 지키고 저희들로 하여금 배 안에만 계속 있고 잠시도 육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밤에는 6척의 배에서 밤새도록 딱따기를 쳤고, 아침저녁으로 밥과 반찬을 마련해서 대접함으로써 두터운 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배의 장비 중에 망가진 치목(鷓木), 범죽(帆竹), 가목(駕木), 범석(帆席), 치병목(鷓柄木) 등의 물건은 모두 남김없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대로 15일을 머물러 있었는데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이곳의 지명과 관원의 작호(爵號)를 물으니, 일본 비전도(飛傳島) 안천(安川) 평산(平山) 소진포(小津浦)라고 하고, 관원의 작호는 상관이라고만 하였습니다. 또 백목면(白木綿)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각각 1건을 주었고, 같은 달 26일에 소선 8척으로 길을 인도하며 출항하여 28일 저물녘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물길로 대략 2,000여 리 되는 그곳은 바로 장기도(長崎島)인데, 소진포에 비해 매우 규모가 컸습니다. 저쪽에서 이른바 전어관(傳語官)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표류한 내막을 묻고 관아로 데려갔는데 삼문(三門)을 엄숙히 지키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계단 아래에 서서 세 차례 배례(拜禮)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의 말을 따랐더니, 전어관이 「그대들은 본국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고 묻기에,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삼배(三拜)를 하고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이어 전어관과 함께 3리쯤 되는 곳으로 나가니 관사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사람을 접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울산(蔚山) 사람 8명도 표류하여 이 관사에 먼저 머물러 있었는데, 이역(異域)에서 상봉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한 사람마다 백미(白米) 3홉을 주고, 반찬은 두 끼만 주었는데 생선 서너 개(箇)와 염장(鹽醬) 2냥을 주고 마른 반찬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3홉은 우리나라의 7홉에 해당합니다. 쌀과 반찬을 받아 스스로 지어 먹었고, 저쪽에서 두 사람을 별도로 정해 지키고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밀을 타국에서 보내게 되어 속히 돌려보내 줄 것을 자주 청하였는데 전어관은 늘 내년 1월 6일이 되어야 저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날이 되자 전어관이 배를 타고 앞에서 인도

하여 2월 2일에 앞서 표류해 온 울산 사람과 함께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렀는데 물길로 2,600리였습니다. 본도(本島)의 전어관도 표류한 전말을 묻고 상관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장기도에 있을 때처럼 삼배를 하게하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전어관을 따라 관사를 나왔는데 이곳도 우리나라 사람을 접대하는 곳이었고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장기도의 예(例)와 같았습니다. 울산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저희들만 남겨 두었다가 4월 17일이 되자 백묵면으로 만든 두루마기 각 1건, 우산 각 2자루, 남초 각 10갑(匣), 청채보시기[靑采甫兒] 각 2개, 사기 접시[沙接匙] 각 1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별도로 차관(差官)을 정해 18일에 출항하고 19일에 사시천(沙時川)에 이르렀는데 물길로 350리였습니다. 거기에도 별훈도(別訓導)라고 불리는 관장(官長)이 있었는데 사람과 물건을 일일이 검사한 뒤에야 출항하였으나 풍세(風勢)가 이롭지 않아도 도로 사시천에 정박하였습니다. 근 15일 동안 바람을 기다렸는데 훈도소(訓導所)에서 양식과 반찬 등 모든 물품을 부족하다고 하는 대로 계속 지급해 주었습니다. 5월 4일에 출항하여 5일에 부산진(釜山鎭)에 이르러 정박하였고, 동래부(東萊府), 수영(水營), 통영(統營)에서 출발하여 30일에 강진현(康津縣)에 이르러 정박하였으며, 6월 20일에 본주 화소포(禾小浦)에 들어와 정박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정조는 일본에 표류했다가 귀국한 조필혁 등이 상처 하나 없이 살아 돌아온 일을 위유(慰諭)하여 각각 그 역(役)을 견감해 주기도 했다.

1799년(정조 23) 10월 전라 감사 조종현은 대마도에 표류했다가 귀국한 김재우 등 3인을 조사하여 보고했다. 이들은 제주목에 거주민으로 뗏목을 타고 우도를 향했다가 파도를 만나 대마도에 표류했다. 대마도는 배를 태워 부산에 내려주었고 강진현감은 이들 3인이 제주로 귀향하기 전 공초를 받아, 제주도회관인 영암군수에게 보고했고, 영암군수는 다시 전라감사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전라 감사의 장계에, “제주의 도회관(都會官)인 영암 군수(靈巖郡守) 남이범(南履範)의 첩정(牒呈)에 ‘올 10월 12일 강진 현감(康津縣監)이 보내온 공문에 「제주목에 사는 뗏목 주인[桴槓主] 김재우(金再右)와 그의 아내 부 조이(夫召史), 격군(格軍) 문덕빈(文德彬), 총 3명이 표류하여 왜국(倭國)에 갔다가 이제야 살아 돌아왔습니다. 동래부(東萊府)에서부터 차례로 인계하여 본현에 도

착하였으므로 규례대로 장교를 정하여 호송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소지한 공문을 우선 가져다 살펴보고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를 받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무학(武學) 김재우는 27세, 부 조이는 37세, 총각 문덕빈은 20세로, 이들은 다 제주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6월 21일 생복(生鰯)을 따고 우무(牛毛)를 채취하기 위해 함께 뗏목을 타고 우도(牛島)로 나갔다가 바람에 휩쓸렸습니다. 7월 13일 일본국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니, 이들을 데리고 관장(官長)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세 사람에게 매일 먹을 양식으로 미(米) 1되 8홉, 고도리어(古道里魚) 9개, 감곽(甘藷) 3조(條), 감장(甘醬) 1되, 음식을 해 먹을 밥술 2좌(坐), 작은 물통 1좌, 화보시기[畫浦兒] 6개, 밥고리짜[食古里] 1좌, 식죽(食竹) 1개, 초석(草席) 6넙(立), 우산(雨傘) 6개, 담뱃갑[南草匣] 30개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백면(白綿)으로 된 두루마기[周衣]에 면대(綿帶)를 갖추어 각각 1건(件)을 만들어서 입게 하고 이어 관사(館舍)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8월 28일 대마도의 통서관(通事官)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바람이 순조롭지 않은 탓에 9월 6일에야 겨우 부산진(釜山鎭)에 도착하니, 문정(問情)한 뒤 영솔해서 동래(東萊)에 넘겼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김재우 등 남녀 3명이 다른 영도를 표류했다가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해당 목사에게 관문을 보내서 표류민들을 위무하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¹⁷⁶⁾

김재우와 그의 부인 그리고 문덕빈은 대마도에서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의 진술을 보면 쌀과 함께 미역과 고등어 등 반찬거리 그리고 술이나 그릇, 젓가락 등을 제공하여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면두루마기와 숙소[관사]에서 머물 수 있게 편의를 돌보아 주었다.

2-2. 제주에 표류한 일본인

한편, 일본인들이 해상에서 난파되어 제주에 표류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1799년(정조 23) 여름 제주에 표류했던 사쓰마의 일본인들을 해로를 통해 돌려보내라는 명이 제주목사 조명집에게 내려졌다.¹⁷⁷⁾ 이에 앞서 제주목사 조명집은 정의현감 문약연의 보

176)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10월 23일(무신)

177)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7월 28일(갑신)

고를 받았다.

“정의 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은 ‘이달 3일에 분간할 수 없는 배 1척이 남쪽 큰 바다로부터 정의현 동쪽 20리 남짓 떨어진 신산리(新山里)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현감이 이교(吏校)를 많이 거느리고 저들의 배가 정박한 곳으로 달려갔더니, 저들은 모두 19명으로 머리에 착용한 것은 없고 정수리는 승려처럼 머리털을 깎아 내고 남겨 둔 뒷머리와 양편 살쥍에 밀기름을 발라서 우리나라 사람의 상투[上土]와 마찬가지로 묶어서 상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각각 청색과 흑색의 베로 만든 늘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어떤 이는 피가 흐르는 채로 누워 있고 어떤 이는 피부가 벗겨진 채로 앉아 있었는데, 멀쩡한 자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섬 바위 위에 세 구의 시체가 걸려 있었으니, 이는 틀림없이 배에서 내릴 때 익사한 자들일 것입니다.’라고 제주목사에게 보고했다. 한편, 왜인들을 문정(問情)하기 전에 배에서 땅으로 내리게 놔둔 정의현의 좌수(座首)와 향리들은 처벌되었다. 정의현감 곧바로 역학(譯學)과 통사(通事)로 하여금 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도록 했다.

왜인들은 대답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일본국 살마도(薩摩島)에 속한 마아도(麻兒島)의 촌인(村人)입니다. 올해 3월 16일에 칠도(七島)에 가서 미(米) 2,600포(包)와 사탕(沙糖) 250통(桶)을 싣고 6월 26일에 출항하여 살마도로 가고 있었는데 27일에 갑자기 큰 동북풍을 만나 7월 3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승선한 26인 중에 7명은 익사하고 19명이 간신히 살아 나왔습니다.’라고 했다. 정의현감은 물에 빠져 죽은 3구의 시체를 건져 배와 무명, 명주와 솜, 종이로 각각 시신을 염습한 후 그들의 소원대로 땅에 묻었다고 보고했다.

이후 정의현감은 일본인들을 관아로 데리고 와서 규례대로 심문했다. 아울러 일본인들의 선박은 모두 부서져 복구할 수 없었기에 이전에도 불태운 전례가 있으므로 모두 불태웠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선박 건조법은 조선과 달라 이를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없는데다 조선의 배를 제공해도 역시 일본인들이 조선의 배를 다룰 수 없으므로 소용이 없다고 보고했다. 일본과 조선의 선박은 완전히 달라 양국의 선원들이 자신들의 선박이 아니면 운항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정의현감 문약연은 기왕의 등록(騰錄)을 조사하여, 지난 을미년(1775, 영조 51) 가을 사쓰마의 선원들이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했을 때, 결국 제주에서 동래로 배를 태워 보낸 후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이번 정의현에 표류한 왜인들은 미포(米包) 외에도 실린 짐이 많아, 해로와 육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목사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고, 제주목사 역시 이상의 내용으로 조정에 알려 조치할 방법을 문의했던 것이다.

당시 정조는 탐라에 표류한 왜인들을 비록 연읍에서 육로를 경유하여 배편에 보냈던 을미년(1775, 영조 51)의 전례가 있지만 해로를 따라 귀국할 방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

겠다고 명령했다. 다만 넉넉하게 음식 등을 제공하여 왜인에게 먼 지방의 사람을 회유하는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 표류했을 때 모두 후한 대접을 받았다면, 반대로 왜인들이 제주에 표류했을 때도 이와 같은 선린의 환영 의지를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1799년(정조 23) 7월에도 사쓰마의 왜인들이 제주에 표류했다.¹⁷⁸⁾ 전라감사 조종현(趙宗鉉)은 제주에 표착한 왜인들을 정의현감 문약연이 우수영으로 이송하자, 전라우수영의 우후 김평과 제주도회관인 장흥부사 박효진 등이 문정하였음을 보고했다.

“제주에 표류해 온 왜인을 육로 편으로 보낼 때, 문정관(問情官)에 장흥 부사(長興府使) 박효진(朴孝晉)을, 호송 차사원(護送差使員)에 고금도 첨사(古今島僉使) 김억량(金億亮)을 차정하고, 호송과 음식 제공 등을 각별히 거행하도록 연해(沿海)의 영(營)과 읍(邑)을 신척하였습니다. 방금 우수영 우후(右水營處候) 김평(金坪)과 장흥 부사 박효진이 연명한 보고를 보니 ‘제주에 표류해 온 왜인을 영래 차원(領來差員)인 정의 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 및 왜학(倭學) 황온(黃溫), 통사(通事) 황대광(黃大光)이 영솔하여 이번 8월 26일에 이진창(梨津倉)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밤이 이미 깊은 때였습니다.

다음 날 27일 날이 밝자 우후 김평과 장흥부사 박효진 그리고 우수영의 역학(譯學) 조득현(趙得玟)이 문정하기 위해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도합 19명인데 모두 윗머리를 깎고 뒤쪽 머리털만 남겨서 정수리 위로 모아 묶고서 밀유(蜜油)를 바르고 머리에는 쓴 것이 없었으며, 몸에는 소매가 짧고 길게 휘젓는 옷을 걸쳤는데 청백색 얼룩 베옷이거나 보라색 얼룩 베옷이거나 순청색 베옷이었습니다. 그 모습과 옷 모양을 보면 틀림없이 일본국 사람이었습니다. 성명, 나이, 거주지 및 의복, 잡물 등은 성책(成冊) 중에 열거하였고, 문정기(問情記)는 상사(上使)에게 붙여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의 절차 등은 문제가 없었으나 왜인들이 경유한 바닷가의 섬과 육지 등에 대한 지명이 노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문정기를 보면 왜인들이 스스로 화북포(禾北浦), 추자도(楸子島), 소안도(所安島) 등 자신들이 거쳐 온 지명을 모두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배를 타고 왜인들을 영솔한 정의현감 문약연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정조는

178)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9월 9일(갑자)

연해 각 읍과 진에서 호송하고 음식의 제공을 후하게 해야 한다고 신칙했다.

〈표 5〉 1799년 7월 왜인 언우위문(彦右衛門) 표류 문목

問目	내 용
문	너희는 어디 사람인가?
답	일본국 살마도(薩摩島) 사람입니다.
문	살마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가?
답	모두 살마 관하의 마아도(麻兒島) 사람입니다.
문	너희는 모두 몇 사람인가?
답	저희는 원래 26명이었습니다.
문	너희 26인이 배를 같이 탔다가 19인만 표류하여 도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표류하여 도착할 즈음에 7인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문	너희는 어느 월일에 무슨 일로 배를 타서 어느 곳으로 가다가 어떤 바람을 만나서 어느 곳으로 표류하였는가?
답	칠도(七島) 토지의 토세(土稅)는 보통 살마도수(薩摩島守)에게 바치는데, 저희는 뱃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가(船價)를 받습니다. 금년 3월 16일 칠도에 가서 백미(白米) 2,600포(包)를 신고서 6월 26일 칠도에서 배를 출발하여 살마도로 향하였습니다. 6월 27일에 갑자기 동북 방향의 큰 바람을 만나 배를 통제할 수 없어 바람에 따라 휩쓸려 7월 3일에 귀국의 정의(旌義) 지방 신산촌(新山村) 앞바다에 표류하여 도착하였습니다.
문	칠도는 어느 지방인가?
답	살마도 소속의 섬입니다.
문	마아도에서 칠도까지와 칠도에서 살마도까지는 수로와 육로로 각각 몇 리나 되는가?
답	마아도에서 칠도까지, 칠도에서 살마도까지는 애초에 육로가 없고 수로만 있을 뿐인데 각각 200리입니다.
문	금년 3월 16일에 마아도에서 배를 출발하여 칠도에 갔는데 6월 26일에 배를 출발한 것은 어찌 그리 지체된 것인가?
답	매번 봄철에 칠도의 토세를 섬사람이 스스로 서로 수합하여 선주에게 주기 때문에 절로 지체됩니다.
문	마아도와 칠도에는 모두 관장(官長)이 있는가?
답	살마도에만 도수(島守) 1원이 있고, 마아도와 칠도는 살마도 소속이기 때문에 관장이 없습니다.
문	너희 배에 실은 미가 2,600포라고 하였는데 선가는 얼마나 되는가?
답	500포입니다.
문	배에 실은 미 2,600포는 원납(原納)이며, 선가도 그 안에 들어 있는가?
답	선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	1포는 몇 말이 되는가?
답	2말 5되가 1포가 됩니다.

問目	내 용
문	1도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답	평승(平升)으로 2되 5홉이 1되가 됩니다.
문	너희들 부패(部牌) 가운데 낙흔(烙痕)과 ‘오(午)’ 자는 모든 패가 똑같고, 이 밖의 문자는 초서(草書)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 정서하여 기록할 만한 것은 ‘산천대번(山川大蕃)’ 4자를 쓰거나 ‘읍숙접지빈(擘宿摺之濱)’ 5자를 썼는데, 무슨 뜻을 취한 것인가?
답	저희는 모두 무식하여 어떤 자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오’ 자는 ‘무오(戊午)’의 ‘오(午)’ 자를 취한 것이고, ‘산천대번’과 ‘읍숙접지빈’은 바로 저희가 거주하는 소지명(小地名)입니다.
문	제주에서 어느 날 배를 출발하였는가?
답	이달 22일에 제주 화북포(禾北浦)에서 배를 출발하여 이달 26일에 이곳에 정박하였습니다.
문	그 사이 5일은 어느 곳에 있었는가?
답	23일에는 영암(靈巖) 추자도(楸子島)에 정박하고, 25일에는 소안도(所安島)에 정박하고, 어제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문	언우위문(彦右衛門) 너만 혼자 작은 보자기로 물건 같은 것을 싸서 항상 목 앞에 걸고서 잠시도 풀지 않고 있는데 무슨 까닭인가?
답	이는 선신(船神)의 화상(畫像)입니다. 우리나라 뱃사람은 그것을 배 안에 모셔 두고 받드는데, 배가 이미 파손되어 안치할 곳이 없으므로 몸ে다 옮겨 모시고 있습니다.
문	너희의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답	저희는 본래 성명을 쓰지 않으므로 단지 이름자만 써서 바치겠습니다. - 언우위문(彦右衛門) 나이 40, 권삼(權三) 나이 38, 여조(與助) 나이 46, 가우위문(嘉右衛門) 나이 39, 신길(新吉) 나이 26, 삼오량(三五良) 나이 32, 미사량(彌四良) 나이 30, 십조(十助) 나이 28, 칠량우위문(七良尤衛門) 나이 42, 귀차량(龜次良) 나이 26, 청장(淸藏) 나이 38, 평십량(平十良) 나이 36, 신우위문(新尤衛門) 나이 39, 칠병위(七兵衛) 나이 33, 이세태량(伊勢太良) 나이 23, 휴치량(休治良) 나이 24, 조시(助市) 나이 26, 삼우위문(三尤衛門) 나이 25, 오량(五良) 나이 23이다. -
문	살마도에서 대판성(大坂城)까지 수로와 육로로 각각 몇 리나 되는가?
답	수로와 육로 각각 300리가 됩니다.
문	살마도에서 강호(江戶)까지는 몇 리나 되는가?
답	수로와 육로로 또한 500리가 됩니다.
문	살마도에서 대마도(對馬島)까지는 각각 몇 리인가?
답	애당초 육로가 없고 수로만 있을 뿐인데 260리입니다.

3. 유구

3-1. 제주에 표류한 유구인들

1790년(정조 14) 6월 유구에서 제주에 표류한 사람들을 제주목사 이철모가 조사하여 보고했다.¹⁷⁹⁾

“1790년 6월 26일 겸중군(兼中軍)인 제주판관 김봉길(金鳳吉)의 치보(馳報)에, ‘당일 묘시(卯時) 경에 제주 하귀일리(下貴日里)에 사는 임고(任高), 성창(成昌) 등이 와서 고한 내용 가운데에, 「정체불명의 배가 동틀 때에 떠 내려와서는 하귀일포에 정박하였습니다.」 하기에 제가 초군(哨軍)을 거느리고 주성(州城)에서 서쪽으로 25리 떨어진 하귀일포의 배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입은 것은 모두 무늬가 있는 옷[斑衣]이었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문답할 수 있는 자가 4인이었습니다. 작은 배에 실어 내리고 보았더니, 하나같이 상투 하나에 비녀 두 개를 꽂았으며 상투밑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에는 쓴 것이 없었고, 몸에 걸친 것은 알록달록한 천으로 온 몸을 빙 둘러 감은 옷으로 청색, 황색, 흑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주판관 김봉길(金鳳吉)의 보고에 의하면 의복의 모양이나 색이 전연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랐다.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었고 쌍비녀를 꽂았으며 전연 말이 통하지 않았다.

시험 삼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았는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서 물었더니, 그 가운데 한 놈이 글로 써서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유구국 중산왕(中山王)의 도움 안에 있는 나패부(那覇府) 서촌(西村)에 사는 사람들로서, 5월 16일에 연공(年貢)인 속미(粟米)를 궁고도(宮古島)에서 싣고 6월 9일에 배를 띄워 본국으로 가다가 동월 13일 유시(酉時)에 거센 바람을 만나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자못 굶주린 기색이 있으므로 우선 죽물로 구료하고 나서 차례차례 문정하겠습니다. 우선 치보합니다.’ 하였습니다.

179)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7월 20일(무술)

이들은 공물인 쌀을 싣고 가다가 표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날 27일 제주판관 김봉길(金鳳吉)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유구 선박의 모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손된 상태를 기록했다.

27일 김봉길의 치보에는, ‘배의 제도는 앞뒤가 모두 높고 삼판(杉板)은 길이가 9파(把) 반, 너비가 3파, 높이가 1파 반이고 좌우에 난간이 있습니다. 앞의 돛대는 길이가 8파, 둘레가 1척(尺) 5촌(寸)이고, 부들로 짠 돛 4폭(幅)을 붙였는데 태반이 파손되었고, 가운데 돛대는 부러졌고 부들로 짠 돛 7폭을 붙였는데 태반이 파손되었습니다. 깃대는 길이가 4파 반, 둘레가 4촌이고 면포도 아니고 비단도 아닌 흰색의 깃발 3폭은, 위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순풍상송(順風相送)」 4자가 쓰여 있고, 작은 깃발은 양면 모두 그림과 글씨가 없었습니다. 이물에는 해 모양이 그려져 있고 좌우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고물에는 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는 「해상안전순풍자재(海上安全順風自在)」 8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작은 배가 있었는데 길이가 3파 반, 너비가 1파, 높이가 1척 반으로 본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주판관 김봉길(金鳳吉)이 파악한 물목은 공물인 쌀 364포를 비롯하여 말과 개 그리고 서책 수종이었다. 논어와 소학 및 중용 등 경전은 물론 삼국지와 같은 소설, 《대절용집(大節用集)》과 같은 일종의 술수(術數) 관련 서적 등이었다. 다만 공물로 바치는 쌀이라면 공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했다. 유구 표류민들은 배를 수리하여 주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복물(卜物)은 속미가 364포(包), 수말이 3필, 개가 2마리이며, 입고 있는 의복 등의 물건 및 그릇과 잡물은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논어(論語)》 1권, 《소학(小學)》 1권, 《중용(中庸)》 1권, 《삼국지(三國志)》 6권, 《실어교동자훈(實語教童子訓)》 1권, 《고가집(古哥集)》 1권, 《치식(治式)》 1권, 《대절용집(大節用集)》 1권 등의 책자가 있었는데, 《논어》, 《소학》, 《중용》은 글자 옆에 현토(懸吐)한 것으로 모두 인쇄한 것이고, 《삼국지》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띄워 역시 토를 달아 인쇄한 것이고, 《동자훈》은 훈계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범어(梵語)로 된 계송(偈頌)이었고, 《절용집》은 매 판(板)을 3단으로 썼는데 상단의 글자는 유별(類別)로 모은 제목이고, 중단(中段)의 위쪽 절반에

기록한 전서(篆書) 및 백중력(百重曆)이 기록된 아래쪽 절반은 하단의 글자 모양과 더불어 그림 같아서 비록 알아보지 못하겠으나 이른바 「지사기(知死期)」, 「명기(名棄)」 등의 글자로 된 제목으로 보면 술수(術數)에 관한 방서(方書)인 듯하고, 《고가집》, 《치식》 두 책은 낱장에 쓴 것인데 초서로 어지러이 썼기 때문에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글로 써서 고하기를, 「속미는 어공(御供)으로 바칠 물건이고, 말과 개는 사사로운 물건입니다.» 하였습니다. 속미가 공물로 바칠 물건이라면 반드시 공가(公家)의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일컫는 공문이란 것은 작은 종이에 대충 글씨를 썼고, 관인을 찍은 흔적은 아예 없으며 단지 도장을 먹물로 찍었을 뿐입니다. 예서와 초서가 섞여 있는 것이 편지와 똑같아 보였고, 자획 또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별지예다 등서하였습니다. 돌아갈 일에 대해서 물으니, 답하기를, 「부러지고 손상된 기물을 개비(改備)해 주신다면 하루빨리 귀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제주목사 이철모는 유구의 표류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고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했다. 이른바 변방의 군정에 관련된 일이므로 마병(馬兵) 2개 초(哨)를 보내 중군 김봉길, 역학(譯學) 홍득영(洪得榮) 등으로 하여금 인솔하여 제주관아로 데리고 와서 제주목사가 직접 이들을 심문했다는 것이다. 그는 별도의 문정기와 배에 실려 있던 물목기를 작성하여 보고했다.

아울러 제주목사 이철모는 유구인들에게 제주목 관청 일부를 숙소로 제공하고, 아병(牙兵)으로 하여금 파수하였으며, 정식에 따라 매일 1인당 양미(糧米) 2승(升), 닭 1각(脚), 생선 2개, 감곽(甘藷) 2엽(葉), 염(鹽), 장(醬), 유(油), 남초(南草)를 지급하고, 망가진 돛대, 돛, 닻줄, 장삭(張索) 등의 물건도 수리해 주었다고 보고했다. 정조는 유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돌려보내도록 하되 의복을 지급하고 식량을 넉넉히 주어 자신의 외국 표류객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표 6> 1790년 6월 유구 맹국길(孟國吉) 표류 문목

問目	내 용
문	“너희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인가?”
답	“우리들은 유구국 중산왕 도읍 안의 나패부 서촌 사람들입니다.”
문	“너희들은 무슨 일로, 몇 월 며칠에 어디로 향하는 길이었으며, 며칠날 어느 지방에 이르러 어느 방향의 바람을 만나 이곳에 표류해 왔는가?”
답	“유구국의 진구(津口)로부터 궁고도(宮古島)를 향해 출선(出船)하여 5월 16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연공(年貢)인 곡물을 싣고 동(同) 6월 9일에 궁고도에서 출선하여 본국으로 가다가 운행한 지 3일 만에 인묘방(寅卯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 애써 궁고도로 되돌아가려 하였습니다. 4일 만에 마침 팔중산(八重山)이 가까이 보였는데 유시(酉時)에 자축인방(子丑寅方)으로부터 대풍이 불어와 타고 있던 배와 목숨은 구사일생으로 건졌지만 본장(本樁)과 배에 실은 물건은 잃고 말았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면서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는 채 유구로 가려고 자축인방으로 향하였는데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19일이 걸렸습니다.”
문	“너희들과 동선(同船)한 자가 몇 사람인가? 그리고 폭풍에 휩쓸릴 때에 사람이 빠져 죽지는 않았으며, 짐물(什物) 또한 잃어버린 일이 없었는가?”
답	“우리들이 탄 배가 역풍을 만났을 당시 잃어버린 물건은 본장 1개, 철정(鐵碇) 1개, 장승(張繩) 1개, 방범(房帆)을 지탱하는 줄 2개, 방전(房前)의 소장(小樁) 아랫부분 절반입니다. 이들 물품을 잃어버렸고 곡물은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인명은 잃지 않아 모두 온전합니다.”
문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희들 14명의 성명과 나이를 손수 써서 바치도록 하라.”
답	“선주(船主) 사비가(查比嘉)는 42세, 경고강렬(慶高江列)은 38세, 맹국길(孟國吉)은 34세, 어다가량(魚多嘉良)은 23세, 줍취(楫取)인 방신성(芳新城)은 36세, 수주(水主)인 계좌구천(季佐久川)은 34세, 행비가(行比嘉)는 36세, 소우안(紹友安)은 21세, 도궁성(桃宮城)은 44세, 형신의(衡新)는 35세, 모조가명(毛照嘉名)은 27세, 연장령(蓮姓長嶺)은 33세, 전신의(全姓新)는 22세, 평중리(平仲里)는 27세로, 모두 14인입니다.”
문	“너희들이 철정과 괘승(掛繩)을 잃어버렸다고 하였는데, 배 안에 여분의 닻과 괘승이 있는가?”
답	“우리들이 탄 배는 여분의 도구가 있습니다. 철정 4두(頭)가 있고, 동아줄 2장(張), 전장(前樁) 하나, 돛 반 개가 있고, 범항(帆桁)이 있으며, 노[楫]가 있습니다.”
문	“너희들에게 필시 부패(部牌)와 공문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바치지 않는가?”
답	“우리들은 공문과 부패가 없습니다. 물품에 대한 공사(公事)는 송장(送狀)하여 바칠 뿐입니다.”
문	“너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문적(文蹟)은 어찌하여 인장이 찍히지 않았는가?”
답	“우리들이 소지한 문적에 어찌 인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탓하십니까. 유구국의 풍속은 문적을 우선하여 선장(船長) 한 사람의 인장만 찍어도 진구에서 서로 통합니다.”
문	“너희들은 모두 14인데 공문에는 12인만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2인은 누구인가?”
답	“함께 배를 탄 우리 12인 외의 2인은 사인(使人)으로 모두 14인입니다.”
문	“공문에 없는 2인은 어째서 더 태웠는가?”
답	“우리 외의 2인은 장사하기 위해 건너가 살던 객인(客人)으로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문	“이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인가?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이 공문과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인가?”

問目	내 용
답	“두 사람은 우리나라 내박촌(內泊村)의 소씨 우안과 모씨 조가명 2인이고, 세 사람이 이처럼 공문과 서로 다른 것은 교체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너희들이 배에 실은 곡물과 마필은 모두 공물인가?”
답	“우리들이 실은 곡물은 궁고도로부터 유구국 중산왕의 대신(大臣)의 물건을 완서(完書)로 봉행(奉行)하여 나패부 내동촌(內東村)에 있는 결지(結地)에 연례(年例)로 방납(方納)하는 것이고, 말은 개인 물건입니다.”
문	“말이 개인 물건이라면 어째서 신고 왔는가?”
답	“말은 선주의 개인 물건인데 궁고도로부터 유구국의 사는 마을로 가져가기 위해 실은 것입니다.”
문	“네가 말하는 팔중산은 어느 지방인가?”
답	“궁고도 안에 팔중산이 있습니다.”
문	“궁고도에서 유구국 나패부까지는 몇 리쯤 되는가?”
답	“궁고도에서 나패부까지는 270리이고, 나패부에서 유술방(酉戌方) 쪽으로 있습니다.”
문	“서책은 뱃사람이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가지고 왔는가?”
답	“서책과 마필 같은 물건은 공사(公事)가 아니라서 문서가 없습니다. 선주가 매매한 물건 값으로 대신 받기도 했고 혹은 나라에서 가지고 와 팔려다가 팔지 못한 것입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삼가 원하는 바는 본국으로 가는 것인데 앞으로 가면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귀국에서 어떻게 조치해 주실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식량과 물이 넉넉하면 자연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 다행히 이곳에서 살았으니, 가서 태공군(太公君)에게 바칠 생각입니다.”
문	“너희 국왕을 어찌하여 유구국 국왕으로 일컫지 않고 중산왕이라 하는가?”
답	“당나라 태청황제(太淸皇帝)로부터 왕에 봉해졌습니다. 이름은 상목왕(尙穆王)이라 일컫습니다.”
문	“너희들은 머리에 착용한 것이 없는데 혹 풍랑을 만나 파도에 휩쓸릴 때에 모두 잃어버려서 그런 것인가?”
답	“우리들이 비록 하찮은 몸이지만 이번 노정에 성인(聖人)께서 일일이 물으셨으니 무슨 물건이 부족하겠습니까. 바라는 바는 후의를 입어 우리들이 각각 차생에 죽지 않고 귀국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임금이 주관하는 것이기에 이 일을 위에 아뢰어 주고 부모와 처자에게 그 연유를 다 알려 줄 것이라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거듭 아뢰입니다. 평소부터 의관은 없었습니다. 몸에 두른 것은 바다 위에서 바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옷이 날라 가기도 몰랐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입니다.” 하였다.
문	“유구국은 이 섬의 진사방(辰巳方)에 있으니, 술해풍(戌亥風)을 얻으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부러지고 망가진 돛대와 기물 또한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들의 본선(本船)은 출발할 곳으로 옮겨 정박시키고 너희들은 우선 성안에 머무르게 할 것이니, 이리 알고 기다리도록 하라.”
답	“이상에서 하신 말씀은 삼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만, 머물러 폐를 끼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본장을 보수하고 승구(繩具)를 다시 만들어 주시어 속히 귀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원합니다.” 하였다.
문	“너희들의 물건 중 크건 작건 간에 만약 잃어버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경우 즉시 써서 바치면 모두 찾아 줄 것이다.”
답	“이 밖에는 바다 가운데에서 대풍을 만났을 때에 잃어버린 것이고 길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이해 여름 유구의 표류민이 전라도 흥양에 도착했다.¹⁸⁰⁾ 전라 좌수사 이건수(李健秀)는 이들을 문정한 우후 심경민의 첩정을 전라감사에게 보고했다. 이에 의하면 이들은 상인들이 분명하나 전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를 아는 이들도 없어서 제대로 문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를 수리해 주면 해로를 통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제주까지는 해로를 알려줄 수 있지만 이후 유구로 가는 방도는 전연 알지 못하므로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보고였다. 또한 이들 상선에 실린 일본의 서책들, <대판회도(大板繪圖)>와 <대일본연대기(大日本年代紀)>가 유구의 배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고했다.

“흥양현(興陽縣) 삼도(三島)에 표류해 온 유구국 배의 문정관(問情官)인 우후(虞候) 심경민(沈景民)의 첩정에, ‘그가 또 「송판을 산다.[買松板]」는 세 글자를 쓴 것으로 보면 상선(商船)임이 틀림없고, 돌아갈 방향에 대해 이리저리 글로 써서 물었더니 글 뜻을 몰라 글로 써서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섬사람에게 건령귀(乾靈龜)를 빌려서 보여 주었더니, 배 안의 7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서로 떠들며 모두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동남쪽을 가리키며 「배편으로 돌아가겠다. 묘진사 방향이다.[船上歸卯辰巳]」라는 여섯 글자를 써 보였고, 돛대의 궁죽(弓竹)을 손으로 가리키며 또 「대나무 12개[竹十二本]」라는 네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글로 써서 보인 뜻으로 짐작해 보면, 궁죽을 고쳐 배를 타고 돌아가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였습니다. 묘진사는 필시 저들 나라가 있는 곳의 방위일 터인데 윤도(輪圖)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면 묘진사 방향은 제주 부근일 듯합니다. 그런데 본도(本島)에서 제주까지는 비록 연안(沿岸)의 호송로가 있으나 제주에서 유구까지는 그 뱃길도 모를뿐더러 호송하여 넘겨주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만분의 일도 없습니다. 서책은 지방관이 10장을 이미 모사하여 올려보냈습니다.’ 하였습니다. 책자의 첫 번째 장에 ‘대판회도(大板繪圖)’라고 쓰여 있고, 열 번째 장에 또 ‘대일본연대기(大日本年代紀)’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는 일본국에서 인쇄한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무슨 연유로 유구에 유입된 것인지 매우 괴이하고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돌아갈 방향은 과연 제주를 경유하니, 장차 본도에서 제주에 넘겨주어야 할 형세입니다. 삼가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하였다.

180)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7월 29일(정미)

이해 8월 전라 감사 윤시동(尹蓄東)은 흥양현 삼도(三島)에 표류한 유국 사람들을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계획이며 순풍을 기다려 일제히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뜻으로 장계를 올렸고 정조는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했다.¹⁸¹⁾ 흥양의 삼도에 표착한 유구인들을 일단 제주(濟州)로 이송하고 제주에서 다시 유구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이 내려졌다.¹⁸²⁾ 그러나 며칠 후인 8월 9일 유구인들은 서북풍이 불어오자 배를 띄워 본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제주에 보내어 귀국하는 대신 곧바로 삼도에서 유구를 향해 가도록 허용했다. 특히 윤시동은 유구인들에게 나무로 만든 나침반(건령귀(乾靈龜))을 선물했고, 매우 기뻐했다고 보고했다.¹⁸³⁾

흥양 현감 신광로(申光輅)의 보고에, ‘7월 29일 새벽에 비로소 서북풍이 불었는데, 저 나라 사람들이 동남쪽에 해당하는 묘(卯), 진(辰), 사(巳) 세 방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돛을 올리고 배를 띄우는 양으로 손짓으로 형용하면서 바람 따라 서둘러 돌아가려는 뜻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영이 내려 보낸 건령귀(乾靈龜)를 내준 뒤에 별도로 술과 안주를 주고 그들의 바람대로 같은 날 사시(巳時)에 돛을 올리게 하였더니, 배 안에 있던 7인이 펄 듯이 기뻐하며 떠들면서 수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고는 즉시 배를 띄워 떠났습니다.’ 하였습니다.

당시 전라감사 윤시동은 귀국하는 유구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음식과 땀감을 제공했다. 조선에 표류했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구인들에게 조선 정부는 가능한 후한 대접을 제공했다. 조선인들의 표류에 대비하여 상호 선린의 예를 다한 것이다.

바다를 건너가는 데 드는 땀감과 식량과 반찬을 제공한 수효를 후록하여 치계합니다. 양미(糧米) 70두, 석어(石魚) 10속(束), 감곽(甘藷) 10속, 명태어(明太魚) 5속, 청장(淸醬) 1두, 토장(土醬) 3두, 소금 3두, 땀나무 100단, 명송(明松) 30단입니다.¹⁸⁴⁾

181)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8월 1일(기유)

182)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8월 5일(계축)

183) 《성호사설》 권5 만물문(萬物門) 〈건령귀(乾靈龜)〉

184)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8월 9일(정사)

유구의 표류민 가운데 해로가 아닌 육로를 이용한 귀국도 있었다. 제주에는 주로 일본어 역관이 상주하였을 뿐 유구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역관이 부재하여 대화가 매우 어려웠다. 이들은 해로를 통한 귀국 대신 육로를 고집했다. 이유는 배를 운전할 선원들이 모두 죽어 배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왕의 선례가 없어 심낙수는 어찌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왔다. 심지어 심낙수는 배에 음식 등을 충분히 실어주고 운에 맡겨 두는 것이 어떤지를 묻기까지 했다.

1794년(정조 18) 9월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의 장계(狀啓)에, “유구국(琉球國)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에게 문정(問情)하니, 해로가 아닌 육로를 따라 복주(福州)로 가서 그길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일이 매우 해괴하므로 반복해서 따져 물어야 하나 역학(譯學)과 통사(通事)가 모두 그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표류해 온 사람들은 통용되는 문자를 알지 못해 진상을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로를 언급할 때마다 손사래를 치고 머리를 저었으며, 국법상 허락할 수 없다는 말로 타일러도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당초에 표류해 온 사람의 배가 출발한 것은 공사(公事)로 인해 48리의 물길을 따라온 것에 불과하고 애당초 장사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작은 배를 타고 있었고 배에 실은 것도 의복과 문서에 불과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고 4명만이 살아남았는데, 지금 물에 익숙지 않은 몇 명을 저 작은 배에 태워 망망대해로 내치는 것도 대단히 가엾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문(咨文)을 보내 다른 나라 사람을 중국에 들여보내는 것은 필시 전례가 없는 일이니,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배를 뜯어 고치고 양미(糧米)를 많이 실어 준 뒤 억지로 배에 태워서 생사(生死)를 하늘에 맡기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상에게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심낙수는 자신의 병이 위독하여 직접 조사하지도 못하고 다른 공무도 폐기하였으므로 유구인의 귀환에 대해서도 처분대로 하겠다는 식의 장계를 올린 것이다. 정조는 음식을 배에 실어주고 운에 맡겨 두라는 무책임한 말을 한 심낙수의 태도에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장계의 내용을 보니 내게 물어 처리할 것도 없이 육로로 가는 인편에 보내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1명이 표류하다가 4명만이 생존하였으니 비록 배를 구해서 짐을 꾸려 보낸다 해도 그들이 살아서 돌아

갈 수 있을지는 기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례가 있고 없고는 말할 것이 못 된다. 인명에 관계된 것이 과연 얼마나 지극히 중대한가. 가령 생존자가 한두 사람뿐이라면 그 경우에도 배를 주어 바다로 내칠 수 있겠는가.”

정조는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배에 실어 그대로 바다에 방치하는 것은 도리상 불가함을 천명했다. 따라서 중국에 사정을 잘 갖추어 말하고 유구에 돌아갈 방도를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정조의 선린 통교의 의리였다. 중국의 사행 일정이 정해진 마당에 육로의 귀국을 주선하기로 한 것이다.

일의 상황을 갖추어 쓰고 공문(公文)을 가지고 갈 관원을 따로 정하여 북경(北京)에 들여보내어 복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이웃 나라와 통교(通交)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의리에 합당할 듯하다. 더구나 지금은 사행(使行)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속히 통지하여 제때에 인솔해 와서 혹 사신이 가는 편에 보내어 사행이 들어갈 때 데리고 가게 한다면 그곳에 도착해 여유 있게 주선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니저러니 논하지 말고 육로를 따라 원하는 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승문원에서 중국에 보낼 외교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신하들의 의견을 수합했다. 먼저 도제조 홍낙성(洪樂性)은 정조의 뜻에 동의했다. 유구의 표류인들을 육로로 돌려보내라는 정조의 하교가 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호생지덕과 먼 곳의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성대한 생각을 흠모하고 우러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사행사 편에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김희(金熹), 도제조 이병모(李秉模) 모두 의견이 같았다.

정조는 승문원에서 부지런히 문서를 작성하여 사행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명했다. 정조는 유구인의 생명까지도 매우 주의 깊게 대우했다. 심낙수의 의견은 그야말로 진정한 선린의 도리가 아니었던 것이다.¹⁸⁵⁾

이 일이 있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794년 10월 정조는 유구의 표류민을 위해 제주목에서 유구어를 가르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역원의 관리를 선발하여 북경에서 유구사람들을 만나 공부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¹⁸⁶⁾

185)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9월 11일(을미)

186)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10월 21일(을해)

한편 이때 유구인 3인이 제주목에 표류해 왔다. 명월 만호(明月萬戶) 박사제(朴師梯), 역학(譯學) 홍득영(洪得榮), 통사인 훈도(訓導) 이익청이 이들 3인을 데리고 이끌고서 10월 12일 전남 영암(靈巖)의 이진진(梨津鎭)에 도착하여 거처를 정한 후 음식을 주고 바로 문정기를 작성했다. 처음에는 4인이 표류했지만 제주도에서 이질에 걸려 1명이 사망하여 3인을 문초했다.

당시 영암 군수(靈巖郡守)는 해신제를 위해 소안도(所安島)에 가 있어 우후(虞候)와 이진만호(梨津萬戶) 김진복(金晉福), 수영(水營)의 역학(譯學) 한지선(韓志善),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진덕리(陳德履) 등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유구인들은 모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끌어 올려 묶고 정수리에 동곳을 꽂아서 상투가 두드러졌으며, 몸에는 푸른 무늬의 베로 만든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또 황색에 무늬가 있는 금선(金線)과 가는 끈을 가지고 첩요대(貼腰帶)를 만들어서 허리에 크게 둘렀다.

다만 숨을 두어 만든 흰색 바지저고리와 버선, 푸른 무명에 숨을 둔 휘양은 제주목에서 만들어 제공한 옷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 통사 이익청이 일찍이 유구인이 제주에 표류해 왔을 때에 그 나라 말을 배웠기에 그로 하여금 문정하여 문답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들 유구의 표류인들을 전라 우수영(右水營)으로 호송하면서 면포 두루마기와 바지, 버선, 휘양 각 3벌씩을 제공하고 술과 떡과 고기를 특별히 대접하여, 넉넉히 잘 돌보아 주고자 하는 정조 임금의 덕의(德意)를 표했다고 보고했다. 이하 그들에 대한 문정기가 부록되어 있다.

〈표 7〉 1794년 10월 유구인 미정겸개단인야(米精兼个段仁也) 표류 문목

問目	내 용
문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답	‘유구국의 팔중산도(八重山島) 사람들입니다.’
문	‘무슨 일로 항해를 시작했으며 또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가? 어떤 바람을 만났으며 어디서 표류하게 되었는가?’
답	‘공문을 가지고 여나국도(與那國島)에 가기 위하여 7월 11일에 출항하였다가 동풍을 만나 표류해서 이 나라에 당도하였습니다.’
문	‘여나국(與那國)이란 어느 곳인가?’
답	‘섬의 이름으로, 국호가 아닙니다. 도주(島主)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각 섬에서 공문을 올립니다.’
문	‘여나국에는 관장(官長)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답	‘번을 드는 세 사람의 선비가 있습니다.’
문	‘너희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	‘신천촌(新川村) 사람입니다.’

問目	내 용
문	‘함께 배를 탄 사람은 몇 사람이었는가?’
답	‘11명으로 모두 한마을 사람입니다.’
문	‘너희들의 성명은 무엇인가?’
답	‘제 성은 미정(米精)이고 이름은 겸개단인야(兼介段仁也)입니다.’
문	‘어째서 3명뿐인가?’
답	‘7명은 표류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굶주리고 지쳐서 죽었고 4명만이 살아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고 지금은 3명만 남았습니다.’
문	‘살아 있는 세 사람의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인가?’
답	‘배의 우두머리는 이름이 미정겸개단인야(米精兼介段仁也)로 나이는 28세요, 겸(兼)은 나이가 47세요, 진세(眞勢)는 나이가 26세인데,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삼야지(三也之)는 나이가 41세인데 병들어 죽었고, 행야(行也)는 나이가 25세요, 근당(謹當)은 나이가 54세요, 고당월(古當月)은 나이가 31세요, 여행(如行)은 나이가 38세요, 고당야(古當也)는 나이가 46세요, 저월(渚月)은 나이가 29세요, 수(壽)는 나이가 45세인데, 모두 다 굶주리고 지쳐서 죽었습니다.’
문	‘근당·고당월·여행의 나이가 표류하여 왔을 때 문답한 것과 어째서 서로 다른가?’
답	‘지금 쓴 것이 진짜입니다.’
문	‘너 한 사람은 성이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어째서 성이 없는가?’
답	‘10명은 가장 하등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문	‘신천촌은 너희 나라 도읍에서 몇 리나 떨어져 있는가?’
답	‘중산왕(中山王)의 도읍까지의 거리는 물길로 380리이고 여나국도까지의 거리는 물길로 48리입니다.’
문	‘타고 온 배는 공선(公船)인가, 사선(私船)인가?’
답	‘공선입니다.’
문	‘배의 장표(章標)는 있는가?’
답	‘없습니다.’
문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하였는가?’
답	‘표류하다가 도착한 섬에 묻어 두었습니다.’
문	‘배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답	‘소각(燒却)하였습니다.’
문	‘본국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답	‘때때로 문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러 농사를 짓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목수 노릇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답	‘본래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상투를 튼 다음에 정수리에 동곳을 꽂습니다. 뒷사람은 은(銀) 동곳을 꽂고 아랫사람은 주석(朱錫) 동곳을 꽂습니다.’
문	‘팔중산도에는 관장이 몇 명이나 있는가?’

問目	내 용
답	‘번을 드는 세 사람이 있는데 본국에서 정해 준 사람들로 3년마다 교체합니다. 관장 세 사람은 본도(本島) 사람들로 죽은 뒤에야 대신 세우는데, 모두 선비입니다.’
문	‘농사짓고 수확하는 것은 어느 계절에 시작하는가?’
답	‘벼, 보리, 조, 콩 등의 씨를 10월에 파종하여 다음 해 6월에 수확합니다.’
문	‘어느 달을 세수(歲首)로 삼는가?’
답	‘인월(寅月)입니다.’
문	‘여기서부터는 호송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는가?’
답	‘이곳 사람들과는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를 데리고 온 섬사람은 우리 말에도 익숙하니, 그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문	‘배가 고프면 마땅히 먹을 것을 줄 것이요, 추우면 마땅히 옷을 줄 것이다.’
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조는 전라감사의 보고에 다음과 같이 전교했다.

“유구국에서 표류한 이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와 다행이다. 제주에 유구의 말을 아는 통사(通事)가 있어서 제대로 문정을 하였다. 이후로는 점차 가르치고 별도로 요과(料窠)를 두어 각별히 권장하도록 목사에게 분부하라. 해당 통사 이익청은 예조로 하여금 별도로 시상하게 하라. 옛날에는 유구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왕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말을 알았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른바 제주로 들여보낸 역학(譯學)은 아무 쓸모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사역원으로 하여금 각별히 어리고 똑똑한 자를 정하여 그들을 데리고 의주(義州)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도록 하라. 그리고 만약 미진한 것이 있으면 유구에서 조공(朝貢)을 바치러 올 때에 다시 들여보내 그 음운(音韻)을 해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제조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정조는 선초의 유구와의 왕래가 잦았을 때, 조선에 유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여 유구의 표류민을 자세하게 문정하고 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히 사역원으로 하여금 연소총민한 자를 선발하여 중국의 접경에 보내 유구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정조는 타국의 표류민들에 대해서도 진심을 다해 환대하고자 했다. 문정기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위해 유구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고 이를 위해 중국에 가서 유구인들로부터 직접 언어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

1797년(정조 21) 윤6월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는 유구인들이 대정현에 표류했다고 보고했다.¹⁸⁷⁾

“이달 19일 묘시(卯時)에 모슬진(慕瑟鎭)의 조방장(助防將) 윤광종(尹光宗)과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치보(馳報)에 ‘무슨 배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배 1척이 남대양(南大洋)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점차 모슬진에서 5리 떨어져 있는 본현(本縣)의 일과리(日果里) 서림포(西林浦) 연변(沿邊)에서 2마장(馬場) 정도 되는 곳에 도달하여 돛을 내리고 닻을 내렸는데 멀리서 배의 모양을 살펴 보니 필시 이국선(異國船)이었으나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 상세히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으므로 대정 현감 고한록을 겸중군(兼中軍)으로 차정(差定)하고 한학(漢學) 한성언(韓聖彦), 왜학(倭學) 홍득영(洪得榮) 등을 즉시 보내 고한록과 함께 문정하도록 했습니다.

20일 묘시에 도착한 대정 현감 고한록의 치보 및 한학과 왜학 등의 수본(手本)에 ‘한학과 왜학의 통사(通事)와 집사(執事) 등이 작은 배를 타고서 이국인(異國人)의 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니, 배에 탄 7인이 모두 무늬 옷감으로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었는데 황색이나 청색이었고 허리에는 광단(廣緞)으로 만든 띠를 매고 있었으며 고말(袴襪)을 착용하지 않았고 머리 위에 상투를 틀어서 앞뒤로 비녀를 꽂았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중 문답할 수 있는 사람 2인을 먼저 배에서 내리게 하여 글을 써서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으로 어느 연월일(年月日)에 무슨 일로 어느 곳으로 가다가 이곳에 표류해 오게 되었으며 배에 같이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라고 하였더니, 「우리들은 유구국 나패부(那覇府) 내동촌(內東村)의 사람들로 올해 6월 1일 어미(御米)을 실어 내는 일로 궁고도(宮古島)에 갔다가 다음 날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이곳으로 표류해 오게 되었고 배에 같이 탄 사람은 7인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표류하게 된 곡절에 대해 이미 실정을 알아낸 만큼 배를 검사하는 절차와 귀환하는 데 대한 문목(問目)은 물결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선척을 모슬진의 포구에 끌어다 놓은 뒤에 다시 세심히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급히 보고합니다.’ 하였습니다.

187)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윤6월 7일(을사)

대정현감 고한록은 이들 7인의 유구인들의 배를 모슬포에 끌어 정박한 후 이들을 육지에 내리도록 하여 모슬진의 관아에서 머물게 했다. 이들은 배를 수리하고 밧줄과 노를 마련해 주면 바로 해로로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묘시에 도착한 대정 현감의 치보 및 한학과 왜학 등의 수본에 ‘선척은 모슬진의 포구에 끌어다 놓고 이국인은 배에서 내리게 하여 본진(本鎭)의 관사에서 구호하였는데 그들이 조금 정신을 차린 뒤에 문정하였더니 구구절절이 반복하는 말이었고 짐은 일일이 수색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국인의 소원은 모두 배에 있던 밧줄과 노, 풍석(風席) 등의 잃어버린 물건을 잘 마련해 주면 수로(水路)로 귀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배의 모양은 앞은 낮고 뒤는 높으며 길이가 8파(把), 너비가 3파 반, 높이가 1파 반이고 앞의 범죽(帆竹)은 길이가 5파 반, 둘레가 2자(尺)이며 부들로 만든 범석(帆席)은 길이가 4파 반, 너비가 2파이고 뒤의 범죽은 꺾여서 손상을 입었는데 남은 것은 길이가 2파 반, 둘레가 2자 8치(寸)이고 범석은 유실(流失)하였습니다. 치목(鷓木) 하나는 길이가 2파 반, 둘레가 2자이고 기죽(旗竹)은 길이가 3파, 둘레가 4치이며 목면(木綿)의 백기(白旗) 2면(面)이 있고 배의 전후와 좌우에 모두 달 모양을 그렸습니다. 또 작은 배가 있는데 길이가 2파 반, 너비가 1파, 높이가 1자이고 본선(本船)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배에 실은 짐은 송판(松板) 207냥(立), 소금 14섬, 생모시[生苧] 12부(浮), 양식인 백미(白米) 7말, 《통속삼국지(通俗三國誌)》 1권, 역서(曆書) 1권이고 또 소소한 책자 및 서찰이 있습니다. 그 외의 잡물은 열거하여 기록해서 급히 보고합니다.’

배의 수화물을 조사한 결과 주로 곡식과 송판 그리고 삼국지나 역서 등 서책 수권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 표류민들을 모두 배에서 내려 제주목에 데리고 가서 문정기를 작성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으므로 역시 대정현감 고한록 등은 7인의 유구인들을 제주목의 제주목사에게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가운데 한자를 아는 이가 전연 없어 문정기 작성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이국인이 본도(本島)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에 주성(州城)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과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은 본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학, 왜학 등으로 하여금 이끌고서 들어오게 하였는데, 같은 달 22일 유

시(酉時)쯤에 중군이 표류해 온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왔으므로 음식을 주고서 다시 상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용렬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7인 중에 이른바 ‘중촌거(仲村渠) 인옥(仁屋)’이라는 자가 약간의 문자를 대충 썼으나 예사로이 쓰는 구어(句語)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여 통사 이익청(李益靑)으로 하여금 간신히 문정하게 하였더니 대체로 처음에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문정한 데 대한 별단(別單) 1도(度)를 기록하여 급히 아뢰니다.

배의 수화물 가운데 《삼국지》는 중간마다 일본어로 현토를 달아 인쇄한 것이었는데 문리(文理)가 끊겨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역서는 표지에 ‘보력 갑술 원력(寶曆甲戌元曆)’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가늘게 일본의 연호인 ‘관정(寬政) 9년 정사(丁巳)’라고 쓰여 있는데, 달의 대소(大小) 및 달의 간지(干支)는 시헌서와 같았다. 유구는 주로 일본에서 서책을 무역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소소한 서찰은 모두 소식을 주고받거나 안부를 전하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역서만 취하여 별도로 복사본을 만들어 보고하고, 유구인들의 성명과 나이, 수화물을 정리하여 책자로 비변사에 보고했다.

이들 유구인들은 제주목 관아의 일부를 숙소로 제공하고, 매일 1명당 양미(糧米) 2되, 닭 2각(脚), 생어(生魚) 2미(尾), 감곽(甘藷) 2엽(葉), 장유(醬油)와 담배를 지급했다. 배의 파손된 밧줄과 노, 풍석 등의 물건 역시 다시 마련하여 지급하고, 저고리와 바지도 1명당 두루마기 1건(件), 적삼(赤衫) 1건, 흠바지 1건, 버선 1부(部)를 만들어서 지급했다.

유구인에 대한 제주목의 배려 또한 상당히 적극했다. 이 모든 정책은 이웃 국가들과 선린하려는 정조의 외교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표류민을 위한 양식 지급 규칙 역시 경술년(1790, 정조 14)의 예대로 1명당 각각 백미 10말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장(醬)과 반찬, 딸감, 물 등의 물품을 또한 넉넉하게 지급했다. 이하 유구인의 문정기를 부록했다.

〈표 8〉 1797년 윤6월 유구인 축등지친운상(筑登之親雲上) 표류 문목

問目	내 용
문	“너희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사람인가?”
답	“우리들은 유구국 나패부 내동촌 사람입니다.”
문	“너희들은 무슨 일로 배를 타고 어느 곳에 갔는가?”
답	“우리는 어미(御米)를 실어다 주기 위해 궁고도에 갔습니다.”
문	“어미는 곧 무슨 곡물이며 어느 곳에 바치는 것인가?”
답	“이 미속(米粟)은 곡왕(穀王)의 어물(御物)로 그곳에 바치는 곡물입니다.”
문	“너희들의 배에 어미가 실려 있는가?”

問目	내 용
답	“우리들이 궁고도에 갈 때 내류(內流)가 흐르지 않았는데 궁고도에 하선(下船)하였을 때 빈 배로 대풍을 만났으니 이 물살이었습니다.”
문	“너희들은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출항하였는가?”
답	“올해 6월 1일에 나패에서 출항하였습니다.”
문	“나패는 읍인가, 촌인가?”
답	“나패는 부(府)의 이름입니다.”
문	“어느 방향의 바람을 타고 출항하였으며 어느 방향의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며칠에 이곳에 도착하였는가?”
답	“바람이 인방(寅方)에서 불어 나패부에서 출항하였으며 축방(丑方)의 대풍을 만났고 2일과 3일, 4일에 계속 남방(南方)의 바람이 불었으며 6월 18일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문	“너희들이 만리를 표류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승선(乘船)할 당시에 있던 여러 사람은 모두 무사히 살아 있는가? 배에 실은 짐물(什物)은 또한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양식거리와 쌀, 물은 또한 떨어지지 않았는가?”
답	“배의 다리와 돛이 손상되었고 사람들은 무사히 살아났지만 밥을 지어 먹을 쌀과 사용할 물이 없습니다.”
문	“너희들은 인원수가 몇인가? 배의 돛이 손상되었다고 하는데 전부 버리지는 않았는가? 남은 쌀이 얼마나 되고 물은 언제 떨어졌는가?”
답	“사람은 7인입니다. 돛대의 판목(板木)과 뒤의 돛대가 없으며 앞의 돛대는 있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쌀은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오늘과 내일 먹을 것은 있고 물은 없습니다.”
문	“너희 7인의 성명과 나이를 써서 바치라.”
답	“선주(船主)인 아부(我部) 축등지친운상(筑登之親雲上)은 오지 않았으며, 집취(楫取 노잡이)인 대성(大城) 축등지(筑登之)는 42세, 수부(水夫)인 중촌거 인옥은 28세, 비가(比嘉)는 42세, 도대(鳴袋)는 29세, 도복(稻福)은 32세, 안차령(安次嶺)은 28세, 금성(金城)은 35세로 모두 상인(常人)이며 성(姓)은 없고 이름만 사용합니다.”
문	“너희들은 필시 부(府)의 패(牌)와 공문(公文)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모두 현물로 바치라.”
답	“부의 패와 공문은 없습니다.”
문	“너희들이 어공미(御供米)를 싣고 운반하는 일로 배를 가지고 왕래하는 이상 어찌 공문이 없을 리가 있는가?”
답	“대풍이 불었을 때에 파도가 두세 번 솟구쳐서 싣고 있던 것을 그때 유실하였습니다.”
문	“배 안의 짐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은 이상 공문만 어찌 유실하였는가?”
답	“대풍이 불었을 때에 돛대와 돛, 써서 나누어 준 공문을 유실하였습니다.”
문	“너희들은 모두 나패부의 읍에 사는 사람들인가, 촌에 사는 사람들인가?”
답	“모두 진공소(進貢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	“진공소는 어느 곳의 지명(地名)인가?”
답	“유구국 안의 나패부 동촌(東村)이 진공하는 곳입니다.”
문	“나패부의 관원은 몇 명인가?”
답	“관인(官人)은 나패부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문	“너희들이 사는 나패부에서 궁고도까지는 수로와 육로로 각각 몇 리나 되는가?”
답	“뱃길로 150리입니다.”
문	“나패부에서 왕도(王都)인 경성(京城)까지는 몇 리인가?”

問目	내 용
답	“나패부에서 10리가 됩니다.”
문	“경술년(1790, 정조 14) 6월에 너희 나라 나패부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표류해 왔다가 모두 무사히 잘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답	“그때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사람인 부내(府內)의 서촌(西村)에 사는 어다가랑(魚多嘉良)에게서 이 일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갑인년(1794) 겨울에 너희 나라 팔중산(八重山)의 사람 11인이 표류하다가 배가 부서지고 남은 3인 만 이곳에 표류하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 잘 호송하였다. 너희들은 또한 들어서 알고 있는가?”
답	“팔중산은 멀리 있어서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너희들의 배가 부서져 못 쓰게 되지는 않았으니 약간 수리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답	“이곳에서 복주(福州)로 보내 주면 어떻겠습니까?”
문	“복주는 대국(大國)의 땅이니 이곳 사람들은 노정(路程)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안내하여 보내겠는가?”
답	“이곳의 노야(老爺)를 보내 주소서.”
문	“너희들 7인이 다행히 무사히 살아났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한 계절이라 수로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복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인가?”
답	“뚝대와 돛이 없어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문	“뚝대와 돛을 만들어서 줄 터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답	“순풍이 불어 보내 줄 때에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	“너희 나라가 동남 방향에 있으니 북서풍을 만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답	“북경(北京)으로 보내 주면 또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법례(法例)는 이곳에서 표류해 온 사람의 경우 표류하다가 도착한 지방에서 배에 짐을 실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원래 육로를 통하여 송환하는 예가 없다. 그러므로 갑인년(1794, 정조18) 겨울에 너희 나라의 세 사람이 표류하여 왔을 때에 수신(守臣)이 또한 법에 의거하여 장계로 보고하였는데, 우리 성상께서 특별히 표류하다가 배가 부서지고 살아남은 3인이 배를 만들어 생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염려하시어 법례에 구애받지 않고 육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사행(使行)에 달려 보내고 대국에 자문(咨文)을 보낸 일의 경우 이는 실로 이웃 나라와 외교하고 인명을 중시한, 격례를 벗어난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은 그때와는 다르니 너희들이 표류해 와서 무사히 살아난 것이 마침 경술년(1790, 정조14) 6월과 같다. 더구나 배가 견고하고 비어 있으니 경술년의 예대로 밧줄과 노를 잘 개비(改備)해 주고 양식거리를 넉넉히 지급할 것이다. 너희들은 우선 순풍을 기다렸다가 수로로 곧장 본국으로 돌아가라.”
답	“위와 같이 가르쳐 주셨으므로 7인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겠습니다. 뱃길은 지시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니 그렇다면 7인은 모두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경술년(1790)에 유구국의 사람들이 이곳에 표류하여 와서 배도 견고하고 사람도 무사했으므로 수로로 돌아와서 일이 잘 마무리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또한 표류하여 왔는데 배도 견고하고 사람도 온전하니 배 안의 부족한 물건을 속히 만들어 주신다면 수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갑인년(1794)에 유구국의 사람들이 이곳에 표류하여 왔을 때에는 배도 부서지고 사람도 상한 상황에서 남은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육로를 통해 청(淸)나라로 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바라는 대로 수로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너희들의 짐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잃어버려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시 써서 바치라. 일일이 내줄 것이다.”
답	“짐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3-2. 유구에 표류한 제주인들

유구인들만이 제주에 표류한 것은 아니었다. 정조대 유구에 표류했다가 중국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된 이창보 등 10인의 제주인들이 있었다. 1797년 11월 의주 부윤(義州府尹) 심진현(沈晉賢)은 제주의 표류민들이 압록강을 건넌 데 대해 보고했다. 이들은 2년전 1795년(정조 19) 11월 유구로 표류했다가 수년이 지나 고향의 귀로에 올랐던 것이다.

의주 부윤의 장계에, “표류민들이 저희 일행 편에 팔려 나온 연유는 헌서 재자관(憲書齋宰官) 선래(先來)가 올리는 장계에 이미 덧붙여 진달하였습니다. 어제 해시(亥時)에 재자관이 데리고 간 소통사(小通事) 박도근(朴道根)과 쇠마구인(刷馬驅人) 등이, 비변사에 보고하는 재자관의 수본(手本) 1도(度)를 가지고 표류민 이창보(李唱寶) 등 10명을 거느리고 도로 압록강을 건너 나왔습니다. 수본을 뜯어보니 ‘표류민 등 10명이 책문(柵門)에 왔는데 만약 수레와 짐이 다 도착하기를 기다려 동시에 책문을 나온다면 겨울철에 체류하는 폐단이 매우 걱정스러웠기에 봉성장(鳳城將)에게 말하여 먼저 내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주부윤 심진현은 일단 제주인 10명을 규례에 따라 공초했다.

먼저 표류민 이창보·김정하·김서운·오최언·고성협·한영채·이명빈·이경보 등의 초사(招辭)를 보면, ‘저희 8인은 모두 제주목 좌면(左面)의 백성으로 육지로 나가 쌀을 매매하기 위해 양곽(涼藿), 복어(鰻魚) 등의 물품을 마련하여 좌면 사람 이기룡(李己龍), 김창해(金昌海), 문인형(文仁亨), 박필무(朴必茂), 이창효(李唱孝) 등과 함께 이창보의 배를 타고 강경(江景)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제주목 선안의 고영태(高永泰)·김태성(金泰星)이 피장(皮匠)으로 역시 강경에 가기 위해 동시에 배를 탔습니다. 을묘년(1795, 정조 19) 11월 27일 저녁 때 출항하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28일 동북풍(東北風)이 크게 일어나 파도가 산처럼 쳐서 치목(鷓木 배의 키)은 부러지고 노는 잃어버려 배를 제어할 수 없었고 돛대가 파손되어서 배에 실은 잡물(雜物)을 모두 물속으로 던지고 대양을 표류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다 보니 양식이 이미 다 떨어져 이명빈의 아버지 이기룡과 이창보의 아우 이창효 및 김창해, 문인형 등 4인이 잇달아 굶어 죽었습니다. 바람을 만난 지 33일째 되는 날 한곳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기슭의 암석에 배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으나 저희들은 다행히 갑판 위에 엮드려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마을 사람이 멀리서 보고 급히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일일이 건져 내어 쌀뜨물을 먹인 다음 방에 거처하게 하고 계속 미음을 공급

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인사를 구분하게 되었는데, 굶어 죽은 4인의 시신은 물 속에 떨어져 끝내 건져 내지 못하였습니다. 박필무는 육지로 올라온 저녁에 굶주림으로 연이어 죽었기에 그대로 그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제주목 좌면 사람들 15인이 강경포구에 장사를 위해 출발했다가 배가 난파되어 한달 여를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느 해안에 닿았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굶어 죽어 남은 사람이 10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김서운이 문자를 약간 알았으므로 글자를 써서 유구 사람과 소통하니 유구국(琉球國)의 대도용촌(大島用村)인 듯 했다는 것이다.

공초는 다음의 진술로 이어졌다. ‘병진년(1796) 1월 3일 유구의 지방관이 문정(問情)하기에 조선국 전라도 해남(海南) 사람으로 바다에 출항하여 바람을 만나 4인은 배에서 굶어 죽고 1인은 육지에 올라 병으로 죽은 연유를 글로 써서 아뢰고, 이어 속히 고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도(本島)는 큰 배가 없으니 우선 보도(寶島)의 배가 도착하면 비로소 풀어서 중산왕부(中山王府)로 이송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같은 달 5일 이른바 우천촌(宇天村)에 저희들을 옮겨 보냈는데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초막(草幕)을 만들어 머물게 하고 하루에 7되의 쌀과 채소, 염장(鹽醬), 남초(南草) 등의 물품을 주어 스스로 불을 때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4월 1일이 되어서야 보도의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상관(上官) 통사(通事)가 저희들을 영솔하여 그 배에 함께 타고 순풍을 기다려 같은 달 8일에 출발하였는데 그 마을에서 중산왕부까지의 거리는 수로(水路)로 700리였습니다. 같은 달 18일 중산왕부에 이르러 왕부와 10리 떨어진 곳에 정박하였는데 여촌과 상점이 대략 100여 호가 되고 관사(官舍)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초막을 지어 주었으며, 하루에 8되의 쌀과 두어 근의 고기를 지급하였으므로 포식하며 편안히 지냈으나 고향 생각이 날로 간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문자로 써서 통사 명세덕(明世德)에게 속히 돌려보내 달라는 뜻을 간청하니, 명세덕이 관부(官府)에 전달하자 관부에서 저희들에게 유시문(諭示文)을 내려 보내서 안심하고 머물게 하여 중국에 공물(貢物)을 진상하는 편을 기다려 팔려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유구에서 머문 기간이 1년여가 넘어가면서 이들에게는 음식과 숙소 이외에 죽은 이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물을 공급하는 등 유구국의 대접이 융숭했다. 유구를 떠나 중

국의 복건성에 도착한 제주민들은 북경에 호송되었다가 의주를 거쳐 조선에 귀국한 것이다.

‘1년 사계절의 의복은 관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두 차례 제물(祭物)을 갖추어 지급하여 사자(死者)의 혼령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으니 그들의 예속(禮俗)이 매우 후하였습니다. 올해 4월 1일 공물을 진상하는 사신 편에 나패부(那覇府)에서 배를 함께 타고 복건(福建) 복주부(福州府)로 향하였으니, 8,000리쯤 되는 수로입니다. 같은 달 26일 비로소 민현(閩縣)에 이르러 육지에 내려서 법해사(法海寺)에 머물렀는데, 1명당 날마다 1냥의 돈을 주어 편한 데로 스스로 먹게 하였습니다. 석 달이나 머물렀는데도 즉시 떠나보내 주지 않기에 즉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뜻으로 현관(縣官)에게 글로 간청하니, 현관도 역시 저희들에게 유시문을 보내서 황지(皇旨)를 침착하게 기다려야 비로소 출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근심하면서 날을 보냈습니다. 7월 20일에야 호송관(護送官)을 정하여 북경(北京)까지 함께 전송하게 하였는데, 출발하기 며칠 전에 아문(衙門)에서 1명당 각각 의자은(衣資銀) 4냥과 노비은(路費銀) 3냥씩을 주었습니다. 출발한 뒤 육로를 통하기도 하고 수로를 통하기도 하여 행차가 소주(蘇州)와 항주(杭州) 등을 지났는데 도시며 인민들이 모두 변화하여 이루 다 기억할 수 없고 산둥(山東) 땅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수레를 탔습니다. 10월 3일 북경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 민현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5000리 길입니다. 아문에서 불러 문정(問情)한 뒤 재자관이 머무는 남소관(南小館)에서 지내게 하고 날마다 쌀과 고기를 지급하여 먹여 주었습니다. 출발하게 되었을 때 1명당 각각 은자(銀子) 2냥을 지급하고 재자관이 돌아가는 편에 딸려 보내고 수레를 주어 내보내서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으니 실로 천행(天幸)입니다. 가지고 온 물건은 각처에서 받은 은냥(銀兩)을 가지고 물품으로 바꾸어 사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주부윤은 이창보 등 10명이 이국을 표류하다 3년이 지나 살아온 일은 신기한 기적이라고 보고하고, 이들이 받은 물화를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¹⁸⁸⁾

188)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11월 20일(을유)

〈표 9〉 유구에서 돌아온 제주인들의 소지품 내역

이름	물품 내역
이창보	마미(馬尾 말꼬리) 50근, 양피의(羊皮衣) 5건
김정하	마미 20근, 양피 주의(羊皮周衣) 10건
김운서	마미 10근, 부채(扇子) 2병(柄), 양피(羊皮) 7장, 양피의 2건, 소라(小螺) 2대(對), 전자(剪子 가위) 2병, 사병(砂瓶) 1좌(坐), 공단(貢緞) 8자(尺), 화기(花器) 10남(立), 침자(針子) 3봉(封), 모단 단상의(毛緞單上衣) 2건, 연죽(煙竹 담뱃대) 4개, 잡향(雜香) 2개
오최언	모자(帽子) 1남, 공단의(貢緞衣) 1건, 두청(斗靑) 4필, 유기(鑰器) 3좌
고성협	흰 삼승(三升) 11필, 양피 주의 4건, 마미 1통(桶), 화기 10남
한영채	유구국병(琉球國瓶) 2개, 부채 4병, 쇠금(銷金) 1개, 화기 3남, 흰 삼승 5필, 남화주(藍禾紬) 5자
이명빈	목요대(木腰帶) 1건, 양피의 4건, 포의(布衣) 1건, 양휘항(涼揮項) 3건, 흰 삼승 2필, 연죽 3개, 쇠금 1개, 전자 5병, 마미 30근
고영태	양피의 2건, 장피(獐皮) 5장, 흰 삼승 3필, 전자와 부채 각각 1병
김태성	마미 4통, 장피 3괴(塊), 화자피(花子皮) 3장, 양피 4장, 흰 삼승 3필, 전자 2병, 화기 2남, 잡향 7개, 남령(鑼鈴) 29개, 금가(衾家) 1건
이경보	양피 주의와 검은색 호의(胡衣) 각각 3건, 화주(禾紬) 4필, 공단 3자

4. 아란타인의 표류

흥미롭게도 정조 치세에는 동래에 아란타인이 표류했던 기록이 발견된다. 1797년(정조 21) 9월 통제사(統制使) 윤득규(尹得逵)가 동래에 표류한 이국선(異國船)의 문정을 보고했다.

8월 28일 동래부사 정상우(鄭尙愚)는 용당포 앞바다에 표류해 온 이국선은 왜선이 아니라 서 정탐할 수가 없기에 수호(守護)하게 한 다음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코가 높고 눈이 파란 것으로 보아 서양 사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또 그들의 소지품은 석경(石鏡), 유리병(琉璃瓶), 천리경(千里鏡), 구멍 없는 은전(銀錢) 등 모두 서양 물건이었으며, 왜역(倭譯) 가운데 한어(漢語), 청어(淸語) 등에도 익숙한 자로 말도 하고 필담도 했지만 통할 수 없었다.

다만 이들이 한자로 쓴 글 가운데 ‘낭가사기(浪加沙其)’ 네 글자는 곧 왜어(倭語)로 장기도(長崎島 나가사키)로 가려는 선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상선이 장기도에서 바람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 표류한 것으로 보았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이들 아란타인은 조선인들에게 손으로 대마도를 가리키면서 입으로 바람을 불

었는데, 이는 바람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학 역관으로 다시 한 번 이들을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경상좌수영의 한학(漢學) 조중택(趙重澤)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좌수영 우후 김석빈(金錫彬)을 문정관(問情官)으로 차정하여 동래 부사 정상우와 함께 자세하게 문정하도록 한 것이다.¹⁸⁹⁾

한 달 후인 1797년(정조 21) 10월 동래에 표착한 아란타 선박의 처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조는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했다. 정조는 “표류한 선박은 아란타(阿蘭陀 네덜란드) 사람의 선박이라고 한다. 유사 당상(有司堂上) 이서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내용의 책을 즐겨 보니, 그들의 종족에 대해서도 알 것 같다.”고 물었다. 이서구가 중국의 새로운 책들을 좋아한다고 하니 물었다는 것이다. 정조는 이서구의 박식함을 칭송했지만 그가 항상 너무 잔다란 지식에 매몰되어 대강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당시 이서구는 “효종 때에 일찍이 아란타 사람이 제주에 표류해 온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동평위(東平尉)의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중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서남쪽 변방 오랑캐의 무리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속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시다. 《명사(明史)》에는 하란(賀蘭)이라 하였는데, 근래 이른바 대만(臺灣)이라고 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유사 당상이 아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박학하다고 할 수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재상은 모름지기 글을 읽은 사람을 써야 합니다.”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정조는 “박학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꼭 모두 실용적인 학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핀잔을 주었다. 정조는 박학을 위한 박학을 비판하고 학문의 본과 말 실과 허를 항상 강조했던 것이다.¹⁹⁰⁾

어쨌든 정조 말년에 아란타인의 선박의 표류와 함께 이서구는 효종대의 하멜표류를 떠올리면서 이들에 대한 자신의 박학을 자랑했던 것이다. 당시 하멜을 위시하여 38인의 네덜란드인이 제주에 표류했다가 일본으로 탈출한 바 있었다.¹⁹¹⁾ 이서구는 이러한 기록을 정재륜의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이서구의 강점은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처럼 세부적인 지식들을 망라하여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이나 동래 혹은 제주와 같이 혹 아란타 인을 만날지 모를 곳의 지방관들이나 군교들은 전연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동래부사 정상우는 물론 이하 우후 등의 실무자들이 아란타인을 보자 마치 귀신을

189)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9월 10일(병자)

190)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10월 4일(기해)

191) 《효종실록》 효종 4년 8월 6일.

본 듯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대고 말았던 것이다. 정조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과거에 아란타인이 조선의 제주에 표류한 사실이 있었고 하물며 일부는 조선에 남아 생을 마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연 전수되지 않아 외국인 앞에서 어린아이 처럼 놀라고 만 것이다.

이에 정조는 “지금 유사 당상 이서구의 말을 들으니, 옛날 효종 치세에도 이번의 표류인과 같은 자가 아란타인이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머물기를 원하여 그대로 머문 사람이 있기까지 했다. 그 일은 문헌에 분명하게 실려 있고, 표류한 사람이 사는 국명은 바로 아란타(阿蘭陀)였다. 그렇다면 경상좌수영의 대처가 마치 대낮에 야차(夜叉)를 본 듯 한 것은 전연 납득하기 어렵다.”¹⁹²⁾ 정조는 대내적으로도 훌륭한 정치, 왕도정치를 구현했지만 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조선이야말로 과연 충실한 나라임을 알리고 싶어 했다.

이러한 정조의 지향은 이른바 그가 추구했던 ‘왕도정치’의 이상이 단지 내부적으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고 안정시키는 동시에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해외의 타국들, 중국으로 비롯하여 일본과 유구 그리고 아란타까지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의를 알고 신의로 상대할 나라임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정조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청이 중국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청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조선이 중화의 적통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의 발로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향심, 공맹이 말하는 인간다움의 도리를 실천해야 했다. 이는 단지 수신제가와 치국에 머물지 않고 ‘평천하’의 도리에 동참할 때 가능했다. 정조는 유구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운에 맡기자고 건의한 심낙수의 의견이야말로 중화의 실심(實心)에 어긋나는 야만의 행동이었다. 이에 진심을 다해 이들을 구료했고 중국에 사정 설명을 한 후 육로를 통해 유구로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동래에 표류한 아란타인들에게도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란타인들을 보고 허둥지둥 하면서 문명국 조선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상좌수영의 군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정조가 제주에 유구어를 익힌 역관을 배치하여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유구인들의 표류에 대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까? 그렇지 않았다. 정조가 가장 중시한 것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이었다. 진실만이 국내의 정치를 구하고, 해외의 선린을 보장하는 길이었다.

192)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10월 4일(기해)

5. 표류민의 출전 지급

따라서 국내의 표류민들이 제주 등에 도착하면 이국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구료하도록 했다. 1786년(정조 10) 4월 정조는 굴을 운반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제주인의 처자식을 돌보아 주고 신역(身役)을 면해 주도록 했다. 제주목사 윤득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본영이 진상(進上)과 방물(方物) 용도로 봉진(封進)하는 굴과(橘果)를 실은 사공(沙工) 김귀재(金貴才)의 배 및 정의현(旌義縣)의 이곽(移藪)을 실은 사공 현도은(玄道恩)과 고중백(高中白)의 배, 제주의 사상(私商) 김영청(金永靑)의 배 등 4척의 배가 파선(破船)되어 정탐한 내용을 이미 앞서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김영청의 배는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로 표류하여 정박해서 사람은 간신히 살았고, 김귀재와 현도은의 배는 끝내 형적이 없어 빠져 죽은 것이 의심할 바 없으니, 극히 불쌍하고 참혹합니다. 조천포(朝天浦)와 화북포(禾北浦) 사이에 특별히 하나의 단(壇)을 설치해서 친히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빠져 죽은 사람들의 처자식 등을 초치해서 하나하나 위로하여 유시해야 하겠습니까. 김귀재의 배에 탄 사람 48인과 현도은의 배에 탄 사람 21인 등의 처자식에게는 각각 피곡(皮穀) 1석(石)씩을 전례대로 지급(題給)하겠습니다. 고중백의 배는 본주 애월진(涯月鎭) 앞바다에서 파선되었지만 사람은 모두 생존하였으므로, 절목에 따라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결군(格軍)에게 나누어 징수하여 내보내겠습니다. 현도은의 배에 실은 이곽은, 사람과 함께 큰바다에 빠져 버리면 탕감해 준 사례가 있으니,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정조는 공물 진상에 동원되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크자, 매우 놀랐다.

“빠져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토록 많다니 듣기에 몹시 놀랍고 불쌍하다. 해당 목사로 하여금 통상적인 격례(格例)에 구애받지 말고 처자식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게 하고, 다시 신임 목사로 하여금 포구(浦口) 가에서 제사를 설행하되,

제문은 전라감사에게 지어 보내도록 하라.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신역(身役)이 나 군포(軍布)가 있다면 일체 모두 탕감해 주라.”¹⁹³⁾

정조의 호생지덕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제주인이건 호남인이건 자신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거나 또 국가의 세공(歲貢)을 전하려다 사고로 죽은 경우 이들을 위해 최선의 보호 조치를 강구했다.

도리어 정조는 이러한 사건 사고를 ‘정치적 수사’ 몇마디로 넘어가려는 지방관들을 질책했다. 1787년(정조 11) 12월 정조는 제주목사 이명준을 꾸짖었다. 당시 이명준은 공과(貢果)를 실은 배가 파선되었다고 치계(馳啓)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진상품을 실은 선척이 표류하다가 돌아와 정박하였다니 매우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 정박하지 못한 배들이 어디로 갔는지 듣지 못하였으니 또한 매우 염려된다. 원근의 포구(浦口)에 신칙하여 찾아보게 하고, 보고가 오거든 즉시 보고하라.”고 하교한 것이다. 이어 정조는 다음과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명준이 선박이 구사일생으로 돌아 온 것을 <왕의 은택을 입은 덕분>이라거나 이들이 표류하게 된 것이 <제주목사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준은 의례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죄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조는 도리어 <자연의 현상을 내 어찌 하겠는가 이후 이들을 구료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지>라는 말로 질책한 것이다.¹⁹⁴⁾

정조는 말이 앞서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것보다 실천하면서 말이 부족한 것을 도리어 칭송했다. 그야말로 용기 있게 현실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정조 스스로 태양증 환자로 자처할 만큼 현실 개혁에 의지를 불태웠던 정조는 레토릭으로 일관하는 정치 대신에 애민의 진정함과 이로부터 나오는 실천력이 조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이러한 정조의 진의를 왜곡하여 고의로 바다에 빠진 후 출전을 바라는 자들이 없지 않았다. 이전에는 이러한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1791년(정조15) 5월 정조는 바다에 일부러 표류한 후 곡식을 바라는 이들도 동일하게 출전을 베풀도록 명했다.¹⁹⁵⁾

물론 일부러 바다에 빠져 출전을 바라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다. 당시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가, 전남 흥양(興陽) 백성 추화근(秋化根) 등 18명이 왜국에 표류하였다가 고향으로 살아 돌아왔고

193)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4월 12일(을유)

194) 《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12월 22일(을묘)

195) 《일성록》 정조 15년 신해(1791) 5월 4일(무인)

바다에 빠져 죽은 1명에 대해 **휙전(恤典)**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조는 “18명이 살아 돌아온 것은 매우 기이하고 다행이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효유하여 **외양(外洋)**을 벗어나 고기잡이를 하지 말라고 해라. 한편 바다에 빠져 죽은 자의 생전 환지(還上)와 신포(身布)는 모두 면제하라. 이후 해당 도(道)의 표류하거나 익사한 자들에 대한 **휙전**은 이번 사례를 정식으로 적용하도록 해라.”라고 신칙하고, 이러한 조항을 제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주목사에 통지했다.

이울러 정조는 “연전에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이 대부분 고의로 범한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칙했었는데, 근래에 또 조금씩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장계를 보면 이미 죽은 자도 있다고 하니 어찌 고의로 범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전의 습속을 답습하여 타국에 수치를 끼치는 폐단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연해의 여러 도에 거듭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지 않도록 신칙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표류 소식이 전해지면 적극적으로 제주 바다를 수색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1794년(정조 18) 5월 제주목사 심낙수는 “제주의 사상 이봉성(李奉成)과 김대방(金大方)의 배 2척을 조천포(朝天浦)에서 수색했지만 육지에 정박한 곳이 원래 없었습니다. 이봉성의 배에 탄 사람 6명과 김대방의 배에 탄 사람 10명이 대양(大洋)에서 침몰된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역(異城)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정조는 제주는 호남의 바닷가 마을에 명을 내려 이들을 수색하도록 했다.¹⁹⁶⁾

사실 사고를 위장하여 **휙전**을 받으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고 이들의 진위를 가리기는 쉽지 않았다. 가령 1793년(정조 17) 1월 나주목 김수장(金水長)이 어세와 둔세로 납부할 어과(魚藿)를 운반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후 모든 세금 납부를 탕감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후일 이들이 제주에 표류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자, 나주목사 이인섭 등은 면제받았던 둔세(屯稅)와 어세(漁稅)를 다시 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고받은 전라 감사 정민시 역시 가가도 영장을 김수장 등의 생사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휙전**을 지급하고 세금을 탕척하게 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 목사 이인섭(李寅燮)의 첩정(牒呈)에 ‘가가도(可佳島)의 선인(船人) 김수장 등 33명이 춘등(春等) 어세와 훈련도감의 둔세를 갖추어 납부하기 위해 어과(魚藿)를 선적(船積)하고서 육지로 향해 가던 중에 표류하여 제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신고 갔던 짐은 모두 떠내려가서 잃어버렸고, 김수장 등 33명은 제주에서 양식 밭천을 넉넉히 주어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96)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5월 4일(경인)

에당초 가가도 영장(領將)의 보고로 인하여 김수장 등이 동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영문에 낱낱이 보고하였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왔으니, 제급(題給)했던 홀전(恤典), 둔세와 어세를 탕감해 주었던 은전은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홀전은 자연히 시행하지 않게 되었으나, 섬의 책임자가 보고한 말에만 근거하여 경솔하게 첩정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은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나주목의 좌수(座首)와 공형(公兪)을 본영(本營)에서 징계하겠습니다.”

정조는 김수장 등이 일부러 바다에 빠진 것도 아닌데다 모든 물건을 잃어버렸고, 또 가가도 영장이 이를 자세하게 알 수도 없었으므로, 특별히 탕책해 주라는 이전의 명대로 실행하도록 했다.¹⁹⁷⁾

사실 제주에서는 수십 명이 한 번에 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 구제하고 홀전을 베풀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었다. 정조는 해녀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수색하고 광범위하게 홀전을 지급하며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전(前)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숙(南漣)이 탄 배와 사상(私商)을 하는 사공(沙工) 김천택(金千宅) 등의 배 6척은 지난 달 29일에 무사히 돌아와 정박했으며, 순영(巡營)에 출장 갔던 장교 김치성(金致成)과 영리(營吏) 한상현(韓相顯) 등이 탔던 배와 사상을 하는 사공 홍범득(洪範得) 등의 배 3척은 같은 날 치패했으나 사람들의 목숨은 겨우 건졌습니다. 이동(李同)의 배는 같은 날 치패했는데, 그 배에 탔던 28명 중에 본주의 양인(良人) 이동수(李同水) 등 6명이 익사했습니다. 고세운(高世云)의 배도 같은 날 치패했는데, 그 배에 탔던 15명 중에 본주의 양인 부도겸(夫度兼) 등 3명이 익사했습니다. 친비(親裨)를 파견하여 자맥질하는 무리들을 많이 차출해서 끝까지 찾아보게 했더니, 김인태(金仁太) 등 7명은 건져 냈으나 허협(許協) 등 2명은 끝내 건져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진(鎭)과 포구에 각별히 신칙하여 기필코 찾아서 건져 내게 했습니다. 이봉하(李奉夏)의 배에 탄 사람은 11명인데, 그중에 본주의 양인 홍계조(洪戒祚)의 시체가 물결을 따라 화북진(禾北鎭) 아래 건팔포(健八浦)에 표류해 왔으며 배의 파재(破材)도 진 아래로 표류해 왔으니, 이 배가 큰바다에서 침몰한 것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마는 본

197)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1월 16일(경술)

주의 양인 양진웅(梁進雄) 등 10명의 시체를 찾아서 건져 내라는 뜻으로 역시 각별히 신칙했습니다.

20명이 일시에 익사한 것은 너무도 불쌍하고 참혹하여 흘전을 규례에 따라 거행했습니다. 해남현(海南縣)에 사는 사상 신학천(申鶴天)의 경우는 해당 동리에 신칙하여 임시 빈소를 잘 만들게 하고 흘전을 제급했으며, 시체를 찾아가라는 뜻으로 해남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상을 하는 사공 고춘득(高春得)의 배에 탄 사람은 본주에 사는 양인 백성륙(白成六) 등 8명이고, 이원남(李元男)의 배에 탄 사람은 본주에 사는 양인 이언태(李彦太) 등 39명이고, 김유택(金有宅)의 배에 탄 사람은 본주에 사는 양인 문일대(文一大) 등 16명이고, 한영채(韓永采)의 배에 탄 사람은 본주에 사는 출신(出身) 이기용(李起用) 등 15명으로 합쳐서 78명인데, 여기에서는 선재(船材)이든지 복물(卜物 짐)이든지 간에 아직도 표류해 온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도(本島)의 각 읍진(邑鎭)의 포구에서 찾아보고, 따로 장교와 이속(吏屬)을 정해서 경쾌선(輕快船)을 정비하고 대기하다가 순풍이 불기를 기다려 육지의 여러 섬과 각 진의 포구를 정탐하게 한 뒤에 다시 즉시 달려가 상황을 아를 계획입니다.”하여, 전교하기를, “비록 사상이라고 하지만 익사한 사람이 자그마치 20여 명에 이르고, 간 곳을 알 수 없는 사람도 7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섬 안의 일이 구구절절이 근심스럽고 측은하다. 익사한 사람들에게는 흘전을 규례에 따라 거행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의 종적을 각별히 더 찾아보고 장계로 보고하라고 회유(回諭)하라. 전 현감 남숙이 무사히 돌아와 정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풍세(風勢)를 각별히 조심하여 내보내서 기필코 무사히 돌아오게 하라고 함께 회유하라.”하였다.¹⁹⁸⁾

198)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5일(임자)

VI. 맺음말

필자가 정리한 <정조의 제주통치론>은 <변경[제주]에 대한 정조의 정책>을 통해 정조의 국가론을 이해하려는 우회로였다. 제주에 대한 논의라고 했지만 실은 정조의 국내 통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해하는 방도였다는 의미이다. 제주라는 먼 지역, 일종의 ‘변경’을 관리하는 방식은 정조 초반 그가 제시한 4대 통치 원칙의 천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먼저 민산(民産)을 굳건히 하려면 향산의 기초가 필요했다. 향산을 제공한 후라면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하여 함께 정치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다시 백성들을 돌보아야 했다. 그리고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였다. 이것이 정조 통치론의 핵심이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조는 단지 왕위에 앉아 있을 뿐 일일이 통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순의 정치, 무위치였다. 혹자는 정조를 만기친람 한다거나 계몽군주라고 부르지만 정조의 꿈은 <조선이라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자립과 자주에 기초한 공화(共和)>에 가까웠다.

정조의 정치 기획은 민본으로부터 민주로, 왕정에서 공화의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제주 역시 그런 정조의 정치 실험지 가운데 하나였다. 제주의 향산이 굳건할 때 비로소 육지로부터 먹을 것의 자립이 가능했다. 제주의 교화가 지속된 결과, 제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시민성[명덕]을 회복할 때, 비로소 민본이 아닌 민주와 가능성이 열렸다.¹⁹⁹⁾ 이처럼 <제주의 독립>은 물질 토대와 교화라는 상부구조가 완성될 때 가능했다.

‘자주’는 무조건적이지 않았다. 정조의 제주통치론은 그야말로 진정한 자주와 자치의 근본을 제주에 구현하려는 기획이었다. 한마디로 ‘제주인을 위한, 제주인에 의한, 제주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제주의 독자적인 향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대로 공·맹 이후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민의 기본소득을 위한 향산을 마련하는데 몰두했다.

199) 김호, 2013 <다산 정약용의 ‘민주(民主)’ 기획> 《다산과현대》6

교화 이전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조의 제주 통치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향산이 준비되면 당연히 교화를 통한 향심(恒心)의 계몽이 필요했다. 모든 사람이 군자를 지향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최소정부의 정치가 가능했다. 저절로 강제 없는 정치, 무위이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단지 제주에 그치지 않았다. 정조의 제주 통치는 기본적으로 타국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표류한 이국인들에게 정조는 조선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환대했다. 문명국의 증거는 '자국민'을 위한 보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상호 선린을 위한 환대는 주변국들과 갈등 없는 평화를 보장했다.

정조의 제주통치론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자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과연 그 궁극의 목표는 경제자유의 자치인가? 정치자유 자치인가? 세계평화의 자치인가?

글을 맺으면서 필자는 조선의 성리학 정치 기획과 '자치'의 의미를 연결 지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성리학은 양반의 통치이데올로기나 혹은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필요 이상의 비판에 내몰렸다. 그러나 조선 5백년을 관통하는 성리학의 정치기획과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정치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성리학은 더 이상 단순한 비난의 대상으로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최근 서구의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유교헌정담론'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이 새로운 연구동향은 성리학(유교)을 동양의 중요한 정치이념-헌법담론의 지위-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기왕의 주장들과 달리 매우 적극적인 평가를 동반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리학은 '천리(天理, 인간의 본성)'를 통해 비교적 '자의적인 왕의 전제와 독재'를 견제할 수 있었다는 논리이다. 특히 전 인민을 대상으로 '천리(도덕성의 토대)의 계발[교화]'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인민이 <무도한 통치>를 비판할 수 있는 정치참여층[비판자]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²⁰⁰⁾

요컨대, 공맹 이후 무위이치의 이상을 향한 향산-향심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조의 교화론>이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정리한 정조의 '제주통치론'은 한계는 있지만 성리학 정치의 중요한 면모를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 자발주의 정치[무위이치]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자치', 즉 진정한 자발주의 정치의 모범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본다.

200) Kim, Sungmoon, Public reason Confucianism: democratic perfectionism and constitutionalism in 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2017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정조실록》
- 《일성록》
- 《승정원일기》
- 《홍재전서》
- 《여유당전서》

2. 2차 자료

- 강문종, 2016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 《영주어문》32
- 강문종 외, 2019 《굴림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강창룡, 1997 《19세기 濟州社會 연구》 (일지사)
- 고용희, 2008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각)
- 고창석, 2001 《제주도고문서연구》 (도서출판 세림)
- 고창석, 2007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 고창석 역주, 2013 《(譯解) 耽羅賓興錄》, (제주교육박물관)
- 권무일, 2017 《이방익 표류기》 (평민사)
- 김강식, 2019 《李邦翼《漂海錄》 속의 표류민과 海域 세계》 《역사와 세계》55
- 김건우, 2010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중앙연구원출판부
- 김동진,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 김동진, 2009 《제주목 관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 김문식, 2008 《〈書李邦翼事〉에 나타나는 杻趾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15
- 김상헌 (홍기표 역), 2008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8)
- 김새미오, 2010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20
- 김석익 (홍기표 외역), 2015 《(역주)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5)
- 김석익 (오문복 외역), 2011 《제주 속의 耽羅》 (보고사, 2011)

- 김익수, 2019 《제주 역사문화의 길잡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 김익수, 2007 《(譯註)濟州 古記文集》 (제주문화원)
- 김태곤, 1987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 김호, 2012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다산의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84
- 김호, 2013 <다산 정약용의 '민주(民主)' 기획> 《다산과현대》6
- 김호, 2016 <연암 박지원의 刑政論> 《法史學研究》54
- 김호, 2019 <위선(僞善)의 한계는 어디인가? -다산 정약용의 '광자(狂者)' 유감> 《다산과현대》12
- 김호, 2013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 김호, 2020 《정조의 법》 (휴머니스트)
- 南九明, (김영길 역), 2010 《(國譯)寓庵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2010)
- 남도영, 2001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 박물관)
- 남정희, 2018 <18세기 후반 정조 초엽, 이방익의 <홍리가>에 나타난 유배 체험과 인식 고찰> 《어문연구》96
- 문순덕, 2010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 2013 《제주 여성의 일생의례와 언어》 (인터북스)
- 박찬식, 2007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 박찬식,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민예총)
- 변경봉 (탐라문화연구소 역), 2010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손혜리, 2005 <成海應의 畵女傳에 대하여-열녀인식과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35
- 송정규 (김용태, 김새미오 역), 2015 《해외문건록 - 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휴머니스트)
- 守本順一郎 (김수길 역), 1985 《동양정치사상사 연구》 (동녘)
- 안대희, 2006 <다산 제자 李綱會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10
- 윤시동 (김영길 역), 2016 《(국역)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 이강희, 《탐라직방설 : 19세기 제주 '양제해 모변사'의 새로운 해석》 (각)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제주사 : 지방사, 역사 읽기의 새로운 시도》 (휴머니스트)
- 이원조 (김찬흠 외역), 2008 《탐라지초본》 (제주교육박물관)

- 이원진 (김찬흠 외역), 2002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 이창훈, 2018 《濟州島金石文》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 이형상 (이상규 외역), 2009 《남한박물지》 (푸른역사)
- 전경수, 2016 《탐라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 전영준, 2019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탐라문화》60
- 전영준, 2014 《전근대시기 제주사회의 기상변화와 대응》 《역사와실학》55
- 정민, 2008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을 통해본 양제해 모변사건의 진실》 《한국실학연구》15
- 정약전 · 이강희, 김정섭 등역, 2005 《柳菴叢書》 (신안문화원)
- 조성산, 2008 《이강희의 《耽羅職方說》과 제주도》 《다산학》12
- 조성윤 외,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조정철 (김익수 역), 2006 《靜軒瀛海處坎錄》 (제주문화원)
- 주강현, 2013 《제주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제주특별자치도)
- 진성기, 1968 《南國의 傳說》 (일지사)
- 최성환, 2012 《문순득 표류 연구-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민속원)
- 프랑수아 줄리안 (이근세 역), 2020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교유서가)
- 피터블 (김영민 역), 2010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 한상권, 1996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 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민속원)
- 현용준, 1972 《제주도신화》 (서문당)

Abstract

King Jeongjo's Governance Theory on Jeju

KIM HO

This article examined Jeongjo's governance theory on Jeju in several parts. After his accession, Jeongjo selected four major projects of Joseon: civil production, cultivating the talented, military affairs, and national finance. This article then arranged how each goal was applied on the governance in Jeju. First, Chapter 2: Territory covers historical perception of King Jeongjo who perceived Jeju as an area of active governance. Second, Chapter 3: Fixed Livelihood(恒産) is about policy on self-sufficiency on food, which is the basis of public welfare. The true autonomy of Jeju was only possible when food self-support is realized. During the famine, Jeongjo promoted fundamental self-reliance of Jeju by not only actively aiding people but also by reducing local tribute(進上品). Third, Chapter 4: Constant Heart(恒心) describes education policy. Jeongjo emphasized education to change the customs of Jeju and expected changes in the people accordingly. Lastly, Chapter 5: Good-Neighborhood narrates the mutual hospitality of Jeju people who drifted abroad and foreigners who drifted to Jeju.

Hence, "Chapter 2: Territory –Jeju as a frontier" explains why Jeongjo defined Joseon as the "Great East(大東)" and pointed out Jeju as an important area of the Great East. In "Chapter 3: Fixed Livelihood(恒産) -basis of life" organized how Jeongjo strived to fundamentally stabilize food production in Jeju, while sending an official to investigate geography and local products of Jeju. Aiding and reducing local tribute was the core of governance on Jeju. "Chapter 4: Constant Heart(恒心) -moral transformation and voluntarism of commoner" organized the Enlightenment Theory of Jeongjo, which clarifies humanity through education and encourages voluntarism for community. He wanted people who readily devote themselves for community like Manduk and Yang Jae-hae. Jeongjo thought

the voluntarism of commoner is the goal of Joseon as civilized country. "Chapter 5: Good-Neighborhood-hospitaity of castaway" deals with drift in oceans around Jeju. Waters surrounding Jeju were often used as sea route for not only connecting mainland Joseon and Jeju, but also connecting CChina-Japan and Japan-Ryukyu. Thus when castaways came to Joseon, Jeongjo treated them on the basis of great righteousness[大義]. It was because if Joseon people were able to be treated humanely and return home safely, then foreign castaways had to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chief state councilor(Yeonguijeong, 領議政) Lee Byeong-mo mentioned, Jeongjo's love for Jeju was more earnest than in other regions in Joseon. He planned politics from people-centered politics(民本) to democracy, and from the monarchy to the republican ideal. Jeju was one of the political experiment sites of Jeongjo. If Jeju's fixed livelihood is stabled, then the enlightenment of Jeju would continue, and when each people in Jeju restore brilliant virtue(明德), there could be an opportunity toward democracy. Jeongjo's governance theory on Jeju was aimed for this.

연구진

연구책임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제주학연구 71

정조(正祖)의 제주통치론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 3층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ISBN : 979-11-90748-12-4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제주학연구
71

제주학연구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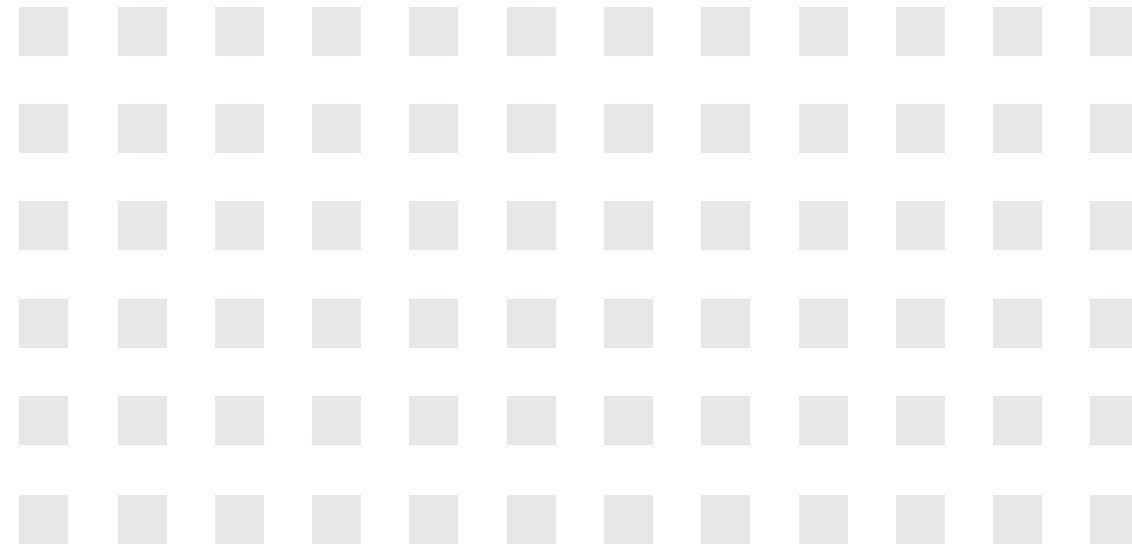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조(正祖)의 제주통치론

정조(正祖)의 제주통치론

김 호



비매품/ 무료



9 791190 748124
ISBN 979-11-90748-12-4

